

[www.kcc.go.kr](http://www.kcc.go.kr)

# 20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방송통신위원회

## 일 러 두 기

이 심결집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 상 금지행위, 이동  
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한  
심결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2011~2020)의 연도별 심결통계자료를  
포함하였습니다.

# 목 차

## I. 개 요

① 총 평 .....	3
② 2020년도 금지행위 등에 관한 심의의결 현황	
1. 총론 .....	6
2.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현황 .....	8
3. 시정조치 유형별 세부현황 .....	10
③ 2020년도 금지행위 등 관련 법령 정비 주요 내용 .....	13
④ 방송통신위원회 연도별(10년간) 금지행위 시정조치 현황 (2011년~2020년)	
1. 연도별 심의·의결 현황 .....	16
2. 연도별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현황 .....	22
3. 연도별 시정조치 유형별 세부현황 .....	24
4. 연도별 사업자별 금지행위 세부현황 .....	27

## Ⅱ. 조사사건 심의·의결서

### 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1.22)

1. 개 요	49
2. 관련 사례	51

### ②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1.29)

1. 개 요	92
2. 관련 사례	93

### ③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6.4)

1. 개 요	125
2. 관련 사례	126

### ④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7.8)

1. 개 요	135
2. 관련 사례	137

### ⑤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9.9)

1. 개 요	312
2. 관련 사례	314

**6 케이티파워텔(주)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10.9)**

1. 개 요 ..... 368

2. 관련 사례 ..... 369

**7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11.24)**

1. 개 요 ..... 389

2. 관련 사례 ..... 390

### Ⅲ. 부 록

#### ① 방송·통신 금지행위 및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정

1.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581
2.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	588
3.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 기준 .....	599
4.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	601
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 .....	605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준 .....	607
7.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	614
8.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	616
9.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620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623
11.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	627
12.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	629
1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635
14.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641
1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647
1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652

# I. 개 요

- 1 총 평
- 2 2020년도 금지행위 시정조치 현황
- 3 2020년도 금지행위 관련 법령 정비 주요 내용
- 4 연도별(10년간) 금지행위 시정조치 현황 (2011년~2020년)



## 1. 총 평

비대면 사회의 가속화로 인하여 방송통신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ICT는 국민 생활의 필수요소로 부상하였으며, 5G를 필두로 한 통신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재택근무, 원격회의, 온라인수업, 원격진료, 온라인 콘텐츠 소비 등 데이터 기반의 ICT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기업에서는 클라우드, AI, IoT 등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하여 플랫폼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제재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먼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과도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 등 유·무선통신 및 유료방송 시장에서 발생한 금지 행위 등에 대하여 159개 사업자\*에 대한 534억원의 과징금 및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1개의 사업자가 다른 건으로 제재받는 경우 중복하여 포함

아울러,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1) 주요 시정조치의 내용

우선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2억원(SKTEL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을 부과하고, 124개 관련 유통점에 대해 100만원~3,6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등 총 2억 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한편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 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4사에 대해 총 과징금 8.7억원(KT 2.64억원, LGU+ 2.79억원, SKB 2.51억원, SKT 0.76억원)을 부과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리담당자 지정, 대리점 및 판매점 종사자 교육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및 이용약관 위반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파워텔(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3.9억원을 부과하였다.

부가통신분야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 가입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계약 해지 제한, 계약체결 시 중요사항 미고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구글LLC에 대하여 과징금 8억 6,7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하였다.

또한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 관련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4개사에 대해 총 2,800만원(각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플로팅 광고 삭제 제한 관련 21개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해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을 명령하였다.

방송분야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특정 중소방송사에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초과 금액을 차별 지원하고, 특정 광고대행자에게 거래조건을 현저하게 차별한 행위가 확인되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중지, 업무처리 개선 대책 수립 등을 명령하였다.

## 2)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으며,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사전조치 의무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과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정하여 고시하였다.

## 2. 2020년도 금지행위 등에 관한 심의·의결 현황

### 1. 총론

- 2020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관련 법령 금지 행위 위반 등에 대한 조사사건 159건, 법령·고시 등 제·개정 8건 등으로 총 167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 2-1-1. 심의·의결 현황 >

(단위 : 건)

조사 사건	통신 재정	법령·고시 등	합 계
159	-	8	167

#### < 2-1-2. 2020년도 주요 심결 사례 >

구분	의결일	안 건 명	사업자	주요 시정조치
조사 사건	2020-01-22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의 수정의결에 관한 건	Google LL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li> <li>○ 시정권고</li> <li>○ 시정명령공표 등</li> </ul>
	2020-01-29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4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4개사업자)</li> <li>○ 기술적 조치 등</li> </ul>
	2020-06-0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li> <li>○ 시정명령공표 등</li> </ul>
	2020-07-08	이통3사및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유통점(124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3개통신사)</li> <li>○ 과태료(124개유통점)</li> <li>○ 시정명령공표 등</li> </ul>
	2020-09-09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에스케이텔레콤(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li> <li>○ 시정명령공표 등</li> </ul>

구분	의결일	안건명	사업자	주요시정조치
	2020-10-07	케이티파워텔(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케이티파워텔(주)	○ 과징금 ○ 시정명령공표 등
	2020-11-24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인터넷신문사업자 (21개사)	○ 시정명령공표 등

< 2-1-3. 시정조치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변경	행위중지	시정명령공표	절차개선	형사발고	기타	합계
0	10	128	0	133	155	28	0	36	490

\* 동일 조사사건에 대하여 1개 사업자에 다수의 시정조치 포함

\*\* 기타 항목 : 이행계획서 제출 및 결과보고(31건), 기술적 조치(4건), 시정권고(1건)

< 2-1-4. 과징금 부과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이익 침해	단말기지원금	거래조건 차별	계
건수	1	5	3	1	10
금액	390,500	1,737,000	51,200,000	30,000	53,357,500

< 2-1-5. 과태료 부과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단말기유통법 위반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	합계
건수	124	4	128
금액	272,400	28,000	300,400

## 2.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현황

### □ 개요

- 조사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총 159건이 있었으며, 분야별로 무선분야 127건, 유선분야 5건, 부가통신분야 26건, 방송분야 1건이 있었다.

#### < 2-2-1. 2020년도 조사사건 전체 현황 >

구분	역무	사건 유형	사업자	위반 유형	위반내용
무선	이동전화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지급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유통점(124개사)	단말기 유통법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적 지원금 지급 및 지급 유도</li> <li>○ 지원금 초과 지급 등</li> </ul>
유선	결합상품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에스케이텔레콤(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이용자 이익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 광고 행위</li> </ul>
	기간통신	이용자 이익저해 및 이용약관 위반행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케이티파워텔(주)	이용자 이익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사항 거짓고지</li> <li>○ 절차 위반한 이용계약 체결 및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li> <li>○ 이용약관 위반행위</li> </ul>
방송	방송광고 판매대행	거래조건 차별 관련 미디어렐법 위반행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거래조건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조건 차별행위</li> </ul>
부가	부가통신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4개사)	기술적 조치 미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li> </ul>
		서비스 가입 및 해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Google LLC	이용자 이익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이용계약 체결</li> <li>○ 이용계약 해지 제한</li> <li>○ 이용계약 체결시 중요사항 미고지</li> </ul>
		광고 삭제 제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인터넷신문사업자(21개사)	이용자 이익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 삭제 제한</li> </ul>
소계	-	7건	159개사	-	-

## &lt; 2-2-2. 금지행위 위반유형별 현황 &gt;

(단위 : 건)

구 분	사업자	이용자 이익 저해	단말기 지원금	기술적 조치 미이행	이용약관 위반	거래조건 차별	계
유 선 분 야	SKT	1	-	-	-	-	1
	SKB	1	-	-	-	-	1
	KT	1	-	-	-	-	1
	LGU+	1	-	-	-	-	1
	KT파워텔 <sup>1)</sup>	-	-	-	1	-	1
	<b>소 계</b>	<b>4</b>	-	-	<b>1</b>	-	<b>5</b>
무 선 분 야	SKT	-	1	-	-	-	1
	KT	-	1	-	-	-	1
	LGU+	-	1	-	-	-	1
	기타 (유통점 등)	-	124	-	-	-	124
	<b>소 계</b>	-	<b>127</b>	-	-	-	<b>127</b>
부 통 분 가 신 야	구글	1	-	-	-	-	1
	특수유형 부가통신	-	-	4	-	-	4
	인터넷신문	21	-	-	-	-	21
	<b>소계</b>	<b>22</b>	-	<b>4</b>	-	-	<b>26</b>
방 송 분 야	코바코	-	-	-	-	1	1
	<b>소 계</b>	-	-	-	-	<b>1</b>	<b>1</b>
<b>총 계</b>		<b>26</b>	<b>127</b>	<b>4</b>	<b>1</b>	<b>1</b>	<b>159</b>

1) 이용자 이익 저해에 중복으로 해당

### 3. 시정조치 유형별 세부현황

#### □ 개 요

- 시정조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선통신 분야에서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한 4개 통신사와 이용자 이익저해 및 이용약관 위반 행위를 한 1개 통신사에 과징금, 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 공표, 절차개선,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를 명령하였다.
- 무선통신 분야에서 단말기 지원금 지급 관련 통신3사 및 124개 유통점에 과징금 3건, 과태료 124건, 행위중지 및 시정명령 공표 각 127건,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 3건을 부과하였다.
- 부가통신분야에서는 22개 부가통신사업자에 과징금 및 절차개선 1건, 시정명령 공표 및 절차개선,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 22건을 부과하였으며,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4건 및 절차개선과 기술적조치 4건을 부과하였다.
- 방송분야에서는 1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과징금,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절차개선,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 보고를 부과하였다.

#### < 2-3-1. 시정조치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구분	사업자	시정조치 <sup>1)</sup> 유형별							
		과징금	과태료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절차 개선	시정 권고	기타	계
유선 분야	SKT	1	-	1	1	1	-	1	5
	SKB	1	-	1	1	1	-	1	5
	KT	1	-	1	1	1	-	1	5
	LGU+	1	-	1	1	1	-	1	5
	KT파워텔	1	-	1	1	1	-	1	5
	<b>소 계</b>	<b>5</b>	<b>-</b>	<b>5</b>	<b>5</b>	<b>5</b>	<b>-</b>	<b>5</b>	<b>25</b>

구분	사업자	시정조치 <sup>1)</sup> 유형별							
		과징금	과태료	행위중지	시정명령 공표	절차개선	시정권고	기타	계
무선분야	SKT	1	-	1	1	-	-	1	4
	KT	1	-	1	1	-	-	1	4
	LGU+	1	-	1	1	-	-	1	4
	유통점	-	124	124	124	-	-	-	70
	<b>소 계</b>	<b>3</b>	<b>124</b>	<b>127</b>	<b>127</b>	-	-	<b>3</b>	<b>384</b>
부가통신분야	구글	1	-	-	1	1	1	1	5
	특수유형 부가통신	-	4	-	-	-	-	4	8
	인터넷 신문	-	-	-	21	21	-	21	63
	<b>소 계</b>	<b>1</b>	<b>4</b>	-	<b>22</b>	<b>22</b>	<b>1</b>	<b>26</b>	<b>76</b>
방송분야	코바코	1	-	1	1	1	-	1	5
	<b>소 계</b>	<b>1</b>	-	<b>1</b>	<b>1</b>	<b>1</b>	-	<b>1</b>	<b>5</b>
<b>총 계</b>		<b>10</b>	<b>128</b>	<b>133</b>	<b>155</b>	<b>28</b>	<b>1</b>	<b>35</b>	<b>490</b>

1) 1개 사업자가 동일 조사사건에서 다수의 시정조치를 받은 내용을 포함

2) 기타 항목 :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및 결과보고, 기술적 조치 이행 등

### □ 과징금 부과 세부현황

○ 조사사건에 대한 과징금 총 부과내역은 533억5,750만원이며, 이 중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하여 17억3,700만원, 부당한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512억원, 이용약관 위반 행위에 대하여 3억9,050만원,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대하여 3,000만원이 부과되었다.

#### < 2-3-2. 과징금 부과 세부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자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지원금 지급 등	거래조건 차별	합 계
통신 유선분야	SKT	-	76,000	-	-	76,000
	SKB	-	251,000	-	-	251,000
	KT	-	264,000	-	-	264,000

구 분		사업자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지원금 지급 등	거래조건 차별	합 계
		LGU+	-	279,000	-	-	279,000
		KT파워텔	390,500	-	-	-	390,500
		<b>소 계</b>	<b>390,500</b>	1,260,500	-	-	<b>1,651,000</b>
	무선분야	SKT	-	-	22,300,000	-	0
		KT	-	-	15,400,000	-	0
		LGU+	-	-	13,500,000	-	0
		<b>소 계</b>	<b>-</b>	<b>-</b>	<b>51,200,000</b>	<b>-</b>	<b>51,200,000</b>
	부가통신	구글	-	867,000	-	-	867,000
		<b>소 계</b>	<b>-</b>	<b>867,000</b>	<b>-</b>	<b>-</b>	<b>867,000</b>
	방송	코바코	-	-	-	30,000	30,000
<b>소 계</b>		<b>-</b>	<b>-</b>	<b>-</b>	<b>30,000</b>	<b>30,000</b>	
<b>총 계</b>		<b>390,500</b>	<b>1,737,000</b>	<b>51,200,000</b>	<b>30,000</b>	<b>53,357,500</b>	

□ 과태료 부과 현황

- 조사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은 총 3억 40만원이며 이 중 과다 지원금 및 부당한 차별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2억7,240만원,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하여 2,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2-3-3. 과태료 부과 세부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자	과다 지원금 및 부당한 차별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	기술적조치 미이행	합계
통신	무선	이동통신 유통점 (124개)	272,400	-	272,400
	부가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4개)	-	28,000	28,000
<b>총 계</b>			<b>272,400</b>	<b>28,000</b>	<b>300,400</b>

### 3. 2020년도 금지행위 등 관련 법령 정비 주요 내용

#### 1.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개정 : 2020. 6. 9

-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주요 내용>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등 의무부과)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 등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 부과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방통위 제출 의무 부과

#### 2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시행 : 2020. 12. 8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다.

##### <주요 내용>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사전조치 의무 부가통신사업자 범위)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되는 규모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상시적인 신고 수단의 마련, 검색하는 정보를 불법촬영물등과 비교 및 식별하여 유통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정보통신 제공자의 범위)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되는 규모를 가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함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이수 의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관련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

### 3. 과징금 환급가산금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 : 2020. 5. 19.)

-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산정요율을 고정 금리(연 6%)에서 시중금리 등을 고려한 이자율로 변경하여 경제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등 환급가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주요 내용>

- (환급가산금 요율) 환급가산금 산정요율을 연 6%에서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

###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정 (시행 : 2020. 12. 21.)

-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

※ 관련 매출액 산정, 중대성 판단, 필수적·추가적 가중·감경 사유 규정

#### <주요 내용>

- (관련 매출액의 산정)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등
- (중대성의 판단) ① 영리 목적의 유무, ②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으로 인한 피해규모,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평가항목	위반점수		상(30점)	중(20점)	하(10점)
	비중				
이득 발생의 정도	0.3		•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상당한 경우 (상당한 이득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포함한다)	•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보통인 경우 (보통의 이득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경미한 이득 발생 가능성이 일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의 정도	0.2		•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보통인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	0.2		• 위반행위로 인해 이득을 취할 목적이 명확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해 이득을 취할 목적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해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규모	0.2		• 불법촬영물등이 당해 조치의무사업자 이외 5개 이상의 조치의무사업자의 서비스에 유통된 경우	• 불법촬영물등이 당해 조치의무사업자 이외 1~4개의 조치의무사업자의 서비스에 유통된 경우	• 불법촬영물등이 당해 조치의무사업자의 서비스에 한정되어 유통된 경우
신고·삭제 요청등의 횟수	0.1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등이 3회 이상 이루어졌음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등이 2회 이루어졌음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등이 1회 이루어졌음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5.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고시) 제정 (시행 : 2020. 12. 31.)

o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정하여 고시

(기관·단체명 : 소재지 순)

소재지	기관·단체명	지정기간
서울	나무여성인권상담소	' 21.1.1. ~ ' 21.12.31.
	십대여성인권센터	' 21.1.1. ~ ' 21.12.31.
부산	(사)부산성폭력상담소	' 21.1.1. ~ ' 21.12.31.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 21.5.1. ~ ' 21.12.31.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 21.5.1. ~ ' 21.12.31.
대구	대구여성의전화 부산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 21.1.1. ~ ' 21.12.31.
대전	(사)대전여민회	' 21.5.1. ~ ' 21.12.31.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 21.1.1. ~ ' 21.12.31.
충남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 21.1.1. ~ ' 21.12.31.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 21.1.1. ~ ' 21.12.31.
경북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 21.1.1. ~ ' 21.12.31.
경남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 21.1.1. ~ ' 21.12.31.
제주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 21.1.1. ~ ' 21.12.31.

## 4. 방송통신위원회 연도별(10년간) 금지행위 등 시정조치 현황 (2011 ~ 2020년)

### 1. 연도별 심의·의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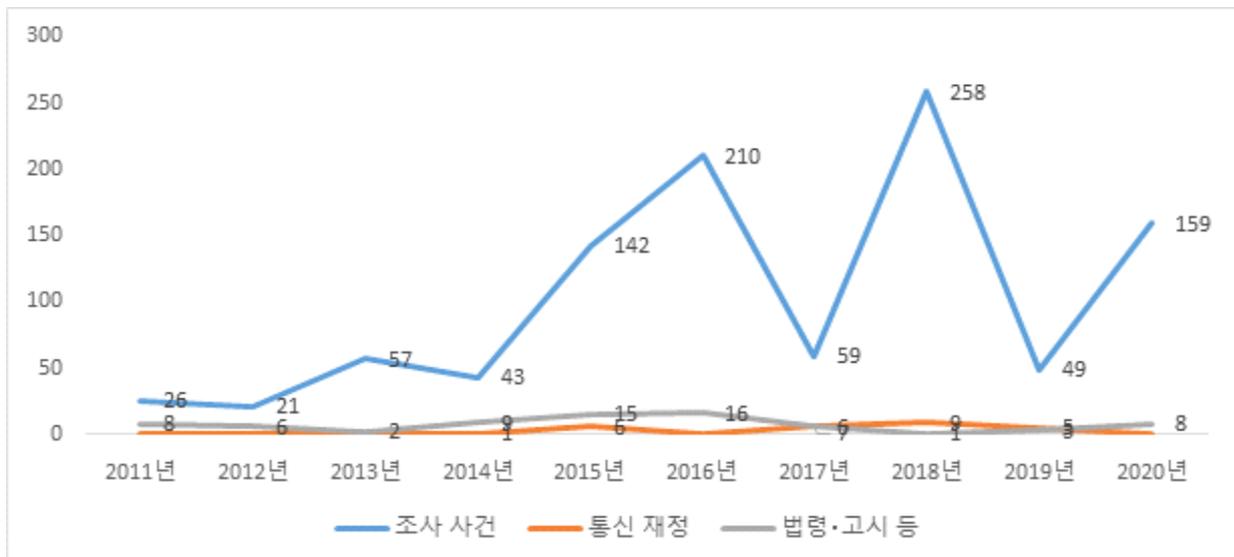
- 지난 10년간 총 1,126건을 심의·의결 하였으며, 이 중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 조사사건은 1,024건(90.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법령·고시 등의 제·개정 74건(6.6%), 통신재정 28건(2.5%) 순이다.

< 4-1-1. 연도별 심의·의결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조사 사건	통신 재정	법령·고시 등	계
2011년	26	-	8	34
2012년	21	-	6	27
2013년	57	-	2	59
2014년	43	1	9	53
2015년	142	6	15	163
2016년	210	-	16	226
2017년	59	7	6	72
2018년	258	9	1	268
2019년	49	5	3	57
2020년	159	-	8	167
합 계	1,024	28	74	1,126

(단위 : 건)



## &lt; 4-1-2. 연도별 금지행위 등 조사사건 심결내용 &gt;

연 도	구 분	안 건 명	사 업 자
2011	이용약관 위반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온세텔레콤, SKB
	이용자 이익 침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KT, SKB, LGU+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KT
		요금연체자 관리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SKT, KT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SKT, KT, LGU+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별정통신사업자 15개
2012	이용약관 위반	OTS결합상품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KT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접속제한 행위 관련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KT
		디지털 전환 영업 관련 금지행위 위반	13개 SO법인사업자
	이용자 이익 침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 경품 및 부당 요금감면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SKT, KT, LGU+
2013	이용자 이익 침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SKT, KT, LGU+
		초고속인터넷 해지제한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SKT, KT, LGU+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	LGU+, MSO 계열 34개사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3.14)	SKT, KT, LGU+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7.18)	SKT, KT, LGU+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12.27)	SKT, KT, LGU+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제한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SKT, KT, LGU+	
	이용약관 위반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이용약관 절차 위반행위 등	SKT, KT SK브로드밴드
협정위반 등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SKT, KT, LGU+	

연 도	구 분	안 건 명	사 업 자
	수익배분 제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감액 지급	남인천방송(주)
2014	이용자 이익 침해	차별적지원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3.13)	SKT, KT, LGU+
		차별적지원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8.21)	SKT, KT, LGU+
		결제취소 기간 불고지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웹하드사업자(6개)
		이용자의 결제 해지 제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주)티비이엔엠, (주)이지원 인터넷서비스
		서비스 허위 과장 및 이용자의 결제 해지 제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비엔씨피(주)
		이용계약체결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주)네오피플
	수익배분 제한	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주)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7개 SO
	중지명령 불이행	차별적지원금 지급관련 중지명령 불이행 2.14)	SKT, KT, LGU+
	단말기 유통법 위반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 지급행위 (11.27)	SKT, KT, LGU+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 지급행위 (12.4)	SKT, KT, LGU+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 지급행위(12.4)		이동통신사 유통점 22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 지급행위(12.19)		이동통신사 판매점 13개	
2015	이용자 이익 침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SKT, KT, LGU+, SK텔링크(주)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5.28)	이동통신사 3사 (주)씨제이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주) (주)씨엠비 대전방송 등 8개 MSO
		에스케이텔링크(주)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SK텔링크(주)
		(주)LG유플러스의 20%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LGU+

연 도	구 분	안 건 명	사 업 자
		(주)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LGU+, 다단계 유통점 7개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12.10)	이동통신사 3사 (주)씨엠비대전방송 등 6개 MSO
		방송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씨엔엠 경기동부 등 6개 MSO
	단말기 유통법 위반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이동통신 유통점 28개
		SK텔레콤(주) 및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SKT, 이동통신유통점 6개, 개인3명
		판매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이동통신판매점 21개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엘비휴넷, LGU+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이동통신사 3사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위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MBN 미디어랩
	수익배분 지연	방송법상 적정한 수익배분 지연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하나방송주식회사 등 3개 MSO
이용약관 위반	SD서비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주)KT스카이라이프	
2016	이용자 이익 침해	이용약관 절차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2.4)	알뜰폰사업자 19개
		초고속인터넷 단품 및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12.6)	SKT 등 7개사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 등 이용약관 절차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12.26)	카카오 등 2개사
	이용약관 위반	이용약관 외 할인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2.4)	KT
		중요사항 미고지 등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 법령상 금지행위 위반행위(12.21)	MSO 14개사 및 IPTV 3개사
	단말기	지원금 과다지급, 사전 승낙제 위반 및 조사 거부	이동통신유통점

연 도	구 분	안 건 명	사 업 자
	유통법 위반	방해 등 단말기유통법상 위반행위(3.10)	100개사
		단말기유통법상 사실조사 거부·방해한 행위(7.8)	LGU+ 임직원 3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조사 거부·방해, 관리 감독 소홀 등 단말기유통법상 위반행위(9.7)	LGU+ 유통점 59개사
	기 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관련 위법행위(5.26)	웹하드사업자 3개사
2017	이용자 이익 침해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서비스 이용계약의 해를 거부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12.6)	SKT, SKB, KT, LGU+
	단말기 유통법 위반	외국인영업과 관련하여 이통3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가입유형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여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한 행위(3.21)	SKT, KT, LGU+
		외국인영업과 관련하여 공시지원금 보다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중 일부에게는 가입유형별 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3.21)	이동통신 유통점 42개
		단말기유통법상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3.21)	이동통신 유통점 1개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사전승낙제 위반행위(3.21)	이동통신 유통점 1개
	비용의 부당전가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 제작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시킨 행위 등(9.14)	(주)지에스홈쇼핑 등 TV홈쇼핑 7개사
	기타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 등 중사항을 이용약관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3.21)	KT
2018	이용자 이익침해	대표번호 카드결제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0.12)	KT, LGU+, SKB, 벤사업자 등 17개사
		접속경로 변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3.21)	페이스북
	단말기 유통법 위반	이통3사 법인 영업 및 대형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24)	SKT, KT, LGU+, 대형유통점 1개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SKT, KT, LGU+,

연 도	구 분	안 건 명	사 업 자
		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24)	유통점(171개사)
		국민신문고 등 민원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10.25)	56개 유통점
	이용약관 위반	(주)티브로드 및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 방송채널 차단행위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0.31)	(주)티브로드 (주)티브로드 동대문 방송
	기타 (기술적조치 미이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0.25)	위드디스크
2019	이용자 이익침해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해지제한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6.26)	SKT, SKB
	단말기 유통법 위반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3.20)	SKT, KT, LGU+ 유통점(35개사)
		에스케이텔레콤(주)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건(7.9)	SKT
	수익배분 제한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관한 건(10.23)	(주)씨엠비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주)현대에이치씨엔
	기타 (기술적조치 미이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4.17)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5개사)
2020	이용자 이익침해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의 수정의결에 관한 건(1.22)	Google LLC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건(9.9)	SKT, SKB, KT, LGU+
		케이티파워텔(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0.7)	케이티파워텔(주)
		'플로팅광고' 관련「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1.24)	인터넷신문사업자 (21개사)
	단말기 유통법 위반	이통3사및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7.8)	SKT, KT, LGU+ 유통점(124개사)

연 도	구 분	안 건 명	사 업 자
	거래조건 차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6.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타 (기술적조치 미이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1.29)	특수유형부가통신 사업자(4개사)

## 2. 연도별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현황

### □ 개 요

- 조사사건에 대하여 금지행위 등 유형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1,024건  
중에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및 부당한 차별지급 등 단말기 지원금에 관한  
위반 행위가 718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약 70.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221건(21.6%)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이용약관  
위반행위가 42건(4.1%), 수익배분 제한·웹하드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무 위반  
등 기타사항 37건(3.6%)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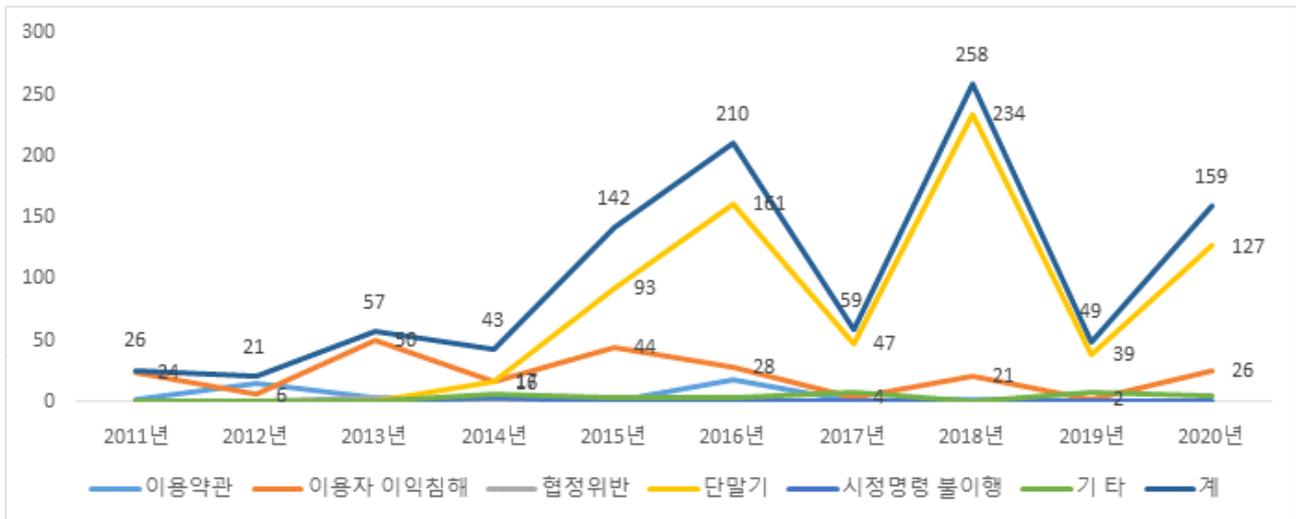
#### < 4-2-1. 연도별 금지행위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연 도	이용약관	이용자 이익침해	협정위반	단말기 유통법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기 타	계
2011년	2	24	-	-	-	-	26
2012년	15	6	-	-	-	-	21
2013년	3	50	3	-	-	1 <sup>1)</sup>	57
2014년	-	16	-	39	3	7 <sup>1)</sup>	65
2015년	1	44	-	100	-	4 <sup>1)2)</sup>	149
2016년	18	28	-	165	-	3 <sup>3)</sup>	214
2017년	-	4	-	47	-	8 <sup>4)5)</sup>	59
2018년	2	21	-	234	-	1 <sup>3)</sup>	258
2019년	-	2	-	39	-	8 <sup>1)3)5)</sup>	49
2020년	1	26	-	127	-	5 <sup>3)6)</sup>	159
<b>합 계</b>	<b>42(4.0%)</b>	<b>221(20.9%)</b>	<b>3(0.3%)</b>	<b>751(71.1%)</b>	<b>3(0.3%)</b>	<b>37(3.5%)</b>	<b>1,057</b>

1)수익배분 제한, 2)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위반 3)웹하드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불이행, 4)비용의  
부당전가, 5)권고사항, 6)거래조건 차별

(단위 : 건)



< 4-2-2.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세부 유형 >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요금 등 부당한 차별	6	6	9	6	8	7	-	-	-	-	42 (19.0%)
중요사항 미고지	15	-	-	6	7	21	-	20	-	-	69 (31.2%)
가입의사 미확인	1	-	-	1	-	-	-	-	-	-	2 (0.9%)
이용계약 해지 거부제한	-	-	-	3	-	-	4	-	2	-	9 (4.1%)
선택권 제한 (가입 제한 등)	-	-	6	-	1	-	-	-	-	1	8 (3.6%)
기타	2 <sup>1)</sup>	-	35 <sup>2)</sup>	-	28 <sup>3)</sup>	-	-	1 <sup>4)</sup>	-	25 <sup>5)</sup>	91 (41.2%)
<b>합계</b>	<b>24</b>	<b>6</b>	<b>50</b>	<b>16</b>	<b>44</b>	<b>28</b>	<b>4</b>	<b>21</b>	<b>2</b>	<b>26</b>	<b>221</b>

1) 요금연체자 관리, 2) 약관 설명서 미교부, 3) 명의 도용, 허위·과장 광고, 4) 접속경로 변경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5) 허위·과장 광고, 광고 삭제 제한

### 3. 연도별 시정조치 유형별 세부현황

#### □ 개 요

- 조사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총 3,420건의 유형별 내역을 살펴보면,
  - 행위중지 명령이 935건(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746건(21.8%), 과태료 부과 736건(21.5%), 절차개선 217건(6.3%), 과징금 부과 193건(5.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약관변경, 영업정지, 형사고발은 각각 43건(1.3%), 11건(0.3%), 3건(0.1%)으로 나타났으며,
  - 기타 조치로는 협정체결, 원상회복, 성실한 협상의무 명령, 시정명령 이행 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보고, 개선 권고, 기술적 조치 등이 있으며, 이는 총 536건으로 15.7%를 차지하였다.

#### < 4-3-1. 연도별 시정조치 유형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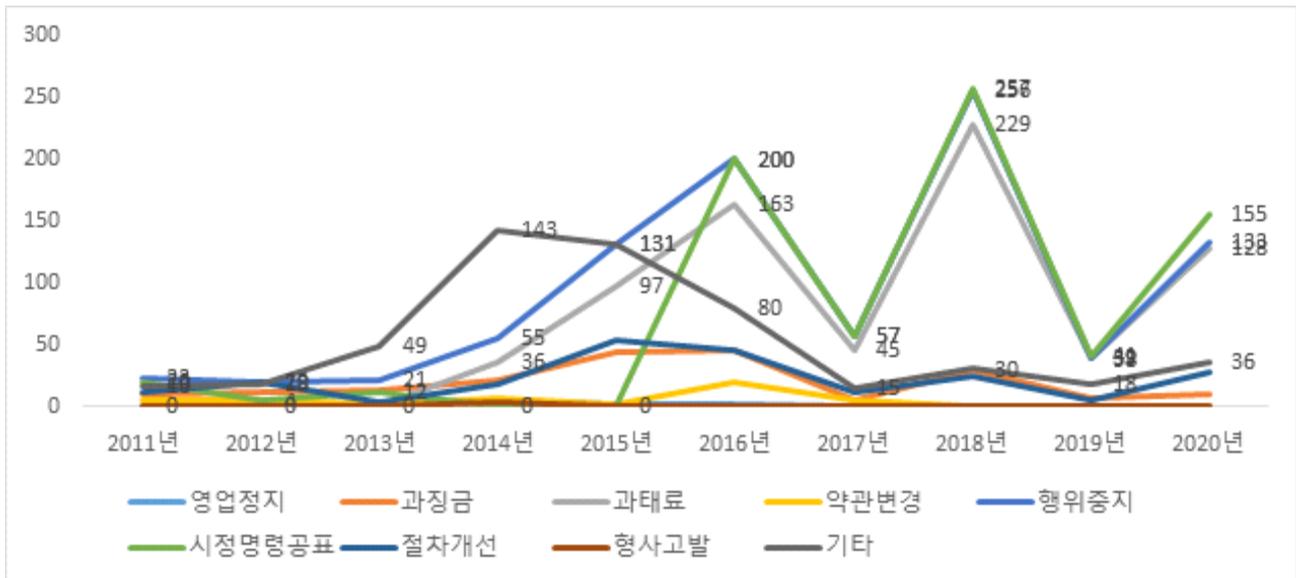
(단위 : 건)

연 도	영업 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 변경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절차 개선	형사 고발	기타 <sup>1)</sup>	계
2011년	-	9	-	5	23	20	11	-	16	84
2012년	3	11	-	4	20	4	20	-	18	80
2013년	1	13	-	2	21	12	3	-	49	101
2014년	5	21	36	7	55	-	17	3	143	287
2015년	1	43	97	1	131	-	53	-	131	457
2016년	1	46	163	20	200	200	46	-	80	756
2017년	-	5	45	4	57	57	11	-	15	194
2018년	-	29	229	-	256	257	24	-	30	825
2019년	-	6	38	-	39	41	4	-	15	143
2020년	-	10	128	-	133	155	28	-	36	490
<b>합 계</b>	<b>11 (0.3%)</b>	<b>193 (5.6%)</b>	<b>736 (21.5%)</b>	<b>43 (1.3%)</b>	<b>935 (27.4%)</b>	<b>746 (21.8%)</b>	<b>217 (6.4%)</b>	<b>3 (0.1%)</b>	<b>533 (15.6%)</b>	<b>3,417</b>

※ 위의 수치는 1개 사업자가 동일 조사사건에서 다수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함

1) 협정체결, 원상회복, 성실한 협상의무 명령,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보고, 개선 권고, 기술적 조치

(단위 : 건)



### □ 연도별 과징금 부과 세부현황

○ 지난 10년간 총 193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약 4,848억8,51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금지행위 유형별로는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총 132건에 3,656억 8,472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75.4%를 차지하였고, 단말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지급 등 위반은 총22건 1,144억3,6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23.6%를 차지하고 있다.

#### < 4-3-2. 연도별 과징금 부과 세부현황 >

(단위 : 건, 천원)

연도	구분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침해	단말기 지원금	기타 <sup>1)</sup>	계
2011년	건수	2	7	-	-	9
	금액	70,050	31,978,000	-	-	32,048,050
2012년	건수	2	9	-	-	11
	금액	1,199,000	12,667,000	-	-	13,866,000
2013년	건수	-	12	-	1	13
	금액	-	180,386,000	-	14,480	180,400,480
2014년	건수	-	11	3	7	21
	금액	-	88,279,860	2,400,000	200,430	90,880,290

연 도	구분	이용약관 위 반	이용자 이익 침해	단말기 지원금	기 타 <sup>1)</sup>	계
2015년	건수	1	35	3	4	43
	금액	137,000	36,675,860	3,402,000	466,420	40,681,280
2016년	건수	17	28	1	-	46
	금액	2,031,800	11,875,400	1,820,000	-	15,727,200
2017년	건수	-	2	3	-	5
	금액	-	904,000	2,124,000	-	3,028,000
2018년	건수	2	21	6	-	29
	금액	158,263	755,600	50,639,000	-	51,552,863
2019년	건수	-	2	3	1	6
	금액	-	396,000	2,851,000	96,500	3,343,500
2020년	건수	1	5	3	1	10
	금액	390,500	1,737,000	51,200,000	30,000	53,357,500
합 계	건수	25	132	22	14	193
	금액	3,986,613 (0.8%)	365,654,720 (75.4%)	114,436,000 (23.6%)	807,830 (0.2%)	484,885,163

1) 기타 : 수익배분 제한, 거래조건 차별

### □ 연도별 과태료 부과 세부현황

- 2011~2013년에는 과태료 부과건이 발생하지 않다가 2014. 10. 1.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말기유통법 위반 및 기술적 조치 미이행 관련 총 736건에 대하여 13억2,90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 4-3-3. 연도별 과태료 부과 세부현황 >

(단위 : 건, 천원)

연 도	건수	금액
2011년	-	-
2012년	-	-
2013년	-	-

연 도	건수	금액
2014년	36	59,500
2015년	97	189,500
2016년	163	292,700
2017년	45	60,000
2018년	229	300,570
2019년	38	126,400
2020년	128	300,400
<b>합 계</b>	<b>736</b>	<b>1,329,070</b>

#### 4. 연도별 사업자별 세부현황

- (유선 분야) SO사업자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KT, SKB, LGU+, SKT 순으로 나타났으며,
- (무선 분야) '14.10.1. 단말기유통법의 시행 이후 737개의 유통점이 위반행위가 있었고, LGU+가 26건, SKT 22건, KT가 21건의 위반행위가 있었다.
- (부가 통신 분야) 웹하드 사업자를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47건 발생하였다.
- (방송 분야) 종합유선방송 역무의 SO사업자가 43건, TV홈쇼핑사업자 7건 IPTV 사업자가 3건, 미디어랩사업자가 2건으로 금지행위 위반이 나타났다.

##### < 4-4-1. 사업자별 금지행위 전체현황 >

(단위 : 건)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시정명령 불이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계
		이용약관 위 반	이용자 이익 침해	협정위반	기 타 <sup>1)</sup>			
유 선 분야	SKT	1	6	-	-	-	-	7
	KT	4	10	-	-	-	-	14
	SKB	2	10	-	-	-	-	12
	LGU+	-	10	-	-	-	-	10
	SO사업자	-	57	-	-	-	-	57
	기타	3	33	-	-	-	-	36
	<b>소 계</b>	<b>10</b>	<b>126</b>	<b>0</b>	<b>0</b>	<b>0</b>	<b>0</b>	<b>136</b>
무 선 분야	SKT	-	10	1	-	1	9	21
	KT	-	10	1	1	1	7	20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시정명령 불이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계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침해	협정위반	기 타 <sup>1)</sup>			
	LGU+	-	12	1	-	1	8	22
	유통점	-	10	-	-	-	727	737
	알뜰폰사업자	-	19	-	-	-	-	19
	<b>소 계</b>	<b>0</b>	<b>61</b>	<b>3</b>	<b>1</b>	<b>3</b>	<b>751</b>	<b>819</b>
부통신분야	부가통신사업자	-	34	-	-	-	-	34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	-	-	13	-	-	13
	<b>소 계</b>	<b>0</b>	<b>34</b>	<b>0</b>	<b>13</b>	<b>0</b>	<b>0</b>	<b>47</b>
방송분야	지상파	-	-	-	-	-	-	0
	SO	29	-	-	14	-	-	43
	IPTV	3	-	-	-	-	-	3
	TV홈쇼핑사	-	-	-	7	-	-	7
	미디어랩	-	-	-	2	-	-	2
	<b>소계</b>	<b>32</b>	<b>0</b>	<b>0</b>	<b>23</b>	<b>0</b>	<b>0</b>	<b>55</b>
<b>합 계</b>	<b>42</b>	<b>221</b>	<b>3</b>	<b>37</b>	<b>3</b>	<b>751</b>	<b>1,057</b>	

1) 기타 : 수익배분 제한,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위반,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 비용의 부당전가, 통신 품질관련 정보의 명확한 고지 등 개선 권고, 거래조건 차별 등

□ 사업자별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현황

< 4-4-2. 연도별 사업자별 금지행위 유형 세부현황 >

(단위 : 건)

연 도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시정명령 불이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계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침해	협정위반	기타 <sup>1)</sup>			
2011 년	유선 분야	KT	-	2	-	-	-	-	2
		SKB	1	1	-	-	-	-	2
		LGU+	-	1	-	-	-	-	1
		온세텔레콤	1	-	-	-	-	-	1
		기타	-	15	-	-	-	-	15
		<b>소 계</b>	<b>2</b>	<b>19</b>	<b>0</b>	<b>0</b>	<b>0</b>	<b>0</b>	<b>21</b>
	무선 분야	SKT	-	2	-	-	-	-	2
		KT	-	2	-	-	-	-	2
		LGU+	-	1	-	-	-	-	1
		<b>소 계</b>	<b>0</b>	<b>5</b>	<b>0</b>	<b>0</b>	<b>0</b>	<b>0</b>	<b>5</b>
<b>합 계</b>	<b>2</b>	<b>24</b>	<b>0</b>	<b>0</b>	<b>0</b>	<b>0</b>	<b>26</b>		
2012 년	유선 분야	KT	2	1	-	-	-	-	3
		SKB	-	1	-	-	-	-	1
		LGU+	-	1	-	-	-	-	1
		<b>소 계</b>	<b>2</b>	<b>3</b>	<b>0</b>	<b>0</b>	<b>0</b>	<b>0</b>	<b>5</b>

연도	구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시정령 불이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계
			이용 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침해	협정 위반	기타 <sup>1)</sup>			
	무선 분야	SKT	-	1	-	-	-	-	1
		KT	-	1	-	-	-	-	1
		LGU+	-	1	-	-	-	-	1
		<b>소 계</b>	<b>0</b>	<b>3</b>	<b>0</b>	<b>0</b>	<b>0</b>	<b>0</b>	<b>3</b>
	방송 분야	SO	13	-	-	-	-	-	13
		<b>소 계</b>	<b>13</b>	<b>0</b>	<b>0</b>	<b>0</b>	<b>0</b>	<b>0</b>	<b>13</b>
	<b>합 계</b>		<b>15</b>	<b>6</b>	<b>0</b>	<b>0</b>	<b>0</b>	<b>0</b>	<b>21</b>
2013 년	유선 분야	SKT	1	-	-	-	-	-	1
		KT	1	1	-	-	-	-	2
		SKB	1	1	-	-	-	-	2
		LGU+	-	2	-	-	-	-	2
		SO	-	34	-	-	-	-	34
		<b>소 계</b>	<b>3</b>	<b>38</b>	<b>0</b>	<b>0</b>	<b>0</b>	<b>0</b>	<b>41</b>
	무선 분야	SKT	-	4	1	-	-	-	5
		KT	-	4	1	-	-	-	5
		LGU+	-	4	1	-	-	-	5
		<b>소 계</b>	<b>0</b>	<b>12</b>	<b>3</b>	<b>0</b>	<b>0</b>	<b>0</b>	<b>15</b>
	방송 분야	SO	-	-	-	1	-	-	1
		<b>소 계</b>	<b>0</b>	<b>0</b>	<b>0</b>	<b>1</b>	<b>0</b>	<b>0</b>	<b>1</b>
	<b>합 계</b>		<b>3</b>	<b>50</b>	<b>3</b>	<b>1</b>	<b>0</b>	<b>0</b>	<b>57</b>
	2014 년	무선 분야	SKT	-	2	-	-	1	1
KT			-	2	-	-	1	1	4
LGU+			-	2	-	-	1	1	4
유통점			-	-	-	-	-	36	36
<b>소 계</b>			<b>0</b>	<b>6</b>	<b>0</b>	<b>0</b>	<b>3</b>	<b>39</b>	<b>48</b>
부가 서비스 분야		특수 서비스 위반	-	10	-	-	-	-	10
		<b>소 계</b>	<b>0</b>	<b>10</b>	<b>0</b>	<b>0</b>	<b>0</b>	<b>0</b>	<b>10</b>
방송 분야		SO	-	-	-	7	-	-	7
		<b>소 계</b>	<b>0</b>	<b>0</b>	<b>0</b>	<b>7</b>	<b>0</b>	<b>0</b>	<b>7</b>
<b>합 계</b>		<b>0</b>	<b>16</b>	<b>0</b>	<b>7</b>	<b>3</b>	<b>39</b>	<b>65</b>	
2015 년	유선 분야	SKT	-	2	-	-	-	-	2
		KT	-	2	-	-	-	-	2
		SKB	-	2	-	-	-	-	2
		LGU+	-	2	-	-	-	-	2
		SO	-	20	-	-	-	-	20
		기타	1	-	-	-	-	-	1
		<b>소 계</b>	<b>1</b>	<b>28</b>	<b>0</b>	<b>0</b>	<b>0</b>	<b>0</b>	<b>29</b>

연도	구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시정명 불이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계
			이용 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침해	협정 위반	기타 <sup>1)</sup>			
	무선 분야	SKT	-	1	-	-	-	2	3
		KT	-	1	-	-	-	1	2
		LGU+	-	4	-	-	-	-	4
		유통점	-	10	-	-	-	97	107
		<b>소 계</b>	<b>0</b>	<b>16</b>	<b>0</b>	<b>0</b>	<b>0</b>	<b>100</b>	<b>116</b>
	방송 분야	SO	-	-	-	3	-	-	3
		미디어랩	-	-	-	1	-	-	1
		<b>소 계</b>	<b>0</b>	<b>0</b>	<b>0</b>	<b>4</b>	<b>0</b>	<b>0</b>	<b>4</b>
	<b>합 계</b>		<b>1</b>	<b>44</b>	<b>0</b>	<b>4</b>	<b>0</b>	<b>100</b>	<b>149</b>
	2016 년	유선 분야	SKT	-	1	-	-	-	-
KT			1	1	-	-	-	-	2
SKB			-	1	-	-	-	-	1
LGU+			-	1	-	-	-	-	1
SO			-	3	-	-	-	-	3
<b>소 계</b>			<b>1</b>	<b>7</b>	<b>0</b>	<b>0</b>	<b>0</b>	<b>0</b>	<b>8</b>
무선 분야		LGU+	-	-	-	-	-	2	2
		유통점	-	-	-	-	-	163	163
		알뜰폰사업자	-	19	-	-	-	-	19
		<b>소 계</b>	<b>0</b>	<b>19</b>	<b>0</b>	<b>0</b>	<b>0</b>	<b>165</b>	<b>184</b>
부가 통신 분야		부가통신	-	2	-	-	-	-	2
		특수유형 부가통신	-	-	-	3	-	-	3
		<b>소 계</b>	<b>0</b>	<b>2</b>	<b>0</b>	<b>3</b>	<b>0</b>	<b>0</b>	<b>5</b>
방송 분야		IPTV	3	-	-	-	-	-	3
		SO	14	-	-	-	-	-	14
		<b>소 계</b>	<b>17</b>	<b>0</b>	<b>0</b>	<b>0</b>	<b>0</b>	<b>0</b>	<b>17</b>
<b>합 계</b>		<b>18</b>	<b>28</b>	<b>0</b>	<b>3</b>	<b>0</b>	<b>165</b>	<b>214</b>	
2017 년		유선 분야	SKT	-	1	-	-	-	-
	KT		-	1	-	-	-	-	1
	SKB		-	1	-	-	-	-	1
	LGU+		-	1	-	-	-	-	1
	<b>소 계</b>		<b>0</b>	<b>4</b>	<b>0</b>	<b>0</b>	<b>0</b>	<b>0</b>	<b>4</b>
	무선 분야	SKT	-	-	-	-	-	1	1
		KT	-	-	-	1	-	1	2
		LGU+	-	-	-	-	-	1	1
		유통점	-	-	-	-	-	44	44
		<b>소 계</b>	<b>0</b>	<b>0</b>	<b>0</b>	<b>1</b>	<b>0</b>	<b>47</b>	<b>48</b>

연 도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시정령 불이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계
			이용 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침해	협정 위반	기타 <sup>1)</sup>			
	방송 분야	TV홈쇼핑사	-	-	-	7	-	-	7
		소계	0	0	0	7	0	0	7
	합 계	0	4	0	8	0	47	59	
2018 년	유선 분야	KT	-	1	-	-	-	-	1
		SKB	-	1	-	-	-	-	1
		LGU+	-	1	-	-	-	-	1
		기타	-	18	-	-	-	-	18
		소계	0	21	0	0	0	0	21
	무선 분야	SKT	-	-	-	-	-	2	2
		KT	-	-	-	-	-	2	2
		LGU+	-	-	-	-	-	2	2
		유통점	-	-	-	-	-	228	228
		소계	0	0	0	0	0	234	234
	부가 통신 분야	특수유형 부가통신	-	-	-	1	-	-	1
		소계	0	0	0	1	0	0	1
	방송 분야	SO	2	-	-	-	-	-	2
소계		2	0	0	0	0	0	2	
합 계	2	21	0	1	0	234	258		
2019 년	유선 분야	SKT	-	1	-	-	-	-	1
		SKB	-	1	-	-	-	-	1
		소계	0	2	0	0	0	0	2
	무선 분야	SKT	-	-	-	-	-	2	2
		KT	-	-	-	-	-	1	1
		LGU+	-	-	-	-	-	1	1
		유통점	-	-	-	-	-	35	35
		소계	0	0	0	0	0	39	39
	부가 통신 분야	특수유형 부가통신	-	-	-	5	-	-	5
		소계	0	0	0	5	0	0	5
	방송 분야	SO	-	-	-	3	-	-	3
		소계	-	0	0	3	0	0	3
	합 계	-	2	-	8	-	39	49	
2020 년	유선 분야	SKT	-	1	-	-	-	-	1
		SKB	-	1	-	-	-	-	1

연도	구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시정명 불이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계	
			이용 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침해	협정 위반	기타 <sup>1)</sup>				
		KT	-	1	-	-	-	-	1	
		LGU+	-	1	-	-	-	-	1	
		기타	1	-	-	-	-	-	1	
		<b>소계</b>	<b>1</b>	<b>4</b>	<b>0</b>	<b>0</b>	<b>0</b>	<b>0</b>	<b>5</b>	
	무선 분야	SKT	-	-	-	-	-	1	1	
		KT	-	-	-	-	-	1	1	
		LGU+	-	-	-	-	-	1	1	
		유통점	-	-	-	-	-	124	124	
		<b>소계</b>	<b>0</b>	<b>0</b>	<b>0</b>	<b>0</b>	<b>0</b>	<b>127</b>	<b>127</b>	
	부가 통신 분야	부가통신	-	22	-	-	-	-	22	
		특수유형 부가통신	-	-	-	4	-	-	4	
		<b>소계</b>	<b>0</b>	<b>22</b>	<b>0</b>	<b>4</b>	<b>0</b>	<b>0</b>	<b>26</b>	
	방송 분야	미디어랩	-	-	-	1	-	-	1	
		<b>소계</b>	<b>-</b>	<b>-</b>	<b>-</b>	<b>1</b>	<b>-</b>	<b>-</b>	<b>1</b>	
	<b>합계</b>			<b>1</b>	<b>26</b>	<b>0</b>	<b>5</b>	<b>0</b>	<b>127</b>	<b>159</b>

1) 기타 : 수익배분 제한,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위반,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 비용의 부당전가, 통신품질관련 정보의 명확한 고지 등 개선 권고, 거래조건 차별 등

< 4-4-3. 연도별 사업자별 금지행위 건수 >

(단위 : 건)

연도	구분	사업자	건수	계
2011년	유선 분야	KT	2	21
		SKB	2	
		LGU+	1	
		온세텔레콤	1	
		기타	15	
	무선 분야	SKT	2	5
		KT	2	
		LGU+	1	
	<b>합계</b>			<b>26</b>

연도	구분	사업자	건수	계
2012년	유선 분야	KT	3	5
		SKB	1	
		LGU+	1	
	무선 분야	SKT	1	3
		KT	1	
		LGU+	1	
방송 분야	SO사업자	13	13	
합 계			21	
2013년	유선 분야	SKT	1	41
		KT	2	
		SKB	2	
		LGU+	2	
		SO사업자	34	
	무선 분야	SKT	5	15
		KT	5	
		LGU+	5	
	방송 분야	SO사업자	1	1
합 계			57	
2014년	무선 분야	SKT	4	48
		KT	4	
		LGU+	4	
		유통점	36	
	부가 통신 분야	웹하드사업자	10	10
	방송 분야	SO사업자	7	7
합 계			65	
2015년	유선 분야	SKT	2	29
		KT	2	
		SKB	2	
		LGU+	2	
		SO사업자	21	
	무선 분야	SKT	3	116
		KT	2	
		LGU+	4	
		유통점	107	
방송 분야	SO사업자 등	4	4	
합 계			149	
2016년	유선 분야	SKT	1	8

연 도	구 분	사업자	건수	계
		KT	2	
		SKB	1	
		LGU+	1	
		SO사업자	3	
	무선 분야	LGU+	2	184
		유통점	163	
		알뜰폰사업자	19	
	부가통신 분야	부가통신사업자	2	5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3	
	방송 분야	SO사업자	14	17
IPTV사업자		3		
<b>합 계</b>			<b>214</b>	
2017년	유선 분야	SKT	1	4
		KT	1	
		SKB	1	
		LGU+	1	
	무선 분야	SKT	1	48
		KT	2	
		LGU+	1	
		유통점	44	
	방송 분야	TV홈쇼핑사	7	7
	<b>합 계</b>			<b>59</b>
2018년	유선 분야	KT	1	21
		SKB	1	
		LGU+	1	
		기타	18	
	무선 분야	SKT	2	234
		KT	2	
		LGU+	2	
		유통점	228	
	부가통신사업분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1	1
	방송 분야	SO	2	2
<b>합 계</b>			<b>258</b>	

연 도	구 분	사업자	건수	계
2019년	유선 분야	SKT	1	2
		SKB	1	
		기타	-	
	무선 분야	SKT	2	39
		KT	1	
		LGU+	1	
		유통점	35	
부가통신사업분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5	5	
방송 분야	SO	3	3	
합 계			49	
2020년	유선 분야	SKT	1	5
		KT	1	
		SKB	1	
		LGU+	1	
		기타	1	
	무선 분야	SKT	1	127
		KT	1	
		LGU+	1	
		유통점	124	
	부가통신사업분야	부가통신사업자	22	26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4	
방송 분야	미디어랩	1	1	
합 계			159	

#### □ 사업자별 시정조치 유형별 세부현황

- 지난 10년간(2011~2020년)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행위중지 명령이 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공표 746건, 과태료 736건, 절차개선 217건 순으로 나타났다.
- 사업자별로 유선분야에서는 SO사업자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선분야에서는 이동통신 유통점이 2,1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분야에서는 SO사업자가 182건으로 가장 많았다.

< 4-4-4. 사업자별 시정조치 유형별 전체현황('11~'20) >

(단위 : 건)

구분	사업자	유형별 시정조치								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변경	행위중지	시정명령공표	절차개선	기타 <sup>1)</sup>	
유 선 분 야	SKT	-	4	-	1	6	5	7	8	31
	KT	-	9	-	4	11	9	11	14	58
	SKB	-	10	-	3	11	10	11	11	56
	LGU+	-	8	-	3	9	7	8	9	44
	SO	-	17	-	-	17	3	17	54	108
	기타	-	21	-	1	35	35	22	21	135
	<b>소 계</b>	-	<b>69</b>	-	<b>12</b>	<b>89</b>	<b>69</b>	<b>76</b>	<b>117</b>	<b>432</b>
무 선 분 야	SKT	4	18	1	-	19	7	8	28	85
	KT	3	19	-	1	20	8	7	29	87
	LGU+	4	22	1	1	23	8	10	30	99
	유통점	-	2	723	-	708	583	10	161	2,187
	일몰폰사업자	-	19	-	19	19	19	19	38	133
	<b>소 계</b>	<b>11</b>	<b>80</b>	<b>725</b>	<b>21</b>	<b>789</b>	<b>625</b>	<b>54</b>	<b>286</b>	<b>2,591</b>
부 통 분 야	부통신사업자	-	3	-	-	2	24	24	27	80
	특수유형 부통신	-	5	10	-	10	-	11	43	79
	<b>소 계</b>	-	<b>8</b>	<b>10</b>	-	<b>12</b>	<b>24</b>	<b>35</b>	<b>70</b>	<b>159</b>
방 송 분 야	SO	-	31	-	10	33	17	40	51	182
	IPTV	-	3	-	-	3	3	3	3	15
	TV홈쇼핑	-	-	1	-	7	7	7	7	29
	미디어랩	-	2	-	-	2	1	2	2	9
	<b>소 계</b>	-	<b>36</b>	<b>1</b>	<b>10</b>	<b>45</b>	<b>28</b>	<b>52</b>	<b>63</b>	<b>235</b>
<b>총 계</b>		<b>11</b>	<b>193</b>	<b>736</b>	<b>43</b>	<b>935</b>	<b>746</b>	<b>217</b>	<b>536</b>	<b>3,417</b>

※ 동일 조사사건으로 1개 사업자가 다수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함

1) 이행계획 제출 및 결과보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기술적 조치

< 4-4-5. 연도별 사업자별 시정조치 세부현황 >

(단위 : 건)

연 도	구분	사업자	유형별 시정조치								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변경	행위중지	시정명령공표	절차개선	기타	
2011년	유 선 분 야	KT	-	2	-	2	1	1	2	4	12
		SKB	-	2	-	1	2	2	2	2	11
		LGU+	-	1	-	1	1	1	1	1	6

연 도	구분	사업자	유 형 별 시 정 조 치									
			영업 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 변경	행위 중지	시장명령 공표	절차 개선	기타	계	
		온세텔레콤	-	1	-	-	1	1	1	1	5	
		기타	-	-	-	-	15	15	-	-	30	
		소 계	0	6	0	4	20	20	6	8	64	
	무 선 분 야	SKT	-	1	-	-	1	-	2	3	7	
		KT	-	1	-	1	1	-	2	3	8	
		LGU+	-	1	-	-	1	-	1	2	5	
		소 계	0	3	0	1	3	0	5	8	20	
	<b>합 계</b>		<b>0</b>	<b>9</b>	<b>0</b>	<b>5</b>	<b>23</b>	<b>20</b>	<b>11</b>	<b>16</b>	<b>84</b>	
	2012년	유 선 분 야	KT	-	2	-	1	2	2	2	2	11
			SKB	-	1	-	-	1	1	1	-	4
LGU+			-	1	-	-	1	1	1	-	4	
소 계			0	4	0	1	4	4	4	2	19	
무 선 분 야		SKT	1	1	-	-	1	-	1	1	5	
		KT	1	1	-	-	1	-	1	1	5	
		LGU+	1	1	-	-	1	-	1	1	5	
		소 계	3	3	0	0	3	0	3	3	15	
방 송 분 야		지상파	-	-	-	-	-	-	-	-	0	
		SO	-	4	-	3	13	-	13	13	46	
		PP	-	-	-	-	-	-	-	-	0	
		소 계	0	4	0	3	13	0	13	13	46	
<b>합 계</b>		<b>3</b>	<b>11</b>	<b>0</b>	<b>4</b>	<b>20</b>	<b>4</b>	<b>20</b>	<b>18</b>	<b>80</b>		
2013년		유 선 분 야	SKT	-	-	-	-	1	1	1	1	4
			KT	-	-	-	-	2	2	1	1	6
			SKB	-	-	-	1	2	2	1	1	7
	LGU+		-	-	-	1	1	1	-	1	4	
	SO		-	-	-	-	-	-	-	34	34	
	소 계		0	0	0	2	6	6	3	38	55	
	무 선 분 야	SKT	-	4	-	-	5	2	-	3	14	
		KT	1	4	-	-	5	2	-	3	15	
		LGU+	-	4	-	-	5	2	-	3	14	
		소 계	1	12	0	0	15	6	0	9	43	
	방 송 분 야	지상파	-	-	-	-	-	-	-	-	0	
		SO	-	1	-	-	-	-	-	2	3	
		PP	-	-	-	-	-	-	-	-	0	
		소 계	0	1	0	0	0	0	0	2	3	
	<b>합 계</b>		<b>1</b>	<b>13</b>	<b>0</b>	<b>2</b>	<b>21</b>	<b>12</b>	<b>3</b>	<b>49</b>	<b>101</b>	
	2014년	무 선 분 야	SKT	2	3	0	-	3	-	-	10	18
KT			1	3	0	-	3	-	-	10	17	

연 도	구분	사업자	유 형 별 시 정 조 치									
			영업 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 변경	행위 중지	시장명령 공표	절차 개선	기타	계	
		LGU+	2	3	0	-	3	-	-	10	18	
		유통점	-	-	36	-	36	-	-	72	144	
		소 계	5	9	36	0	45	0	0	102	197	
	부 통 분 야	특수유형 부가통신	-	5	-	-	10	-	10	30	55	
		소 계	0	5	0	0	10	0	10	30	55	
	방 송 분 야	SO	-	7	-	7	-	-	7	14	35	
		소 계	0	7	0	7	0	0	7	14	35	
	<b>합 계</b>		<b>5</b>	<b>21</b>	<b>36</b>	<b>7</b>	<b>55</b>	<b>0</b>	<b>17</b>	<b>146</b>	<b>287</b>	
	2015년	유 선 분 야	SKT	-	1	-	-	2	-	2	2	7
			KT	-	2	-	-	2	-	2	2	8
SKB			-	2	-	-	2	-	2	2	8	
LGU+			-	2	-	-	2	-	2	2	8	
SO			-	14	-	-	14	-	14	14	56	
기타			-	1	-	1	1	-	2	1	6	
소 계			0	22	0	1	23	0	24	23	93	
무 선 분 야		SKT	1	4	-	-	4	-	4	4	17	
		KT	-	4	-	-	4	-	4	4	16	
		LGU+	-	7	-	-	7	-	7	7	28	
		유통점	-	2	97	-	89	-	10	89	287	
		소 계	0	17	97	0	104	0	25	104	348	
방 송 분 야		SO	-	3	-	-	3	-	3	3	12	
		미디어렙	-	1	-	-	1	-	1	1	4	
		소 계	0	4	0	0	4	0	4	4	16	
<b>합 계</b>		<b>1</b>	<b>43</b>	<b>97</b>	<b>1</b>	<b>131</b>	<b>0</b>	<b>53</b>	<b>131</b>	<b>457</b>		
2016년		유 선 분 야	SKT	-	1	-	-	1	1	1	2	6
			KT	-	1	-	-	1	1	1	2	6
			LGU+	-	1	-	-	1	1	1	2	6
	SKB		-	1	-	-	1	1	1	2	6	
	SO사업자		-	3	-	-	3	3	3	6	18	
	소 계		0	7	0	0	7	7	7	14	42	
	무 선 분 야	SKT	-	-	-	-	-	-	-	-	0	
		KT	-	1	-	-	1	1	-	2	5	
		LGU+	1	1	1	1	1	1	1	2	9	

연 도	구분	사업자	유 형 별 시 정 조 치									
			영업 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 변경	행위 중지	시장명령 공표	절차 개선	기타	계	
		유통점	-	-	159	-	153	153	-	-	465	
		알뜰폰사업자	-	19	-	19	19	19	19	38	133	
		소 계	1	21	160	20	174	174	20	42	612	
	부 가 통 신 분 야	부가통신	-	2	-	-	2	2	2	4	12	
		특수유형 부가통신	-	-	3	-	-	-	-	3	6	
		소 계	0	2	3	0	2	2	2	7	18	
	방 송 분 야	IPTV	-	3	-	-	3	3	3	3	15	
		SO	-	13	-	-	14	14	14	14	69	
		소 계	0	16	0	0	17	17	17	17	84	
	<b>합 계</b>			<b>1</b>	<b>46</b>	<b>163</b>	<b>20</b>	<b>200</b>	<b>200</b>	<b>46</b>	<b>80</b>	<b>756</b>
	2017년	유 선 분 야	SKT	-	-	-	1	1	1	1	1	5
			KT	-	-	-	1	1	1	1	1	5
			LGU+	-	1	-	1	1	1	1	1	6
			SKB	-	1	-	1	1	1	1	1	6
소 계			<b>0</b>	<b>2</b>	<b>0</b>	<b>4</b>	<b>4</b>	<b>4</b>	<b>4</b>	<b>4</b>	<b>22</b>	
무 선 분 야		SKT	-	1	-	-	1	1	-	1	4	
		KT	-	1	-	-	1	1	-	2	5	
		LGU+	-	1	-	-	1	1	-	1	4	
		유통점	-	-	44	-	43	43	-	-	130	
		소 계	<b>0</b>	<b>3</b>	<b>44</b>	<b>0</b>	<b>46</b>	<b>46</b>	<b>0</b>	<b>4</b>	<b>143</b>	
방 송 분 야		TV홈쇼핑사	-	-	1	-	7	7	7	7	29	
		소 계	<b>0</b>	<b>0</b>	<b>1</b>	<b>0</b>	<b>7</b>	<b>7</b>	<b>7</b>	<b>7</b>	<b>29</b>	
<b>합 계</b>			<b>0</b>	<b>5</b>	<b>45</b>	<b>4</b>	<b>57</b>	<b>57</b>	<b>11</b>	<b>15</b>	<b>194</b>	
2018년		유 선 분 야	SKT	-	-	-	-	-	-	-	-	-
	KT		-	1	-	-	1	1	1	1	5	
	LGU+		-	1	-	-	1	1	1	1	5	
	SKB		-	1	-	-	1	1	1	1	5	
	기타		-	18	-	-	17	18	18	18	89	
	소 계		<b>0</b>	<b>21</b>	<b>0</b>	<b>0</b>	<b>20</b>	<b>21</b>	<b>21</b>	<b>21</b>	<b>104</b>	
	무 선 분 야	SKT	-	2	-	-	2	2	-	2	8	
		KT	-	2	-	-	2	2	-	2	8	
		LGU+	-	2	-	-	2	2	-	2	8	
		유통점	-	-	228	-	228	228	-	-	684	
		소 계	<b>0</b>	<b>6</b>	<b>228</b>	<b>0</b>	<b>234</b>	<b>234</b>	<b>0</b>	<b>6</b>	<b>708</b>	
	부 가 통 신	특수유형 부가통신	-	-	1	-	-	-	1	1	3	
		소 계	<b>0</b>	<b>0</b>	<b>1</b>	<b>0</b>	<b>0</b>	<b>0</b>	<b>1</b>	<b>1</b>	<b>3</b>	
	방 송	SO	-	2	-	-	2	2	2	2	10	

연 도	구분	사업자	유 형 별 시 정 조 치								
			영업 정지	과징금	과태료	약관 변경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절차 개선	기타	계
	분 야	소계	0	2	0	0	2	2	2	2	10
		합 계	0	29	229	0	256	257	24	30	825
2019년	유 선 분 야	SKT	-	1	-	-	-	1	1	1	4
		KT	-	-	-	-	-	-	-	-	0
		LGU+	-	-	-	-	-	-	-	-	0
		SKB	-	1	-	-	-	1	1	1	4
		기타	-	-	-	-	-	-	-	-	0
		소 계	0	2	0	0	0	2	2	2	8
	무 선 분 야	SKT	-	1	1	-	1	1	1	3	8
		KT	-	1	-	-	1	1	-	1	4
		LGU+	-	1	-	-	1	1	-	1	4
		유통점	-	-	35	-	35	35	-	-	105
		소 계	0	3	36	0	38	38	1	5	121
	부가 통신	특수유형 부가통신	-	-	2	-	-	-	-	5	7
		소 계	-	-	2	-	-	-	-	5	7
	방 송 분 야	SO	-	1	-	-	1	1	1	3	7
소 계		-	1	-	-	1	1	1	3	7	
		합 계	0	6	38	0	39	41	4	15	143
2020년	유 선 분 야	SKT	-	1	-	-	1	1	1	1	5
		KT	-	1	-	-	1	1	1	1	5
		LGU+	-	1	-	-	1	1	1	1	5
		SKB	-	1	-	-	1	1	1	1	5
		기타	-	1	-	-	1	1	1	1	5
		소 계	0	5	0	0	5	5	5	5	25
	무 선 분 야	SKT	-	1	-	-	1	1	-	1	4
		KT	-	1	-	-	1	1	-	1	4
		LGU+	-	1	-	-	1	1	-	1	4
		유통점	-	-	124	-	124	124	-	-	372
		소 계	0	3	124	0	127	127	0	3	384
	부가 통신	부가통신	-	1	-	-	-	22	22	23	68
		특수유형 부가통신	-	-	4	-	-	-	-	4	8
		소 계	0	1	4	0	0	22	22	27	76
	방 송 분 야	미디어랩	-	1	-	-	1	1	1	1	5
		소 계	0	1	0	0	1	1	1	1	5
			합 계	0	10	128	0	133	155	28	36

※ 동일 조사사건으로 1개 사업자에 다수의 시정조치 명령을 포함함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세부현황

- 지난 10년간(2011~2020년) 금지행위 등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내역을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 (유선 분야)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 중 KT가 179억6,31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 (무선 분야)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SKT가 2,385억2,130만원으로 과징금이 가장 많았다.
  - (방송 분야)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SO사업자에게 26억8,359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4-4-6.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전체현황('11~'20) >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자	과징금			계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저해 <sup>1)</sup>	기타 <sup>2)</sup>	
유 선 분 야	SKT	-	2,497,000	-	2,497,000
	KT	609,900	17,353,200	-	17,963,100
	SKB	30,130	6,736,600	-	6,766,730
	LGU+	-	8,452,100	-	8,452,100
	SO	-	1,365,400	-	1,365,400
	온세텔레콤	39,920	-	-	39,920
	기타	390,500	651,700	-	1,042,200
	<b>소 계</b>	<b>1,070,450</b>	<b>37,056,000</b>	-	<b>38,126,450</b>
무 선 분 야	SKT	-	238,521,300	-	238,521,300
	KT	-	105,765,200	-	105,765,200
	LGU+	-	96,644,860	-	96,644,860
	알뜰폰사업자	-	834,500	-	834,500
	<b>소 계</b>	-	<b>441,765,860</b>	-	<b>441,765,860</b>
부 가 통 신 분 야	부가통신사업자	-	1,268,860	-	1,268,860
	<b>소 계</b>	-	<b>1,268,860</b>	-	<b>1,268,860</b>
방 송 분 야	SO	2,145,763	-	537,830	2,683,593
	IPTV	770,400	-	-	770,400
	미디어랩	-	-	270,000	270,000
	<b>소 계</b>	<b>2,916,163</b>	-	<b>807,830</b>	<b>3,723,993</b>
<b>총 계</b>	<b>3,986,613</b>	<b>480,090,720</b>	<b>807,830</b>	<b>484,885,163</b>	

1)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 부과 포함

2) 기타 : 수익배분 제한,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위반, 거래조건 차별 등

< 4-4-7. 연도별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현황 >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계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침해 <sup>1)</sup>	기타 <sup>2)</sup>	
2011년	선야 관련	KT	-	13,608,000	-	13,608,000
		SKB	30,130	3,197,000	-	3,227,130
		LGU+	-	1,503,000	-	1,503,000
		온세텔레콤	39,920	-	-	39,920
		<b>소 계</b>	<b>70,050</b>	<b>18,308,000</b>	<b>0</b>	<b>18,378,050</b>
	선야 관련	SKT	-	6,860,000	-	6,860,000
		KT	-	3,660,000	-	3,660,000
		LGU+	-	3,150,000	-	3,150,000
		<b>소 계</b>	<b>0</b>	<b>13,670,000</b>	<b>0</b>	<b>13,670,000</b>
	<b>합 계</b>		<b>70,050</b>	<b>31,978,000</b>	<b>0</b>	<b>32,048,050</b>
2012년	선야 관련	KT	578,000	214,000	-	792,000
		SKB	-	253,000	-	253,000
		LGU+	-	310,000	-	310,000
		<b>소 계</b>	<b>578,000</b>	<b>777,000</b>	<b>0</b>	<b>1,355,000</b>
	선야 관련	SKT	-	6,890,000	-	6,890,000
		KT	-	2,850,000	-	2,850,000
		LGU+	-	2,150,000	-	2,150,000
		<b>소 계</b>	<b>0</b>	<b>11,890,000</b>	<b>0</b>	<b>11,890,000</b>
	송야 관련	SO	621,000	-	-	621,000
		<b>소 계</b>	<b>621,000</b>	<b>0</b>	<b>0</b>	<b>621,000</b>
<b>합 계</b>		<b>1,199,000</b>	<b>12,667,000</b>	<b>0</b>	<b>13,866,000</b>	
2013년	선야 관련	SKT	-	96,276,000	-	96,276,000
		KT	-	52,070,000	-	52,070,000
		LGU+	-	32,040,000	-	32,040,000
		<b>소 계</b>	<b>0</b>	<b>180,386,000</b>	<b>0</b>	<b>180,386,000</b>
	송야 관련	지상파	-	-	-	0
		SO	-	-	14,480	14,480
		PP	-	-	-	0
		<b>소 계</b>	<b>0</b>	<b>0</b>	<b>14,480</b>	<b>14,480</b>
	<b>합 계</b>		<b>0</b>	<b>180,386,000</b>	<b>14,480</b>	<b>180,400,480</b>
	2014년	선야 관련	SKT	-	54,550,000	-
KT			-	17,110,000	-	17,110,000
LGU+			-	18,960,000	-	18,960,000
<b>소 계</b>			<b>0</b>	<b>90,620,000</b>	<b>0</b>	<b>90,620,000</b>
가신야 관련		투수용현	-	59,860	-	59,860
		<b>소 계</b>	<b>0</b>	<b>59,860</b>	<b>0</b>	<b>59,860</b>
송야 관련		SO	-	-	200,430	200,430
		<b>소 계</b>	<b>0</b>	<b>0</b>	<b>200,430</b>	<b>200,430</b>
<b>합 계</b>		<b>0</b>	<b>90,679,860</b>	<b>200,430</b>	<b>90,880,290</b>	

연도	구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계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침해 <sup>1)</sup>	기타 <sup>2)</sup>	
2015년	이윤 부분 선야	SKT	-	910,000	-	910,000
		KT	-	910,000	-	910,000
		SKB	-	280,000	-	280,000
		LGU+	-	910,000	-	910,000
		SO	-	1,336,500	-	1,336,500
		<b>소계</b>	<b>0</b>	<b>4,346,500</b>	<b>0</b>	<b>4,346,500</b>
	무 부분 선야	SKT	-	28,526,000	-	28,526,000
		KT	-	922,000	-	922,000
		LGU+	-	6,283,360	-	6,283,360
		<b>소계</b>	<b>0</b>	<b>35,731,360</b>	<b>0</b>	<b>35,731,360</b>
	이익 부분 송야	SO	137,000	-	226,420	363,420
		미디어랩	-	-	240,000	240,000
		<b>소계</b>	<b>137,000</b>	<b>0</b>	<b>466,420</b>	<b>603,420</b>
<b>합계</b>			<b>137,000</b>	<b>40,077,860</b>	<b>466,420</b>	<b>40,681,280</b>
2016년	이윤 부분 선야	SKT	-	1,280,000	-	1,280,000
		KT	31,900	2,330,000	-	2,361,900
		LGU+	-	4,590,000	-	4,590,000
		SKB	-	2,470,000	-	2,470,000
		SO	-	28,900	-	28,900
		<b>소계</b>	<b>31,900</b>	<b>10,698,900</b>	<b>0</b>	<b>10,730,800</b>
	무 부분 선야	LGU+	-	1,820,000	-	1,820,000
		알뜰폰사업자	-	834,500	-	834,500
		<b>소계</b>	<b>0</b>	<b>2,654,500</b>	<b>0</b>	<b>2,654,500</b>
	이익 부분 가 신 야	부가통신사업자	-	342,000	-	342,000
		<b>소계</b>	<b>0</b>	<b>342,000</b>	<b>0</b>	<b>342,000</b>
	이익 부분 송 야	SO	1,229,500	-	-	1,229,500
		IPTV	770,400	-	-	770,400
		<b>소계</b>	<b>1,999,900</b>	<b>0</b>	<b>0</b>	<b>1,999,900</b>
	<b>합계</b>			<b>2,031,800</b>	<b>13,695,400</b>	<b>0</b>
2017년	이윤 부분 선야	LGU+	-	800,000	-	800,000
		SKB	-	104,000	-	104,000
		<b>소계</b>	<b>-</b>	<b>904,000</b>	<b>0</b>	<b>904,000</b>
	무 부분 선야	SKT	-	794,000	-	794,000
		KT	-	361,000	-	361,000
		LGU+	-	969,000	-	969,000
		<b>소계</b>	<b>0</b>	<b>2,124,000</b>	<b>0</b>	<b>2,124,000</b>
	<b>합계</b>			<b>0</b>	<b>3,028,000</b>	<b>0</b>
2018년	이윤 부분 선야	KT	-	40,200	-	40,200
		LGU+	-	60,100	-	60,100
		SKB	-	3,600	-	3,600
		기타	-	661,700	-	661,700
		<b>소계</b>	<b>0</b>	<b>755,600</b>	<b>0</b>	<b>755,600</b>

연 도	구 분	사업자	금지행위 유형별			계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 침해 <sup>1)</sup>	기타 <sup>2)</sup>	
	무선 부분	SKT	-	21,350,300	-	21,350,300
		KT	-	12,541,200	-	12,541,200
		LGU+	-	16,747,500	-	16,747,500
		<b>소 계</b>	<b>0</b>	<b>50,639,000</b>	<b>0</b>	<b>50,639,000</b>
	방송 부분	SO	158,263	-	-	158,263
		<b>소 계</b>	<b>158,263</b>	<b>0</b>	<b>0</b>	<b>158,263</b>
	<b>합 계</b>		<b>158,263</b>	<b>51,394,600</b>	<b>0</b>	<b>51,552,863</b>
2019년	무선 부분	SKT	-	231,000	-	231,000
		SKB	-	165,000	-	165,000
		<b>소 계</b>	<b>0</b>	<b>396,000</b>	<b>0</b>	<b>396,000</b>
	무선 부분	SKT	-	975,000	-	975,000
		KT	-	851,000	-	851,000
		LGU+	-	1,025,000	-	1,025,000
		<b>소 계</b>	<b>0</b>	<b>2,851,000</b>	<b>0</b>	<b>2,851,000</b>
	방송 부분	SO	-	-	96,500	96,500
		<b>소 계</b>	<b>0</b>	<b>0</b>	<b>96,500</b>	<b>96,500</b>
	<b>합 계</b>		<b>0</b>	<b>3,247,000</b>	<b>96,500</b>	<b>3,343,500</b>
2020년	무선 부분	SKT	-	76,000	-	76,000
		SKB	-	251,000	-	251,000
		KT	-	264,000	-	264,000
		LGU+	-	279,000	-	279,000
		기타	390,500	-	-	390,500
		<b>소 계</b>	<b>390,500</b>	<b>870,000</b>	-	<b>1,260,500</b>
	무선 부분	SKT	-	22,300,000	-	22,300,000
		KT	-	15,400,000	-	15,400,000
		LGU+	-	13,500,000	-	13,500,000
		<b>소 계</b>	-	<b>51,200,000</b>	-	<b>51,200,000</b>
	부통신 부분	부가통신사업자	-	867,000	-	867,000
		<b>소 계</b>	-	<b>867,000</b>	-	<b>867,000</b>
	방송 부분	미디어랩	-	-	30,000	30,000
		<b>소 계</b>	-	-	<b>30,000</b>	<b>30,000</b>
	<b>합 계</b>		<b>390,500</b>	<b>52,937,000</b>	<b>30,000</b>	<b>53,357,500</b>

1) 단말기유통법을 위반 차별적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 포함, 2)수익배분 제한,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위반 등

## □ 사업자별 과태료 부과 세부현황

## &lt; 4-4-8. 연도별 사업자별 과태료 부과 세부현황 &gt;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자	과태료			합 계	
		단말기유통법 위반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	거짓자료의 제출		
2014년	무 선	이동통신 유통점(36개사)	59,500	-	-	59,500
		소 계	<b>59,500</b>	-	-	<b>59,500</b>
	합 계	<b>59,500</b>	<b>0</b>	<b>0</b>	<b>59,500</b>	
2015년	무 선	SKT(2건)	10,000	-	-	10,000
		이동통신 유통점(97개사)	193,000	-	-	179,500
	소 계	<b>203,000</b>	-	-	<b>189,500</b>	
합 계	<b>203,000</b>	<b>0</b>	<b>0</b>	<b>203,000</b>		
2016년	무 선	LGU+	22,500	-	-	<b>22,500</b>
		이동통신 유통점(159개사)	255,500	-	-	<b>255,500</b>
		소 계	<b>278,000</b>	<b>0</b>	<b>0</b>	<b>278,000</b>
	부 통 가 신	특수유형부가통신(3개사)	-	14,700	-	14,700
		소 계	<b>0</b>	<b>14,700</b>	<b>0</b>	<b>14,700</b>
합 계	<b>278,000</b>	<b>14,700</b>	<b>0</b>	<b>292,700</b>		
2017년	무 선	이동통신 유통점(44개사)	50,000	-	-	50,000
		소 계	<b>50,000</b>	<b>0</b>	<b>0</b>	<b>50,000</b>
	방 송	TV홈쇼핑사(1개사)	-	-	10,000	10,000
		소 계	<b>0</b>	<b>0</b>	<b>10,000</b>	<b>10,000</b>
합 계	<b>50,000</b>	<b>0</b>	<b>10,000</b>	<b>60,000</b>		
2018년	무 선	이동통신 유통점(228개사)	290,700	-	-	286,700
		소 계	<b>290,700</b>	<b>0</b>	<b>0</b>	<b>286,700</b>
	부 통 가 신	특수유형부가통신(1개사)	-	10,500	-	10,500
		소 계	<b>0</b>	<b>10,500</b>	<b>0</b>	<b>10,500</b>
합 계	<b>290,700</b>	<b>10,500</b>	<b>0</b>	<b>301,200</b>		
2019년	무 선	이동통신사 및 유통점(36개사)	105,400	-	-	105,400
		소 계	<b>105,400</b>	<b>0</b>	<b>0</b>	<b>105,400</b>
	부 통 가 신	특수유형부가통신(2개사)	-	21,000	-	21,000
		소 계	<b>0</b>	<b>21,000</b>	<b>0</b>	<b>21,000</b>
합 계	<b>105,400</b>	<b>21,000</b>	<b>0</b>	<b>126,400</b>		
2020년	무 선	이동통신 유통점(124개사)	272,400	-	-	272,400
		소 계	<b>272,400</b>	-	-	<b>272,400</b>
	부 통 가 신	특수유형부가통신(4개사)	-	28,000	-	28,000
		소 계	-	<b>28,000</b>	-	<b>28,000</b>
합 계	<b>272,400</b>	<b>28,000</b>	<b>0</b>	<b>300,400</b>		



## Ⅱ. 조사사건 심의·의결서

- 1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1.22)
- 2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1.29)
- 3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6.4)
- 4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7.8)
- 5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9.9)
- 6 케이티파워텔(주)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10.7)
- 7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11.24)



## 1.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1.22)

### 1. 개 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 1. 22.(수)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구글 LLC에 대해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명하였다.

아울러,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며 결제 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방통위가 구글LLC에 대하여 '16.12월부터 '18.12월 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이다.

방통위는 구글LLC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6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한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별표4]5-나-4) 위반)에 대해 4억3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용요금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별표4]5의2-나 위반)에 대해서는 4억3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총 8억6천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 3개월 이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 1개월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이행완료 후 10일 이내 이행결과 보고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업무 처리 절차 개선명령 내용 >

- 유료서비스 제공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잔여기간 이용요금은 적정 수준의 위약금 외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것
- 서비스 가입 화면을 통해 이용요금, 취소 및 환불 정책, 서비스 철회 기간·방법 등 중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할 것

한편,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무료체험 가입을 명시적인 동의 없이 유료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 대해서는 △ 유료서비스 가입 시의 이용조건, 유료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등에 대해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 유료결제 전에 결제 금액·시기·방법 등 내역을 이용자가 선택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가입절차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시정권고를 하였다.

방통위는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하였고,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의 범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관련 사례

### 1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1.22)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04-005호, 제2020-15-088호

안 건 명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Google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의결연월일 2020.1.22.

#### 주 문

1.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역무의 중도해지를 신청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이때 기 납부한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의 위약금을 제외한 후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환급한다.

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 화면을 통해 이용요금, 해지 및 환불 정책, 약정 철회 기간·방법 등 중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 1회 공표하고 '유튜브' 서비스의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 첫 화면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나. 시정조치 이행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4. 피심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가.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 시 유료서비스 이용 조건, 전자적 대금결제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명시적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때 이용자가 직접 동의여부를 선택하기 전에는 유료서비스 이용동의를 간주하거나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나.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체험 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명확하게 고지한다.

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요금의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결제금액·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으로 고지하고 이 사실을 가입단계에서 이용자에게 미리 알린다.

5.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86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1. 조사 배경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며 결제 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전자신문, 2018.11.14., '유튜브에서 나도 모르게 8,690원이 결제됐다') 등에 따라 본 건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기간 동안 한국소비자연맹은 이용자가 온라인동영상제공(OTT) 서비스 해지 관련 피해 현황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바 있다<sup>1)</sup>.

본 건 사실조사의 대상은 2016년 12월 6일부터 2019년 1월 31일 기간 동안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 Google LLC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이다.

1) 「OTT 자동결제 관련 제도개선 요청」(19.4.16.)

## 2. 기초 사실

### 가. 피심인의 지위

피심인 Google LLC<sup>2)</sup>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설립된 회사로 Android, Chrome, Gmail, Google Maps, Google Play, Google Search 및 본 건 유튜브 (YouTube)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전세계에 공급하는 글로벌 IT 기업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18.11.2)된 부가통신사업자이다.

### 나. 관련 시장 현황

스마트폰 어플 사용자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이 2018년 11월 안드로이드 앱 총 사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피심인의 '유튜브'가 한국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PC 및 모바일 시장조사 기관인 '랭키닷컴'의 2018년 12월말 조사 결과 '유튜브'는 웹사이트 기준 일평균 방문자수 3,199,771명 및 일평균 페이지뷰 19,860,037건으로 네이버, 구글(검색), 다음 등에 이어 한국에서 6번째로 높은 사이트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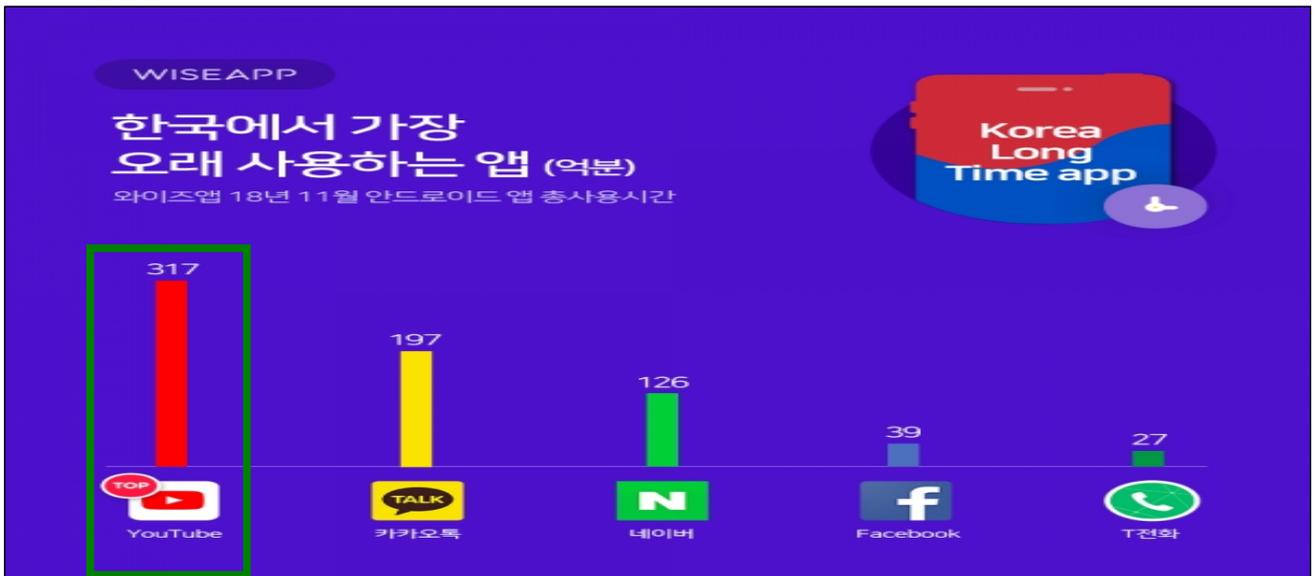
---

2) 2017년 9월 30일 Google Inc.에서 Google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전환

<그림 1>

주요 앱 이용시간

(‘18. 11월 기준)



※ 출처 : 와이즈앱(표본 : 만 10세 이상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23,000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9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결과3)’에 따르면, 평소 시청 경험이 있는 온라인동영상제공(OTT) 서비스 중 피싱인의 ‘유튜브’가 47.8%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이용률

(N=6,375명, 단위 %, 조사기간 : 2019.6.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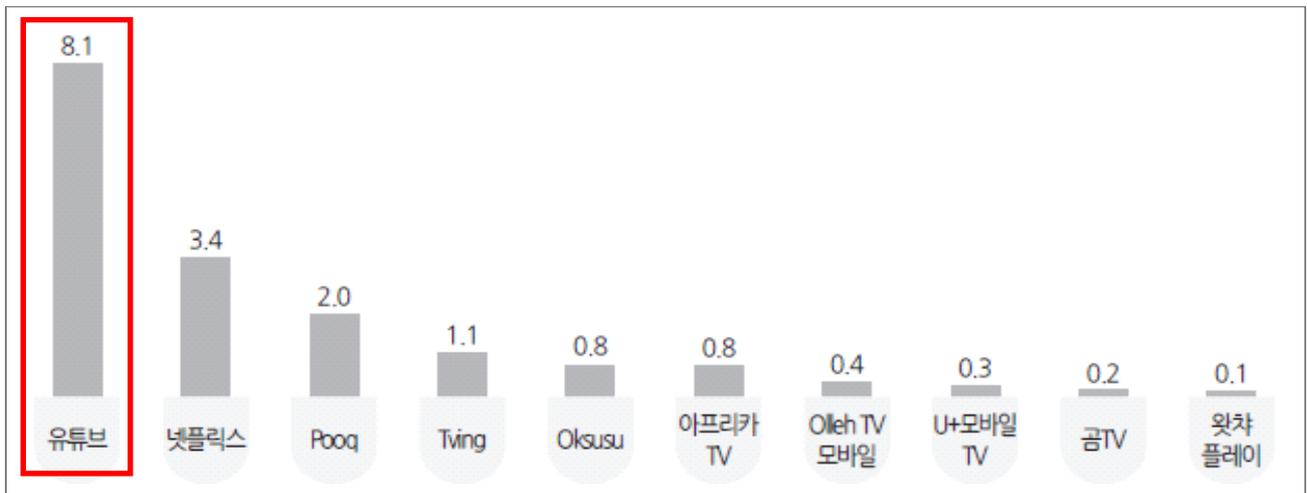


※ 출처 : 2019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KISDI, '19.12월)

또한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이용자 중에 정액제 또는 유료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유튜브(8.1%)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넷플릭스(3.4%)와 Pooq(2.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유료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이용률

(N= OTT 이용자 3,316명, 단위 %, 조사기간 : 2019.6.3~8.9)



※ 출처 : 2019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KISDI, '19.12월)

### 다. 일반현황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이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무료 서비스인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여, ‘광고 생략’ · ‘백그라운드 재생’ · ‘오프라인 재생기능’ 등 이용자 편의 기능이 추가된 부가적인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로서, ‘유튜브 레드(YouTube Red)’라는 명칭으로 2015년 10월 미국에서 최초로 출시되었고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6일에 역무를 개시하였다. 피심인은 2018년 5월 22일에 ‘유튜브 레드’의 상품명을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변경하였으며 2019년 1월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28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표 1>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주요기능

구 분	기 능
광고생략	○ 프리롤·미드롤 동영상 광고, 배너광고, 검색광고 등 광고 없이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기능
오프라인 재생	○ 동영상 스트리밍 재생에 따른 데이터 소모를 줄이기 위해 동영상을 휴대 기기 등에 오프라인으로 저장 후 재생하는 기능 ※ 이용자 단말기에 동영상이 저장되나 오직 유튜브 앱(라이브러리탭)을 통해서만 해당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고, 단말기에 저장된 콘텐츠는 30일 이내 또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해지 시 삭제될 뿐만 아니라 저장된 콘텐츠를 PC 또는 다른 단말기로 이동시킬 수 없음
백그라운드 재생	○ 다른 앱을 사용하거나, 휴대기기의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음악,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
유튜브 오리지널	○ 오리지널 영화와 시리즈 재생

피심인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처음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구글 계정을 기준으로 이용자당 1회의 무료체험 기간(1개월 또는 그 이상)을 제공한 후 이용자가 해지하기 전까지 매월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과금주체 Google Ireland Ltd.)하고 있다.

<표 2>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료 및 결제수단

	웹사이트	모바일앱	
		안드로이드	iOS
이용요금(부가세 포함)	월 8,690원	월 8,690원	월 11,500원
결제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신과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유튜브 프리미엄' 출시 이후 '1개월 무료체험' 판촉을 통해 가입한 전체 이용자는 000000이며, 이 중 해지자를 제외한 '19년 1월말 기준 국내 가입자는 000000이다.

<표 3> 최근 3년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국내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2016년 12월	2017년	2018년	2019년 1월	계
무료체험자(a)					
(유료전환자)					
재가입자(b)					
해지자(c)					
이용자(a+b-c)	-	-	-	-	

※ 출처 : Google LLC 제출자료

<표 4> 2019년1월 기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유료 전환	무료 체험	계
국내 가입자 (‘19.1.31기준)			

※ 출처 : Google LLC 제출자료

2018년도 기준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와 관련된 국내 매출액은 4,096만 달러(450억 7,075만원)이며 최근 3년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국내 매출액 평균은 2,506만 달러(277억 4,149만원)이다.

<표 5>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단위 : 미화 달러)

	2016. 12월	2017년	2018년	평 균
유튜브 프리미엄 국내매출액				

※ 출처 : 피싱인 제출자료 , ‘17.9월 이전의 경우 VOD 등 다른 유튜브 유료 서비스 수익 포함

라. 민원 처리 현황

피심인은 환불 등 서비스 관련 민원을 채팅, 콜백전화, 웹챗, 이메일 (ytios-support@google.com)을 통해 신청 시 회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이용자의 콜백전화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외부 협력업체에서 35명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국내에 출시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환불 관련한 누적 민원 건수는 000000으로 파악되었다.

<표 6>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국내 민원 현황

(단위 : 건, 미화 달러, 한화 원)

구 분		2016	2017	2018	계
접 수					
환 불	건 수				
	금 액 (원화 환산)				

※ 출처 : Google LLC 제출자료

3. 위법성 판단

가.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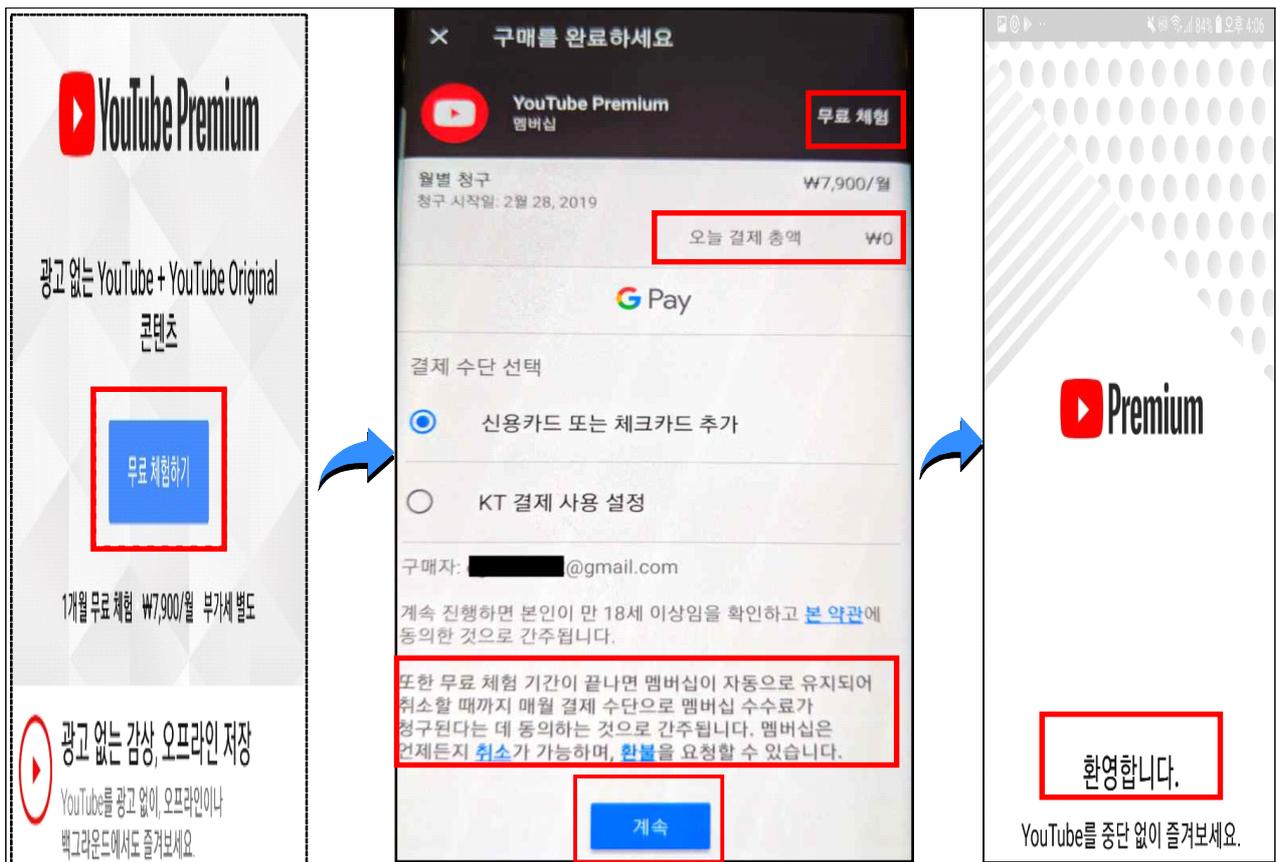
1) 인정사실

피심인은 이용자가 유튜브 서비스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나 유튜브 무료서비스 이용 도중에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무료체험’을 유도하는 팝업광고를 빈번하게 화면에 표시하였다.

피심인은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이용자가 1개월 무료 체험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에서 '구매를 완료하세요'라는 설명 하단에 '월별 청구금액'을 안내하고 이용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결제 화면 상단에는 '무료체험', '오늘 결제 총액 ₩0'라고 적시하였고 이용자가 화면 하단의 '계속' 또는 '체험하기'를 클릭하면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면서 유료 계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완료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가입절차 화면을 통해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무료 체험기간이 끝나면 멤버십이 자동으로 유지되어 취소할 때까지 매월 결제수단으로 멤버십 수수료가 청구된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작은 글씨로 고지하였을 뿐, 무료체험 가입 절차와 별도로 유료서비스 이용 동의 여부를 확인 하는 절차(예, 마우스 클릭)를 마련하지 않았다.

<증적자료1>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계약 체결 화면 (안드로이드 OS 버전)



이에 더하여 피심인은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무료체험 기간이 종료된 후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는 경우에 ‘무료 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유료전환을 통지한다’는 사실이나, ‘이용자가 통보 받기를 희망하는 수단(문자 혹은 이메일 주소)’을 지정받거나 확인받는 절차 없이 구글 계정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구글 이메일 주소를 통지 수단으로 정하여<sup>4)</sup> 무료체험 종료 3일전에 구독료가 매월 자동 결제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였다.

피심인은 동 통지과정에서 결제금액, 결제시기 및 결제방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자가 별도로 ‘계정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여야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증적자료2>                      무료체험 종료 3일전 유료 전환 통보 이메일



4) Gmail이 아닌 다른 메일로 통보 받으려면 구글 계정을 통해 별도로 수정하여야 함

## 2) 관련법령 및 법리

### 가)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① [별표 4]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나.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나) 법리

사업자간 경쟁심화 및 광고·마케팅 기술의 발달로 이용자는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구매하지 않을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되거나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온라인을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서로 비대면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을 하는데 기인한 착오·명의도용·오타나 클릭 실수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계약이 이루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4]제5호나.1)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3) 위 제3.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 가) 유료 가입 동의를 간주한 행위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인터넷 사이트의 약관을 꼼꼼하게 모두 읽어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서는 고객들의 착오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결제가 유료임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그 결제금액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시켜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결제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sup>5)</sup>

특히 무료체험 이벤트를 통해 모객행위를 하여 콘텐츠의 무료이용기간 경과 후 유료계약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유료전환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고<sup>6)</sup>, 그리고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자동결제 유료회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자동결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sup>7)</sup> 다수의 이용자들은 이러한 합당한 절차를 기대했을 것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유료(월 8,690원 또는 월 11,500원) 이므로 서비스 품질이 서비스 가격에 합당한 수준인지를 이용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무료 체험기간을 둘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서비스의 특성과 관련 시장의 경쟁여건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피심인은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① 광고 팝업창 및 서비스 안내화면 등을 통하여 ‘1개월 무료체험’, ‘오늘 결제 총액 ₩0’ 등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② 이용자들이 ‘무료’라는 문구에 현혹되어 유료회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9.4. 선고 2006가합106335 판결 참조

6)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0호)제24조(계약의 자동갱신) ① 사업자는 콘텐츠의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하여 유료로 전환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유료전환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② 사업자는 콘텐츠의 유료이용기간이 종료하여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 콘텐츠이용계약은 무료이용기간의 경과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

④ 이용자의 동의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7)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58961 판결 참조

원 가입 및 이용료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광고 및 결제 창에 이용료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피심인은 '회원가입'·'월 이용요금' 등과 같이 유료 서비스 계약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멤버십'·'수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무료체험기간이 끝나면 멤버십이 자동으로 유지'되며 '멤버십 수수료'가 청구된다고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설명하여 이용자가 유료서비스 가입을 위한 이용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설명하였고, ③ '무료 체험하기' 버튼을 누른 이용자가 다음화면에서 '계속'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피심인이 이를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일방적으로 간주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종류 및 제공조건 등을 확인한 후 서비스 가입하기를 클릭하여 선택하는 등의 이용자 동의가 특정되거나 진정한 이용자 가입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심인은 무료체험 종료 3일 전 시점에 구글 이메일을 통해서 무료체험 만료 후에 유료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이는 이용자가 희망하는 이메일 주소나 문자메시지와 같은 수단이 아니라 구글 이메일을 통해서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일 뿐이며, 그 내용도 유료서비스 전환에 따른 동의나 가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체험 기간이 곧 만료됩니다. 그 이후에는 구독료가 매월 자동 결제됩니다'라고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데 그치고 있어 유료전환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인정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따라서 1개월 무료체험 이벤트 가입에서부터 유료전환에 이르는 일련의 계약 과정을 볼 때 피심인은 체험상품을 미끼로 이용자의 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sup>8)</sup>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모객한 후, 한 달 간의 무료체험 기간 중에 취소 절차를 잊어버리거나 미루는 경향이 있는 이용자들의 비합리적 행태를 활용하기 위해 유료전환 사실 통지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소비자들이 반복하기 귀찮아하는 점을 노려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으로 옆구리를 찌르듯이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다크 너지(Dark Nudge)라 불림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피심인에게 접수된 총 0000000의 이용자 민원 중 0000000이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이는 당해 기간 중 유료서비스 전환자 의 8.9%에 달하며, 인터넷 등에서도 다수 이용자 피해사례<sup>9)</sup>가 검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던 이용자 중에는 무료체험기간 종료 후 유료 서비스로 계속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과정이 제대로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서비스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무료체험기간 종료 이전에 해지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나, 피심인의 일방적인 계약 체결 간주 행위로 원하지 않는 구매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이용자 후생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회원 가입 후 유료전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자동결제가 계속 이루어진 이용자의 중 피심인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던 이용자에게는 금전적 피해도 발생함에 따라 다수 이용자 이익이 저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피심인은 (1) 결제정보 입력 단계 등 가입절차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료체험을 포함하는 월 정기 구독 형태의 유료서비스임을 이용자가 알 수

9)

NO.	출 처	제 목	링 크
1	네이버 블로그	(18.1.23.) 유튜브 레드 환불 후기(결제취소)	<a href="https://blog.naver.com/minchullive/221191645611">https://blog.naver.com/minchullive/221191645611</a>
2		(18.1.24.) 유튜브 레드 자동 결제 전환... 환불	<a href="http://kainto7.blog.me/221192553409">http://kainto7.blog.me/221192553409</a>
3		(18.7.23.) 유튜브 레드 자동결제 조심해라	<a href="https://blog.naver.com/sunggin0011/221325066745">https://blog.naver.com/sunggin0011/221325066745</a>
4	네이버 지식인	(17.8.26.) 유튜브 레드 자동 결제가 된 것 같습니다	<a href="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amp;dirId=1060405&amp;docId=283343028&amp;qb=7Jyg7Yqc67iMI0yekOuPmeqysOygnA==&amp;enc=utf8&amp;section=kin&amp;rank=5&amp;search_sort=0&amp;spq=0">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amp;dirId=1060405&amp;docId=283343028&amp;qb=7Jyg7Yqc67iMI0yekOuPmeqysOygnA==&amp;enc=utf8&amp;section=kin&amp;rank=5&amp;search_sort=0&amp;spq=0</a>
5		(18.8.30.) 구글플레이에서 8600원 가량이 자동 결제된 것 같은데요	<a href="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amp;dirId=1060305&amp;docId=308942829&amp;qb=7Jyg7Yqc67iMI0yekOuPmeqysOygnA==&amp;enc=utf8&amp;section=kin&amp;rank=17&amp;search_sort=0&amp;spq=0">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amp;dirId=1060305&amp;docId=308942829&amp;qb=7Jyg7Yqc67iMI0yekOuPmeqysOygnA==&amp;enc=utf8&amp;section=kin&amp;rank=17&amp;search_sort=0&amp;spq=0</a>
6		(19.2.7.) 구글페이먼트코리아 자동결제 관련 내공100	<a href="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amp;dirId=1060305&amp;docId=320630161&amp;qb=7Jyg7Yqc67iMI0yekOuPmeqysOygnA==&amp;enc=utf8&amp;section=kin&amp;rank=1&amp;search_sort=0&amp;spq=0">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amp;dirId=1060305&amp;docId=320630161&amp;qb=7Jyg7Yqc67iMI0yekOuPmeqysOygnA==&amp;enc=utf8&amp;section=kin&amp;rank=1&amp;search_sort=0&amp;spq=0</a>
7	네이버 카페	(18.12.7.) 아우 다들 자동결제 조심하세요! TT	<a href="https://cafe.naver.com/engmstudy/659200">https://cafe.naver.com/engmstudy/659200</a>
8	언론 기사	(18.1.24.) 유튜브에서 나도 모르게 8690원이 결제됐다	<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30&amp;aid=0002758536">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5&amp;oid=030&amp;aid=0002758536</a>

있으며, (2) 이용자 동의 방식은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모두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3) 본인의사에 반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이용자가 있을 경우 모두 환불 처리함에 따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피심인의 주장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계약 체결과정에서 무료체험을 강조하고 유료서비스 가입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이용자 동의 절차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나, 결제 정보 입력 화면을 통해 월 이용금액과 청구 시작 일을 설명하였고 카드번호 등 결제 수단을 입력하는 절차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유료서비스 가입 절차임을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일부 제공했다는 점과 민원을 제기한 모든 이용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함에 따라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 다)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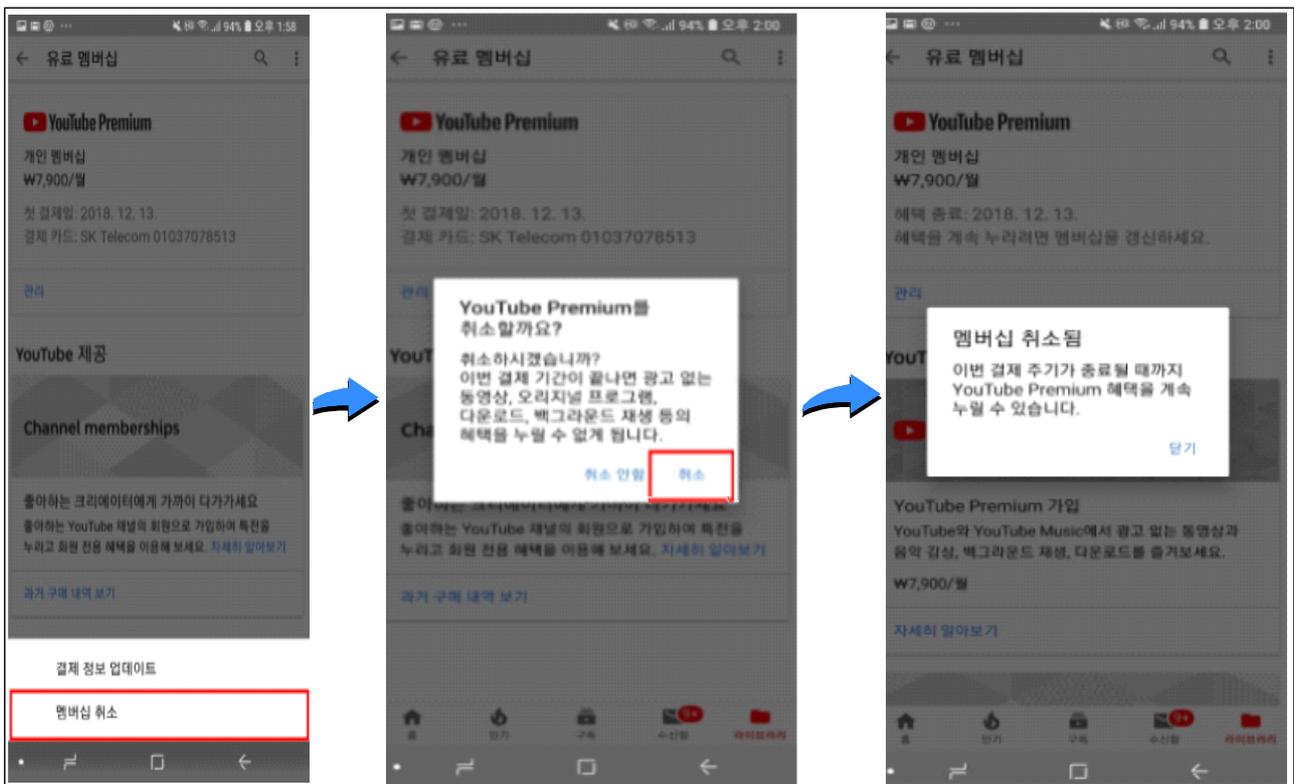
피심인의 행위가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의 위법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나,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 동의를 간주하여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없도록 명시적인 유료서비스 가입 동의 절차 마련을 권고하기로 한다. 또한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의 자동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결제금액·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으로 고지하고 이 사실을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를 두도록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한 행위

1) 인정사실

피심인은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이용자가 중도에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여도 신청일(또는 해지 희망 일)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지 않고 “이번 결제 주기가 종료될 때까지 YouTube Premium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한 후 일방적으로 월 단위 결제 주기의 종료일까지 해지 효력의 발생을 지연시켰으며, 이용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선결제한 월요금 중 미이용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증적자료3> 유튜브 유료서비스 해지 시 고지 화면



피심인은 유튜브의 기타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 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결제 시점으로부터 7일이 초과된 상태에서 구독을 취소하면 구독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환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약관에 정하고 있으나

본 건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여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기간의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증적자료4>

유튜브 유료서비스 약관

2. 지급, 환불 및 취소방침

환불. (중간 생략) 유료서비스 구독에 대하여 7일 후에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구독 잔여기간에 대하여 비례배분하여 일부만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구독취소. 사용자가 자동으로 갱신되는 유료서비스 구독을 구매한 경우, 사용자는 현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수시로 구독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는 다음 청구기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취소한 시점에서 다음 청구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유료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유지할 수 있으며, 현재 청구기간의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환불 또는 크레디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관련법령 및 법리

가) 관련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① [별표 4]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나.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나) 법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된 계약은 그 이용기간이 장기적이고 이용자가 해지하기 전까지 매달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계속거래에 있어 이용자의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선택 및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부당한 비용 지불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크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제5호나.4)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 해지를 즉시 인정할 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안정적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용자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될만한 불가피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용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위 제3.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 가)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월구독 기간 중도에 해지를 신청하여도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다른 법률에 법정 해지권<sup>10)</sup>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용자가

10)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호.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용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관련 법률<sup>11)</sup>과 민법<sup>12)</sup>에 따른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나)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이용자가 계약기간 중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선납한 월단위 이용요금 중 해지 신청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적정한 금액의 위약금<sup>13)</sup>을 제외한 후 이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이용요금을 계산하여 이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월단위로만 해지를 제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피심인에게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때, ‘유튜브 프리미엄’은 이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화·시즌제 드라마·음원 등 평균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개별 콘텐츠를 이용자와의 월 단위 계약을 통해서 개별로 구매하는 것에 비해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묶어 제공하는 서비스(소위 ‘월정액 구독형’ 서비스)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 다만, 이용자들에게 광고와 함께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고 있는 ‘유튜브’ 서비스의 동영상 콘텐츠를 주된 기반으로 하여 ‘광고 생략’, ‘백그라운드 재생’, ‘30일 기간 동안 오프라인 재생’과 같은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피심인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지 않고 서비스 미이용 기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환불한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프리미엄’이 제공하는 콘텐츠 수급 등과 관련하여 시장에 중대한 왜곡이 초래되거나 피심인에게 경영상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2)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13)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모바일콘텐츠업은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 계약인 경우,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때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함

아울러 '유튜브 프리미엄'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이동저장하거나 소유할 수 있도록 무제한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스트리밍 서비스'로서<sup>14)</sup>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일(日)단위로 이용하는 것과 월(月)단위로 이용하는 것에 있어 차이가 없으며, 피심인은 유튜브의 무료 서비스 외에 개별 콘텐츠를 광고없이 이용하거나 백그라운드 재생이 가능한 '건별 요금제' 또는 '일(日)단위 요금제'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월(月)단위의 단일 요금제 만을 운영 중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개별 콘텐츠 건'별 내지 '일(日)단위가 아닌 '월(月)단위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이용요금의 다소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이 피심인이 이용자의 '월(月)단위의 해지만 허용하고 '일(日)단위 중도해지를 제한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며, 이러한 해지방식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운영방식이라 판단된다.

**다)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는지 여부**

'유튜브 프리미엄'을 처음으로 이용한 국내 무료체험 누적 가입자는 254만 명이며 그 중 45%가 넘는 0000<sup>15)</sup>이 유료서비스로 자동으로 전환되어 요금을 부담하였다. 또한 요금을 결제한 이용자의 8.9%인 00000이 월 결제 기간 중 해지, 서비스 미이용에 따른 계약 철회 등의 사유로 요금 환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해지 및 환불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용자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또한 피심인은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다음 월 결제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일인 경우와 29일인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해지를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여 왔다.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에 따라 이용자가 입는

14) 공정위,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2009.9.1.) 내용 중 중 “피심인의 서비스 중 DRM이 적용된 음원을 무제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수량에 제한이 없는 점, 이미 고객이 PC 또는 재생기기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피심인이 중도에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이미 다운로드 받은 음원은 1개월간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고객에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피심인들의 스트리밍서비스 및 정량다운로드 서비스에 서 고객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됨 (부분무효)” 참조

15) 출처 : Google LLC 제출자료 중 '16.12월부터 '19.1월까지의 가입자 수

피해는 명백한 것이며 그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 규모 역시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각종 블로그 및 인터넷 카페 게시글 등을 통해서 서비스 해지 관련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 사례가 확인되었다는 점, 한국소비자연맹이 OTT 서비스의 해지 신청 시 환불요청이 거부된다는 피해 현황('17년 47건, '18년 76건)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이익 침해의 현저성이 인정된다.

### 라) 피심인 주장 및 검토

피심인은 (1) 이용자가 용이하게 구독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월 이용요금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강행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환불정책은 헌법이 보장한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2) 제공 서비스 중 '오프라인 재생기능'은 유료서비스에서 탈퇴하여도 오프라인 상태에서 다운받은 콘텐츠를 최대 29일간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니라 법원이 일할환불의 예외로 인정하는 무제한 다운로드와 유사한 서비스이다. (3)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취소 및 환불정책은 동종·유사 업계의 관행이며 유사 시장의 대다수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이 일할 환불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이익침해의 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심인의 주장 중 (1)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은 본 건 서비스의 이용요금이 비교적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비록 개별 이용자가 환불 받는 금액이 수천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이용자가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그 피해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계약의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상대방인 이용자로서는 그 구체적인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다수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이용약관에 사적자치 원칙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계약 상대방

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가 원칙이다.

피심인의 주장 중 (2)에 대해 살펴보면, 본건 서비스가 제공하는 ‘오프라인 재생 기능’은 동영상 재생에 따른 데이터 소모를 줄이기 위해 동영상이나 재생 목록을 이용자 휴대기기 등에 오프라인으로 저장 후 재생하는 기능으로 이용자 휴대기기에 일시적으로 다운로드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이용자가 구독을 취소하면 해당 동영상을 더 이상 재생할 수 없다는 점, 다른 단말기로 이동하여 재생할 수 없고 오직 유튜브 어플과 웹페이지에서만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 이용계약 해지 시 해당 동영상이 모두 삭제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프라인 재생 기능’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계약 종료 시에도 소유권이나 재사용 권한을 허용하는 ‘무제한 다운로드’ 기능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심인이 주장한 ‘오프라인 다운로드한 동영상 콘텐츠를 최대 29일간 무제한 재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여도 피심인이 최대 29일간 해지의 효력을 제한함에 따라 재생이 가능한 것일 뿐 서비스 해지처리 시 이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처리를 통해 중도에 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심인이 제공하는 ‘오프라인 재생 기능’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단말기 저장 공간을 활용하는 스트리밍방식 서비스의 일종일 뿐 법원이 일할환불의 예외로 인정한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오프라인 재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유로 피심인의 해지 및 환불정책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피심인의 주장 중 (3)에 대해 살펴보면,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 중 다수의 동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들은 ‘스트리밍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처리와 함께 일할 환불을 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해지 제한 행위 및 환불 정책이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상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구독형 OTT 시장’을 확정하면서 옥수수, U+모바일, 티빙(Tving), 넷플릭스 등의 서비스를 포함하였으나 ‘유튜브

프리미엄'은 동종 서비스로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튜브 프리미엄'의 서비스 구성 및 제공 방식은 여타 '유료 구독형 OTT'와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 마) 소결

따라서, 이용자가 '유튜브프리미엄'의 해지를 신청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의 효력을 월단위 결제주기의 말일까지 제한하면서 이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요금환급을 제한한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4] 5-나-4)을 위반하였다.

### 다. 이용계약 체결 시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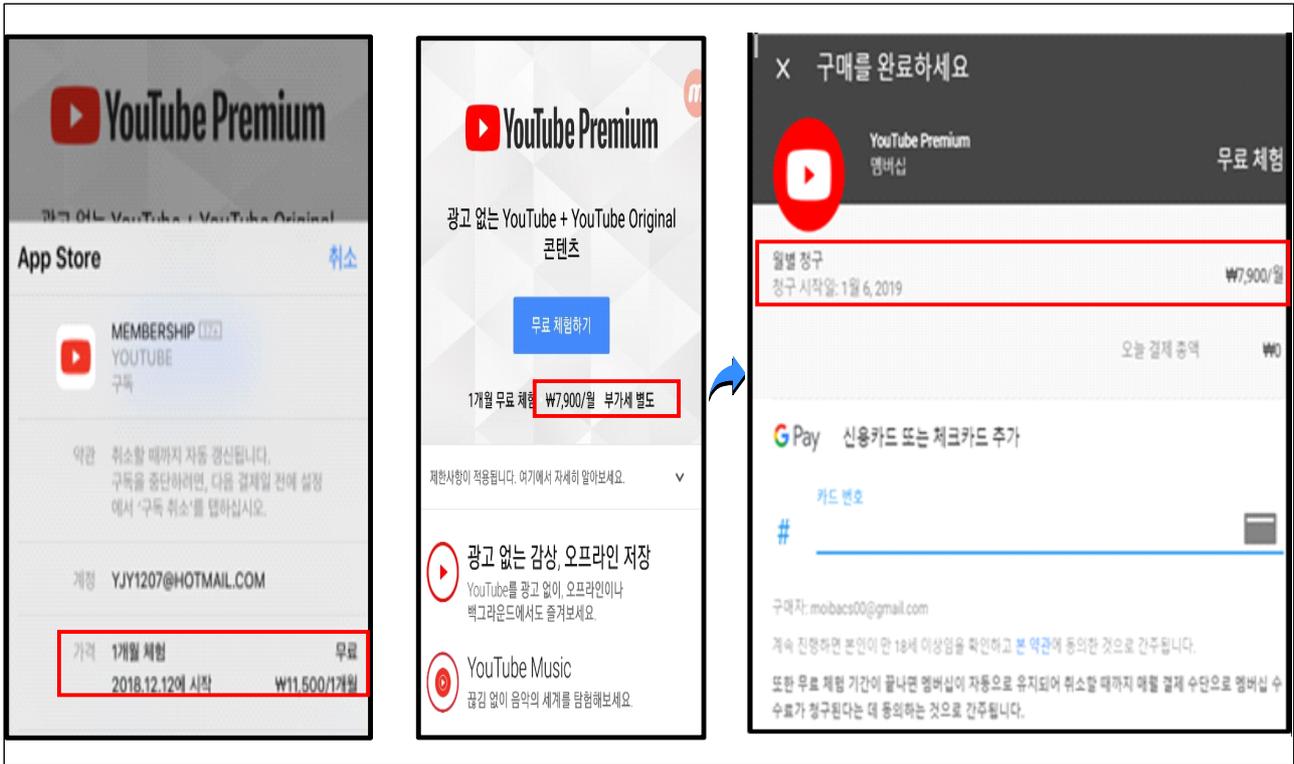
#### 1) 인정사실

##### 가) 부가가치세 미고지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 790원이 포함된 8,690원이나(웹사이트 및 안드로이드OS 기준), 피심인은 무료체험하기 홍보 화면에서는 '₩7,900/월 부가세별도'로 안내하였지만 이용자의 > 결제정보 입력 화면에서는 '₩7,900/월'로 표기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청구 금액 보다 적게 고지하였으며 > 가입완료 후 이용자에게 송부한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는 주문 세부정보에서도 '매월청구 ₩7,900, 세금 ₩0'으로 부가가치세(790원)를 제외하여 결제요금을 과소하게 고지하였다.

16)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9-234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등 7개사의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관한 건」)는 '유료 구독형 OTT 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확정하면서 그 특징을 일정 요금을 지불하여 가입기간 동안 요금제에 포함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제공(Subscription Video On Demand, SVOD)하는 한편, 제공되는 콘텐츠가 전문가들이 제작한 콘텐츠(Ready Made Content, RMC)로서 영화, 드라마, 예능, 뉴스 등인 시장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유료 구독형 OTT 시장'에 옥수수, U+ 모바일, 티빙(Tving), 넷플릭스, 왓차 등을 포함하였으나 '유튜브 프리미엄'은 포함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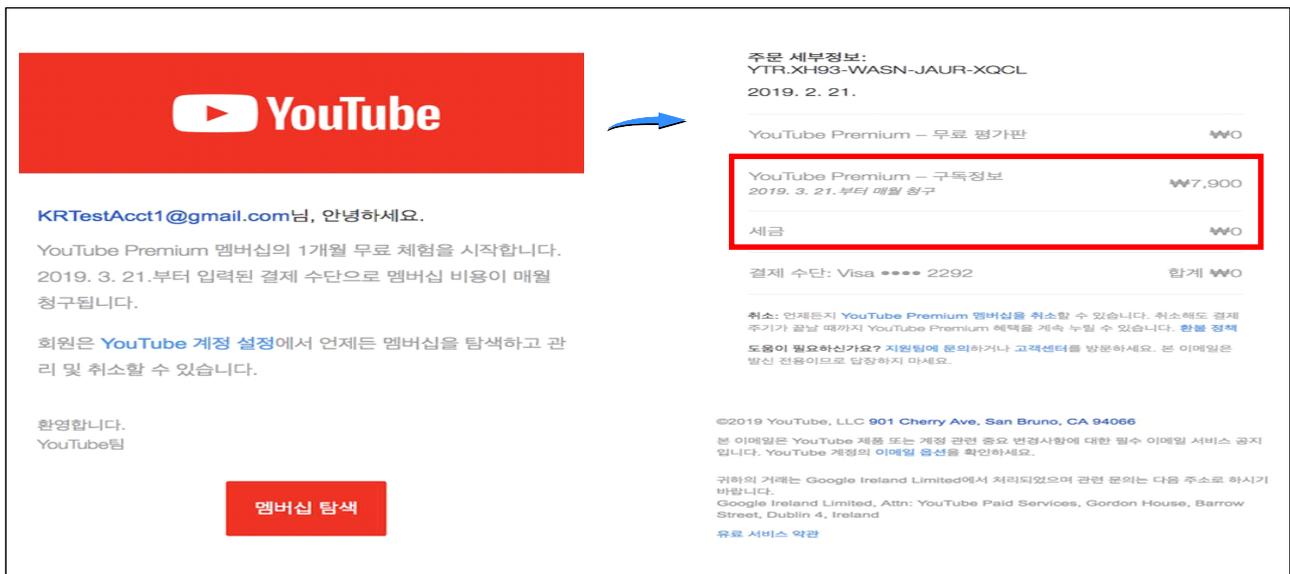
<증적자료5>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시 요금 고지 화면



<iOS앱 - 부가세포함고지>

<웹사이트, 안드로이드 앱 : 요금 과소 고지>

<증적자료6>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체험 가입 후 이메일 영수증 안내내용



## 나) 서비스 청약 철회 가능 기간 미고지

온라인상에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용자의 실수나 변심에 의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대금결제 후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나, 피심인은 무료체험 기간 시작일 기준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이용약관으로 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도록 서비스 신청철회 기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피심인은 조사 대상 기간 동안 무료체험 가입 절차 화면이나 유료전환 이메일 통지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유료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증적자료7>

유튜브 유료서비스 약관 (서비스 철회방법 관련)

<p>2. 지급, 환불 및 취소방침</p> <p>환불. <i>(중간 생략)</i> 주문한 유료서비스를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주문이 완료된 날로부터 최대 7영업일 이내에 요청함으로써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에 <u>(아래 설명하는) 무료 체험이 포함된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7일 기간은 나중에 유료 서비스에 대하여 청구 받은 날이 아니라, 무료체험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됩니다. <i>(이하 생략)</i></u></p> <p>무료체험. YouTube는 유료서비스 신규 구독자에게 무료체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무료체험을 포함하는 유료서비스에 대한 구독을 구매한 경우, 사용자는 무료 체험 기간 동안 해당 유료서비스에 대하여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무료 체험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자에게 구독료가 청구되며, 이는 사용자가 구독을 취소하기 전까지 계속 청구됩니다. 구독료를 내지 않으려면 무료 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합니다.</p>
-----------------------------------------------------------------------------------------------------------------------------------------------------------------------------------------------------------------------------------------------------------------------------------------------------------------------------------------------------------------------------------------------------------------------------------------------------------------------------------------------------------------------------

## 다) 해지 제한 및 환불 정책 미고지

피심인은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여도 월 단위 결제 주기의 종료일까지 해지 처리를 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해지 신청 후 서비스 미이용기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2018년 7월 20일부터 2018년 12월20일<sup>17)</sup>의 기간 동안 안드로이드 OS 이용자의

가입절차화면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일절 설명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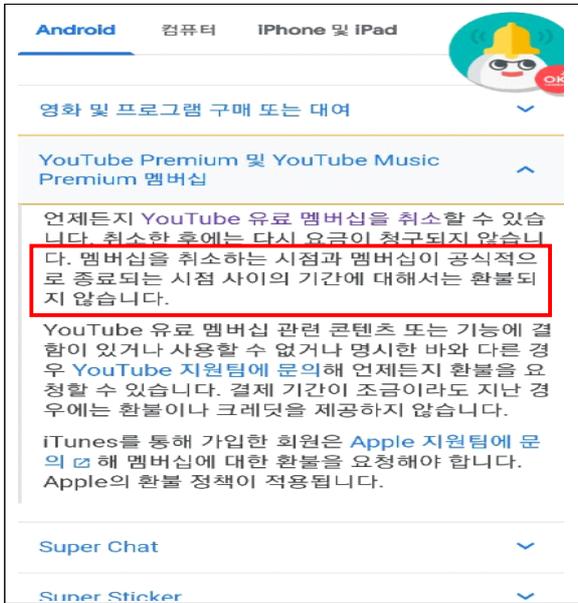
또한 피심인은 조사 대상 기간 중 2018년 7월 20일부터 2018년 12월20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에는 서비스 가입 홍보 첫 화면에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라고 설명하였으나, 제한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용자가 직접 링크를 눌러 다른 화면에서 확인하여야만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링크를 눌러 제한사항을 확인하는 화면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과 “남은 결제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크레딧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상반되는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였다. 또한 굵은 파란색 글씨로 표기된 ‘환불정책’을 클릭하면 “언제든지 YouTube 유료멤버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한 후에는 다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멤버십을 취소하는 시점과 멤버십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시점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의 정확한 의미는 설명하지 않았다.

<증적자료8> ‘유튜브 프리미엄’ 취소 및 환불 제한사항 링크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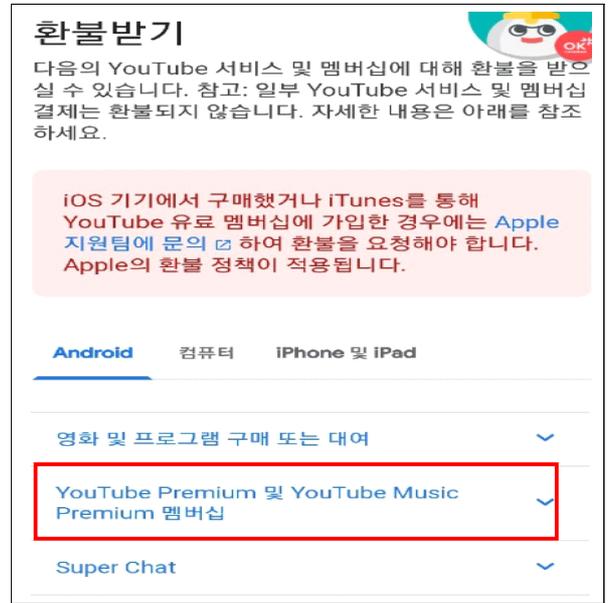
(V) 클릭

(V) **환불정책** 클릭

17) 피심인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2018년 7월 20일부터 2018년 12월19일까지 안드로이드 OS 이용자에게 취소 및 환불 정책 내용이 포함된 제한사항 링크가 누락되었으며 '18.12.20일에 시스템을 수정하여 해당 링크를 추가하였다고 소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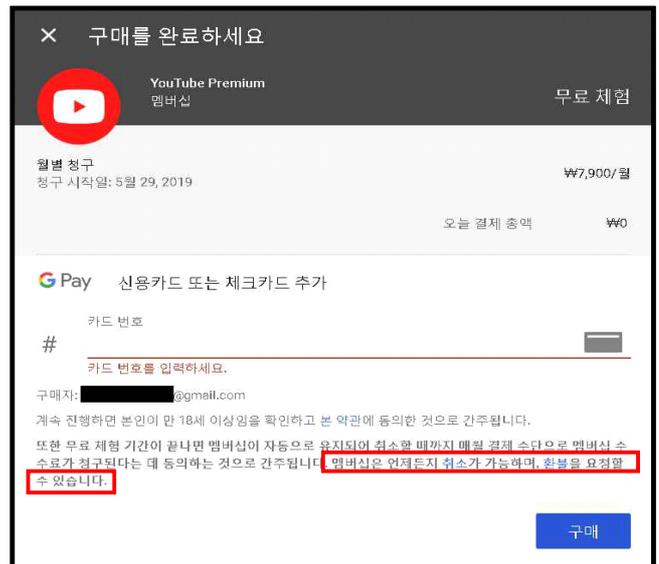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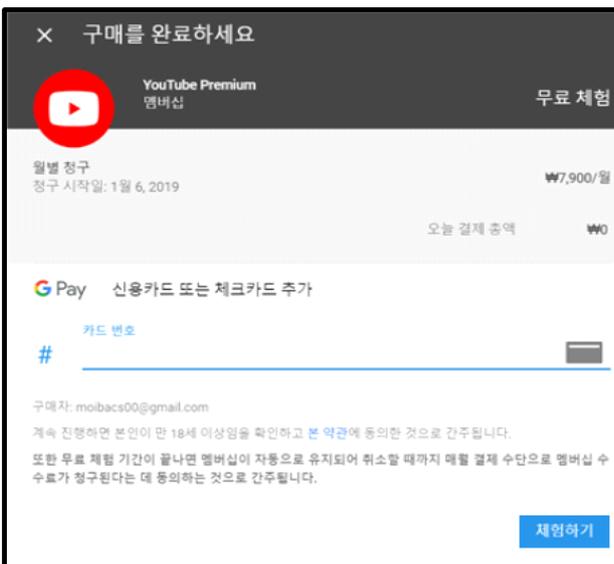
클릭



※ 2018년 7월 20일부터 12월20일 기간 동안 안드로이드 OS 이용자에게는 상기 제한사항 링크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위 화면은 iOS 이용자와 조사기간 중 제한사항 링크가 존재하였던 시기에 안드로이드 OS 이용자에게 제공되었던 화면임

또한, 피심인은 본건 조사 기간 중인 2019년 1월 5일에 이용자가 결제 수단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멤버십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증적자료9>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절차 화면 (취소 및 환불 고지 관련)



< 조사 대상 기간 >

< 조사 개시 후 문구추가 >

## 2) 관련법령 및 법리

### 가) 관련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① [별표 4]

5의2.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을 등의 약정조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 나) 법리

전기통신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함에 있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4]제5의2호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을 등의 약정조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전기통신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위반행위로 보고 있으며,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중요사항의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로 설명하여야 한다.<sup>18)</sup>

### 3) 위 제3. 다.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 가) 이용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설명 여부

이용요금은 유료서비스 계약 체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이용계약 체결 시에 이용자에게 반드시 설명 또는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특히 본 건 ‘유튜브 프리미엄’은 안드로이드O/S 이용자에게는 월8,690원, iOS 이용자에게는 월 11,500원으로 O/S환경에 따라 다르게 과금되고 있고, 무료체험 후 자동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용자 대상 요금고지인 만큼 보다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안드로이드 O/S 및 웹사이트 통해서 가입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무료체험 이벤트를 홍보하는 팝업창 화면에만 ‘부가세별도’라고 표시하였을 뿐, 이용자가 요금을 확인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나 가입 완료 후 이용자에게 통보한 요금내역에서는 실제로 청구하는 금액 ‘8,690원/월’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으로 표기하여 ‘7,900원/월’이 청구된다고 고지하였다. 참고로 피심인은 이용계약 체결 후 본인의 가입내역 및 결제정보를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는 ‘계정>유료 멤버십’ 사이트에서도 ‘개인 멤버십 ₩7,900/월’이라고 표기하고 있어 실제 청구가 이루어지는 이용요금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요금의 10%에 해당되는 부가

18)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2019. 1. 17 선고 2016다2777200판결,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가치세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요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거나 정확한 이용요금 산정에 혼란을 초래하도록 한 것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요금을 설명 또는 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서비스 계약 후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은 이용자의 이용계약 체결 및 해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용계약 체결 시에 이용자에게 반드시 설명 또는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의 일반적인 상관행 상 미사용한 콘텐츠의 청약 철회 기간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7일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유튜브 프리미엄'의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전환이 되고 나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피심인의 약관규정은 통상적인 이용자가 당연히 예상하고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별도로 설명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피심인은 <증적자료1>에서 볼 수 있듯이 '무료 체험 기간 중에 취소하지 않는 한 여기에 표시된 가격이 자동으로 청구되며'라고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유료결제에 관한 사항만 설명하였을 뿐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와 기간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바, 이는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서비스 개시 전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에 대해 설명하거나 고지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통신역무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비스 해지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 있을 경우 이는 이용자의 이용계약 체결 및 해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용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반드시 설명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일반적으로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민법에 따라 그 행사로 즉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과 달리 해지를 신청한 날이 포함된 월단위 결제주기가 끝나는 날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지 기간을 제한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8년 7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20일까지 안드로이드 OS를 이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증적자료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7월 19일까지(안드로이드 OS이용자 기준)는 제한사항 링크를 통해서만 취소 및 환불 정책을 고지하였는데, 제한된 단말기 화면을 고려할 때 주요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고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의 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첫 화면에서 설명하여야 할 것이며,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링크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사항 링크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사항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제한 사항 링크를 눌러 이용자가 제한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여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과 “남은 결제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크레딧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서로 상반된 내용을 이어서 설명함으로써 이용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도록 하고 있으며, 환불정책을 클릭 시 “멤버십을 취소하는 시점과 멤버십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시점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용자가 알기 어렵게 모호하게 설명하는 등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장으로 설명한 것은 당해 계약의 체결 경위 및 방법, 이용자의 이해가능성, 이용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이용자가 이해 가능한 방법을 통해 설명 의무<sup>19)</sup>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심인은 <증적자료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9년 1월 5일에 결제 수단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취소 및 환불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기능을 추가 하면서 “멤버십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취소’나 ‘환불’이라는 글자를 파란색 글자로 강조하면서 클릭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언제든지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이용자 입장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로 ‘취소’나 ‘환불’글씨를 클릭해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불’글씨를 클릭하면 <제한사항> 링크를 클릭했을 때와 동

19)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 69053판결 참조

일하게 “멤버십을 취소하는 시점과 멤버십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 ‘멤버십을 취소하는 시점과 멤버십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시점 사이’가 언제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내용이 환불이 제한된다는 설명이라 하더라도 첫 화면에서 설명한 ‘언제든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평균적인 이용자로서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설명하였다. 위와 같이 피심인이 해지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방식으로 설명한 것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해지 기간 및 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거나 고지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피심인은 (1) ‘부가세별도’라는 문구를 가입 화면에서 표시하였으며 거래관행상 부가세 금액이 10%라는 사실은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이므로 별도로 알리지 않아도 되는 정보에 해당된다 (2) 실제 적용하는 서비스 신청 철회 기간은 이용약관으로 정한 기간보다 더 장기간인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이며 이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였고, 무료체험 이후에 재차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용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없다’는 소극적 사실에 불과하여 본 건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해지 및 환불 정책은 최초 가입절차 화면의 ‘제한사항’ 링크를 통해서 고지되었으므로 표기된 문구가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설명/고지 자체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심인의 주장 중 (1)에 대해 살펴보면, 온라인 거래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지불저항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선택권이 왜곡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총액을 계산해서 이용자가 파악하기 쉽게 이용요금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부득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용요금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금액 바로 옆이나 위아래 인접된 같은 화면에서 부가가치세를

및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함께 표시함으로써 최소한 이용자가 직접 계산이 가능하도록 알려주어야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가 지불하여야 하는 이용요금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이 ‘부가세 별도’ 사실을 알린 화면은 무료 체험하기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성 화면으로 이용자가 실제 이용요금 납부를 위한 결제수단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면 해당 화면은 보이지 않게 되므로 일반적인 주의력과 판단력을 가진 이용자로서는 화면상에 표시되는 이용요금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야 한다고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심인은 무료 체험 가입 후 이용자에게 송부한 이메일 영수증을 통해 “세금 0원”이라고 알린 바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7,900원 이외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더욱 어렵게 되었다. 또한 피심인은 iOS 이용자에게는 부가가치가 모두 포함된 이용요금 11,500원을 정확하게 고지하였으나 피심인이 직접 운영하는 안드로이드 OS 이용자들에게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이용요금을 고지하였는데,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피심인의 주장 중 (2)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은 가입 절차에서 고지한 “무료 체험 기간 중에 취소하지 않는 한 여기에 표시된 가격이 자동으로 청구되며” 라고 설명한 문구를 들어 무료체험기간이 서비스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이라고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본 설명은 무료체험을 한 이용자에게 무료체험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유료서비스 계약으로 자동전환된다는 내용으로 유료결제에 관한 사항만 설명한 것일 뿐, 서비스 개시 전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와 기간에 대해 별도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무료체험 이후 재차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중요사항이 아니라는 피심인의 의견과 관련하여, 무료체험의 경우 이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없는 이벤트성 행사로서 이용자로서는 청약철회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식하기 어려우며, 온라인 서비스의 일반적인 상관행상 청약 철회 기간은 유료결제일 기준 7일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 건 서비스의 경우 유료 전환 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피심인의 운영 방침은 평균적인 이용자로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특히 1개월 무료체험 이벤트 가입에서부터 유료서비스 전환에 이르는 일련의 계약 과정을 감안할 때 유료서비스 전환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본 서비스의 이용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위한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설명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심인의 주장 중 (3)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은 2018년 7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20일까지 안드로이드 OS이용자들에게 취소 및 환불 정책을 서비스 가입절차 화면에 표시하거나 제한 링크를 통해서 확인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또한 피심인이 상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제한사항 링크를 통해서 설명한 사항도 이용자가 언제든지 해지 신청을 하면 즉시 처리된다고 해석이 가능하도록 이용자에게 설명한 바, 이는 이용계약 체결과정에서 합리적인 구매 및 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이용자가 제공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하여 계약을 유도하고자 하는 피심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소결

피심인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확한 이용요금, 청약철회 기간, 서비스 해지 및 환불 정책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바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조건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4] 5의2-나를 위반하였다.

## 4. 처 분

### 가. 시정조치

#### 1) 시정명령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역무의 중도해지를 신청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이때 기 납부한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의 위약금을 제외한 후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환급한다.

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 화면을 통해 이용요금, 해지 및 환불 정책, 약정 철회 기간·방법 등 중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한다.

#### 2) 시정명령 이행 관련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다.

나) 시정조치 이행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 1회 공표하고 '유튜브' 서비스의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 첫 화면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나. 과징금 부과

### 1) 과징금 부과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6]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6호)에 따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별표4]5-나-4) 위반행위<제3. 나. 1)항 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별표4]5의2-나 위반행위<제3. 다. 1) 가)·나)·다)항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 2) 정액 과징금

피심인이 제출한 매출액 자료는 공신력 있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근거가 명확한 회계자료가 아니므로 객관성이 없고 각 위반행위와 제출된 매출액 자료 사이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법 제5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 3) 과징금 상한액 및 기준 금액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10억원을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6]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제2019-6호) 제3조에서는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에 따른 행위는 8억원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제4조제2항 [별표2]에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기준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7> 정액과징금의 부과 기준금액

중대성 정도	고려 사유	기준금액
매우 중대함	본질적 시장왜곡, 피해규모 광범위, 이용자 피해 회복이 안 됨 등	6억원 초과 8억원 이하
중대함	단기적 시장왜곡, 피해가 중대하나 범위가 작음, 이용자 피해가 일부 회복됨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중대성 약함	시장영향 미미, 피해 경미, 이용자의 피해가 회복됨 등	3억원 이하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통위고시 제2019-6호)』 제4조제2항 [별표2]

#### 가) 제3. 나. 1) 항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피심인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용자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서비스 미이용기간에 대하여 요금을 환불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켰으나, 환불을 요청한 민원인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환불 조치하여 이용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기준금액을 3억 3천만원으로 정한다.

나) 제3. 다. 1) 가)·나)·다)항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광범위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쳐 이용자 피해가 중대하므로 '중대한 위반행위'이며 피심인의 위반 사항이 이용요금 부가세 미고지, 서비스 개시 전 철회방법 미고지, 해지 제한사실 미고지 등 다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4억원으로 정한다.

4) 필수적 가중·감경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제2019-6호) 제7조제1항 [별표3] I.3. 에 따라 제3. 나. 1)항 행위와 제3. 다. 1)항 행위 모두 위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했으므로 기준금액의 30%를 가산하고, [별표3] II.3. 에 따라 피심인이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를 감경한다.

5) 추가적 가중·감경

가) 제3. 나. 1) 항 행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제2019-6호) 제8조 [별표4] II.2. 에 따라 피심인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에 10%를 가중한다.

나) 제3. 다. 1) 항 행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통위 고시 제2019-6호) 제8조 [별표4] III.4. 에 따라 피심인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착수 후에 가입 화면에 제한사항 링크를 추가하는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점을 고려하여 10%를 감경한다.

<표 8>

과징금 산출내역

위반행위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 과징금	총 과징금
해지권 제한 [제3. 나. 1) 가)항 행위]	3.3억원	3.96억원 (20%가중)	4.356억원 (10%가산)	4.35억원	8.67억원
중요사항 미고지 [제3. 다. 1) 가)·나)·다)항 행위]	4억원	4.8억원 (20%가중)	4.32억원 (10%감경)	4.32억원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실무요령'에 따라 최종 과징금 1억원 이상은 백만원 미만 단위를 절사함

### 6) 최종 과징금 부과액 결정

피심인의 제3. 나. 1)항(해지권 제한)에 4억 3천 5백만원, 제3. 다. 1)항 행위(중요사항 미고지)에 4억 3천 2백만원을 부과하여 총 8억 6천 7백만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 5. 시정권고

피심인에게 다음 각 항과 같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가.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 시 유료서비스 이용 조건, 전자적 대금결제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명시적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이때 이용자가 직접 동의여부를 선택하기 전에는 유료서비스 이용 동의를 간주하거나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나.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체험 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지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명확하게 고지한다.

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요금의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결제금

액·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으로 고지하고 이 사실을 가입단계에서 이용자에게 미리 알린다.

## 6. 결 론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석 진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김 창 룡 (인)

## 2.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1.29)

### 1. 개 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9(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에이치랩, (주)티엔서비스 등 4개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조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총 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번 시정조치는 '19년 6~7월까지 전체 40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음란물 유통이 많은 10개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19. 8월)을 실시한 결과이다.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음란정보의 송수신 제한을 위한 필터링 조치가 동작하지 않아, 일부 불법음란정보의 송신(업로드)을 차단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에게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고 이용자가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불법음란정보의 검색 제한을 위한 금칙어 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모바일 사이트 일부 게시판에서 금칙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음란정보가 검색되도록 한 1개 사업자에게는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고 이용자가 검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할 것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 관련 사례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 위반 행위**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의결

안전번호 제2020 - 06 - 034호

안 건 명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에이치랩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5길 17(서교동, 도원빌딩 2층)

의 결 일 2020. 1. 29.

주 문

1. 피심인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에 따라 이용자가 불법음란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실시 결과(불법 음란정보 송수신 제한 조치의 이행 결과 등)를 포함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 이 유

###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9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서 피심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gample.net) 및 P2P(브이쉐어)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II. 현장점검 결과

#### 1. 점검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6~7월 전체 40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음란물 유통이 많은 등 문제가 의심되는 10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9년 8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을 대상으로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에 대해 현장점검 (2019. 8. 8.)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행위사실

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웹하드·P2P 사이트에서 불법음란정보의 송수신 제한을 위한 필터링 조치가 동작하지 않아, 점검 시('19.8.8.) 불법음란정보의 송신 (업로드)이 차단되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일부 불법음란정보의 송수신을 차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림] 현장점검 시 채증화면(불법음란정보의 업로드가 가능한 상태)

다운 Count	상태	하위폴더	파일	총크기	받은량	속도(cps)	비율	남은시간	실행	비고
down1	● 전송완료		1.40대 좋아하시...	336,627,978	336,627,978	10081,21k	100%	00:00:00	실행	전송완료
down2	● 전송중		2.숫컷이 잘여름...	336,052,637	55,319,880	9319,19k	16%	00:00:29	대기	
down3	● 대기중		3.여신급 왓꾸 망...	341,504,786	0	0,00k	0%	00:00:00	대기	
down4										
down5										
down6										

※ 불법음란정보 표본(방심위 DB)을 업로드해 본 결과, 업로드가 진행됨(파란색 부분)

### Ⅲ. 위법성 판단

#### 1. 관련법 규정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에서 기술적 조치에 해당하는 조치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 2.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 3.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 2. 위법성 판단

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일부 불법음란정보의 송신(업로드)을 차단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내용	법령 근거(「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시행령	세부 내용
(주)에이치랩	기술적조치 미이행	§22의3① 2호	§30의3①	송수신 제한(필터링)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불법음란정보의 송신(업로드)이 차단되지 않은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피심인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고 이용자가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실시 결과(불법음란정보 송수신 제한 조치의 이행 결과 등)를 포함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104조(과태료) 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차 위반 과태료인 7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1])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용·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 제3항제1호	700	1,400	2,000

**나. 과태료의 감경 및 가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은 ▲사업 종류 및 규모,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동기·내용,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및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 및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감경 및 가중하지 않는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2의3①	700만원	없음	없음	700만원
계				7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 위반에 대해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 결론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2조(시정명령) 제1항 제1호, 제104조(과태료) 제3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월 29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석 진      (인)

위원      허      욱      (인)

위원      표 철 수      (인)

위원      김 창 룡      (인)

## 2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 위반 행위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의결

안전번호 제2020 - 06 - 035호

안 건 명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티앤서비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7, 1013호(구로동, 삼성IT밸리)

의 결 일 2020. 1. 29.

#### 주 문

1. 피심인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에 따라 이용자가 불법음란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실시 결과(불법음란정보 송수신 제한 조치의 이행 결과 등)를 포함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 이 유

###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2019년 8월 16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서 피심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totodisk.com)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주)티앤서비스는 (구)㈜토토로사를 양도·양수한 바 있음

### II. 현장점검 결과

#### 1. 점검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6~7월 전체 40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음란물 유통이 많은 등 문제가 의심되는 10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9년 8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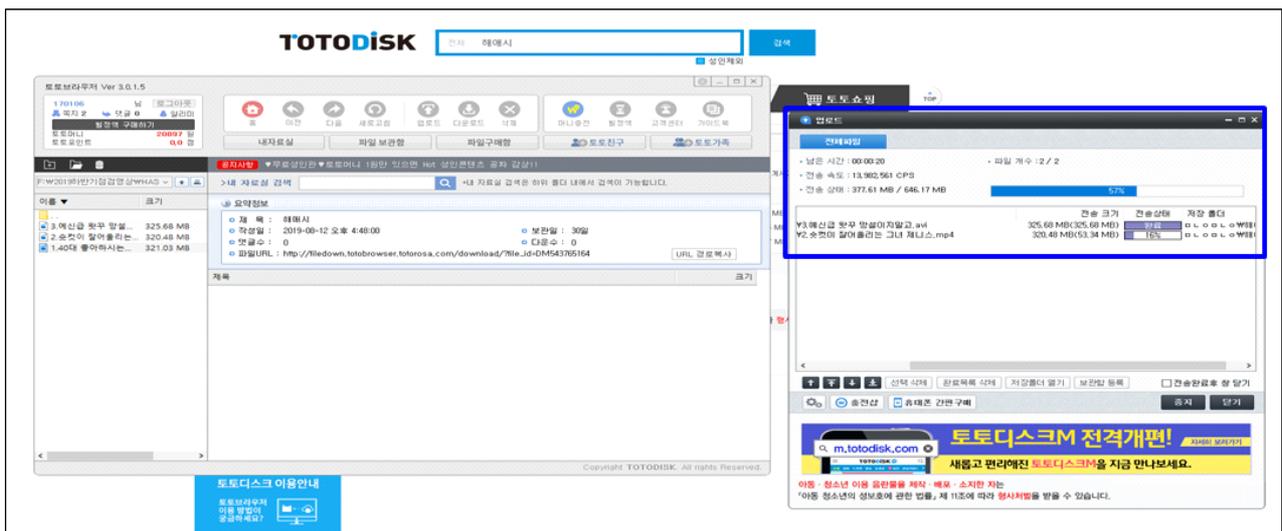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을 대상으로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에 대해 현장점검 (2019. 8. 12.)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행위사실

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음란정보의 송수신 제한을 위한 필터링 조치가 동작하지 않아, 점검 시(19.8.12.) 불법음란정보의 송신(업로드)이 차단되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일부 불법음란정보의 송수신을 차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림] 현장점검 시 채증화면(불법음란정보의 업로드가 가능한 상태)



※ 불법음란정보 표본(방심위 DB)을 업로드해 본 결과, 업로드가 진행됨(파란색 부분)

## III. 위법성 판단

### 1. 관련법 규정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에서 기술적 조치에 해당하는 조치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 2.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 3.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 2. 위법성 판단

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일부 불법음란정보의 송신(업로

드)을 차단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내용	법령 근거(「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시행령	세부 내용
주티앤서비스	기술적조치 미이행	§22의3① 2호	§30의3①	송수신 제한(필터링)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불법음란정보의 송신(업로드)이 차단되지 않은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피심인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고 이용자가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실시 결과(불법음란정보 송수신 제한 조치의 이행 결과 등)를 포함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104조(과태료) 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차 위반 과태료인 7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1])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용·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 제3항제1호	700	1,400	2,000

**나. 과태료의 감경 및 가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은 ▲사업 종류 및 규모,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동기·내용,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및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 및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감경 및 가중하지 않는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2의3①	700만원	없음	없음	700만원
계				7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 위반에 대해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 결론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2조(시정명령) 제1항 제1호, 제104조(과태료) 제3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월 29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석 진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김   창   룡   (인)

### 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 위반 행위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의결

안건번호 제2020 - 06 - 036호

안 건 명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아이스토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8길 8, 4층(논현동)

의 결 일 2020. 1. 29.

### 주 문

1. 피심인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에 따라 이용자가 불법음란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실시 결과(불법 음란정보 송수신 제한 조치의 이행 결과 등)를 포함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 이 유

###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2019년 6월 5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서 피심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filesun.com)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II. 현장점검 결과

#### 1. 점검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6~7월 전체 40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음란물 유통이 많은 등 문제가 의심되는 10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9년 8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을 대상으로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에 대해 현장점검(2019. 8. 6.)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행위사실

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음란정보의 송수신 제한을 위한 필터링 조치가 동작하지 않아, 점검 시('19.8.6.) 불법음란정보의 송신(업로드)이 차단되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일부 불법음란정보의 송수신을 차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림] 현장점검 시 채증화면(불법음란정보의 업로드가 가능한 상태)



※ 불법음란정보 표본(방심위 DB)을 업로드해 본 결과, 업로드가 진행됨(파란색 부분)

## III. 위법성 판단

### 1. 관련법 규정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에서 기술적 조치에 해당하는 조치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 2.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 3.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2. 위법성 판단**

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일부 불법음란정보의 송신(업로드)을 차단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내용	법령 근거(「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시행령	세부 내용
(주)아이스토리지	기술적조치 미이행	§22의3① 2호	§30의3①	송수신 제한(필터링)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불법음란정보의 송신(업로드)이 차단되지 않은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피심인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고 이용자가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실시 결과(불법음란 정보 송수신 제한 조치의 이행 결과 등)를 포함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통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104조(과태료) 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차 위반 과태료인 7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1])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용·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 제3항제1호	700	1,400	2,000

나. 과태료의 감경 및 가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은 ▲사업 종류 및 규모,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동기·내용,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및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 및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감경 및 가중하지 않는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2의3①	700만원	없음	없음	700만원
계				7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 위반에 대해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 결론**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2조(시정명령) 제1항 제1호, 제104조(과태료) 제3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월 29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석 진    (인)

위    원      허        육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김 창 룡    (인)

## 4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 위반 행위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 심의·의결

안건번호 제2020 - 06 - 037호

안 건 명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블루트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2길 17-7, 4층(논현동, 로그인빌딩)

의 결 일 2020. 1. 29.

### 주 문

1. 피심인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에 따라 이용자가 불법음란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실시 결과(불법음란정보 검색 제한 조치의 이행 결과 등)를 포함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 이 유

###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9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서 피심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bigfile.co.kr)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II. 현장점검 결과

#### 1. 점검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6~7월 전체 40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음란물 유통이 많은 등 문제가 의심되는 10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9년 8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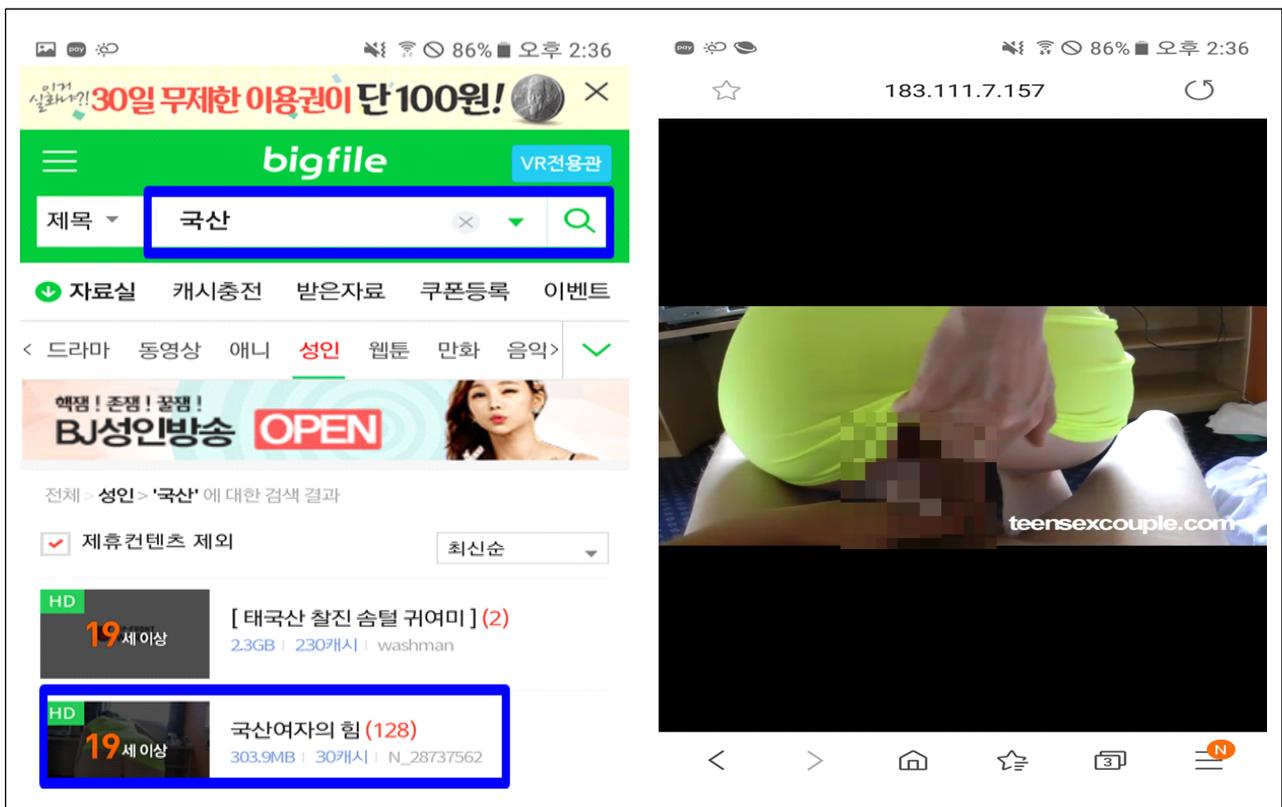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을 대상으로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에 대해 현장점검(2019. 8. 30.)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행위사실

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피심인의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음란정보의 검색 제한을 위한 금치어 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점검일(19.8.30.) 기준 모바일 사이트 일부 게시판에서 금치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음란정보가 검색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그림] 현장점검 시 채증화면(불법음란정보의 검색이 가능한 상태)



※ 모바일 사이트 검색창에 사업자 설정 금치어(국산)가 적용되지 않아 불법음란물이 검색됨(파란색)

### Ⅲ. 위법성 판단

#### 1. 관련법 규정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에서 기술적 조치에 해당하는 조치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3.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 2. 위법성 판단

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음란정보의 검색 제한을 위한 금칙어 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모바일 사이트의 일부 게시판에서 금칙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음란정보가 검색되도록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내용	법령 근거(「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시행령	세부 내용
(주)블루트리	기술적조치 미이행	§22의3① 2호	§30의3①	불법음란정보의 검색 제한 조치를 일부 게시판에 적용하지 않은 행위

## IV. 시정조치 명령

### 1. 시정명령

피심인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고 이용자가 검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실시 결과(불법음란

정보 검색 제한 조치의 이행 결과 등)를 포함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104조(과태료) 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여 1차 위반 과태료인 700만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1])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용·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 제3항제1호	700	1,400	2,000

#### 나. 과태료의 감경 및 가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11]은 ▲사업 종류 및 규모,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동기·내용,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및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 및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감경 및 가중하지 않는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2의3①	700만원	없음	없음	700만원
계				7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1항 위반에 대해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 결론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2조(시정명령) 제1항 제1호, 제104조(과태료) 제3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월 29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석 진   (인)

위원           허      욱   (인)

위원           표 철 수   (인)

위원           김 창 룡   (인)

### 3.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6.4)

#### 1. 개 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 6. 4.(목)에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의 거래조건을 현저하게 유리하게 차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을 위반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년 1월~'18년 12월 기간 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특정 중소방송사와 광고대행자에게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초과 금액을 특정 중소방송사에 차별 지원하였고, 특정 광고대행자에게 기 방송된 광고의 청약을 보너스 광고로 전환하고 요금을 면제하여 거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하는 등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중지,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3개월 내로 업무처리 개선 대책 수립, ▲이행결과보고 제출, ▲방송광고 결합/비결합판매 기준 마련과 비결합판매·보너스 광고 집행과 방송광고거래약관의 판매방식별 판매기간 개선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협의하여 KOBAnet 업무처리 절차 개선 권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였다.

## 2. 관련 사례

###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관련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6.4)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33 - 152호

안 건 명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의 결 일 2020. 6. 4.

#### 주 문

1.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거래 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거래 조건을 차별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처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의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내용을 자체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에게 방송광고 결합/비결합판매 기준을 마련하고 비결합판매·보너스 광고 집행과 방송광고거래약관의 판매방식별 판매기간 개선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협의하여 KOBAnet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6.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 액 : 3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1. 일반현황

피심인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랩법')에 의하여 2012년 5월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설립 되었으며, 미디어랩법 제20조에 따라 KBS·MBC에 청약된 방송광고를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중소방송사')와 결합판매 할 의무가 있다.

< 피심인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부서별 소관 중소방송사 현황 >

구분	소관 중소방송사
광고영업본부 영업1국(KBS)	(재)불교방송, (재)극동방송, (재)원음방송, (주)경인방송
광고영업본부 영업2국(MBC)	(재)기독교방송, (재)가톨릭평화방송, (주)경기방송, (주)와이티엔라디오, 서울시교통방송본부,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재)광주영어방송재단

## 2. 사실조사 결과

### 가. 조사대상

조사대상 기간('15.1.1. ~ '18.12.31.) 중 피심인이 특정 중소방송사와 광고대행자에게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나. 행위사실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의 전산자료 분석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1)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초과 금액 차별 지원

피심인이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는 11개 중소방송사의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는 2015년 496억원이었고, 2017년 344억원이었다. 피심인이 중소방송사에 지원한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초과 금액은 2015년 6,300만원이었고, 2017년 4억 3,100만원이었다.

피심인은 2015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초과 금액 6,300만원 중 경인방송에 6,100만원, 기독교방송과 극동방송에 각 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불교방송과 가톨릭평화방송 등 8개 중소방송사에는 지원하지 않았다.

피심인은 2017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초과 금액 4억 3,100만원 중 경인방송에 2억 5,800만원, 원음방송에 1억 6,500만원, 불교방송과 극동방송에 각 2백만원, 기독교방송·가톨릭평화방송·경기방송·와이티엔라디오에 각 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서울시교통방송본부 등 3개 중소방송사에는 지원하지 않았다.

피심인이 중소방송사에 지원한 최소 지원규모 초과 금액은 향후 5년간 결합판

때 최소 지원규모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피심인은 경인방송과 원음방송에 거래조건<sup>20)</sup>을 위반하여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초과 금액을 타 중소방송사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원하는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기 방송된 광고의 청약을 보너스 광고로 전환하여 요금 면제

피심인은 방송광고 종료 후 광고요금을 청약자로부터 수금해야 하며, 방송광고 청약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된 경우 광고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피심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청약 실적이 있는 약 450여개의 광고대행자 중 74개 광고대행자의 청약 11억 7,179만원을 보너스 광고<sup>21)</sup>로 전환하여 광고료를 면제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방송은 3억 7,310만원, 가톨릭평화방송은 1억 4,933만원 등 중소방송사의 광고판매 매출에 손실이 발생하였다.

피심인은 13개 광고대행자에게 전체 광고료 면제금액 11억 7,179만원의 82.3%인 9억 6,421만원을 면제하였다. 제일기획 2억 7,221만원, 에이치에스애드 2억 3,134만원, 이노션 1억 5,142만원 순으로 면제 금액이 많았다.

같은 기간 중소방송사의 전체 청약 금액 중 주요 광고대행자가 청약한 비율과 요금을 면제 받은 비율을 확인한 결과 제일기획은 청약이 13.5%이고 요금면제는 23.2%로 청약 대비 요금면제 비율이 172%이고, 에이치에스애드는 청약이 7.1%이고 요금면제는 19.7%로 청약 대비 요금면제 비율이 277%이며, 이노션은 청약이 7.1%이고 요금면제는 12.9%로 청약 대비 요금면제 비율이 181%였다.

이와 같이 특정 광고대행자의 청약 대비 요금면제 비율이 높은 것은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 방송된 광고의 요금을 면제하여 특정 광고대행자의 거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수량·품질·가격 등을 거래조건으로 정의

21) 방송광고 거래약관 상 계약 체결 규모가 결정된 후 가격할인 등의 목적으로 광고대행자 또는 광고주에게 청약 금액 외에 광고노출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는 판촉방법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법 규정

미디어랩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2] 1호 나목은 “광고판매대행자가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 미디어랩법 근거 조항 >

#####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①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별표 2

1. 가. 2)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거래조건(광고판매에 관한 이용약관 또는 계약에 따른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광고판매대행자가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방송광고판매대행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 특정 중소방송사에게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 초과 금액을 타 중소방송사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원하고, ▲ 특정 광고대행자에게 기 방송된 광고의 청약을 보너스 광고로 전환하고 요금을 면제하여 거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는 행위는 미디어랩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2] 1호 나목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4. 시정조치 명령

#####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 나. 업무처리 절차 개선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처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의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내용을 자체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과징금 부과

미디어랩법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별표3]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미디어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가. 과징금 부과 상한액

미디어랩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피심인의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은 5억원이다.

### 나. 기준금액

미디어랩법 시행령 제22조 [별표3] 과징금 부과기준의 '2. 위반행위 유형별 기준금액'에 의하면 과징금의 기준금액은 중대성 약함 1억원, 중대성 보통 2억원, 중대성 강함 3억원이다.

피심인의 경우 위반행위가 최초 적발된 점, 과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방송광고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 약함'으로 판단하였다.

### 다. 필수적 조정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최초 위반으로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은 없고, 위반행위 기간이 7개월 이상으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 라. 추가적 조정

피심인에게 추가적 가중 사유는 없다. 피심인이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 하였으므로 10%를 감경하고,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20%를 감경하며, 자율준수 프로그램 교육 및 중소방송사와 협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인정하여 10%를 감경하고, 2020년부터 방송광고 청약 중소방송사와 보너스 제공 중소방송사의 불일치를 개선하여 운영함에 따라 10%를 감경하는 등 총 50%를 감경한다.

### 마. 초과 감경

피심인의 연도별 당기순손익은 2016년 △77억원, 2017년 △114억원, 2018년 △

100억원으로 매년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매출액은 2016년 1,562억원, 2017년 1,273억원, 2018년 1,161억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변화된 미디어 환경과 지상파 방송광고시장의 어려운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30%를 초과 감경한다.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5조(추가적 조정)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가중·감경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최종 과징금은 기준금액 1억원에 필수적 조정으로 50%를 가중하고 추가적 감경 50%와 초과 감경 30%를 적용하여 3,000만원으로 결정한다.

**6. 결론**

피심인의 미디어랩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 4.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7.8)

### 1. 개 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 7. 8.(수)에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 원(SKT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하여 지급,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등 위법행위를 한 124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U+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일부이용자에게만 공시 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 등의 방식도 활용되었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되었다. 신규 가입자 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하였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하여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조사하게 되었으며,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하였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되었다.

## 2. 관련 사례

### 1 에스케이텔레콤(주)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7.8)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 - 40 - 189호  
(사건번호 : 201909조사091)

안 건 명 에스케이텔레콤(주)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에스케이텔레콤(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5(을지로2가)

의결연월일 2020. 7. 8.

##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련 유통점이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 다만 피심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2.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영업을 하면서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심인 관련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저가요금제, 고가요금제)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유도하는 행위(유통점에 가입유형별, 고가요금제 및 저가요금제별로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다만 피심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3.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유통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 물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x59.4cm)로 하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위 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i)온라인 불법적 게시물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ii)장려금 지시·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iii)온라인 매집점(성지점)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 전개, iv)전자청약시스템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22,3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I. 기초 사실

#### 1. 일반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이동전화 전체 보유가입자 수는 '19.12월말 기준 28,828천명이고, 매출액은 '19년도 기준 114,162억원이다.

< 이동전화서비스 보유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

구 분	가입자 수 (점유율, %)	매 출 액 (점유율, %)
피심인	28,282 (47.1%)	114,162 (48.0%)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알뜰폰(MVNO) 가입자 제외

#### 2. 이동통신시장 현황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19.4.1.~8.31)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가입자 수는 7,341천명이다.

조사대상 기간('19.4.1.~8.31) 중 피심인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가입자 수는 3,466천명이고, 가입유형별 신규 384천명, 번호이동 825천명, 기기변경 2,257천명이며, 영업채널별 판매점 1,535천명, 소매대리점 1,296천명, 기업대리점 228천명, 대형양판점 251천명, 전용온라인 155천명이었다.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19.4.1.~8.31) 중 이동통신 3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에 대한 피심인의 순증·증감 가입자 수는 순감 14,523명이었다.

#### 3. 조사경위

국내 5G 서비스 상용화('19.4.3)에 따라 이동통신사 및 유통점에서 5G 단말기에

대한 불·편법적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었고,

- ❶ (TV방송사) KBS, SBS, MBC, JTBC 등 : 5G 단말기 공짜폰 등 과열판매 지적
- ❷ (신문사) 중앙일보 등 여러 일간지 : 신도림, SNS 등 불법지원금 지급 등 지적
- 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5G폰 불법보조금 대량 살포 횡행' 법 위반 신고(4.9)

LG유플러스가 경쟁사(SKTEL·KT)에 대해 과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의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19.7.24)하였다.

'19.4.1.~8.31일 기간 중 피심인의 주력 단말기 판매에 대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5만원으로 높았고, 동 기간 중 피심인은 주간단위 집중 모니터링에 7회에 걸쳐 지정되었다.

**집중모니터링 지정 주간**이란 1주간 동안 장려금수준, 초과지원금 호가수준, 시장안정화 불이행 등을 일일단위로 모니터링 평가하여 관리기준 180점을 초과하면 다음 1주간을 시장을 더 안정화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주간을 말함

동 기간 중 시장과열로 인한 이동통신3사 임원간담회가 3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시장과열 우려에 따른 서면경고장이 피심인에게 2회 통보된 바 있다.

## II.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대상기간

'19. 4월부터 피심인이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되어온 점, 언론의 보도내용, LGU+의 신고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착수 시점(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 2. 조사대상

피심인의 '19.4.1.~8.31.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3,466,048명 중 i) 5대 영업채널 별, ii) 지역별(소매대리점 및 판매점) 균등 표본한 76개 유통점 가입자 85,714명 (2.5%)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 및 조사표본 현황 (단위 : 유통점수 개, 가입자 건) >

구 분	총가입자 수	조 사 표 본						판매점 수
		가입자수	가입자 비율	대리점 수				
				소매 영업	기업 영업	대형 양판	전용 온라인	
조사표본 현황	3,466,048	85,714	2.5%	17	2	3	1	53

※ 조사표본 가입자 수 : 판매점 영업채널을 제외한 4개 영업채널(대리점)에서는 실제 조사표본 수가 2.5%보다 더 많이 수집되었으나 2.5%로 다운 환산하여 반영

3. 행위사실

가.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19.4.~8월 기간 중 피심인의 이동통신 단말기 위탁판매 관련 76개 유통점 85,714명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76개 유통점에서 49,940명(위반율 58.2%, 유통점별 9.7%~100%)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하 “초과지원금”이라 칭함)이 평균 259,323원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 피심인의 초과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유통점수 개, 가입자 건, 금액 원) >

구 분	조사건수	초과지원금		초과지원금 평균 수준	위반율(%)
		유통점수	건수		
피심인	85,714	76	49,940	259,323	58.2%

\* 초과지원금 지급 형태 : 특정 유통점 중심으로 ①현금지급, ②해지위약금 대납 ③단말기 할부금 대납, ④사은품 지급, ⑤장려금 재원을 활용한 카드사 제휴할인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카드사 제휴할인 방식은 피심인과 개별 대리점(6개점) 간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확인

나.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피심인의 이동통신 단말기 위탁판매 관련으로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 지급한 76개 유통점 85,646건 중 76개 유통점 34,922건(위반율 40.7%, 유통점별 4.6%~99.2%)이 신규가입에 평균 114,029원, 번호이동에 366,716원, 기기변경에 412,477원의 초과지원금을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법 시행령 제3조) :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 가입유형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원) >

구 분	항목	합계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가입유형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내역	대상건수	85,646	4,993	18,702	61,951
	위반건수	34,922	948	10,499	23,475
	초과지급 지원금 평균	387,556	114,029	366,716	412,477

또한 51개 유통점 20,974건(전체 31.8%, 유통점별 6.2%~95.6%)에서는 요금제 간 합리적인 차별적 공시지원금을 넘어서 저가요금제(6만원 미만)에 평균 104,592 원, 고가요금제(6만원 이상)에 평균 368,090원의 초과지원금을 요금제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심인의 요금제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위반 현황 (단위 : 건, 원) >

구 분	항목	합계	저가요금제 (6만원 미만)	고가요금제 (6만원 이상)
요금제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내역	조사건수	65,890	24,434	41,456
	위반건수	20,974	4,102	16,872
	초과지급 지원금 평균	282,016	104,592	368,090

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피심인의 본사 및 지사(지역본부, 지점)에서 대리점·판매점에 지시한 영업정책 및 유통점 관리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특정 유통점(상권별 50개~500여개점)을 선별하여 특정 가입유형 및 고가요금제에 5~40만원의 추가 장려금 지급을 은밀히 지시하면서 “0원” 특판가 등의 판매조건, 실적 등을 상시 유도·관리하였다.

※ “장려금”이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의 위탁업무 협정에 따라 단말기 위탁판매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장려금 통보 방법으로 서면(방통위 권장), SNS, 구두·문자 등으로 지시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14.12.4일 전체회의에서 피심인 및 관련 유통점 관계자 진술에 근거하여 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로부터 장려금 30만원을 시장안정화의 기준선으로 권고해오고 있음

〈 피심인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SNS 문자 사례 〉

**A사 수도권본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OO영업팀이 선별한 서울OO 대리점에게 지시한 정책** (19.5.1) : LG V50 5G 단말기에 추가한 장려금(스탠다드 요금제 이상에 5~40만원)은 Net가가 “0원” 수준이므로 지시한 쿼터량(평일 쿼터 3건, 주말 쿼터 5건)을 100% 소진하도록 해당점 밀착관리 바랍니다.

〈 피심인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시·유도 주요 내역 (단위 : 건, 원) 〉

본사 및 지사의 유통점에 지시 주요내용
① 외곽상권 활성화, 꽃말, 팀가동 정책 등의 명목으로 특정 가입유형(5G는 기기변경 LTE는 MNP)에, 고가요금제(6만원 이상)에 11~30만원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 지시 및 일일 실적 독려
② JMP정책(지인 특판), 기업임직원 특판 등의 명목으로 고가요금제(6만원 이상)에 5~35만원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 지시
③ 유통점 일부만을 선별하여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고 불법 지원금 지급(“0원 판매” 등) 등을 통한 현장의 판매실적을 독려

피심인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정책의 결과로 76개 유통점 32,041건 (위반율 37.4%)에서 가입유형별로 39만원~59만원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따른 15만원~43만원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51개 유통점 17,049건(위반율 25.8%)에서 저가 및 고가요금제별로 40만원~55만원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따른 15만원~39만원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당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현황 (단위 : 개, 건, 만원) >

구 분		조사건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가입유형별 지원금/장려금			요금제별 지원금/장려금		위반율 %
			유통점수	건수	신규	MNP	기변	저가	고가	
부당 차별 유도 현황	가입유형	85,646	76	32,041	15/39	38/52	43/59	-	-	37.4
	요금제	65,890	51	17,049	-	-	-	15/40	39/55	25.8

< 피심인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시·유도 주요 사례 >

부당 차별 지원금 지시·유도 샘플 사례												
외곽상권 판매활성화 정책												
① 정책 적용대상 New 단말의 경우, OEM단말, 제조사 일반유통단말 등 당사 IMEI 등록번호, 개봉이력이 없는 ⑤ 선불 (당사 선불폰 포함) -> 당사 후불 번호이동 OR 전환건은 기본 지원금 해당분만 지급함 단말은 개통이력이 있는 중고폰, OMD 자가 해인 스마트폰 등은 제외												
모델명	스페셜 5GX프라임 (패밀리)			에센스 5GX스탠다드 (라지)			안심4G 슬림 (미디엄)			세이브 (스몰)		
	010	MNP	기변	010	MNP	기변	010	MNP	기변	010	MNP	기변
LM-X410S											120~150	
SM-J737S											120~150	
SM-G887N		30			110~140							
LM-G820N_128G		30			110~140							
LM-V409N_128GA		30			110~140							
LM-V500N_128G								220	80			
SM-N960N_128G		30			110~140							
SM-N960N_512GB		30			110~140							
SM-G960N_64G		30			110~140							
SM-G965N_64G		30			110~140							
SM-G965N_256G		30			110~140							
SM-G950N_64G		30			110~140							
SM-G955N_64G		30			110~140							
SM-G955N_128G		30			110~140							
SM-G970N_128G		30			110~140							
SM-G973N_128G		30			110~140							
SM-G973N_512G		30			110~140							
SM-G975N_128G		30			110~140							
SM-G975N_512G		30			110~140							
SM-G977N_256G								220	80			
SM-G977N_512G								220	80			
IPHONE7_32G		30			110~140							
IPHONE7_128G		30			110~140							
IPHONE7_256G		30			110~140							
IPHONE7+_32G		30			110~140							

JMP 정책												
① 정책 적용대상 "New 단말"의 정의 : OEM단말, 제조사 일반유통단말 등 당사 IMEI 등											④ 지급월이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정책 항목은 개통 익월 지급	
모델명	5GX 프라임 이상			5GX 스탠다드 이상			5GX 슬림 이상			1세대 단말(2.5G) 레귤러(4.2이상)		
	010	MNP	기변	010	MNP	기변	010	MNP	기변	010	MNP	기
SM-G977N_256G				300	300	300						
SM-G977N_512G				300	300	300						
LM-V500N_128G				300	300	300						
정책코드: [201907-수도권-무선-0030]											(VAT포함 / 단위)	
가. 적용 채널						나. 적용대상						
채널: 도매						코드: 1701						New단말
다. 가입 유형												
① 19미만요금제 가입: Y				② 다량형요금제(Band포함)&요금약정: Y				③ 온가족할인 가입: Y				
④ T갤럭시클럽S, 클럽T조기기변: N				⑤ 선택약정 포함				⑥ 데이터해제스키(Basic)가입건: N				

순번	신청일	팀명	대리점코드	대리점명	사이트	
					url	계시일
1	2019-07-03	일산	D15089	Orange	http://skt5gx.unies.com/	2019-07-04
2	2019-07-03	강북	D13751	리더스	http://www.wonilit.com/src/hbs/board.php?noent2.mn4	2019-07-10
3	2019-07-03	강북	D15176	ACE	www.unidia.co.kr/manager	2019-07-11
4	2019-07-03	강남	D13742	한유	https://www.hy.hanyugroup.co.kr	2019-07-05
	2019-07-03	강남	D13742	한유		
5	2019-07-03	강남	D15164	아이티모바일	http://webmail.hdprocctv.com/intro.php	2019-07-08
6	2019-07-08	강남	D15004	에스알	http://ep.spc.co.kr	2019-07-11
7	2019-07-08	강동	D14674	서울ent	file:WWW.Z.W.T.검무W19U7WJMPW진정서뷰저우ent2.mn4	2019-07-10
8	2019-07-09	강북	D14342	산청대리점	www.gw.k2outdoor.co.kr	2019-07-11
9	2019-07-10	중앙	D14192	한남	https://wels.lsworkplace.com	
10	2019-07-10	중앙	D14192	한남	Http://portal.hdc-dvp.com	
11	2019-07-10	중앙	D15151	프리스비대리점		2019-07-12

안녕하세요!  
오직 관용 일직일직 할인율과 가족 대상으로  
"온-특가" 행사를 진행합니다.  
온-특가가 다른 채널이 다른 가격으로 안내 드려오니  
최신 5GX 스마트폰을 구매시, 온-특가 혜택을 꼭 확인하시고, 온-특가가 다른 채널이 다른 가격으로 안내 드려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초(6)시대 생활이 됩니다

SKT 5G가 만드는 초시대의 세상.  
이제 우리의 생활이 됩니다.

5G를 지금 바로 내 손에!

단말기명	판매가	개통유형 (24개월)	통신사 지원금	연유 추가지원금	실구매가
Galaxy S10 5G	1,397,000	공시지원 (연월간)	630,000	617,000	150,000
	1,199,000	공시지원 (연월간)	610,000	589,000	0

■ 5G모델 010 판매가 비교 (소매채널)								
구분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갤S10 5G (256G)	V50 (128G)	갤S10 LTE (128G)	갤럭시노트9 (128G)	갤S10 5G (256G)	V50 (128G)	갤S10 LTE (128G)	갤럭시노트9 (128G)
요금제	스탠다드(75)	스탠다드(75)	라지 (69)	라지 (69)	스탠다드(75)	스탠다드(75)	라지 (69)	라지 (69)
판매가 ①	1,397,000	1,199,000	1,056,000	1,094,500	1,397,000	1,199,000	1,056,000	1,094,500
공시지원금 ②	425,000	510,000	137,000	136,000				
장려금	총계 ③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기본리베이트 5G 소매가동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기본 판매가 (①-②-③)	722,000	439,000	669,000	708,500	1,147,000	949,000	806,000	844,500
삼성제조사 Contest④	20,000				20,000			
제휴카드 ⑤	360,000	360,000	360,000	360,000				
Net가⑥(①-②-③-④-⑤)	342,000	79,000	309,000	348,500	1,127,000	949,000	806,000	844,500
유통망 마진⑦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1	150,000	150,000
고객 실구매가(⑥+⑦)	492,000	229,000	459,000	498,500	1,277,000	1,099,001	956,000	994,500
모델별 기변 ARPU	61,169		46,115	48,126	61,169		46,115	48,126

■ 5G모델 MNP 판매가 비교 (소매채널)								
구분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갤S10 5G (256G)	V50 (128G)	갤S10 LTE (128G)	갤럭시노트9 (128G)	갤S10 5G (256G)	V50 (128G)	갤S10 LTE (128G)	갤럭시노트9 (128G)
요금제	스탠다드(75)	스탠다드(75)	라지 (69)	라지 (69)	스탠다드(75)	스탠다드(75)	라지 (69)	라지 (69)
판매가 ①	1,397,000	1,199,000	1,056,000	1,094,500	1,397,000	1,199,000	1,056,000	1,094,500
공시지원금 ②	425,000	510,000	137,000	136,000				
장려금	총계 ③	370,000	450,000	300,000	300,000	370,000	450,000	300,000
	기본리베이트 5G 소매가동	370,000	450,000	300,000	300,000	370,000	450,000	300,000
기본 판매가 (①-②-③)	602,000	239,000	619,000	658,500	1,027,000	749,000	756,000	794,500

■ 5G모델 기변 판매가 비교 (소매채널)								
구분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갤S10 5G (256G)	V50 (128G)	갤S10 LTE (128G)	갤럭시노트9 (128G)	갤S10 5G (256G)	V50 (128G)	갤S10 LTE (128G)	갤럭시노트9 (128G)
요금제	스탠다드(75)	스탠다드(75)	라지 (69)	라지 (69)	스탠다드(75)	스탠다드(75)	라지 (69)	라지 (69)
판매가 ①	1,397,000	1,199,000	1,056,000	1,094,500	1,397,000	1,199,000	1,056,000	1,094,500
공시지원금 ②	425,000	510,000	137,000	136,000				
장려금	총계 ③	400,000	400,000	170,000	90,000	400,000	400,000	170,000
	기본리베이트 5G 소매가동	400,000	400,000	170,000	90,000	400,000	400,000	170,000
기본 판매가 (①-②-③)	572,000	289,000	749,000	868,500	997,000	799,000	886,000	1,004,500

### Ⅲ. 위법성 판단

#### 1. 관련법 규정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가. 유통점이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 사유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유통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

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에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2]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관련 유통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법 근거 조항 >

#####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 ◆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5조(과징금)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위법성 판단

### 가. 초과지원금 지급

조사 표본대상 76개 유통점이 다수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76개 유통점의 법 제4조제5항 위반 행위가 조사대상 유통점 모두에서 상당한 비율(58.2%)로 드러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지원금의 차별 지급

76개 유통점 및 51개 유통점이 각각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를 이유로 합리적인 차별적 공시지원금을 넘어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해당 유통점이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 제1항제1호·제2호를 위반한 것이고,

유통점의 법 제3조제1항 제1호·제2호 위반 행위가 조사대상 다수 유통점에서 위반행위(각각 40.7%, 31.8%)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피심인이 특정 유통점을 선별하고 그 선별된 유통점에 가입유형간, 요금제간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지시 하면서 판매조건, 실적 등을 상시 유도·관리하고, 그 결과 다수 유통점 및 이용자(각각 37.4%, 25.8%)에게서 가입유형간 및 요금제간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와 그 결과는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도한 것으로서 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IV. 시정조치 명령

### 1.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련 유통점이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 다만 피심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또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영업을 하면서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심인 관련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 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저가요금제, 고가요금제)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유도하는 행위(유통점에 가입유형별, 고가요금제 및 저가요금제별로 과도하게 차별적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다만 피심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 시정조치 명령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 공표문안 >

○○○(사업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의 관련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와 대리점·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각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0월 00일

○○○(사업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 3. 이용자의 신규모집금지 판단

피심인이 동일한 위법행위\*를 4회 반복한 점을 볼 때,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신규모집금지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하며, 그 동안의 신규모집금지에 대한 적용 또는 제외 사례 등을 토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조사이후 1개월 이상 시장과열, 3개월 이내 재발 우려 등 ‘신규모집금지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동일유형 위반행위 : i) 도매 및 온라인영업 제재(‘18.1.24), ii) 대형유통점영업 제재(‘18.1.24), iii) 온라인영업 제재(‘19.3.20)

〈 법 위반행위로 인한 신규모집금지 적용 기준 〉

1. 이동통신사업자의 동일한 위법행위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인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를 적용한다.
  - 가. 관련 유통점의 초과지원금 위반 행위(법 제4조제5항)가 관련시장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위반율 70% 이상) 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차별 유도 행위(법 제9조제3항)의 정도가 과다지원금 위반행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나. 사실조사 착수시점부터 심결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열 상황이 1개월 이상 나타난 경우
  - 다.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시정조치일(심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반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 "1의 가~다"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특정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주도한 경우 그 주도한 1개 사업자에게만 신규모집 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3. 위 1의 요건에 해당되어 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 적용 시기, 기간, 범위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 가.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신규모집 금지로 인해 그 침체를 더 가속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신규모집금지가 신규폰 구매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관련시장에 대한 신규모집 금지가 판매점 등 영세한 유통점 중심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i)매우중대한 위반행위, ii)조사이후 1개월 이상 시장과열, iii)3개월 이내 재발 우려 등 '신규모집금지 적용 기준'의 부과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심인이 iv)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을 지원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모집금지 부과를 제외하기로 한다.

4.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i)온라인 불법적 게시물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ii)장려금 지시·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iii)온라인 매집점(성지점)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 전개, iv)전자청약시스템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V. 과징금 부과

피심인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와 피심인 관련 유통점이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의해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1. 기준금액

#### 가. 과징금 부과 상한액

피심인 및 피심인의 관련 유통점의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2/100가 부과 상한액으로서(법 제15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제1호 가목),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209,700,000천원(천만원 이하 생략)이다.

#### 나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의 '19.4.1.~8.31.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심인의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 이라 한다)은 1,538,586,714천원이다.

피심인의 관련매출액 : 위반가입자수(2,017,239명) × 평균가입기간(25.3개월) × 가입자당월 평균수익(30,147원) = 1,538,586,714,564원

피심인의 위반행위 등에 따른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규정에 따라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판단요소로서 i)지원금 초과 지급 위반율, ii)부당 차별지원금 위반율, iii)부당 차별유도 위반율을 고려하고 시장에 미친 영향 정도 판단 요소로서 iv)변동가입자 점유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부과기준율 2% 이상 3% 미만)"로 판단하고 2.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 피심인의 시장에 미친 영향 판단요소 : '19.4.1~8.31. 기간 중 전체 이통시장 변동 가입자 304,350명 중 119,433명으로 점유율 39.2%에 해당함

지난 2018년도 심결('18.1.24)에서 피심인 및 KT가 관련매출액 산정시 적용된 초과 지원금 위반율만으로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을 판단할 경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방통위가 이를 수용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소로 '변동 가입자 점유율'을 함께 고려한 바 있음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 중대성 정도 판단시 고려사항 >**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중대성의 정도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본질적 또는 장기적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2】 : 부과기준율 >

증대성의 정도	관련매출액 산정 가능시 부과기준율	객관적 관련매출액 산정 곤란시 부과기준금액
매우중대한 위반행위	3% 이상 4% 이하	6억원 초과 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 이상 3% 미만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증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 이상 2% 미만	3억원 이하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금액은 위 관련매출액(1,538,586,714천원)에 2.2%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33,848,907천원이다.

2. 필수적 가중금액 산정

관련 법령 및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의 4회 횡수부터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이 4회째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33,848,907천원)의 20%를 가중하고 이에 따른 피심인의 필수적 가중을 거친 과징금은 40,618,688천원이다.

3. 추가적 감경금액 산정

추가적 감경은 관련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부적으로 i)관련 유통점에 법 자율준수제도 등을 운영한 경우 10% 이내, ii)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20% 이내, iii)위반행위의 재발방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0%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법 자율준수제도 운영의 경우 피심인이 조사대상 기간 중 '핀셋형 자율모니터링' 제도를 도입('18.12)하여 관련 유통점을 관리감독 및 교육시정 등의 법 자율준수활동 실적이 인정되어 10%를 감경한다.

〈 피심인의 '19.4.1~8.31일 중 법 자율준수 활동〉

구 분		법 자율준수 활동 실적 내용
법 자율 준수 활동	불·편법 실가입 감시	97건
	상황반 운영	이통3사 공통 팀장급 31회, 실무자급 129회
	사전승낙 관리강화	이통3사 공통 1)철회 19건, 2)일시중지 90건, 3)경고 338건
	자율정화반 운영	이통3사 공통 1) 계도완료 453건 / 2) 점검 1,110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력의 경우 피심인의 본부·지점에서 요구자료를 가감 없이 원활하게 제출한 점, 장려금 상권별 차별화 정책 자료를 자진하여 제출한 점,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응대한 점, 관련 전속 대리점 상당수에서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를 감경한다.

〈 피심인 및 관련 유통점의 조사협력 현황〉

구 분		조사에 협력 내용
조사 협력	이통사(본부·지점)	① 요구자료를 가감 없이 원활하게 제출 ② 장려금 상권별 차별화 정책자료를 자진하여 제출 ③ 조사과정에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응대한 점
	대리점 개수(23개)	조사에 자진 협조 11개 대리점

재발방지조치의 경우 피심인이 아래와 같이 제출한 '장려금 지시·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4가지 대책의 실효성이 인정되므로 25%를 감경한다.

〈 피심인의 재발방지 조치사항 내역〉

주요 조치사항		3사 공통 조치 여부
재발 방지 조치	① 온라인 불법적 게시물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3사 공통
	② 장려금 지시·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③ 온라인 매집점(성지점)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 전개	"
	④ 전자청약시스템 확대	단독

#### 4. 최종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20%) 및 추가적 감경(45%) 사유를 종합하여 피심인에 대한 최종 과징금은 22,300,000천원(천만원 이하 절사)이다.

#### VI. 형사고발 판단

피심인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 제20조(벌칙) 및 제21조(양벌규정)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형사고발(3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이 가능하나, 유사사례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18.9.17) 및 법률자문 결과를 고려하고, 위반행위가 매우중대에 해당할 정도로 현저하지 않고, 다수 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우려도 없으므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 VII 결론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원      허      욱      (인)

위원      안      형      환      (인)

위원      김      창      룡      (인)

## 2 (주)케이티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7.8)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전번호 제2020 - 40 - 190호  
(사건번호 : 201909조사092)

안 건 명 주식회사 케이티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1층

의결연월일 2020. 7. 8.

###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련 유통점이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 다만 피심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2.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영업을 하면서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심인 관련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저가요금제, 고가요금제)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유도하는 행위(유통점에 가입유형별, 고가요금제 및 저가요금제별로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다만 피심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3.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유통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 물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x59.4cm)로 하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i)온라인 불법적 게시물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ii)장려금 지시·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iii)온라인 매집점(성지점)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 전개, iv)전사 영업관리 구조(조직)별 별점제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15,4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I. 기초 사실

#### 1. 일반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이동전화 전체 보유가입자 수는 '19.12월말 기준 18,150천명이고, 매출액은 '19년도 기준 68,588억원이다.

< 이동전화서비스 보유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

구 분	가입자 수 (점유율, %)	매 출 액 (점유율, %)
피심인	18,150 (29.7%)	68,588 (28.8%)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알뜰폰(MVNO) 가입자 제외

#### 2. 이동통신시장 현황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19.4.1.~8.31)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가입자 수는 7,341천명이다.

조사대상 기간('19.4.1.~8.31) 중 피심인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가입자 수는 2,137천명이고, 가입유형별 신규 158천명, 번호이동 541천명, 기기변경 1,438천명이며, 영업채널별 판매점 802천명, 소매대리점 919천명, 기업대리점 138천명, 대형양판점 138천명, 전용온라인 140천명이었다.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19.4.1.~8.31) 중 이동통신 3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에 대한 피심인의 순증·증감 가입자 수는 순감 8,452명이었다.

#### 3. 조사경위

국내 5G 서비스 상용화('19.4.3)에 따라 이동통신사 및 유통점에서 5G 단말기에 대한 불편법적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었고,

- ❶ (TV방송사) KBS, SBS, MBC, JTBC 등 : 5G 단말기 공짜폰 등 과열판매 지적
- ❷ (신문사) 중앙일보 등 여러 일간지 : 신도림, SNS 등 불법지원금 지급 등 지적
- 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5G폰 불법보조금 대량 살포 횡행' 법 위반 신고(4.9)

LG유플러스가 경쟁사(SKT·KT)에 대해 과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의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19.7.24)하였다.

'19.4.1.~8.31일 기간 중 피심인의 주력 단말기 판매에 대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2.5만원으로 높았고, 동 기간 중 피심인은 주간단위 집중 모니터링에 8회에 걸쳐 지정되었다.

**집중모니터링 지정 주간**이란 1주간 동안 장려금수준, 초과지원금 호가수준, 시장안정화 불이행 등을 일일단위로 모니터링 평가하여 관리기준 180점을 초과하면 다음 1주간을 시장을 더 안정화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주간을 말함

동 기간 중 시장과열로 인한 이동통신3사 임원간담회가 3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시장과열 우려에 따른 서면경고장이 피심인에게 2회 통보된 바 있다.

## II.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대상기간

'19. 4월부터 피심인이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되어온 점, 언론의 보도내용, LGU+의 신고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착수 시점(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 2. 조사대상

피심인의 '19.4.1.~8.31.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2,136,872명 중 i) 5대 영업채널 별, ii) 지역별(소매대리점 및 판매점) 균등 표본한 78개 유통점 가입자 52,698명 (2.5%)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 < 조사대상 및 조사표본 현황 (단위 : 유통점수 개, 가입자 건) >

구 분	총가입자 수	조 사 표 본						판매점 수
		가입자수	가입자 비율	대리점 수				
				소매 영업	기업 영업	대형 양판	전용 온라인	
조사표본 현황	2,136,872	52,698	2.5%	17	2	3	1	55

※ 조사표본 가입자 수 : 판매점 영업채널을 제외한 4개 영업채널(대리점)에서는 실제 조사표본 수가 2.5%보다 더 많이 수집되었으나 2.5%로 다운 환산하여 반영

### 3. 행위사실

#### 가.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19.4.~8월 기간 중 피심인의 이동통신 단말기 위탁판매 관련 78개 유통점 52,698명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78개 유통점에서 32,265명(위반율 61.2%, 유통점별 13.0%~100%)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하 “초과지원금” 이라 칭함)이 평균 206,733원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 피심인의 초과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유통점수 개, 가입자 건, 금액 원) >

구 분	조사건수	초과지원금		초과지원금 평균 수준	위반율(%)
		유통점수	건수		
피심인	52,698	78	32,265	206,733	61.2%

\* 초과지원금 지급 형태 : 특정 유통점 중심으로 ①현금지급, ②해지위약금 대납 ③단말기 할부금 대납, ④사은품 지급, ⑤장려금 재원을 활용한 카드사 제휴할인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카드사제휴할인 방식은 피심인과 개별 대리점(1개점) 간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확인

#### 나.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피심인의 이동통신 단말기 위탁판매 관련으로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 지급한 78개 유통점 52,683건 중 78개 유통점 19,551건(위반율 37.0%, 유통점별 3.5%~99.2%)이 신규가입에 평균 175,910원, 번호이동에 281,038원, 기기변경에 336,773원의 초과지원금을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법 시행령 제3조) :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 가입유형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원) >

구 분	항목	합계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가입유형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내역	대상건수	52,683	4,842	14,084	33,757
	위반건수	19,551	1,264	5,919	12,368
	초과지급 지원금 평균	301,124	175,910	281,038	336,773

또한 51개 유통점 15,207건(전체 37.0%, 유통점별 3.5%~95.6%)에서는 요금제 간 합리적인 차별적 공시지원금을 넘어서 저가요금제(6만원 미만)에 평균 51,783원, 고가요금제(6만원 이상)에 평균 351,029원의 초과지원금을 요금제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심인의 요금제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위반 현황 (단위 : 건, 원) 〉

구분	항목	합계	저가요금제 (6만원 미만)	고가요금제 (6만원 이상)
요금제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내역	조사건수	40,998	14,711	26,287
	위반건수	15,207	4,175	11,032
	초과지급 지원금 평균	208,956	51,783	351,029

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피심인의 본사 및 지사(지역본부, 지점)에서 대리점·판매점에 지시한 영업정책 및 유통점 관리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특정 유통점(상권별 50개~500여개점)을 선별하여 특정 가입유형 및 고가요금제에 5~40만원의 추가 장려금 지급을 은밀히 지시하면서 “0원” 특판가 등의 판매조건, 실적 등을 상시 유도·관리하였다.

※ “장려금”이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의 위탁업무 협정에 따라 단말기 위탁판매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장려금 통보 방법으로 서면(방통위 권장), SNS, 구두·문자 등으로 지시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14.12.4일 전체회의에서 피심인 및 관련 유통점 관계자 진술에 근거하여 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로부터 장려금 30만원을 시장안정화의 기준선으로 권고해오고 있음

〈 피심인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지사유도 SNS 문자 사례 (단위 : 건, 원) 〉

**B사 수도권본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OO영업팀이 선별한 서울OO 대리점에게 지시한 정책** ('19.8.19) : 19일 OO 교통비 지급내역 1) 버스/우버 5G 전환 및 MNP에 40만원(TO 7건), LTE MNP 10만원(TO 5건), 2) 타다/쏘카 5G 전환신규 첫 건 한정 40만원 교통비 드립니다.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실적 거양 부탁드립니다.

< 피심인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시·유도 주요 내역 (단위 : 건, 원) >

본사 및 지사의 유통점에 지시 주요내용	
①	알파벳, 교통비, 패밀리 정책 등 명목으로 특정 가입유형(5G는 기기변경 및 MNP, LTE는 MNP)에, 고가요금제(6만원 이상)에 10~40만원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 지시 및 일일 실적 독려
②	Hi-Five 정책 명목으로 삼성 5G 단말기 고가요금제(6만원 이상)에 55만원 이상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 지시 및 "개통시 할부금 감면" 조건 부여
③	유통점 일부만을 선별하고 판매 건수를 한정(2~10건)하여 10~40만원의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고 불법 지원금 지급("0원 판매" 등) 등을 통한 현장의 판매실적을 독려

피심인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정책의 결과로 78개 유통점 15,937건(위반율 30.2%)에서 가입유형별로 42만원~58만원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따른 32만원~41만원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50개 유통점 10,932건(위반율 26.6%)에서 저가 및 고가요금제별로 36만원~53만원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따른 11만원~39만원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당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현황 (단위 : 개, 건, 만원) >

구분	조사건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가입유형별 지원금/장려금			요금제별 지원금/장려금		위반율 %	
		유통점수	건수	신규	MNP	기변	저가	고가		
부당 차별 유도 현황	가입유형	52,683	78	15,937	32/42	36/50	41/58	-	-	30.2
	요금제	40,998	50	10,932	-	-	-	11/36	39/53	26.6

< 피심인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시·유도 주요 사례 >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시·유도 주요 샘플사례 (단위 : 건, 원)																																																																					
■ 5G 단가표 (패밀리정책)																																																																					
시너지 접점코드로 개통 必																																																																					
스페셜 (100,000원)	구분				공시지원금																																																																
	제조사	단말기명	팻네임	출고가	공시지원	지원금	고객 단말부담금																																																														
	삼성	SM-G977NK	갤럭시 S10 5G 256G	1,397,000	700,000	650,000	47,000																																																														
	삼성	SM-G977NK512	갤럭시 S10 5G 512G	1,430,000	700,000	650,000	80,000																																																														
	LG	LM-V500NK	V50 ThinQ	1,199,000	650,000	650,000	101,000																																																														
베이직 (80,000원)	구분				유형: 공시지원금 기준																																																																
	제조사	단말기명	팻네임	출고가	공시지원	지원금	고객 단말부담금																																																														
	삼성	SM-G977NK	갤럭시 S10 5G 256G	1,397,000	610,000	600,000	187,000																																																														
	삼성	SM-G977NK512	갤럭시 S10 5G 512G	1,430,000	610,000	600,000	220,000																																																														
	LG	LM-V500NK	V50 ThinQ	1,199,000	570,000	600,000	29,000																																																														
매장명		행정동명		세부 주소																																																																	
스카이드림_화랑대역점 (주)펜타CA_광나루역점		공릉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89-																																																																	
멀티모바일서비스_건대역점		광장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80 현대																																																																	
멀티모바일서비스_구의사거리점		구의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																																																																	
(주)티티존_강변테크노마트점		구의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52-																																																																	
(주)펜타CA_군자역점		군자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3동 546-																																																																	
가온커뮤니케이션_신금호 1호점		금호동2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가온커뮤니케이션_신금호 2호점		금호동2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1번지 신																																																																	
(주)펜타CA_금호점		금호동4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																																																																	
올웨이 노려전		노려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7월10일 알파벳]				[19일 강북 교통비 지급 내역]																																																																	
1. A 5G 전환신규 30, MNP 30 / LTE MNP 5 - TO: 5G 5건/LTE 3건				1. 버스/우버 - 5G 전환/MNP 모두 40(10 7) - LET MNP 10(10 5)																																																																	
2. B 동일 5G 첫거래 20				2. 타다/쏘카 - 5G 전환신규 첫건 한정 40																																																																	
상기와 같이 운영 공지 드립니다.				교통비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실적 거양 부탁 드립니다.																																																																	
<p><b>제목:</b> [공지] 노트10 Hi-Five URL 및 무선설계표</p> <p><b>From:</b> 백상윤(영업기획팀)</p> <p><b>Sent:</b> 2019-08-13 오후 5:09:10</p> <p><b>Subject:</b> [공지] 노트10 Hi-Five URL 및 무선설계표</p> <p><b>To:</b> 광진지사</p> <p>이 메시지가 아카이브되었습니다. 원본 항목 보기</p> <p>안녕하세요, 영업기획팀입니다.</p> <p>노트 10 무선설계표 및 멀티모바일 Hi-Five 점수 URL 공지 드립니다.</p> <p>※ Hi-Five(쿠폰인식) URL 카페에 공지 완료</p> <p>☺ 쿠폰인식 포인트(30 만) : 익월 말 별도급여계좌로 청산</p> <p>☺ 대리점 정책(25 만) : 익월 말 대리점을 통해 청산 or 개통 시 선수납</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Galaxy S10</th> <th colspan="2">갤S10 256GB (5G 베이직)</th> <th colspan="2">갤S10 512GB (5G 베이직)</th> </tr> <tr> <th>단말할인</th> <th>요금할인</th> <th>단말할인</th> <th>요금할인</th> </tr> </thead> <tbody> <tr> <td>출고가</td> <td colspan="2">1,397,000원</td> <td colspan="2">1,430,000원</td> </tr> <tr> <td>개통가</td> <td>237,000원</td> <td>847,000원</td> <td>270,000원</td> <td>880,000원</td> </tr> <tr> <td rowspan="3">혜택 상세</td> <td>공시 (개통시)</td> <td>610,000원</td> <td>공시 (개통시)</td> <td>610,000원</td> </tr> <tr> <td>요금할인</td> <td>(24개월간 총) 480,000원</td> <td>요금할인</td> <td>(24개월간 총) 480,000원</td> </tr> <tr> <td>추가 지원</td> <td>550,000원 (Hi-Five 30 + 지사 25)</td> <td>추가 지원</td> <td>550,000원 (Hi-Five 30 + 지사 25)</td> </tr> <tr> <td>합계</td> <td>1,160,000원</td> <td>1,030,000원</td> <td>합계</td> <td>1,160,000원</td> </tr> <tr> <td colspan="5">                     저렴한 할부원금을 중시하는 고객 → 단말할인                      (고요금제를 쓰며 연간 총 할인액을 중시하는 고객 → 요금할인)                 </td> </tr> <tr> <td colspan="5">청구금액</td> </tr> <tr> <td>기본료</td> <td>80,000원</td> <td>60,000원 (요금할인 25% 적용)</td> <td>기본료</td> <td>80,000원</td> </tr> <tr> <td>원금+이자</td> <td>10,493원</td> <td>37,501원</td> <td>원금+이자</td> <td>11,954원</td> </tr> <tr> <td>최종 월 청구금액</td> <td>90,493원</td> <td>97,501원</td> <td>최종 월 청구금액</td> <td>91,954원</td> </tr> </tbody> </table>								Galaxy S10	갤S10 256GB (5G 베이직)		갤S10 512GB (5G 베이직)		단말할인	요금할인	단말할인	요금할인	출고가	1,397,000원		1,430,000원		개통가	237,000원	847,000원	270,000원	880,000원	혜택 상세	공시 (개통시)	610,000원	공시 (개통시)	610,000원	요금할인	(24개월간 총) 480,000원	요금할인	(24개월간 총) 480,000원	추가 지원	550,000원 (Hi-Five 30 + 지사 25)	추가 지원	550,000원 (Hi-Five 30 + 지사 25)	합계	1,160,000원	1,030,000원	합계	1,160,000원	저렴한 할부원금을 중시하는 고객 → 단말할인 (고요금제를 쓰며 연간 총 할인액을 중시하는 고객 → 요금할인)					청구금액					기본료	80,000원	60,000원 (요금할인 25% 적용)	기본료	80,000원	원금+이자	10,493원	37,501원	원금+이자	11,954원	최종 월 청구금액	90,493원	97,501원	최종 월 청구금액	91,954원
Galaxy S10	갤S10 256GB (5G 베이직)		갤S10 512GB (5G 베이직)																																																																		
	단말할인	요금할인	단말할인	요금할인																																																																	
출고가	1,397,000원		1,430,000원																																																																		
개통가	237,000원	847,000원	270,000원	880,000원																																																																	
혜택 상세	공시 (개통시)	610,000원	공시 (개통시)	610,000원																																																																	
	요금할인	(24개월간 총) 480,000원	요금할인	(24개월간 총) 480,000원																																																																	
	추가 지원	550,000원 (Hi-Five 30 + 지사 25)	추가 지원	550,000원 (Hi-Five 30 + 지사 25)																																																																	
합계	1,160,000원	1,030,000원	합계	1,160,000원																																																																	
저렴한 할부원금을 중시하는 고객 → 단말할인 (고요금제를 쓰며 연간 총 할인액을 중시하는 고객 → 요금할인)																																																																					
청구금액																																																																					
기본료	80,000원	60,000원 (요금할인 25% 적용)	기본료	80,000원																																																																	
원금+이자	10,493원	37,501원	원금+이자	11,954원																																																																	
최종 월 청구금액	90,493원	97,501원	최종 월 청구금액	91,954원																																																																	

### III. 위법성 판단

#### 1. 관련법 규정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가. 유통점이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 사유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유통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

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에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2]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관련 유통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법 근거 조항 >

#####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 ◆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5조(과징금)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위법성 판단

### 가. 초과지원금 지급

조사 표본대상 78개 유통점이 다수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78개 유통점의 법 제4조제5항 위반 행위가 조사대상 유통점 모두에서 상당한 비율(61.2%)로 드러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지원금의 차별 지급

78개 유통점 및 51개 유통점이 각각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를 이유로 합리적인 차별적 공시지원금을 넘어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해당 유통점이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 제1항제1호·제2호를 위반한 것이고,

유통점의 법 제3조제1항 제1호·제2호 위반 행위가 조사대상 다수 유통점에서 위반행위(각각 37.1%, 37.0%)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피심인이 특정 유통점을 선별하고 그 선별된 유통점에 가입유형간, 요금제간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지시 하면서 판매조건, 실적 등을 상시 유도·관리하고, 그 결과 다수 유통점 및 이용자(각각 30.2%, 26.6%)에게서 가입유형간 및 요금제간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와 그 결과는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도한 것으로서 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IV. 시정조치 명령

### 1.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련 유통점이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 다만 피심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또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영업을 하면서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심인 관련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저가요금제, 고가요금제)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유도하는 행위(유통점에 가입유형별, 고가요금제 및 저가요금제별로 과도하게 차별적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다만 피심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 시정조치 명령 "제1항"의 시정명령

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x59.4cm)로 하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사업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의 관련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와 대리점·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각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0월 00일

○○○(사업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 3. 이용자의 신규모집금지 판단

피심인이 동일한 위법행위\*를 4회 반복한 점을 볼 때,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신규모집금지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동안의 신규모집금지에 대한 적용 또는 제외 사례 등을 토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조사이후 1개월 이상 시장과열, 3개월 이내 재발 우려 등 ‘신규모집금지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동일유형 위반행위 : i) 도매 및 온라인영업 제재(‘18.1.24), ii) 대형유통점영업 제재(‘18.1.24), iii) 온라인영업 제재(‘19.3.20)

〈 법 위반행위로 인한 신규모집금지 적용 기준 〉

1. 이동통신사업자의 동일한 위법행위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인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를 적용한다.
  - 가. 관련 유통점의 초과지원금 위반 행위(법 제4조제5항)가 관련시장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위반율 70% 이상) 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차별 유도 행위(법 제9조제3항)의 정도가 과다지원금 위반행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나. 사실조사 착수시점부터 심결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열 상황이 1개월 이상 나타난 경우
  - 다.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시정조치일(심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반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 "1의 가~다"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특정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주도한 경우 그 주도한 1개 사업자에게만 신규모집 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3. 위 1의 요건에 해당되어 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 적용 시기, 기간, 범위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 가.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신규모집 금지로 인해 그 침체를 더 가속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신규모집금지가 신규폰 구매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관련시장에 대한 신규모집 금지가 판매점 등 영세한 유통점 중심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i)매우중대한 위반행위, ii)조사이후 1개월 이상 시장과열, iii)3개월 이내 재발 우려 등 '신규모집금지 적용 기준'의 부과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심인이 iv)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을 지원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모집금지 부과를 제외하기로 한다.

4.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위반행위의 재

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i)온라인 불법적 게시물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ii)장려금 지시·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iii)온라인 매집점(성지점)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 전개, iv)전사 영업관리 구조(조직)별 별점제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제4항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피심인이 제출한 조치의 이행계획에 표시된 이행기간을 말한다.

## V. 과징금 부과

피심인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와 피심인 관련 유통점이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의해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1. 기준금액

#### 가. 과징금 부과 상한액

피심인 및 피심인의 관련 유통점의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2/100가 부과 상한액으로서(법 제15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제1호 가목),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123,600,000천원(천만원 이하 생략)이다.

#### 나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의 '19.4.1.~8.31.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심인의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은 1,172,663,067천원이다.

피심인의 관련매출액 : 위반가입자수(1,307,765명) × 평균가입기간(27.5개월) × 가입자당월 평균수익(30,607원) = 1,172,663,067,262원

피심인의 위반행위 등에 따른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규정에 따라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판단요소로서 i)지원금 초과 지급 위반율, ii)부당 차별지원금 위반율, iii)부당 차별유도 위반율을 고려하고 시장에 미친 영향 정도 판단 요소로서 iv)변동가입자 점유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부과기준율 2% 이상 3% 미만)"로 판단하고 2.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 피심인의 시장에 미친 영향 판단요소 : '19.4.1.~8.31. 기간 중 전체 이통시장 변동 가입자 304,350명 중 86,631명으로 점유율 28.5%에 해당함

지난 2018년도 심결('18.1.24)에서 피심인 및 SKT가 관련매출액 산정시 적용된 초과지원금 위반율만으로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을 판단할 경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방통위가 이를 수용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소로 '변동가입자 점유율'을 함께 고려한 바 있음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 중대성 정도 판단시 고려사항 >**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중대성의 정도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본질적 또는 장기적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2】 : 부과기준을 >

중대성의 정도	관련매출액 산정 가능시 부과기준율	객관적 관련매출액 산정 곤란시 부과기준금액
매우중대한 위반행위	3% 이상 4% 이하	6억원 초과 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 이상 3% 미만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 이상 2% 미만	3억원 이하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금액은 위 관련매출액(1,172,663,067천원)에 2.0%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23,453,261천원이다.

2. 필수적 가중금액 산정

관련 법령 및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의 4회 횡수부터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이 4회째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23,453,261천원)의 20%를 가중하고 이에 따른 피심인의 필수적 가중을 거친 과징금은 28,143,913천원이다.

3. 추가적 감경금액 산정

추가적 감경은 관련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부적으로 i)관련 유통점에 법 자율준수제도 등을 운영한 경우 10% 이내, ii)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20% 이내, iii)위반행위의 재발방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0%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법 자율준수제도 운영의 경우 피심인이 조사대상 기간 중 '핀셋형 자율모니터링' 제도를 도입('18.12)하여 관련 유통점을 관리감독 및 교육시정 등의 법 자율준수활동 실적이 인정되어 10%를 감경한다.

〈 피심인의 '19.4.1~8.31일 중 법 자율준수 활동〉

구 분		법 자율준수 활동 실적 내용
법 자율 준수 활동	불·편법 실가입 감시	89건
	상황반 운영	이통3사 공통 팀장급 31회, 실무자급 129회
	사전승낙 관리강화	이통3사 공통 1)철회 19건, 2)일시중지 90건, 3)경고 338건
	자율정화반 운영	이통3사 공통 1) 계도완료 453건 / 2) 점검 1,110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력의 경우 피심인의 본부·지점에서 요구자료를 가감 없이 원활하게 제출한 점, 장려금 상권별 차별화 정책 자료를 자진하여 제출한 점,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응대한 점, 관련 전속 대리점 상당수에서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를 감경한다.

〈 피심인 및 관련 유통점의 조사협력 현황〉

구 분		조사에 협력 내용
조사 협력	이통사(본부·지점)	① 요구자료를 가감 없이 원활하게 제출 ② 장려금 상권별 차별화 정책자료를 자진하여 제출 ③ 조사과정에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응대한 점
	대리점 개수(23개)	조사에 자진 협조 12개 대리점

재발방지조치의 경우 피심인이 아래와 같이 제출한 '장려금 지시·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4가지 대책의 실효성이 인정되므로 25%를 감경한다.

〈 피심인의 재발방지 조치사항 내역〉

주요 조치사항		3사 공통 조치 여부
재발 방지 조치	① 온라인 불법적 게시물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3사 공통
	② 장려금 지시·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③ 온라인 매집점(성지점)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 전개	〃
	④ 전사 영업관리 구조(조직)별 별점에 운영	단독

#### 4. 최종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20%) 및 추가적 감경(45%) 사유를 종합하여 피심인에 대한 최종 과징금은 15,400,000천원(천만원 이하 절사)이다.

#### VI. 형사고발 판단

피심인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 제20조(벌칙) 및 제21조(양벌규정)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형사고발(3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이 가능하나, 유사사례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18.9.17) 및 법률자문 결과를 고려하고, 위반행위가 매우중대에 해당할 정도로 현저하지 않고, 다수 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우려도 없으므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 VII 결론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원      허      욱      (인)

위원      안 형 환      (인)

위원      김 창 룡      (인)

**3** (주)엘지유플러스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7.8)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 - 40 - 191호

(사건번호 : 201909조사093)

안 건 명 (주)엘지유플러스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엘지유플러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의결연월일 2020. 7. 8.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련 유통점이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 다만 피심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2.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영업을 하면서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심인 관련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저가요금제, 고가요금제)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유도하는 행위(유통점에 가입유형별, 고가요금제 및 저가요금제별로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다만 피심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3.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유통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 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x59.4cm)로 하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위 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i)온라인 불법적 게시물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ii)장려금 지시·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iii)온라인 매집점(성지점)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 전개, iv)영업채널간 월경·치팅 차단 모니터링 및 온라인 전문 대리점제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13,50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I. 기초 사실

#### 1. 일반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이동전화 전체 보유가입자 수는 '19.12월말 기준 14,164천명이고, 매출액은 '19년도 기준 55,168억원이다.

< 이동전화서비스 보유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

구 분	가입자 수 (점유율, %)	매 출 액 (점유율, %)
피심인	14,164 (23.2%)	55,168 (23.2%)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알뜰폰(MVNO) 가입자 제외

#### 2. 이동통신시장 현황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19.4.1.~8.31)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가입자 수는 7,341천명이다.

조사대상 기간('19.4.1.~8.31) 중 피심인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가입자 수는 1,739천명이고, 가입유형별 신규 281천명, 번호이동 524천명, 기기변경 933천명이며, 영업채널별 판매점 680천명, 소매대리점 771천명, 기업대리점 91천명, 대형양판점 96천명, 전용온라인 100천명이었다.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19.4.1.~8.31) 중 이동통신 3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에 대한 피심인의 순증·증감 가입자 수는 순증 22,975명이었다.

### 3. 조사경위

국내 5G 서비스 상용화('19.4.3)에 따라 이동통신사 및 유통점에서 5G 단말기에 대한 불·편법적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었고,

- ① (TV방송사) KBS, SBS, MBC, JTBC 등 : 5G 단말기 공짜폰 등 과열판매 지적
- ② (신문사) 중앙일보 등 여러 일간지 : 신도림, SNS 등 불법지원금 지급 등 지적
- ③ (소비자주권시민회의) '5G폰 불법보조금 대량 살포 횡행' 법 위반 신고(4.9)

LG유플러스가 경쟁사(SKTEL·KT)에 대해 과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의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19.7.24)하였다.

'19.4.1.~8.31일 기간 중 피심인의 주력 단말기 판매에 대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4만원으로 높았고, 동 기간 중 피심인은 주간단위 집중 모니터링에 8회에 걸쳐 지정되었다.

**집중모니터링 지정 주간**이란 1주간 동안 장려금수준, 초과지원금 호가수준, 시장안정화 불이행 등을 일일단위로 모니터링 평가하여 관리기준 180점을 초과하면 다음 1주간을 시장을 더 안정화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주간을 말함

동 기간 중 시장과열로 인한 이동통신3사 임원간담회가 3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시장과열 우려에 따른 서면경고장이 피심인에게 5회 통보된 바 있다.

## II.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대상기간

'19. 4월부터 피심인이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되어온 점, 언론의 보도내용, LGU+의 신고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착수 시점(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 2. 조사대상

피심인의 '19.4.1.~8.31.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1,738,517명 중 i) 5대 영업채널 별, ii) 지역별(소매대리점 및 판매점) 균등 표본한 77개 유통점 가입자 43,658명 (2.5%)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 < 조사대상 및 조사표본 현황 (단위 : 유통점수 개, 가입자 건) >

구 분	총가입자 수	조 사 표 본						판매점 수
		가입자수	가입자 비율	대리점 수				
				소매 영업	기업 영업	대형 양판	전용 온라인	
조사표본 현황	1,738,517	43,658	2.5%	17	2	3	1	54

※ 조사표본 가입자 수 : 판매점 영업채널을 제외한 4개 영업채널(대리점)에서는 실제 조사표본 수가 2.5%보다 더 많이 수집되었으나 2.5%로 다운 환산하여 반영

## 3. 행위사실

### 가.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19.4.~8월 기간 중 피심인의 이동통신 단말기 위탁판매 관련 77개 유통점 43,658명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77개 유통점에서 26,342명(위반율 60.3%, 유통점별 8.6%~100%)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하 “초과지원금” 이라 칭함)이 평균 272,317원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 < 피심인의 초과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유통점수 개, 가입자 건, 금액 원) >

구 분	조사건수	초과지원금		초과지원금 평균 수준	위반율(%)
		유통점수	건수		
피심인	43,658	77	26,342	272,317	60.3

\* 초과지원금 지급 형태 : 특정 유통점 중심으로 ①현금지급, ②해지위약금 대납 ③단말기 할부금 대납, ④사은품 지급, ⑤장려금 재원을 활용한 카드사 제휴할인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카드사 제휴할인 방식은 피심인과 개별 대리점(8개점) 간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확인

나.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피심인의 이동통신 단말기 위탁판매 관련으로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 지급한 77개 유통점 43,521건 중 77개 유통점 19,000건(위반율 43.6%, 유통점별 2.8%~99.2%)이 신규가입에 평균 180,206원, 번호이동에 426,991원, 기기변경에 387,880원의 초과지원금을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법 시행령 제3조) :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 가입유형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원) >

구 분	항목	합계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가입유형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내역	대상건수	43,521	4,865	16,467	22,189
	위반건수	19,000	2,086	9,300	7,614
	초과지급 지원금 평균	357,370	180,206	426,991	387,880

또한 51개 유통점 12,437건(전체 34.1%, 유통점별 4.3%~95.6%)에서는 요금제 간 합리적인 차별적 공시지원금을 넘어서 저가요금제(6만원 미만)에 평균 71,321원, 고가요금제(6만원 이상)에 평균 386,226원의 초과지원금을 요금제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심인의 요금제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위반 현황 (단위 : 건, 원) >

구 분	항목	합계	저가요금제 (6만원 미만)	고가요금제 (6만원 이상)
요금제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내역	조사건수	36,418	8,573	27,845
	위반건수	12,437	2,413	10,024
	초과지급 지원금 평균	312,513	71,321	386,226

### 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피심인의 본사 및 지사(지역본부, 지점)에서 대리점·판매점에 지시한 영업정책 및 유통점 관리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특정 유통점(상권별 50개~500여개점)을 선별하여 특정 가입유형 및 고가요금제에 5~40만원의 추가 장려금 지급을 은밀히 지시하면서 “0원” 특판가 등의 판매조건, 실적 등을 상시 유도·관리하였다.

※ “장려금”이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의 위탁업무 협정에 따라 단말기 위탁판매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장려금 통보 방법으로 서면(방통위 권장), SNS, 구두·문자 등으로 지시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14.12.4일 전체회의에서 피심인 및 관련 유통점 관계자 진술에 근거하여 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로부터 장려금 30만원을 시장안정화의 기준선으로 권고해오고 있음

#### < 피심인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SNS 문자 사례 >

**C사 동부지역본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OO도매영업팀이 경남 OO대리점에게 지시한 특정상권 장려금 추가정책('19.7.11) :** 갤럭시10 5G는 재가입 및 MNP에 37~42만원, LG-V500 5G는 재가입에 42만원, LTE 기종은 신규 및 MNP에 15~20만원(당일 TO 10건)의 장려금을 OO개통처 반경 2Km이내에서 첫콜 발생 개통시 지급(외국인은 미적용, 정책지상 요금제에 한함). 금일 곧 정책 축소될 예정이니 빠른 개통 부탁드립니다.

#### < 피심인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시·유도 주요 내용 및 샘플사례 (단위 : 건, 원) >

본사 및 지사의 유통점에 지시 주요내용
① 상권공략, 엘에스, 피코드 정책 등 명목으로 일부 판매점을 선별(TO)하여 특정 가입유형(5G는 MNP 및 기기변경, LTE는 신규 및 MNP)에, 10~40만원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 지시 및 일일 실적 독려
② 파트너판매점 지원정책을 전국 대리점에 지시하면서 선별된 판매점에 고가요금제(6만원 이상)를 60% 이상 모집 조건으로 10~30만원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 지시 및 주변 판매점으로부터 실적 몰아주기 용인·관리

피심인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정책의 결과로 77개 유통점 16,562건 (위반율 38.0%)에서 가입유형별로 49만원~60만원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따른 22만원~43만원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50개 유통점 10,052건(위반율 27.6%)에서 저가 및 고가요금제별로 40만원~58만원의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따른 12만원~40만원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당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현황 (단위 : 개, 건, 만원) >

구 분	조사건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가입유형별 지원금/장려금			요금제별 지원금/장려금		위반율(%)	
		유통점수	건수	신규	MNP	기변	저가	고가		
부당 차별 유도 현황	가입유형	43,521	77	16,562	22/49	43/55	41/60	-	-	38.0
	요금제	36,418	50	10,052	-	-	-	12/40	40/58	27.6

< 피심인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시·유도 주요 사례 >

부당 차별 지원금 지시·유도 사례	
사건번호/사건명칭 : 이동3사 및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에 대한 건	
1. 진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 [redacted]</li> <li>○ 생년월일 : [redacted] 28</li> <li>○ 전화번호 : 010 8080 [redacted]</li> </ul>
2. 진술일시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li> <li>○ 조사 시작시간/종료시간 : LGU+ 용산본사 / 2019. 12. 18</li> <li>○ 장소 :</li> </ul>
3. 진술 내용 및 확인자의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GU+는 저가 장려금 정책의 변동으로 구유정액의 내내인입금</li> <li>· 저가 TD(국가장려금+고급형의 가입자)를 유고 추가장려금 수시로 변화하며, 저가 장려금 대비 10~15만원 추가지급</li> <li>- 영입정액링 ⇒ 영입추진링 ⇒ 로밍리퍼링으로 구유정액함.</li> </ul> </li> <li>- TD 대상 판매자는 도매자격을 확보해 외출부터 영입정액링에 제한하며, 영입정액링은 취입 시 신뢰를 해당 판매자가 판매 이익자를 취입할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대리인에게 수속료를 지급하고</li> <li>- 구유로 인해 TD를 저가인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지</li> <li>○ 진술 확인자 의견 : 대응하며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임.</li> </ul>

### 부당 차별 지원금 지시·유도 사례

#### 1. 도매대리점 "파트너 판매점" 지원 제도

6월 적용예정

채널	도매대리점
목적	홍 중심 가구단위 판매, <b>고가치 고객 유치</b> 스킴 전파를 통한 판매점 수익증대 및 자사 친화적 판매점 육성
기간	'19년 5월 1일 - 별도 공지 시 까지
대상	1. 담보 (1천만원 이상/외곽상권은 5백만원) 입보 판매점 2. 영업사원 그룹핑 완료된 판매점 <sup>1)</sup> 3. <b>MPS 반경 2Km 넘어가는 실적의 20% 초과 시 2km 초과 전체 건 미지급</b>
정책내용	판매점 실적 규모별 건당 금액 차등 적용
실적기준	1. 정책모델 (2nd Device 모델 0.5건으로 산정/지급) / 무약정, 중고, PPS 제외 2. 신규(O10,MNP), 기번 / '지원무약정 중 데이터 2배 무약정 프로그램 가입 건'
고가치 인정조건	1. <b>고가치 최소기준 미달성시 건당 금액 하향 적용됨 (66건) 이상 80% 이상</b> 2. 동시판매 인정 기준: TV DPS 이상 / 인터넷 당월 개통 ↳ 인터넷 재약정(동시판매) 건은 0.5건 인정 / 소호상품은 인터넷(동시판매) 단품도 인정 ↳ 외국인 상권 내 판매점은 인터넷(동시판매) 단품 인정 ↳ 단 소호상품 개통 건 중 판매점 설치 건은 동시판매 실적 제외 3. 대명 2구좌 유치 또는 제휴카드 더블 2건 유치 시, 동시판매 1건으로 대체 인정 ↳ 제휴카드 더블은 1개 가입번호에 2개의 제휴카드가 등록되어 있을 시 1건으로 산정 ↳ 대명 실적은 <b>당월 출금 완료</b> 기준 / 제휴카드 더블은 <b>당월 개통 당일 승인(전산 등록 완료)</b> 기준 4. <b>70건 초과시 요금제 비중은 총 실적이 Max 상한건수를 초과 해도 적용됨 ex) 총판매 150건 개통시 661요금제 90건 이상개통해야 함</b> 5. <b>70건 초과 시 고가치 최소기준 미 충족시 MAX 상한 건수는 70건으로 하향됨</b>
기타	1. 원거리 상권 내 판매점은 제휴카드 2건을 동시판매 1건으로 인정 2. 금액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90일 (유치일 포함 91일) 이내 661 요금제 하향 시 건당 금액 환수

※집단상가 판매점은 전월 집단상가 실적 50건 이상 발생 대리점에 한하여 파트너 판매점 지원제도 적용  
- 신도림/강변 각각 50건 이상 발생 대리점  
- 실적 조건 및 실적 발생 기간 추후 상향 예정  
ex) A대리점 5월 신도림 60건, 강변 40건 실적 발생 시,  
- 6월 신도림 거래점 파트너점 지원제도 적용  
- 6월 강변 거래점 파트너점 지원제도 미적용

[단위: 원, VAT포함]

#### 상권공략정책 공지(7/17 10시 이후~)

★LTE 판매활성화★  
모델1 : A305N,A505N,X420,X625,Y110  
금액 : MNP 100,000원  
010신규 100,000원  
  
모델2 : N960(노트9)  
금액 : MNP 100,000원  
010신규 100,000원  
  
★5G판매활성화★  
모델 : S10 5G  
금액 : 기번 350,000원  
MNP 350,000원  
  
모델 : V50  
금액 : 기번 350,000원  
MNP 350,000원  
  
다른포스에서개통해야되니 개통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사장님!!

#### #정책공지(7/18일 10시이후~)

[LTE]  
모델 : A305N,A505N,X420,X625,Y110,  
금액 : MNP 130,000  
010 130,000  
  
[LTE]모델 : SM-N960N  
금액 : MNP 220,000  
  
[5G]  
S10 5G : 기번 380,000  
MNP 380,000  
  
V50 : 기번 380,000

8월24일 이후 개통분 (8-48차)				5G 스매싱 / 스탠다드 추격대 78 / 69				5G 라이트 추격대 59 데이터 스매싱 A/6.B				
모델명(LTE모형)	모델명2	판매가	채고	78	69	신규	MNP	재가입	59	신규	MNP	재가입
A2097-64	마미존 XS_646	1,364,000		6.4	7.4	40	48	13	6.4	40	30	8
A2097-256	마미존 XS_2566	1,562,000		6.4	7.4	40	48	13	6.4	40	30	8
A2097-512	마미존 XS_5126	1,815,000		6.4	7.4	40	48	13	6.4	40	30	8
A2101-64	마미존 XS_MAX_646	1,496,000		6.4	7.4	40	48	13	6.4	40	30	8
A2101-256	마미존 XS_MAX_2566	1,705,000		6.4	7.4	40	48	13	6.4	40	30	8
A2101-512	마미존 XS_MAX_5126	1,959,000		6.4	7.4	40	48	13	6.4	40	30	8
A2105-64	마미존 XR_646	890,000		6.4	6.4	40	48	13	29.1	40	30	8
A2105-128	마미존 XR_1286	1,056,000		6.4	6.4	40	48	13	31.7	40	30	8
A1905-64	마미존 8_646	946,000	문외	6.4	7.4	14	17	13	6.4	12	13	8
A1278-128	마미존 7_1286	699,600		35.0	35.0	35	48	13	30.0	35	30	8
SM-N971N	갤럭시 노트 10	1,248,500		40.0	38.0	5	30	10	28.0	3	30	10
SM-N976N	갤럭시 노트 10+	1,397,000		40.0	38.0	5	30	10	28.0	3	30	10
SM-N976NS12	갤럭시 노트 10+ 512	1,496,000		40.0	38.0	5	30	10	28.0	3	30	10
SM-8977N	갤럭시 S10 56	1,397,000		61.5	54.3	3	40	3	40.0	3	35	3
SM-8977NS12	갤럭시 S10 512 56	1,430,000		61.5	54.3	3	40	3	40.0	3	35	3
SM-8970N	갤럭시 S10e	699,600		15.9	14.1	20	52	13	12.1	20	15	8
SM-8973N	갤럭시 S10	1,056,000		40.0	40.0	42	52	13	34.3	42	30	8
SM-8973NS12	갤럭시 S10 5126	1,296,000		41.0	41.0	42	52	13	43.8	42	30	8
SM-8975N	갤럭시 S10+	1,195,000		40.0	40.0	42	52	13	34.3	42	30	8
SM-8975NS12	갤럭시 S10+ 5126	1,397,000		41.0	41.0	42	52	13	43.8	42	30	8
SM-N960N	갤럭시 노트 9	995,500		50.0	50.0	15	30	13	47.0	15	13	5
SM-N960NS12	갤럭시 노트 9 5126	1,155,000		50.0	50.0	15	30	18	47.0	15	13	13
SM-8960N	갤럭시 S9	859,000		40.0	40.0	20	20	18	34.3	20	13	12
SM-8965N256	갤럭시 S9+ 2566	1,078,000		40.0	40.0	20	20	20	36.0	20	10	16
SM-8955N	갤럭시 S8+	899,600		35.0	35.0	20	20	13	47.1	18	10	6
SM-8955N128	갤럭시 S8+ 1286	996,600		36.0	36.0	20	20	13	48.5	18	10	6
SM-8887N	A9 PRO	599,500		12.5	12.5	18	17	15	11.1	16	13	8
SM-A750N	A7 2018	499,400		13.5	12.5	18	13	15	11.9	16	10	8
SM-A600N	A6	346,500		12.5	12.5	20	20	13	12.2	20	15	9
SM-A505N	A50	473,000		12.5	12.5	33	35	15	11.3	33	30	8
SM-A305N	A30	349,600		12.5	12.5	37	38	13	11.3	37	33	8
SM-J600L	J6 2018	330,000		33.0	33.0	20	20	15	30.0	20	17	8
SM-J415N	J4+	264,000		22.1	22.1	39	40	13	22.1	39	34	8
SM-J415N-KA	키카오리얼 프렌즈	299,200		22.1	22.1	36	37	15	22.1	36	32	8
SM-J415N-8R	키카오리얼 프렌즈	299,200		22.1	22.1	36	37	15	22.1	36	32	8
SM-J330L	J3 2017	244,200		20.9	20.9	15	10	15	20.9	15	8	8
SM-8160N32	갤럭시 존더 2 326	253,000		12.5	12.5	6	4	10	11.3	6	0	6
LM-V500N	V50 56	1,190,000		61.5	54.3	3	45	3	40.0	3	40	3
L8H-V300L	V300	799,700		40.1	40.1	15	50	20	35.9	15	14	13
LM-8820N	68	697,600		50.0	50.0	31	60	20	42.8	31	47	13
LM-8710N	67	696,700		55.1	55.1	22	50	25	49.5	18	13	15

### III. 위법성 판단

#### 1. 관련법 규정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에서

가. 유통점이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 사유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유통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

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에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2]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관련 유통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법 근거 조항 >

#####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 ◆ 제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5조(과징금)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위법성 판단

### 가. 초과지원금 지급

조사 표본대상 77개 유통점이 다수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77개 유통점의 법 제4조제5항 위반 행위가 조사대상 유통점 모두에서 상당한 비율(60.3%)로 드러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지원금의 차별 지급

77개 유통점 및 50개 유통점이 각각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를 이유로 합리적인 차별적 공시지원금을 넘어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해당 유통점이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 제1항제1호·제2호를 위반한 것이고,

유통점의 법 제3조제1항 제1호·제2호 위반 행위가 조사대상 다수 유통점에서 위반행위(각각 43.6%, 34.1%)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피심인이 특정 유통점을 선별하고 그 선별된 유통점에 가입유형간, 요금제간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지시 하면서 판매조건, 실적 등을 상시 유도·관리하고, 그 결과 다수 유통점 및 이용자(각각 38.0%, 27.6%)에게서 가입유형간 및 요금제간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와 그 결과는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도한 것으로서 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IV. 시정조치 명령

### 1.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련 유통점이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 다만 피심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또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영업을 하면서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심인 관련 유통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저가요금제, 고가요금제)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유도하는 행위(유통점에 가입유형별, 고가요금제 및 저가요금제별로 과도하게 차별적 높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포함)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다만 피심인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 시정조치 명령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피심인의 홈페이지 및 공식 온라인몰에 팝업 창으로 4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x59.4cm)로 하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 공표문안 >

○○○(사업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의 관련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와 대리점·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각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0월 00일

○○○(사업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 3. 이용자의 신규모집금지 판단

피심인이 동일한 위법행위\*를 4회 반복한 점을 볼 때,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신규모집금지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동안의 신규모집금지에 대한 적용 또는 제외 사례 등을 토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조사이후 1개월 이상 시장과열, 3개월 이내 재발 우려 등 ‘신규모집금지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동일유형 위반행위 : i) 도매 및 온라인영업 제재('18.1.24), ii) 대형유통점영업 제재('18.1.24), iii) 온라인영업 제재('19.3.20)

〈 법 위반행위로 인한 신규모집금지 적용 기준 〉

1. 이동통신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인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를 적용한다.
  - 가. 관련 유통점의 초과지원금 위반 행위(법 제4조제5항)가 관련시장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위반율 70% 이상) 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차별 유도 행위(법 제9조제3항)의 정도가 과다지원금 위반행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나. 사실조사 착수시점부터 심결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열 상황이 1개월 이상 나타난 경우
  - 다. 법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시정조치일(심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반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 "1의 가~다"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특정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주도한 경우 그 주도한 1개 사업자에게만 신규모집 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3. 위 1의 요건에 해당되어 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 적용 시기, 기간, 범위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 가.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신규모집 금지로 인해 그 침체를 더 가속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신규모집금지가 신규폰 구매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관련시장에 대한 신규모집 금지가 판매점 등 영세한 유통점 중심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i)매우중대한 위반행위, ii)조사이후 1개월 이상 시장과열, iii)3개월 이내 재발 우려 등 '신규모집금지 적용 기준'의 부과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심인이 iv)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을 지원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모집금지 부과를 제외하기로 한다.

#### 4.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1항,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 i)온라인 불법적 게시물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ii)장려금 지시·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iii)온라인 매집점(성지점)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 전개, iv)영업채널간 월경·치팅 차단 모니터링 및 온라인 전문 대리점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V. 과징금 부과

피심인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와 피심인 관련 유통점이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의해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6과징금을 부과한다.

#### 1. 기준금액

##### 가. 과징금 부과 상한액

피심인 및 피심인의 관련 유통점의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2/100가 부과 상한액으로서(법 제15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제1호 가목),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101,700,000천원(천만원 이하 생략)이다.

### 나 기준금액 산정

피심인의 '19.4.1.~8.31.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심인의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 이라 한다)은 933,531,945천 원이다.

피심인의 관련매출액 : 위반가입자수(1,048,325명) × 평균가입기간(25.4개월) × 가입자당월 평균수익(35,059원) = 933,531,944,845원

피심인의 위반행위 등에 따른 중대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규정에 따라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판단요소로서 i)지원금 초과 지급 위반율, ii)부당 차별지원금 위반율, iii)부당 차별유도 위반율을 고려하고 시장에 미친 영향 정도 판단 요소로서 iv)변동가입자 점유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부과기준율 2% 이상 3% 미만)"로 판단하고 2.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 피심인의 시장에 미친 영향 판단요소 : '19.4.1.~8.31. 기간 중 전체 이통시장 변동 가입자 304,350명 중 98,286명으로 점유율 32.3%에 해당함

지난 2018년도 심결('18.1.24)에서 SKT 및 KT가 관련매출액 산정시 적용된 초과 지원금 위반율만으로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을 판단할 경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방통위가 이를 수용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소로 '변동가입자 점유율'을 함께 고려한 바 있음

###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 중대성 정도 판단시 고려사항 >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서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중대성의 정도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본질적 또는 장기적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1, 2】 : 부과기준율 >

중대성의 정도	관련매출액 산정 가능시 부과기준율	객관적 관련매출액 산정 곤란시 부과기준금액
매우중대한 위반행위	3% 이상 4% 이하	6억원 초과 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 이상 3% 미만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 이상 2% 미만	3억원 이하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금액은 위 관련매출액(933,531,945천원)에 2.2%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20,537,702천원이다.

2. 필수적 가중금액 산정

관련 법령 및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의 4회 횡수부터 기준금액의 20%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이 4회째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기준금액(20,537,702천원)의 20%를 가중하고 이에 따른 피심인의 필수적 가중을 거친 과징금은 24,645,242천원이다.

3. 추가적 감경금액 산정

추가적 감경은 관련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부적으로 i)관련 유통점에 법 자율준수제도 등을 운영한 경우 10% 이내, ii)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20% 이내, iii)위반행위의 재발방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0%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법 자율준수제도 운영의 경우 피심인이 조사대상 기간 중 '핀셋형 자율모니터링' 제도를 도입('18.12)하여 관련 유통점을 관리감독 및 교육·시정 등의 법 자율준수활동 실적이 인정되어 10%를 감경한다.

〈 피심인의 '19.4.1~8.31일 중 법 자율준수 활동〉

구 분		법 자율준수 활동 실적 내용
법 자율 준수 활동	불·편법 실가입 감시	99건
	상황반 운영	이통3사 공통 팀장급 31회, 실무자급 129회
	사전승낙 관리강화	이통3사 공통 1)철회 19건, 2)일시중지 90건, 3)경고 338건
	자율정화반 운영	이통3사 공통 1) 계도완료 453건 / 2) 점검 1,110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력의 경우 피심인의 본부·지점에서 요구자료를 가감 없이 원활하게 제출한 점, 장려금 상권별 차별화 정책 자료를 자진하여 제출한 점,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응대한 점, 관련 전속 대리점 상당수에서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10%를 감경한다.

〈 피심인 및 관련 유통점의 조사협력 현황〉

구 분		조사에 협력 내용
조사 협력	이통사(본부·지점)	① 요구자료를 가감 없이 원활하게 제출 ② 장려금 상권별 차별화 정책자료를 자진하여 제출 ③ 조사과정에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응대한 점
	대리점 개수(23개)	조사에 자진 협조 11개 대리점

재발방지조치의 경우 피심인이 아래와 같이 제출한 '장려금 지시·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4가지 대책의 실효성이 인정되므로 25%를 감경한다.

〈 피심인의 재발방지 조치사항 내역〉

주요 조치사항		3사 공통 조치 여부
재발 방지 조치	① 온라인 불법적 게시물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3사 공통
	② 장려금 지시·서식의 표준화 및 집행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③ 온라인 매집점(성지점)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 전개	"
	④ 영업채널간 월경·치팅 차단 모니터링 및 온라인 전문 대리점제 운영	단독

#### 4. 최종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20%) 및 추가적 감경(45%) 사유를 종합하여 피심인에 대한 최종 과징금은 13,500,000천원(천만원 이하 절사)이다.

#### VI. 형사고발 판단

피심인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 제20조(벌칙) 및 제21조(양벌규정)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형사고발(3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이 가능하나, 유사사례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18.9.17) 및 법률자문 결과를 고려하고, 위반행위가 매우중대에 해당할 정도로 현저하지 않고, 다수 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우려도 없으므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 VII 결론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원      허      욱      (인)

위원      안 형 환      (인)

위원      김 창 룡      (인)

## 4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7.8)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 - 40 - 192호  
(사건번호 : 201909조사094)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0. 7. 8.

####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3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1. 조사 경위

#### 가. 조사배경

국내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19.4.3) 이후 이동통신 3개사 및 관련 유통점에서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고 엘지유플러스에서 경쟁사(SKT·KT)가 과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1만원으로 높아 시장과 열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므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19.9.16~'20.1.15)를 실시하게 되었다.

### 2. 사실조사 결과

####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대형·도매·소매·법인·온라인 등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으로 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언론의 보도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착수 시점('20.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 나.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단말기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법 규정

법 제3조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같은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1항을,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시정조치 명령

#####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 5.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세번째에 해당하여 3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1회 '18.1.24. 의결, 2회 '19.3.20. 의결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1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 한다.

**나. 두 개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판단**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그 금액인 3,0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추가적 가중 및 감경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다만, 조사 직전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바,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3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30,000,000원에 20%를 가중한 금액(+6,000,000원)을 합산한 36,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원           허       욱   (인)

위원           안       형   환   (인)

위원           김       창   룡   (인)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 - 40 - 193호(사건번호 : 201909조사095~097)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0. 7. 8.

### 주 문

1. 피심인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금 액 : 1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1. 조사 경위

#### 가. 조사배경

국내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19.4.3) 이후 이동통신 3개사 및 관련 유통점에서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고 엘지유플러스에서 경쟁사(SKT·KT)가 과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1만원으로 높아 시장과 열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므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19.9.16~'20.1.15)를 실시하게 되었다.

### 2. 사실조사 결과

####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대형·도매·소매·법인·온라인 등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으로 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언론의 보도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착수 시점('20.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 나.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들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단말기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법 규정

법 제3조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같은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들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1항을,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시정조치 명령

####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 5. 과태료 부과

피심인들의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두번째에 해당하여 2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1회 : '19.3.20. 의결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 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1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 한다.

나. 두 개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판단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그 금액인 1,5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추가적 가중 및 감경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다만, 조사 직전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바,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2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5,000,000원에 20%를 가중한 금액(+3,000,000원)을 합산한 18,000,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 6. 결론

상기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들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원           허       욱   (인)

위원           안       형   환   (인)

위원           김       창   룡   (인)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 - 40 - 194호(사건번호 : 201909조사98)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0. 7. 8.

###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1. 조사 경위

#### 가. 조사배경

국내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19.4.3) 이후 이동통신 3개사 및 관련 유통점에서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고 엘지유플러스에서 경쟁사(SKT·KT)가 과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1만원으로 높아 시장과 열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므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19.9.16~'20.1.15)를 실시하게 되었다.

### 2. 사실조사 결과

####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대형·도매·소매·법인·온라인 등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으로 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언론의 보도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착수 시점('20.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 나.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단말기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법 규정

법 제3조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같은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1항을,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시정조치 명령

####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5.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1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 한다.

나. 두 개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판단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그 금액인 5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추가적 가중 및 감경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를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가중한다.

다만, 조사 직전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바,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5,000,000원에 30%를 가중한 금액(+1,500,000원) 및 30%를 감경한 금액(-1,500,000원)을 합산한 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원           허       욱   (인)

위원           안 형 환   (인)

위원           김 창 룡   (인)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 - 40 - 195 (사건번호 : 201909조사099)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0. 7. 8.

###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포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이때 공포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4,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1. 조사 경위

#### 가. 조사배경

국내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19.4.3) 이후 이동통신 3개사 및 관련 유통점에서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고 엘지유플러스에서 경쟁사(SKT·KT)가 과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1만원으로 높아 시장과 열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므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19.9.16~'20.1.15)를 실시하게 되었다.

### 2. 사실조사 결과

####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대형·도매·소매·법인·온라인 등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으로 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언론의 보도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착수 시점('20.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 나.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단말기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법 규정

법 제3조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같은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1항을,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시정조치 명령

#####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 5.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두번째에 해당하여 2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1회 : '18.1.24. 의결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1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나. 두 개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판단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그 금액인 3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추가적 가중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2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3,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1,500,000원)을 합산한 4,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원           허    욱   (인)

위원           안 형 환   (인)

위원           김 창 룡   (인)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 - 40 - 196호(사건번호 : 201909조사100)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0. 7. 8.

###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1. 조사 경위

#### 가. 조사배경

국내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19.4.3) 이후 이동통신 3개사 및 관련 유통점에 서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고 엘지유플러스에서 경쟁사(SKT·KT)가 과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1만원으로 높아 시장과 열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므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 ('19.9.16~'20.1.15)를 실시하게 되었다.

### 2. 사실조사 결과

####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대형·도매·소매·법인·온라인 등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으로 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언론의 보도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착수 시점('20.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 나.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단말기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법 규정

법 제3조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같은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1항을,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시정조치 명령

#####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 5.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두번째에 해당하여 2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1회 : '18.1.24. 의결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 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1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나. 두 개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판단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그 금액인 3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추가적 가중 및 감경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다만, 조사 직전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바,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2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3,000,000원에 20%를 가중한 금액(+600,000원)을 합산한 3,600,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원           허    욱   (인)

위원           안 형 환   (인)

위원           김 창 룡   (인)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 - 40 - 197호(사건번호 : 201909조사101~102)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0. 7. 8.

### 주 문

1. 피심인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금 액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1. 조사 경위

#### 가. 조사배경

국내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19.4.3) 이후 이동통신 3개사 및 관련 유통점에서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고 엘지유플러스에서 경쟁사(SKT·KT)가 과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1만원으로 높아 시장과 열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므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19.9.16~'20.1.15)를 실시하게 되었다.

### 2. 사실조사 결과

####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대형·도매·소매·법인·온라인 등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으로 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언론의 보도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착수 시점('20.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 나.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들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단말기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각 부여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법 규정

법 제3조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같은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들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1항을,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시정조치 명령

#####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가입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월 0일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 5. 과태료 부과

피심인들의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두번째에 해당하여 2회 위반 과태료를 각 적용한다.

※ 1회 : '18.1.24. 의결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1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나. 두 개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판단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그 금액인 300만원을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추가적 가중 및 감경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다만, 조사 직전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2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3,000,000원에 20%를 가중한 금액(+600,000원)을 합산한 3,600,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 6. 결론

상기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들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원           허      욱   (인)

위원           안 형 환   (인)

위원           김 창 룡   (인)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 - 40 - 198호(사건번호 : 201909조사103)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0. 7. 8.

###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1. 조사 경위

#### 가. 조사배경

국내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19.4.3) 이후 이동통신 3개사 및 관련 유통점에 서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고 엘지유플러스에서 경쟁사(SKTEL·KT)가 과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1만원으로 높아 시장과 열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므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 ('19.9.16~'20.1.15)를 실시하게 되었다.

### 2. 사실조사 결과

####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대형·도매·소매·법인·온라인 등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으로 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언론의 보도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착수 시점('20.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 나.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단말기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법 규정

법 제3조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같은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1항을,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

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시정조치 명령

#####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 5.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두번째에 해당하여 2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1회 : '19.3.20. 의결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 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1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나. 두 개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판단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그 금액인 3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추가적 가중 및 감경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를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가중한다.

다만, 조사 직전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바,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2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3,000,000원에 30%를 가중한 금액(+900,000원) 및 30%를 감경한 금액(-900,000원)을 합산한 3,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원           허       욱   (인)

위원           안       형   환   (인)

위원           김       창   룡   (인)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 - 40 - 199호(사건번호 : 201909조사104~143)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붙임】의 40개 이동통신 유통점

의결연월일 2020. 7. 8.

### 주 문

1. 피심인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금 액 : 1,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1. 조사 경위

#### 가. 조사배경

국내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19.4.3) 이후 이동통신 3개사 및 관련 유통점에서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고 엘지유플러스에서 경쟁사(SKT·KT)가 과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1만원으로 높아 시장과 열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므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19.9.16~'20.1.15)를 실시하게 되었다.

### 2. 사실조사 결과

####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대형·도매·소매·법인·온라인 등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으로 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언론의 보도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착수 시점('20.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 나.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들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단말기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붙임 참조】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법 규정

법 제3조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같은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들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1항을,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시정조치 명령

###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 5. 과태료 부과

피심인들의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 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1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나. 두 개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판단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그 금액인 1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추가적 가중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500,000원)을 합산한 1,500,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 6. 결론

상기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

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들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원           허       욱   (인)

위원           안 형 환   (인)

위원           김 창 룡   (인)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 - 40 - 200호(사건번호 : 201909조사144~165)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붙임】의 22개 이동통신 유통점

의결연월일 2020. 7. 8.

### 주 문

1. 피심인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금 액 : 1,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1. 조사 경위

#### 가. 조사배경

국내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19.4.3) 이후 이동통신 3개사 및 관련 유통점에서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고 엘지유플러스에서 경쟁사(SKT·KT)가 과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1만원으로 높아 시장과 열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므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19.9.16~'20.1.15)를 실시하게 되었다.

### 2. 사실조사 결과

####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대형·도매·소매·법인·온라인 등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으로 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언론의 보도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착수 시점('20.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 나.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들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단말기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 기기변경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붙임 참조】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각 부여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법 규정

법 제3조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같은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들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1항을,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시정조치 명령

#####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가입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 5. 과태료 부과

피심인들의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각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1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나. 두 개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판단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그 금액인 100만원을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추가적 가중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500,000원)을 합산한 1,500,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 6. 결론

상기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들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원           허      욱   (인)

위원           안 형 환   (인)

위원           김 창 룡   (인)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 - 40 - 201호(사건번호 : 201909조사166)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0. 7. 8.

###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3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1. 조사 경위

#### 가. 조사배경

국내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19.4.3) 이후 이동통신 3개사 및 관련 유통점에서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고 엘지유플러스에서 경쟁사(SKT·KT)가 과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1만원으로 높아 시장과 열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므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19.9.16~'20.1.15)를 실시하게 되었다.

### 2. 사실조사 결과

####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대형·도매·소매·법인·온라인 등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으로 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언론의 보도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착수 시점('20.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 나.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단말기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법 규정

법 제3조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같은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1항을,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시정조치 명령

####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 5.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1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나. 두 개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판단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그 금액인 1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추가적 가중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를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가중한다.

##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000,000원에 30%를 가중한 금액(+300,000원) 합산한 1,3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

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원            허      욱   (인)

위원            안 형 환   (인)

위원            김 창 룡   (인)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 - 40 - 202호(사건번호 : 201909조사167~202)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붙임】의 36개 이동통신 유통점

의결연월일 2020. 7. 8.

### 주 문

1. 피심인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1. 조사 경위

#### 가. 조사배경

국내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19.4.3) 이후 이동통신 3개사 및 관련 유통점에서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고 엘지유플러스에서 경쟁사(SKT·KT)가 과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1만원으로 높아 시장과 열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므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19.9.16~'20.1.15)를 실시하게 되었다.

### 2. 사실조사 결과

####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대형·도매·소매·법인·온라인 등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으로 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언론의 보도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착수 시점('20.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 나.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들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단말기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붙임 참조】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법 규정

법 제3조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같은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들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1항을,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 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5. 과태료 부과**

피심인들의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 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1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나. 두 개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판단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그 금액인 1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추가적 가중 및 감경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다만, 조사 직전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바,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000,000원에 20%를 가중한 금액(+200,000원)을 합산한 1,200,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 6. 결론

상기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들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원           허       욱   (인)

위원           안       형   환   (인)

위원           김       창   룡   (인)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 - 40 - 203호(사건번호 : 201909조사203~209)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붙임】의 7개 이동통신 유통점

의결연월일 2020. 7. 8.

### 주 문

1. 피심인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금 액 : 1,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1. 조사 경위

#### 가. 조사배경

국내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19.4.3) 이후 이동통신 3개사 및 관련 유통점에서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고 엘지유플러스에서 경쟁사(SKT·KT)가 과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1만원으로 높아 시장과 열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므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19.9.16~'20.1.15)를 실시하게 되었다.

### 2. 사실조사 결과

####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대형·도매·소매·법인·온라인 등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으로 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언론의 보도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착수 시점('20.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 나.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들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단말기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붙임 참조】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각 부여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법 규정

법 제3조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같은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들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1항을,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시정조치 명령

#####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가입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 5. 과태료 부과

피심인들의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각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1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나. 두 개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판단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그 금액인 100만원을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추가적 가중 및 감경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다만, 조사 직전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000,000원에 20%를 가중한 금액(+200,000원)을 합산한 1,200,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 6. 결론

상기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들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원           허    욱   (인)

위원           안 형 환   (인)

위원           김 창 룡   (인)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 - 40 - 204호(사건번호 : 201909조사210~211)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0. 7. 8.

### 주 문

1. 피심인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금 액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1. 조사 경위

#### 가. 조사배경

국내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19.4.3) 이후 이동통신 3개사 및 관련 유통점에서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고 엘지유플러스에서 경쟁사(SKT·KT)가 과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1만원으로 높아 시장과 열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므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19.9.16~'20.1.15)를 실시하게 되었다.

### 2. 사실조사 결과

####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대형·도매·소매·법인·온라인 등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으로 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언론의 보도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착수 시점('20.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 나.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들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단말기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초과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법 규정

법 제3조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같은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들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1항을,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시정조치 명령

####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

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5. 과태료 부과**

피심인들의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각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1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나. 두 개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판단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그 금액인 1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추가적 가중 및 감경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를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가중한다.

다만, 조사 직전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바,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000,000원에 30%를 가중한 금액(+300,000원) 및 30%를 감경한 금액(-300,000원)을 합산한 1,000,000원의 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 6. 결론

상기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

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들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원           허    욱   (인)

위원           안 형 환   (인)

위원           김 창 룡   (인)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전번호 제2020 - 40 - 205호(사건번호 : 201909조사213)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0. 7. 8.

###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3,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 1. 조사 경위

### 가. 조사배경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된 단말기유통법 위반 민원 중 현장 조사가 필요한 유통점을 선정하여 지원금 과다 지급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사실조사 결과

### 가. 조사 대상

국민신문고 등으로 '18.6월부터 '19.9월까지 신고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조사대상 유통점을 결정하였다.

### 나.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초과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법 규정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 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5.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법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

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두번째에 해당하여 2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1회 : '18.1.24. 의결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다만, 조사 직전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바,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2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3,000,000원에 20%를 가중한 금액(+600,000원)을 합산한 3,6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안   형   환   (인)

위    원       김   창   룡   (인)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 - 40 - 206호(사건번호 : 201909조사213-1)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0. 7. 8.

###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한 사전승낙서를 영업점에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2,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1. 조사 경위

#### 가. 조사배경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된 단말기유통법 위반 민원 중 현장 조사가 필요한 유통점을 선정하여 지원금 과다 지급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사실조사 결과

#### 가. 조사 대상

국민신문고 등으로 '18.6월부터 '19.9월까지 신고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조사대상 유통점을 결정하였다.

#### 나.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 ('이하 초과지원금')을 지급하였고,
-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한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고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영업을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법 규정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는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 ③ 판매점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이동통신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한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8조(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각 판단된다.

#### 4. 시정조치 명령

#####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한 사전승낙서를 영업점에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한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 5.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법 제4조제5항 및 제8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

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차.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동 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 제4항제6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의 초과지원

금을 지급한 피심인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 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500,000원)을 합한 1,500,000원과 사전승낙서 영업장 게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1,000,000원의 합계인 2,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안   형   환   (인)

위    원        김   창   룡   (인)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 - 40 - 207호(사건번호 : 201909조사213-2)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0. 7. 8.

###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1. 조사 경위

#### 가. 조사배경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된 단말기유통법 위반 민원 중 현장 조사가 필요한 유통점을 선정하여 지원금 과다 지급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사실조사 결과

#### 가. 조사 대상

국민신문고 등으로 '18.6월부터 '19.9월까지 신고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조사대상 유통점을 결정하였다.

#### 나.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 ('이하 초과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법 규정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5.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법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 나. 추가적 가중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500,000원)을 합산한 1,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원           허      욱   (인)

위원           안 형 환   (인)

위원           김 창 룡   (인)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 - 40 - 208호(사건번호 : 201909조사213~3\_6)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결연월일 2020. 7. 8.

### 주 문

1. 피심인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금 액 : 1,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1. 조사 경위

#### 가. 조사배경

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된 단말기유통법 위반 민원 중 현장 조사가 필요한 유통점을 선정하여 지원금 과다 지급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사실조사 결과

####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국민신문고 등으로 '18.6월부터 '19.9월까지 신고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조사대상 유통점을 결정하였다.

#### 나.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들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 ('이하 초과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각 부여하였다.

### 3. 위법성 판단

#### 가. 관련법 규정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  
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들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피심인들은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cm×2.5cm이상

5. 과태료 부과

피심인들의 법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구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 “대규모유통업자”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하며,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 나. 추가적 가중 및 감경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다만, 조사 직전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바,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에 따라 부과기준 금액의 30%를 감경한다.

## 라.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000,000원에 20%를 가중한 금액(+200,000원)을 합산한 1,2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 결론

상기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들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원           허      욱   (인)

위원           안      형   환   (인)

위원           김      창   룡   (인)

## 5.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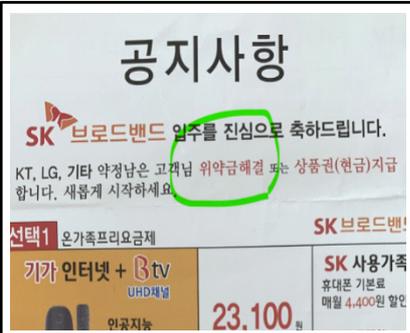
### 1.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9월 9일(수)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통신4사에 대해 총 8.7억원(KT 2.64억원, LGU+ 2.79억원, SKB 2.51억원, SKT 0.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방통위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 (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였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B 27.3%, LGU+ 26.0%, SKT 8.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허위광고 사례) '위약금 100% 해결' 등 실제와 다른 내용	(과장광고 사례) 최대금액을 모두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	(기만광고 사례)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음

방통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최초로 조사한 '15년에는 통신4사의 위반율이 90%대를 상회하였으나, '16년 방통위 주도하에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및 개선, 가이드북 배포, 예방교육 등을 통해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다만, '자율협의회' 운영 이후에도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2. 관련 사례

### 1 (주)케이티의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이익침해행위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49 - 228호

안 건 명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의결연월일 2020. 9. 9.

### 주 문

1.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본 심의·의결서 이유의 사실조사 결과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의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피심인의 대리점과 거래하는 판매점에도 본 위반행위와 같은 허위·과장광고 등의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리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인 자체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대리점에 대한 평가강화, 대리점 및 판매점 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본사 및 대리점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8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팝업창(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으로 3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고,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제1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가. 금 액 : 264,0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I. 기초사실

#### 1. 피심인 일반 현황

피심인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IPTV'라 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피심인의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3월말 기준 3,486만 명이고 매출액은 '19년도 기준 9조 1,305억 원이다.

< 표 1. 피심인의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 명, 억 원)

구 분	초고속인터넷	IPTV	이동전화	합계
가입자 수	89,624	75,708	183,316	348,648
매출액	22,463	11,401	57,441	91,305

※ 산출 근거 : 사업자 제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영업보고서 기준)

## 2. 조사 경위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4사 및 MSO 5사 등 9개 사업자의 유통점(대리점, 판매점, 대형마트, 아파트가판 및 온라인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2019. 5. 16.부터 6. 7.까지 실태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공개 조사로 전단지, 현수막, X배너 등 광고물을 채증하여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였다.

실태점검 결과, 전체 점검대상 사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 위반율은 48.1%이며, 오프라인은 대리점의 위반율이 17%로 낮은 반면, 대형마트와 판매점이 각각 64%, 48%의 위반율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위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은 웹사이트, 카페·블로그,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점의 허위·과장광고 비율은 6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광고 유형별 위반현황은 실증이 불가능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허위광고가 150건(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장광고와 기만광고는 각각 89건(20.9%)과 78건(18.3%)으로 나타났다.

## II.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2019. 11. 15.부터 2020. 5. 8.까지 피심인, LGU+, SKB, SKT 등 통신 4사를 대상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2. 현장조사 현황

현장조사는 ① 대리점 등 매장의 광고를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조사, ②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판매처의 광고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조사, ③ 광고 관련 업무처리 실태 확인 등 본사 조사로 진행하였다.

피심인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조사 461건, 온라인 조사 33건 등 총 494건의 광고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표 2. 현장조사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조사 건수	비 고
오프라인 조사	461	대리점, 판매점 등 오프라인 매장 기준
온라인 조사	33	사이트, 커뮤니티, 카페 등 온라인 광고매체 기준
본 사 조 사	-	본사 광고 관련 관리실태 등
합 계	494	

① (오프라인 조사) 서울을 비롯하여 광역시 및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피심인의 대리점, 판매점, 대형마트, 아파트 가판 등 461개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표 3. 오프라인 현장조사 현황(유통채널별) 〉

(단위 : 건)

구분	대리점	대형마트	아파트가판	판매점	지역지	합계
피심인	398	28	29	-	6	461

② (온라인 조사) 피심인의 홈페이지와 피심인의 대리점 판매 사이트, 카페, 커뮤니티 등 33개 온라인 판매경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표 4. 온라인 현장조사 현황(광고매체별) >

(단위 : 건)

구분	공식 홈페이지	대리점			합계
		사이트	카페	커뮤니티	
피심인	2	17	-	14	33

③ (본사 조사) 피심인의 본사를 방문하여 광고 관련 사전·사후 관리체계 및 운영현황 등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 본사 조사 시 본사나 지사 등에서 제작하여 대리점에 배포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광고를 제출받았으나, 대리점과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조사대상과 중복되어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 3. 행위사실

#### 1) 전체 조사결과

피심인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494건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142건(28.7%)의 위반행위를 확인하였으며, 오프라인 461건 중 124건(26.9%), 온라인 33건 중 18건(54.5%)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

< 표 5. 현장조사 결과 - 전체 >

(단위 : 건)

구분	조사 건수	위반 건수 (위반율)	오프라인		온라인	
			조사건	위반건	조사건	위반건
피심인	494	142 (28.7%)	461	124 (26.9%)	33	18 (54.5%)

광고 유형별로는 기만광고가 115건(23.3%)로 가장 높고, 과장광고가 108건(21.9%), 허위광고가 53건(10.7%) 순으로 나타났다.

〈 표 6. 유형별 위반현황 - 전체 〉

(단위 : 건)

구분	조사 건수	위반 건수	허위광고	과장광고	기만광고
피심인	494	142 (28.7%)	53 (10.7%)	108 (21.9%)	115 (23.3%)

※ 하나의 광고물에 위반 유형 건수가 중복되는 사례 등이 있어, 유형별 위반건수의 합계와 전체 위반건수는 차이가 있음(이하 동일)

2) 오프라인 조사결과

피심인의 오프라인 광고 461건을 조사한 결과, 허위·과장광고는 124건으로 위반율은 26.9%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106만원 할인"처럼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기만광고가 110건(23.9%), "인터넷+TV 개통시 기기값 무료"처럼 최대 지급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과장광고가 103건(22.3%), "인터넷 요금 무료"처럼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무료', '공짜' 등으로 광고한 허위광고가 38건(8.2%) 순으로 나타났다.

〈 표 7. 현장조사 결과 - 오프라인 〉

(단위 : 건)

구분	조사건수	위반건수(위반율)	허위광고	과장광고	기만광고
피심인	461	124 (26.9%)	38 (8.2%)	103 (22.3%)	110 (23.9%)

〈 피심인의 허위·과장광고 사례(오프라인) 〉

기만광고	과장광고	허위광고
		
106만원 할인 혜택만 표시	인터넷+TV개통시 기기값 무료로 광고	인터넷 요금을 무료로 광고

유통 채널별로는 대리점 88건(19.1%), 아파트가판 17건(3.7%), 대형마트 13건(2.8%), 지역정보지 6건(1.3%) 순으로 나타났다.

< 표 8. 유통채널별 위반현황 - 오프라인 >

(단위 : 건)

구분	조사건수	위반건수	대리점	아파트가판	대형마트	지역정보지
피심인	461	124 (26.9%)	88 (19.1%)	17 (3.7%)	13 (2.8%)	6 (1.3%)

3) 온라인 조사결과

총 33건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허위·과장광고는 18건으로 위반율은 54.5%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사은혜택 전국 최고가, 인터넷 무료"처럼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무료', '공짜' 등으로 광고하는 허위광고가 15건(45.5%), "260만원 혜택"처럼 요금할인을 포함한 금액을 경품처럼 광고하는 과장광고와 "통신비 최대 3만원 캐시백"처럼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는 기만광고가 각각 5건(15.2%)으로 나타났다.

< 표 9. 현장조사 결과 - 온라인 >

(단위 : 건)

구분	조사건수	위반건수(위반율)	허위광고	과장광고	기만광고
피심인	33	18 (54.5%)	15 (45.5%)	5 (15.2%)	5 (15.2%)

< 피심인의 허위·과장광고 사례(온라인) >

허위광고	과장광고	기만광고
<p>사은혜택 전국 최고가 지금, 인터넷 무료 표시</p>	<p>요금할인 포함 금액을 경품처럼 표시</p>	<p>통신비 최대 3만원 캐시백 제휴카드 표시</p>

광고매체별 위반율은 대리점 사이트와 커뮤니티가 각각 9건(27.3%)으로 나타났다.

〈 표 10. 광고매체별 위반현황 - 온라인 〉

(단위 : 건)

구분	조사건수	위반건수	본사 홈페이지	대리점		
				사이트	카페	커뮤니티
피심인	33	18 (54.5%)	-	9 (27.3%)	-	9 (27.3%)

4) 본사 조사결과

피심인의 광고물 관련 사전·사후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본사나 지사에서 직접 제작하는 광고물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전 검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리점 제작 광고물은 대리점 담당자나 외부 업체 모니터링을 통해 광고물 부착상태만 점검하고 있어, 현장조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리점에서의 허위·과장광고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판매점은 피심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광고에 대한 피심인의 사전·사후 관리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 표 11. 광고 관련 사전·사후 관리현황 〉

구분	사전 관리	사후 관리
피심인	○ 본사에서 제작, 검수 후 배포 - 지사 자체 제작 광고는 자체검수 후 배포	○ 전 대리점 대상 광고물 부착상태에 대한 매장점검 실시(매월 1회)

III. 행위사실의 위법성

1. 관련 법 규정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에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방통위 고시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3조에서도 결합판매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결합상품 판매를 위해 매장 및 온라인을 통해 '106만원 할인', '인터넷 요금 무료', '260만원 혜택', '통신비 최대 3만원 캐시백 할인' 등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로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는

결합상품 구성이나 할인율, 할인 규모, 할인 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아 이용자로 하여금 구성상품별·할인유형별 할인내용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 바목 및 결합판매 금지행위 기준 제3조 제1항 라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IV. 시정조치 명령

### 1.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피심인의 대리점과 거래하는 판매점에도 본 위반행위와 같은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2.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리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인 자체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대리점에 대한 평가강화, 대리점 및 판매점 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본사 및 대리점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8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팝업 창으로 3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고, 문안 및 내용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p><b>주식회사 케이티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b></p> <p>주식회사 케이티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00월 00일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p>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 4.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시행령 제44조제1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V. 과징금 부과

법 제53조제1항과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6]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해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의 방송통신 결합상품서비스 허위·과장 광고 위반행위와 매출액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 1. 부과 기준금액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에서는 10억 원을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기준금액을 8억 원 이하에서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시인 과징금 부과기준에서는 8억 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위법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기준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심인의 위반율이 28.7%이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기준금액은 4억 원으로 산정한다.

〈 표 12.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 및 고려사유 〉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액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억 원 초과 8억 원 이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3억 원 이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2. 필수적 가중·감경

피심인은 조사 대상기간을 포함한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금지행위 위반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하되,

동일한 위반행위로 최근 3년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횟수가 없으므로 금지행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여 결과적으로 필수적 가중·감경 금액은 기준금액에 10%가 가산된다.

## 3. 추가적 가중·감경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가중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심인이 2016년부터 「방송통신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방지협의회」를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던 점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100분의 20을 감경하며, 피심인이 '19년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초고속인터넷 분야)을 받은 사실이 있어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결과적으로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은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에 40%가 감경된다.

## 4. 최종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감경 사유를 종합하여 피심인의 최종 과징금은 2억6천4백만 원이다.

< 표 13. 최종 과징금 산정내역 >

(단위 : 만 원)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10%)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	추가적 가중·감경 (-40%)	최종 과징금
40,000	+4,000	44,000	-17,600	26,400

## VI. 형사고발 판단

피심인이 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법 제99조(벌칙)에 따라 3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위한 고발 가능하나, 피심인의 행위가 금지행위 고발 기준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 VII. 결론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9월 9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2

(주)엘지유플러스의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이익침해행위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49 - 229호

안 건 명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의결연월일 2020. 9. 9.

주 문

1.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본 심의·의결서 이유의 사실조사 결과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의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피심인의 대리점과 거래하는 판매점에도 본 위반행위와 같은 허위·과장광고 등의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리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인 자체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대리점에 대한 평가강화, 대리점 및 판매점 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본사 및 대리점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8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팝업창(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으로 3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고,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제1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27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I. 기초사실

#### 1. 피심인 일반 현황

피심인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IPTV’라 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피심인의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3월말 기준 2,325만 명이고 매출액은 ‘19년도 기준 6조 3,314억 원이다.

〈 표 1. 피심인의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 명, 억 원)

구 분	초고속인터넷	IPTV	이동전화	합계
가입자 수	43,499	45,758	143,270	232,527
매출액	8,972	6,712	47,630	63,314

※ 산출 근거 : 사업자 제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영업보고서 기준)

## 2. 조사 경위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4사 및 MSO 5사 등 9개 사업자의 유통점(대리점, 판매점, 대형마트, 아파트가판 및 온라인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2019. 5. 16.부터 6. 7.까지 실태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공개 조사로 전단지, 현수막, X배너 등 광고물을 채증하여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였다.

실태점검 결과, 전체 점검대상 사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 위반율은 48.1%이며, 오프라인은 대리점의 위반율이 17%로 낮은 반면, 대형마트와 판매점이 각각 64%, 48%의 위반율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위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은 웹사이트, 카페·블로그,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점의 허위·과장광고 비율은 6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광고 유형별 위반현황은 실증이 불가능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허위광고가 150건(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장광고와 기만광고는 각각 89건(20.9%)과 78건(18.3%)으로 나타났다.

## II.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2019. 11. 15.부터 2020. 5. 8.까지 피심인, KT, SKB, SKT 등 통신 4사를 대상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2. 현장조사 현황

현장조사는 ① 대리점 등 매장의 광고를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조사, ②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판매처의 광고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조사, ③ 광고 관련 업무처리 실태 확인 등 본사 조사로 진행하였다.

피심인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조사 385건, 온라인 조사 7건 등 총 392건의 광고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표 2. 현장조사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조사 건수	비 고
오프라인 조사	385	대리점, 판매점 등 오프라인 매장 기준
온라인 조사	7	사이트, 커뮤니티, 카페 등 온라인 광고매체 기준
본 사 조 사	-	본사 광고 관련 관리실태 등
합 계	392	

① (오프라인 조사) 서울을 비롯하여 광역시 및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피심인의 대리점, 판매점, 대형마트, 아파트 가판 등 385개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표 3. 오프라인 현장조사 현황(유통채널별) 〉

(단위 : 건)

구분	대리점	대형마트	아파트가판	판매점	지역지	합계
피심인	334	26	25	-	-	385

② (온라인 조사) 피심인의 홈페이지와 피심인의 대리점 판매 사이트, 카페, 커뮤니티 등 7개 온라인 판매경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표 4. 온라인 현장조사 현황(광고매체별) 〉

(단위 : 건)

구분	공식 홈페이지	대리점			합계
		사이트	카페	커뮤니티	
피심인	2	2	1	2	7

③ (본사 조사) 피심인의 본사를 방문하여 광고 관련 사전·사후 관리체계 및 운영현황 등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 본사 조사 시 본사나 지사 등에서 제작하여 대리점에 배포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광고를 제출받았으나, 대리점과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조사대상과 중복되어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 3. 행위사실

#### 1) 전체 조사결과

피심인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392건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2건(26.0%)의 위반행위를 확인하였으며, 오프라인 385건 중 101건(26.2%), 온라인 7건 중 1건(14.3%)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

〈 표 5. 현장조사 결과 - 전체 〉

(단위 : 건)

구분	조사 건수	위반 건수 (위반율)	오프라인		온라인	
			조사건	위반건	조사건	위반건
피심인	392	102 (26.0%)	385	101 (26.2%)	7	1 (14.3%)

광고 유형별로는 기만광고가 86건(21.9%)로 가장 높고, 과장광고가 77건(19.6%), 허위광고가 34건(8.7%) 순으로 나타났다.

< 표 6. 유형별 위반현황 - 전체 >

(단위 : 건)

구분	조사 건수	위반 건수	허위광고	과장광고	기만광고
피심인	392	102 (26.0%)	34 (8.7%)	77 (19.6%)	86 (21.9%)

※ 하나의 광고물에 위반 유형 건수가 중복되는 사례 등이 있어, 유형별 위반건수의 합계와 전체 위반건수는 차이가 있음(이하 동일)

2) 오프라인 조사결과

피심인의 오프라인 광고 385건을 조사한 결과, 허위·과장광고는 101건으로 위반율은 26.2%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기가인터넷+UHD+WiFi기가 월 19,200원"처럼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기만광고가 86건(22.3%), "최대 27,610원~44,110원 할인"처럼 최대 지급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과장광고가 77건(20.0%), "인터넷+TV 요금1년 무료"처럼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무료', '공짜' 등으로 광고한 허위광고가 33건(8.6%) 순으로 나타났다.

< 표 7. 현장조사 결과 - 오프라인 >

(단위 : 건)

구분	조사건수	위반건수(위반율)	허위광고	과장광고	기만광고
피심인	385	101 (26.2%)	33 (8.6%)	77 (20.0%)	86 (22.3%)

< 피심인의 허위·과장광고 사례(오프라인) >

기만광고	과장광고	허위광고
 <p>LG U+ 본사직영팀 특별행사</p> <p>기가Slim(500M) 인터넷 UHD 4K3 셋탑 (183CH) WiFi 기가 월 17,100원</p> <p>기가(1G) 인터넷 UHD 4K3 셋탑 (183CH) WiFi 기가 월 19,200원</p> <p>국내최초 U+tv 독점계약!</p>	 <p>LG U+ 본사직영 신규이전고객</p> <p>NETFLIX TV안의 놀이터</p> <p>월 9,700원</p> <p>공중해면 U+IoT 가입하면 최대 시든들증정</p> <p>☆ 아파트 단지 압권! 매일 -2,200원 ☆</p> <p>LG휴대폰 가족분 중 최대할인 있어도 13,200원</p> <p>2명만 묶어도 매일 최대 27,610원~44,110원</p>	 <p>인터넷+TV 요금1년 무료로 광고</p>
기가인터넷+UHD+WiFi기가 월 19,200원으로만 광고	최대 27,610원 ~ 44,110원 할인으로 광고	인터넷+TV 요금1년 무료로 광고

유통 채널별로는 대리점 63건(16.4%), 아파트가판 22건(5.7%), 대형마트 16건(4.2%) 순으로 나타났다.

< 표 8. 유통채널별 위반현황 - 오프라인 >

(단위 : 건)

구분	조사건수	위반건수	대리점	아파트가판	대형마트	지역정보지
피심인	385	101 (26.2%)	63 (16.4%)	22 (5.7%)	16 (4.2%)	-

3) 온라인 조사결과

총 7건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허위·과장광고는 1건으로 위반율은 14.3%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전국최고 전액현금"처럼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허위광고만 1건(14.3%)이 확인되었다.

< 표 9. 현장조사 결과 - 온라인 >

(단위 : 건)

구분	조사건수	위반건수(위반율)	허위광고	과장광고	기만광고
피심인	7	1 (14.3%)	1 (14.3)	-	-

< 피심인의 허위·과장광고 사례(온라인) >

허위광고	과장광고	기만광고
 <p>전국최고 전액현금 무조건 당일 지급!! **[추가TV 신청시 현금 사은품 *@*@]                  품목: 전액현금                  등록일: 2020-03-10 15:14                  조회수: 3 / 추천수: 0                  링크: http://aplusstyle.co.kr                  1583820859_aplusstyle_home_3.jpg (17.8 KB)</p>	- 적발사례 없음 -	- 적발사례 없음 -
전국최고 전액현금 표시	-	-

광고매체별 위반율은 대리점 커뮤니티가 1건(14.3%)으로 나타났다.

〈 표 10. 광고매체별 위반현황 - 온라인 〉

(단위 : 건)

구분	조사건수	위반건수	본사 홈페이지	대리점		
				사이트	카페	커뮤니티
피심인	7	1 (14.3%)	-	-	-	1 (14.3%)

#### 4) 본사 조사결과

피심인의 광고물 관련 사전·사후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본사나 지사에서 직접 제작하는 광고물은 광고시안 온라인 제공, 매장연출 가이드 배포 등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전 검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리점 제작 광고물은 외부 모니터링 업체를 통해 광고물 부착상태 중심으로만 점검하고 있어, 현장조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리점에서의 허위·과장광고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판매점은 피심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광고에 대한 피심인의 사전·사후 관리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 표 11. 광고 관련 사전·사후 관리현황 〉

구분	사전 관리	사후 관리
피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 제작 광고는 U+ 제작물지원물을 통해 광고시안 온라인 제공</li> <li>○ 매월 매장연출 가이드(담당상무 컨펌) 배포시 허위·과장광고 금지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 모니터링 업체를 통해 매장에 대한 광고 배치, 허위·과장광고 등 홍보실태 점검(월 300개)</li> </ul>

### III. 행위사실의 위법성

#### 1. 관련 법 규정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에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방통위 고시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3조에서도 결합판매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결합상품 판매를 위해 매장 및 온라인을 통해 ‘인터넷+TV 요금 1년 무료’, ‘최대 27,610원~44,110원 할인’, ‘전국 최고 현금지급’ 등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로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는

결합상품 구성이나 할인율, 할인 규모, 할인 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아 이용자로 하여금 구성상품별·할인유형별 할인내용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 바목 및 결합판매 금지행위 기준 제3조 제1항 라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IV. 시정조치 명령

### 1.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피심인의 대리점과 거래하는 판매점에도 본 위반행위와 같은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2.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리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인 자체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대리점에 대한 평가강화, 대리점 및 판매점 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본사 및 대리점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8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팝업 창으로 3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고, 문안 및 내용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p><b>주식회사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b></p> <p>주식회사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00월 00일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대표이사 ○○○</p>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 4.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시행령 제44조제1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V. 과징금 부과

법 제53조제1항과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6]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해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의 방송통신 결합상품서비스 허위·과장 광고 위반행위와 매출액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 1. 부과 기준금액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에서는 10억 원을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기준금액을 8억 원 이하에서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시인 과징금 부과기준에서는 8억 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위법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기준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율이 가장 높은 방송통신사업자의 위반율이 28.7%이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기준금액을 4억 원으로 산정하고,

피심인은 '위반율'을 기준으로 상대적 위반행위 수준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3억6천2백3십7만 원으로 산정한다.

〈 표 12.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 및 고려사유 〉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액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억 원 초과 8억 원 이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3억 원 이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2. 필수적 가중·감경

피심인은 조사 대상기간을 포함한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금지행위 위반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하되,

동일한 위반행위로 최근 3년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횟수가 없으므로 금지행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여 결과적으로 필수적 가중·감경 금액은 기준금액에 10%가 가산된다.

## 3. 추가적 가중·감경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가중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심인이 2016년부터 「방송통신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방지협의회」를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던 점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100분의 20을 감경하며, 피심인이 '19년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우수 등급(초고속인터넷 분야)을 받은 사실이 있어 100분의 10을 감경하여 결과적으로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은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에 30%가 감경된다.

## 4. 최종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감경 사유를 종합하여 피심인의 최종 과징금은 2억7천9백만 원이다.

〈 표 13. 최종 과징금 산정내역 〉

(단위 : 만 원)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10%)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	추가적 가중·감경 (-30%)	최종 과징금
36,237	+3,624	39,861	-11,958	27,900

## VI. 형사고발 판단

피심인이 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법 제99조(벌칙)에 따라 3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위한 고발 가능하나, 피심인의 행위가 금지행위 고발 기준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 VII. 결론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9월 9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3** 에스케이브로드밴드<sup>주</sup>의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이익침해행위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의결

안건번호 제2020 - 49 - 230호

안 건 명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퇴계로 24 SK남산그린빌딩

의결연월일 2020. 9. 9.

주 문

1.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본 심의·의결서 이유의 사실조사 결과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의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피심인의 대리점과 거래하는 판매점에도 본 위반행위와 같은 허위·과장광고 등의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리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인 자체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대리점에 대한 평가강화, 대리점 및 판매점 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본사 및 대리점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8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팝업창(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으로 3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고,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제1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25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I. 기초사실

#### 1. 피심인 일반 현황

피심인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IPTV'라 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피심인은 SK텔레콤(주)와 영업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SK텔레콤(주)의 대리점으로서 이동전화를 판매하고 있다.

피심인의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3월말 기준 789만 명이고 매출액은 '19년도 기준 2조 737억 원이다.

< 표 1. 피심인의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 명, 억 원)

구 분	초고속인터넷	IPTV	이동전화	합계
가입자 수	25,930	52,955	-	78,885
매출액	8,214	12,523	-	20,737

※ 산출 근거 : 사업자 제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영업보고서 기준)

## 2. 조사 경위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4사 및 MSO 5사 등 9개 사업자의 유통점(대리점, 판매점, 대형마트, 아파트가판 및 온라인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2019. 5. 16.부터 6. 7.까지 실태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공개 조사로 전단지, 현수막, X배너 등 광고물을 채증하여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였다.

실태점검 결과, 전체 점검대상 사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 위반율은 48.1%이며, 오프라인은 대리점의 위반율이 17%로 낮은 반면, 대형마트와 판매점이 각각 64%, 48%의 위반율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위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은 웹사이트, 카페·블로그,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점의 허위·과장광고 비율은 6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광고 유형별 위반현황은 실증이 불가능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허위광고가 150건(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장광고와 기만광고는 각각 89건(20.9%)과 78건(18.3%)으로 나타났다.

## II.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2019. 11. 15.부터 2020. 5. 8.까지 피심인, KT, LGU+, SKT 등 통신 4사를 대상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2. 현장조사 현황

현장조사는 ① 대리점 등 매장의 광고를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조사, ②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판매처의 광고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조사, ③ 광고 관련 업무처리 실태 확인 등 본사 조사로 진행하였다.

피심인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조사 74건, 온라인 조사 14건 등 총 88건의 광고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표 2. 현장조사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조사 건수	비 고
오프라인 조사	74	대리점, 판매점 등 오프라인 매장 기준
온라인 조사	14	사이트, 커뮤니티, 카페 등 온라인 광고매체 기준
본 사 조 사	-	본사 광고 관련 관리실태 등
합 계	88	

① (오프라인 조사) 서울을 비롯하여 광역시 및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피심인의 대리점, 판매점, 대형마트, 아파트 가판 등 74개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표 3. 오프라인 현장조사 현황(유통채널별) 〉

(단위 : 건)

구분	대리점	대형마트	아파트가판	판매점	지역지	합계
피심인	3	39	30	-	2	74

② (온라인 조사) 피심인의 홈페이지와 피심인의 대리점 판매 사이트, 카페, 커뮤니티 등 14개 온라인 판매경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표 4. 온라인 현장조사 현황(광고매체별) >

(단위 : 건)

구분	공식 홈페이지	대리점			합계
		사이트	카페	커뮤니티	
피심인	3	5	-	6	14

③ (본사 조사) 피심인의 본사를 방문하여 광고 관련 사전·사후 관리체계 및 운영현황 등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 본사 조사 시 본사나 지사 등에서 제작하여 대리점에 배포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광고를 제출받았으나, 대리점과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조사대상과 중복되어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 3. 행위사실

#### 1) 전체 조사결과

피심인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88건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4건(27.3%)의 위반행위를 확인하였으며, 오프라인 74건 중 23건(31.1%), 온라인 14건 중 1건(7.1%)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

< 표 5. 현장조사 결과 - 전체 >

(단위 : 건)

구분	조사 건수	위반 건수 (위반율)	오프라인		온라인	
			조사건	위반건	조사건	위반건
피심인	88	24 (27.3%)	74	23 (31.1%)	14	1 (7.1%)

광고 유형별로는 기만광고가 23건(26.1%)로 가장 높고, 과장광고가 13건(15.9%), 허위광고가 7건(8.0%) 순으로 나타났다.

< 표 6. 유형별 위반현황 - 전체 >

(단위 : 건)

구분	조사 건수	위반 건수	허위광고	과장광고	기만광고
피심인	88	24 (27.3%)	7 (8.0%)	14 (15.9%)	23 (26.1%)

※ 하나의 광고물에 위반 유형 건수가 중복되는 사례 등이 있어, 유형별 위반건수의 합계와 전체 위반건수는 차이가 있음(이하 동일)

2) 오프라인 조사결과

피심인의 오프라인 광고 74건을 조사한 결과, 허위·과장광고는 23건으로 위반율은 31.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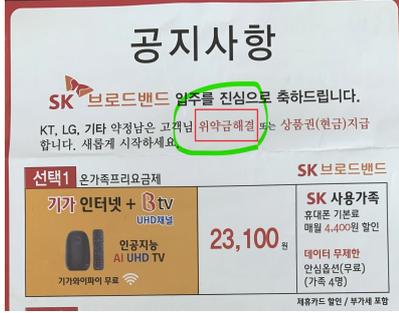
위반유형별로는 “기가인터넷+UHTV+AI셋탑+기가WiFi 월 10,890원”처럼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기만광고가 22건(29.7%), “인터넷+IPTV 개통시 42만원 지급”처럼 최대 지급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과장광고가 13건(17.6%), “위약금 해결”처럼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허위광고가 6건(8.1%) 순으로 나타났다.

< 표 7. 현장조사 결과 - 오프라인 >

(단위 : 건)

구분	조사건수	위반건수(위반율)	허위광고	과장광고	기만광고
피심인	74	23 (31.1%)	6 (8.1%)	13 (17.6%)	22 (29.7%)

< 피심인의 허위·과장광고 사례(오프라인) >

기만광고	과장광고	허위광고
 <p>기가인터넷+UHTV+AI셋탑 +기가WiFi 월 10,890원으로 광고</p>	 <p>인터넷+IPTV개통시 42만원 지금 광고</p>	 <p>위약금 해결해 주는 것처럼 광고</p>

유통 채널별로는 대형마트 13건(17.6%), 아파트가판 10건(13.5%) 순으로 나타났다.

< 표 8. 유통채널별 위반현황 - 오프라인 >

(단위 : 건)

구분	조사건수	위반건수	대리점	아파트가판	대형마트	지역정보지
피심인	74	23 (31.1%)	-	10 (13.5%)	13 (17.6%)	-

3) 온라인 조사결과

총 14건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허위·과장광고는 1건으로 위반율은 7.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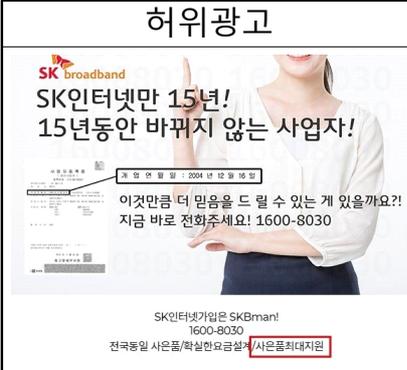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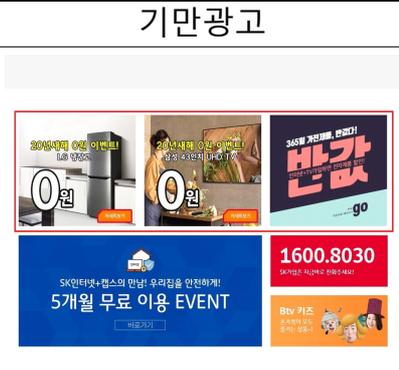
위반유형별로는 "사은품 최대지원"처럼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허위광고와 "LG냉장고 지급"처럼 최대 지급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과장광고, "0원, 반값"처럼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는 기만광고가 각각 1건(7.1%)으로 나타났다.

< 표 9. 현장조사 결과 - 온라인 >

(단위 : 건)

구분	조사건수	위반건수(위반율)	허위광고	과장광고	기만광고
피심인	14	1 (7.1%)	1 (7.1%)	1 (7.1%)	1 (7.1%)

< 피심인의 허위·과장광고 사례(온라인) >

허위광고	과장광고	기만광고
		
사은품 최대지원만 표시	경품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	0원, 반값 등으로 혜택만 표시

※ 상기 사례 모두 동일 사이트에서 발취

광고매체별 위반율은 대리점 사이트가 1건(7.1%)으로 나타났다.

< 표 10. 광고매체별 위반현황 - 온라인 >

(단위 : 건)

구분	조사건수	위반건수	본사 홈페이지	대리점		
				사이트	카페	커뮤니티
피심인	14	1 (7.1%)	-	1 (7.1%)	-	-

4) 본사 조사결과

피심인의 광고물 관련 사전·사후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본사나 지사에서 직접 제작하는 광고물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전 검수를 실시하고 현장교육을 요청하고 있으나, 대리점 제작 광고물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하고 있어, 현장조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리점에서의 허위·과장광고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판매점은 피심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광고에 대한 피심인의 사전·사후 관리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 표 11. 광고 관련 사전·사후 관리현황 〉

구분	사전 관리	사후 관리
피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에서 제작, 검수 후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점 담당 매니저가 광고 시안검수 또는 자체 검수 후 배포</li> </ul> </li> <li>○ 허위·과장광고예방 현장교육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점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li> </ul>

### III. 행위사실의 위법성

#### 1. 관련 법 규정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에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방통위 고시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3조에서도 결합판매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결합상품 판매를 위해 매장 및 온라인을 통해 ‘인터넷+IPTV 개통시 42만원 지급’, ‘위약금 해결’, ‘사은품 최대지원’ 등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로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는

결합상품 구성이나 할인율, 할인 규모, 할인 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아 이용자로 하여금 구성상품별·할인유형별 할인내용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 바목 및 결합판매 금지행위 기준 제3조 제1항 라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IV. 시정조치 명령

### 1.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피심인의 대리점과 거래하는 판매점에도 본 위반행위와 같은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2.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리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인 자체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대리점에 대한 평가강화, 대리점 및 판매점 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본사 및 대리점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8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팝업 창으로 3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고, 문안 및 내용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0월 00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 4.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시행령 제44조제1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V. 과징금 부과

법 제53조제1항과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6]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해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의 방송통신 결합상품서비스 허위·과장 광고 위반행위와 매출액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 1. 부과 기준금액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에서는 10억 원을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기준금액을 8억 원 이하에서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시인 과징금 부과기준에서는 8억 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위법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기준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율이 가장 높은 방송통신사업자의 위반율이 28.7%이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기준금액을 4억 원으로 산정하고,

피심인은 '위반율'을 기준으로 상대적 위반행위 수준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3억8천4십9만 원으로 산정한다.

〈 표 12.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 및 고려사유 〉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액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억 원 초과 8억 원 이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3억 원 이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2. 필수적 가중·감경

피심인은 조사 대상기간을 포함한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금지행위 위반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하되,

동일한 위반행위로 최근 3년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횟수가 없으므로 금지행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여 결과적으로 필수적 가중·감경 금액은 기준금액에 10%가 가산된다.

## 3. 추가적 가중·감경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가중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심인이 2016년부터 「방송통신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방지협의회」를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던 점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100분의 20을 감경하며, 피심인이 '19년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초고속인터넷 분야)을 받은 사실이 있어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결과적으로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은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에 40%가 감경된다.

#### 4. 최종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감경 사유를 종합하여 피심인의 최종 과징금은 2억5천1백만 원이다.

〈 표 13. 최종 과징금 산정내역 〉

(단위 : 만 원)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10%)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	추가적 가중·감경 (-40%)	최종 과징금
38,049	+3,805	41,854	-16,742	25,100

#### VI. 형사고발 판단

피심인이 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법 제99조(벌칙)에 따라 3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위한 고발 가능하나, 피심인의 행위가 금지행위 고발 기준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 VII. 결론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9월 9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호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4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이익침해행위**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의결**

안건번호 제2020 - 49 - 231호

안 건 명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65 SK T-타워

의결연월일 2020. 9. 9.

**주 문**

1.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본 심의·의결서 이유의 사실조사 결과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의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피심인의 대리점과 거래하는 판매점에도 본 위반행위와 같은 허위·과장광고 등의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리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인 자체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대리점에 대한 평가강화, 대리점 및 판매점 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본사 및 대리점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8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팝업창(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으로 3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고,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제1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7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I. 기초사실

#### 1. 피심인 일반 현황

피심인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별정통신사업자로서 SK브로드밴드(주)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재판매하고 있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는 SK브로드밴드(주)와 대리점 계약을 맺어 판매하고 있다.

피심인의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3월말 기준 3,199만 명이고 매출액은 '19년도 기준 9조 8,767억 원이다.

〈 표 1. 피심인의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 명, 억 원)

구 분	초고속인터넷	IPTV	이동전화	합계
가입자 수	30,605	-	289,322	319,927
매출액	6,473	-	92,294	98,767

※ 산출 근거 : 사업자 제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영업보고서 기준)

## 2. 조사 경위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4사 및 MSO 5사 등 9개 사업자의 유통점(대리점, 판매점, 대형마트, 아파트가판 및 온라인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2019. 5. 16.부터 6. 7.까지 실태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공개 조사로 전단지, 현수막, X배너 등 광고물을 채증하여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였다.

실태점검 결과, 전체 점검대상 사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 위반율은 48.1%이며, 오프라인은 대리점의 위반율이 17%로 낮은 반면, 대형마트와 판매점이 각각 64%, 48%의 위반율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위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은 웹사이트, 카페·블로그,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점의 허위·과장광고 비율은 6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광고 유형별 위반현황은 실증이 불가능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허위광고가 150건(3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장광고와 기만광고는 각각 89건(20.9%)과 78건(18.3%)으로 나타났다.

## II.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2019. 11. 15.부터 2020. 5. 8.까지 피심인, KT, LGU+, SKB 등 통신 4사를 대상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2. 현장조사 현황

현장조사는 ① 대리점 등 매장의 광고를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조사, ②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 판매처의 광고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조사, ③ 광고 관련 업무처리 실태 확인 등 본사 조사로 진행하였다.

피심인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조사 395건, 온라인 조사 4건 등 총 399건의 광고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표 2. 현장조사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조사 건수	비 고
오프라인 조사	395	대리점, 판매점 등 오프라인 매장 기준
온라인 조사	4	사이트, 커뮤니티, 카페 등 온라인 광고매체 기준
본 사 조 사	-	본사 광고 관련 관리실태 등
합 계	399	

① (오프라인 조사) 서울을 비롯하여 광역시 및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피심인의 대리점, 판매점, 대형마트, 아파트 가판 등 395개 매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표 3. 오프라인 현장조사 현황(유통채널별) 〉

(단위 : 건)

구분	대리점	대형마트	아파트가판	판매점	지역지	합계
피심인	377	18	-	-	-	395

② (온라인 조사) 피심인의 홈페이지와 피심인의 대리점 판매 사이트, 카페, 커뮤니티 등 4개 온라인 판매경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표 4. 온라인 현장조사 현황(광고매체별) 〉

(단위 : 건)

구분	공식 홈페이지	대리점			합계
		사이트	카페	커뮤니티	
피심인	1	2	-	1	4

③ (본사 조사) 피심인의 본사를 방문하여 광고 관련 사전·사후 관리체계 및 운영현황 등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 본사 조사 시 본사나 지사 등에서 제작하여 대리점에 배포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광고를 제출받았으나, 대리점과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조사대상과 중복되어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 3. 행위사실

#### 1) 전체 조사결과

피심인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399건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33건(8.3%)의 위반행위를 확인하였으며, 오프라인 395건 중 31건(7.8%), 온라인 4건 중 2건(50.0%)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

〈 표 5. 현장조사 결과 - 전체 〉

(단위 : 건)

구분	조사 건수	위반 건수 (위반율)	오프라인		온라인	
			조사건	위반건	조사건	위반건
피심인	399	33 (8.3%)	395	31 (7.8%)	4	2 (50.0%)

광고 유형별로는 허위광고가 22건(5.5%)로 가장 높고, 기만광고가 15건(3.8%), 과장광고가 13건(3.3%) 순으로 나타났다.

< 표 6. 유형별 위반현황 - 전체 >

(단위 : 건)

구분	조사 건수	위반 건수	허위광고	과장광고	기만광고
피심인	399	33 (8.3%)	22 (5.5%)	13 (3.3%)	15 (3.8%)

※ 하나의 광고물에 위반 유형 건수가 중복되는 사례 등이 있어, 유형별 위반건수의 합계와 전체 위반건수는 차이가 있음(이하 동일)

2) 오프라인 조사결과

피심인의 오프라인 광고 395건을 조사한 결과, 허위·과장광고는 31건으로 위반율은 7.8%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인터넷+IPTV 가입시 사은품 최대지급"처럼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허위광고가 20건(5.1%), "우리가족 뭉쳐서 최대 38,000원 매달 할인"처럼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은 기만광고가 14건(3.5%), "인터넷, TV 신청만 해도 137만원 혜택"처럼 최대 지급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한 과장광고가 12건(3.0%) 순으로 나타났다.

< 표 7. 현장조사 결과 - 오프라인 >

(단위 : 건)

구분	조사건수	위반건수(위반율)	허위광고	과장광고	기만광고
피심인	395	31 (7.8%)	20 (5.1%)	12 (3.0%)	14 (3.5%)

< 피심인의 허위·과장광고 사례(오프라인) >

허위광고	기만광고	과장광고
		
인터넷+IPTV 가입시 사은품 최대지급으로만 광고	우리가족 뭉쳐서 최대 38,000원 매달 할인받아 보세요라고 광고	인터넷, TV 신청만 해도 137만원 혜택으로만 광고

유통 채널별로는 대리점 26건(6.6%), 대형마트 5건(1.3%) 순으로 나타났다.

< 표 8. 유통채널별 위반현황 - 오프라인 >

(단위 : 건)

구분	조사건수	위반건수	대리점	아파트가판	대형마트	지역정보지
피심인	395	31 (7.8%)	26 (6.6%)	-	5 (1.3%)	-

3) 온라인 조사결과

총 4건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허위·과장광고는 2건으로 위반율은 50.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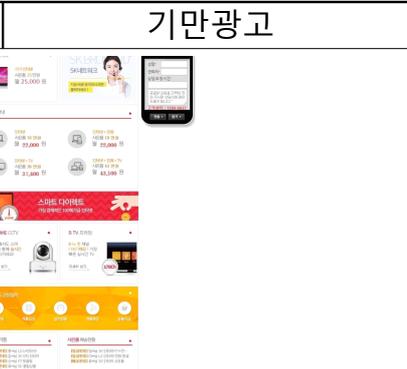
위반유형별로는 "SK인터넷 공짜, 인터넷 무료"처럼 실증 불가능하거나 특정 구성상품의 이용요금을 '무료', '공짜' 등으로 광고하는 허위광고가 2건(50.0%), "최대 129만원 요금할인"처럼 경품을 포함한 금액을 요금할인처럼 광고하는 과장광고와 "노트북, 복합기 등 경품 제공"처럼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는 기만광고가 각각 1건(25.0%)으로 나타났다.

< 표 9. 현장조사 결과 - 온라인 >

(단위 : 건)

구분	조사건수	위반건수(위반율)	허위광고	과장광고	기만광고
피심인	4	2 (50.0%)	2 (50.0%)	1 (25.0%)	1 (25.0%)

< 피심인의 허위·과장광고 사례(온라인) >

허위광고	과장광고	기만광고
 <p>SK인터넷 공짜, 인터넷 무료 등으로 광고</p>	 <p>최대 129만원 요금할인으로 경품도 요금할인으로 광고</p>	 <p>노트북, 복합기 등의 경품을 모두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p>

※ 상기 사례 모두 동일 사이트에서 발취

광고매체별 위반율은 대리점 사이트만 2건(50.0%)으로 나타났다.

〈 표 10. 광고매체별 위반현황 - 온라인 〉

(단위 : 건)

구분	조사건수	위반건수	본사 홈페이지	대리점		
				사이트	카페	커뮤니티
피심인	4	2 (50.0%)	-	2 (50.0%)	-	-

4) 본사 조사결과

피심인의 광고물 관련 사전·사후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본사나 지사에서 직접 제작하는 광고물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전 검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리점 제작 광고물은 평가항목에 허위·과장광고 관련 사항이 있으나 대리점 담당자가 광고물 사후점검만 실시하고 있어, 현장조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리점에서의 허위·과장광고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판매점은 피심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광고에 대한 피심인의 사전·사후 관리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 표 11. 광고 관련 사전·사후 관리현황 〉

구분	사전 관리	사후 관리
피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 및 지사 제작 광고물은 본사(고객언어연구소) 검수 후 배포</li> <li>○ 고객언어연구소 사규 제정 및 광고물 사전검수 사내 공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 매니저가 대리점 광고 사후점검 수행</li> <li>- 대리점 평가항목에 허위·과장광고 관련 사항 포함</li> </ul>

Ⅲ. 행위사실의 위법성

1. 관련 법 규정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에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방통위 고시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3조에서도 결합판매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결합상품 판매를 위해 매장 및 온라인을 통해 ‘인터넷+IPTV 가입시 사은품 최대지급’, ‘노트북, 복합기 등 경품제공’, ‘최대 129만원 요금할인’ 등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로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한 행위는

결합상품 구성이나 할인율, 할인 규모, 할인 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아 이용자로 하여금 구성상품별·할인유형별 할인내용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 바목 및 결합판매 금지행위 기준 제3조 제1항 라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IV. 시정조치 명령

### 1.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피심인의 대리점과 거래하는 판매점에도 본 위반행위와 같은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2.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리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인 자체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대리점에 대한 평가강화, 대리점 및 판매점 종사자 교육 등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본사 및 대리점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8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팝업 창으로 3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고, 문안 및 내용 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0월 00일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 4.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시행령 제44조제1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V. 과징금 부과

법 제53조제1항과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6]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해 피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의 방송통신 결합상품서비스 허위·과장 광고 위반행위와 매출액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 1. 부과 기준금액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에서는 10억 원을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기준금액을 8억 원 이하에서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시인 과징금 부과기준에서는 8억 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위법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기준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율이 가장 높은 방송통신사업자의 위반율이 28.7%이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기준금액을 4억 원으로 산정하고,

피심인은 '위반율'을 기준으로 상대적 위반행위 수준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1억1천5백6십8만 원으로 산정한다.

〈 표 12.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 및 고려사유 〉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액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억 원 초과 8억 원 이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3억 원 이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2. 필수적 가중·감경

피심인은 조사 대상기간을 포함한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금지행위 위반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하되,

동일한 위반행위로 최근 3년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횟수가 없으므로 금지행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여 결과적으로 필수적 가중·감경 금액은 기준금액에 10%가 가산된다.

## 3. 추가적 가중·감경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가중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심인이 2016년부터 「방송통신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방지협의회」를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던 점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100분의 20을 감경하며, 피심인이 '19년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초고속인터넷 분야)을 받은 사실이 있어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결과적으로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은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에 40%가 감경된다.

## 4. 최종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감경 사유를 종합하여 피심인의 최종 과징금은 7천6백만 원이다.

〈 표 13. 최종 과징금 산정내역 〉

(단위 : 만 원)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10%)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	추가적 가중·감경 (-40%)	최종 과징금
11,568	+1,157	12,725	-5,090	7,600

## VI. 형사고발 판단

피심인이 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법 제99조(벌칙)에 따라 3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위한 고발 가능하나, 피심인의 행위가 금지행위 고발 기준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 VII. 결론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9월 9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 6. 케이티파워텔(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10.7)

### 1. 개 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 10. 7.(수)에 KT파워텔(주)가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무전통신서비스(PTT, Push to talk) : 이동통신과 무전기를 결합한 통신서비스. 하나의 채널을 여러 명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동시 통화가 필요한 보안, 운수, 유통 등의 분야에서 활용하는 기업대상 통신서비스

KT파워텔(주)와 (주)MGT(KT파워텔(주)의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2,000원인 서비스를 30,000원으로 제안하여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고지 하였다.

또한, 이와 별개로 KT파워텔(주)는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였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KT파워텔(주)는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약관을 위반하였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KT파워텔(주)에 대해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 원을 부과하였다.

## 2. 관련 사례

### 1 **케이티파워텔(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 심의·의결

안건번호 제2020 - 53 - 238호

안 건 명 케이티파워텔(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케이티파워텔 주식회사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1 KT정보전산센터 19층

의결연월일 2020. 10. 7.

#### 주 문

1.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본 심의·의결서 이유의 사실조사 결과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등 이용약관 위반행위와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및 실제와 다른 이용요금 고지 등 중요사항 거짓고지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용약관에 반영하지 않고 제공하고 있는 요금제를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이용약관에 반영되어 있으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내용의 요금제를 개선하여야 하며, 이용약관에 없는 요금제와 할인율을 대리점 등에서 임의적으로 입력하지 못하도록 요금관리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의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본사 및 대리점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8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팝업창(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으로 3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고,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본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 가. 금 액 : 390,5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I. 기초사실

#### 1. 피심인 일반 현황

피심인은 1985. 12. 30. 한국항만전화(주)로 설립되었으며, 1995. 5. 18. 舊 정보통신부로부터 舊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주파수공용통신(TRS22)을 제공하고 있다.

피심인은 舊 법 제19조에 따라 2004. 4. 22. 서울전파관리소에 등록한 舊 별정통신사업자로 KT의 LTE 통신망을 이용하여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법 제28조 개정(2019. 6. 25. 시행)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로 변경되었다.

피심인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은 502.8억 원이며,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자는 51,001명(247,690회선) 이다.

[표 1] 피심인의 평균 매출액 및 가입자 현황

(단위 : 백만 원, 대, 명)

구 분		TRS	LTE	기타	합계
매출액		12,783	33,867	3,629	50,279
가입자	대 수	6,733	190,269	50,688	247,690
	가입자	1,006	42,016	7,979	5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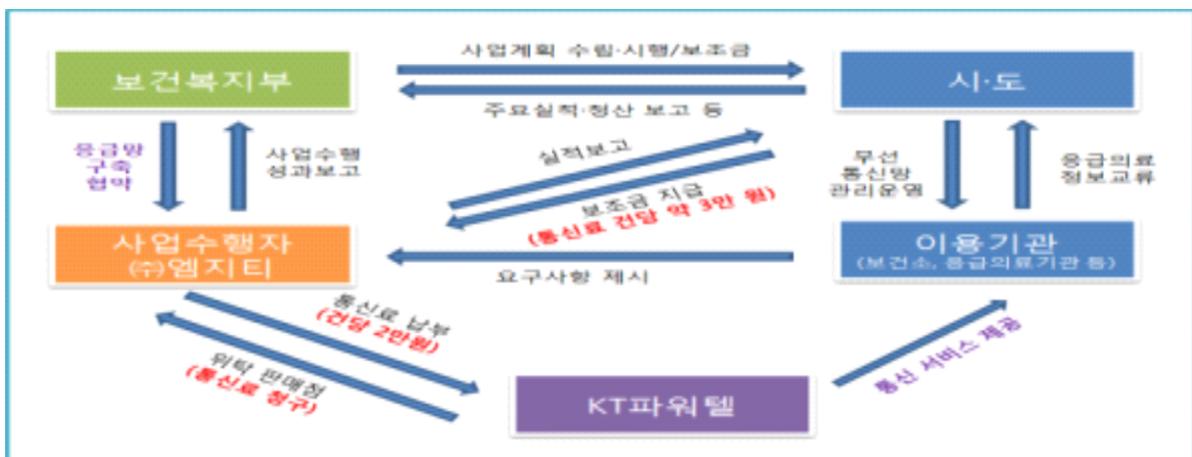
## 2. 피심인과 (주)엠지티간 대리점 계약 현황

피심인은 (주)MGT(피심인의 대리점, 이하 "MGT"라고 함)와 2008. 11. 24.에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2. 27.에 무선재판매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대리점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 3. MGT와 보건복지부간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관련 계약 현황

MGT는 [그림 1]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전국 단위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등에 관한 협약을 보건복지부와 체결하였다.

[그림 1]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운영 체계



22) TRS(trunked radio system) : 주파수공용통신, 단말기의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 1:1 또는 1:다수가 즉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PTT(Push to Talk) 서비스라고도 함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은 2009년도 최초 사업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사업을 주관하다가 2010년에 보건복지부로 사업이 이관되어 2009년~2017년까지 14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MGT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주파수공용 통신 서비스(이하 “TRS서비스”라 함) 4,167대와 무선재판매 서비스(이하 “LTE서비스”라 함) 4,056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 4. 조사 경위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6. 26.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과 관련한 부패 신고건에 대해 MGT가 20,000원인 CMC-기업 요금<sup>23)</sup>을 보건복지부에 30,000원으로 청구하여 10,000원을 편취한 행위를 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첩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①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통신요금 청구·수납 등 이용자 차별,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미작성 등 이용약관 절차 위반 사실이 있고, ② MGT는 피심인의 CMC-기업 요금 22,000원(VAT 포함, 이하 같음)에 8,000원을 추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통신요금 1대당 30,000원(VAT 포함, 이하 같음)을 고지·수납하였고, 피심인은 이러한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법 제50조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II.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피심인과 MGT를 대상으로 2014. 9. 1.부터 2019. 8. 31. 기간 중 ① MGT가 보건복지부에 CMC-기업 요금 22,000원과 유지보수비 8,000원을 더한 30,000원을 통신요금으로 고지한 행위, ② MGT가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미작성,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통신요금 청구, 이용약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③ 피심인이 보건복지부 이외 다른 가입자에 대해서도 이용약관 위반 또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2019. 9. 16.부터 2019. 11. 15.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3) 피심인의 TRS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된 요금제로서 기본요금은 20,000원(VAT 별도)이며, 개별 및 그룹 가입자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포함되지 않은 요금제 임

## 2. 행위사실

### 가. 중요사항 거짓고지 행위(舊 별정통신사업자 지위)

피심인 대전지사의 ○○○과장은 MGT 소속 직원인 □□□부장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무선통신망을 TRS서비스에서 LTE서비스로 전환하는 제안에 대해 협의 하면서, 2015. 8. 21. 오전 10시24분에 [그림 2]와 같이 LTE서비스 월 사용료 22,000원과 단말기를 무상교체해 주는 조건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MGT □□□부장에게 송부하였다.

[그림 2] LTE 무선통신망 제안내용(최초안)

◆ 전환 조건			
◎ 사용 기간 : 국가재난망 도입 후 안정화 시점까지 파워텔 무선 사용			
◎ LTE 통신망 전환 정책에 따른 기존 단말기 한정 무상 교체			
- 현 사용요금 및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이 추진			
(VAT 별도)			
구 분	단말기 대금	월 사용료	비고
TRS	현금 구매 완료	20,000원	
LTE	무상 교체	20,000원	공정거래법에 따른 청구방법 변경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그러나 제안서를 받은 MGT □□□부장은 기존에 월 이용요금 22,000원에 유지보수비 8,000원을 포함해 총 30,000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고 있으니 월 사용료를 30,000원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KTP ○○○과장은 MGT □□□부장의 요청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월 이용요금을 VAT를 포함한 30,000원으로 변경한 제안서를 MGT □□□부장에게 메일로 다시 송부하였다.

[그림 3] LTE 무선통신망 제안내용(수정안)

◆ 전환 조건			
◎ 사용 기간 : 국가재난망 도입 후 안정화 시점까지 파워텔 무선 사용			
◎ LTE 통신망 전환 정책에 따른 기존 단말기 한정 무상 교체			
- 현 사용요금 및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이 추진			
(VAT 포함)			
구 분	단말기 대금	월 사용료	비고
TRS	현금 구매 완료	30,000원	
LTE	무상 교체	30,000원	공정거래법에 따른 청구방법 변경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이에 MGT □□□부장은 KTP ○○○과장으로부터 받은 제안서(월 이용요금 30,000원과 단말기 무상교체)를 보건복지부에 메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심인 내부적으로는 2015. 8월부터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통신 단말기 4,042대중 4,000대를 TRS서비스에서 LTE서비스(Radger1)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2015. 9. 25.)하면서,

요금제는 TRS서비스의 CMC-기업요금(22,000원)에서 8,000원을 할인하고, 단말기 할부금 8,000원(40개월 할부)을 청구(총액을 22,000원으로 맞춤)하며, 약정기간은 국가재난망 도입 완료 전까지로 산정하였으며

피심인은 MGT에게 이용요금에 단말기 할부금을 포함한 계산서를 발행하고, MGT는 보건복지부에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내부 결재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요금청구서를 MGT 주소지(보건복지부 청구지를 2010. 5. 28.부터 MGT로 변경)로 보냈고, MGT는 이용요금 30,000원을 반기 단위로 보건복지부에 청구·수납하여 피심인에게 22,000원(통신요금 12,000원, 단말할부금 8,000원, VAT 2,000원)을 [그림 4]와 같이 납부하였다.

[그림 4] 피심인의 MGT 대상 요금청구 내역

**5. KTP가 ㈜MGT에 대하여 응급의료통신요금 청구 내역(2010년 ~ 2019년)**

- 약 64.1억원 청구 (vat 포함)
- 청구 대상: ㈜MGT
- 청구 기간(91개월): 2010.07 ~ 2018.01 \_ 사용기준: 2010.06 ~ 2017.12
- \* M월 사용분에 대해 M+1월 청구
- 기본요금: 월 22천원/대
- 일시정지(월요금 5.5천원\_vat 포함), 신규가입(요금 일할계산) 등 존재

청구연도	청구월	청구대수(대)	청구금액(원, vat포함)	청구연도	청구월	청구대수(대)	청구금액(원, vat포함)
2010년	7월	851	11,298,980	2015년	1월	4,167	88,792,530
	8월	851	18,944,640		2월	4,167	88,792,000
	9월	851	18,722,000		3월	4,167	88,792,000
	10월	851	18,722,000		4월	4,175	88,805,040
	11월	851	18,722,000		5월	4,175	89,001,000
	12월	851	18,722,000		6월	4,175	89,031,330
	소계		<b>105,131,620</b>		7월	4,175	89,050,500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이상과 같이 피심인은 MGT의 요구에 따라 22,000원인 CMC-기업 요금을 3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제안서를 MGT로 송부하였고, MGT는 별도로 유지보

수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료 외에 별도의 유지보수비 8,000원을 포함하여 30,000원으로 작성된 피심인의 자료를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이용요금, 할부금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 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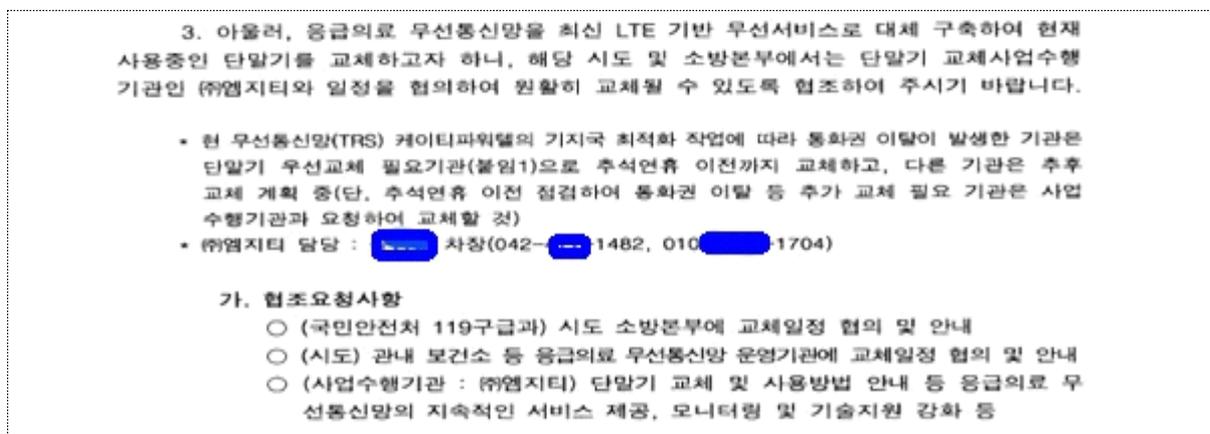
### 1)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 체결(舊 별정통신사업자 지위)

「케이티파워텔 무선재판매(LTE)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청이 완료되고

"이용약관에 동의"함은 "이용고객"이 본 이용약관을 숙지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간주하며, "이용고객"이 "가입신청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로 간주하고 "가입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을 승낙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입신청서 서류는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여권 사본과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과 MGT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통신망 TRS서비스(3,755대) 해지 및 LTE서비스(4,056대) 신규 가입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림 5]와 같이 단말기 교체 관련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 공문만으로 무선재판매 서비스 가입을 승낙하였다.

[그림 5] 보건복지부 관련 문서(일부)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또한, 피심인은 2015. 2. 15. 삼성전자(주) LTE서비스 159대, 2015. 10. 23. 서울고속도로(주) LTE서비스 31대, 2015. 1. 23. (주)호텔신라 LTE서비스 15대에 대해 별도의 청약서로 대체하는 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LTE서비스 가입을 승낙하였다.

## 2)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기간통신사업자 및 舊 별정통신사업자 지위)

### 가) KTP-MGT의 이용요금 과다 청구

MGT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무선통신망과 관련하여 기존 TRS서비스에서 LTE서비스로 전환하면서 이용요금 30,000원, 국가재난망 도입 후 안정화 시점까지 피심인의 무전 사용, LTE 통신망 전환 정책에 따른 기존 TRS 단말기의 LTE 단말기 무상 교체 조건으로 MGT □□□부장과 피심인의 대전지사 ○○○과장이 협의한 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공동 제안하고

그 후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CMC-기업 요금에서 8,000원을 정액 할인하고 단말기 할부금은 40개월 할부로 월 8,000원을 청구하며, 세금계산서는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을 합산한 금액을 MGT로 발행하는 내용의 내부결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LTE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MGT는 보건복지부에는 LTE서비스 4,056대에 대하여 월 사용료 30,000원을 청구·수납하고, 피심인에게는 이용요금 12,000원과 단말기 할부금 8,000원, VAT 2,000원 등 총 22,000원을 납부하여 그 결과 8,000원의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수납하였다.

### 나) 차별적 할인 적용

① 피심인은 TRS 및 LTE 가입자의 회선 규모, 이용요금, 약정기간 등 타당한 근거 없이 고객의 요구나 입찰금액에 따라 9,287가입자(86,128회선)에 대해 기본료 또는 사용료를 할인(특판할인)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sup>24)</sup>하였고

②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 총액계약이나 용역서비스계약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사용하는 요금제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에 맞추어 정책할인이나 특판할인을 임의적으로 적용<sup>25)</sup>하였으며

24)

< 특판할인 임의 적용 사례 >

③ 피심인은 LTE서비스 이용약관에 없는 CMC-기업요금제 27개 가입자 중 삼성전자(주) 등 14개 가입자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sup>26)</sup>하지 않았으나, (주)부일레미콘 등 5개 가입자에 대하여는 LTE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한 2년 약정 5%, 주안레미콘(주) 등 7개 가입자에 대하여는 3년 약정 10%를 적용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하여는 LTE서비스 이용약관에 없는 할인을 40%를 2015. 10. 27.부터 조사일 당시까지 적용하였다.

④ 피심인은 다량이용 가입자에게는 맞춤형 요금제를 TRS 이용약관에 반영하였으나, 일반요금제와 부당하게 차별적인 요금과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차별<sup>27)</sup>하였다.

⑤ 피심인은 보건복지부가 2018. 2월부터 2019. 6월까지 단말기 할부금 425,216천 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다른 가입자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요금을 연체한 단말기 총 151,679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를 하고, 총 27,042대에 대해서는 해지 처리하였다.

⑥ 피심인은 2016. 3. 9.에 보건복지부의 TRS서비스 iDEN 단말기 4,156대중 100대에 대하여 해지처리 하지 않고 이용요금을 100% 할인하였으며, 운용기한이 2019. 2월까지

가입자명	서비스 유형	요금제	회선수	약관상 요금 (VAT 별도)	할인금액	할인율	비고
	LTE	T Radger 26(FMC)	2,056	26,000	10,000	38.5%	기본료
	3G	3G M2M	2,180	4,000	2,000	50%	사용료
	LTE	R 25	487	25,000(기본료) 1,121*(사용료)	5,000(기본료) 1,121(사용료)	23.4%	기본료+ 사용료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25)

〈 별도 계약 및 이용요금 임의적용 사례 〉

가입자명	상품 유형	요금제	약관상 요금 (VAT 별도)	계약사항		비고
				유형	계약금액 (회선별 요금)	
	RADGER	CMC-기업	20,000	총액	월 12,000원	40% 할인
	RADGER	P Light (Bulk20)	15,400	총액	5년 13.74억원	1,300 회선 용역비, FMC, 지령대, 비상호출 포함
	RADGER	R 25	37,979	단가	월 23,900원	4,469 회선 37.1% 할인, 약관없음
	RADGER	Slave (FMC)	31,000	총액	월 1.25억원 (대당 약 18,800원)	5,970 회선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26)

〈 CMC-기업 요금제 이용자별 할인내역 〉

임에도 조사종료일 당시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용요금을 100% 할인해 주는 등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 이용약관 위반행위

고객명	대수	가입일	요금(VAT 별도)	할인금액	실제요금
합계	5,687				
	4,056	2015-10-27	20,000	8,000	12,000
	474	2015-10-11	20,000	-	20,000
	179	2016-04-02	20,000	-	20,000
	113	2015-02-11	20,000	-	20,000
	82	2015-05-12	20,000	-	20,000
	72	2015-05-15	20,000	-	20,000
	71	2015-04-24	20,000	1,000	19,000
	54	2015-03-11	20,000	1,000	19,000
	52	2014-10-23	20,000	-	20,000
	47	2015-04-10	20,000	2,000	18,000
	44	2015-03-27	20,000	2,000	18,000
	43	2015-02-02	20,000	1,000	19,000
	39	2016-10-25	20,000	-	20,000
	38	2015-04-24	20,000	2,000	18,000
	35	2015-04-07	20,000	2,000	18,000
	32	2015-05-20	20,000	2,000	18,000
	32	2015-10-23	20,000	-	20,000
	31	2015-05-21	20,000	-	20,000
	30	2014-09-30	20,000	-	20,000
	29	2015-05-28	20,000	-	20,000
	29	2015-04-24	20,000	1,000	19,000
	28	2015-05-02	20,000	2,000	18,000
	19	2015-06-14	20,000	-	20,000
	16	2014-11-04	20,000	2,000	18,000
	15	2015-01-23	20,000	-	20,000
	15	2015-05-20	20,000	1,000	19,000
	12	2015-01-24	20,000	-	20,000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27)

< 사업자 맞춤형 요금제 적용 사례 >

요금제	기본료(월)	출시 시점	종료 시점	주요내용	약관신고 여부	유사 요금제
	26,000원	2014.5	판매중	개별/그룹 무전 무제한 이동전화(망내) 1,000분	TRS 약관 신고	-
	25,659원	2011.10	판매중	개별/그룹 무전 무제한 이동전화(망내) 300분	TRS 약관 신고	CMC-기업 plus300 (31,000원)
	23,862원	2013.4	판매중	개별/그룹 무전 무제한	TRS 약관 미신고	CMC-기업(석유공사) (30,000원)
	20,000원	2002.12	판매중	개별/그룹 무전 무제한	TRS 약관 신고	CMC-기업(석유공사) (30,000원)
	31,000원	2010.5	판매중	개별/그룹 무전 무제한	TRS 약관 신고	CMC-기업(석유공사) (30,000원)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1)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기간통신사업자 지위)

피심인은 TRS서비스에 대해 舊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舊 법 제28조에 따라 이용약관을 신고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KTP Family-2005 등 TRS 서비스 5개 요금제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에 규정하고도 舊 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등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sup>28)</sup>하였다.

(2) 등록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舊 별정통신사업자 지위)

피심인은 LTE서비스에 대해 舊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된 舊 별정통신사업자로서 舊 법 제23조에 따라 이용약관을 등록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PTT Smart54 등 LTE서비스 6개 요금제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에 규정하고도 舊 법 제23조 및 舊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용자에게 제공<sup>29)</sup>하는 등 등록된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III. 행위사실의 위법성

1. 관련 법 규정

28) < TRS 이용약관 미신고 현황 >

서비스구분	요금제	서비스개시	대수	이용자수	대표이용자
TRS (기간통신)	소계	5개	16	11	
	KTP Family-2005	2005-09-15	5	4	
	Double V Family(Partner)	2012-07-19	4	4	
	PTT-기업Plus(망내)	2011-03-03	4	1	
	KTPF_법인	2001-04-01	2	1	
	Double V Family	2012-07-19	1	1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

29) < LTE 이용약관 미등록 현황 >

서비스구분	요금제	서비스개시	대수	이용자수	대표이용자
LTE (무선재판매)	소계	6개	10,928	225	
	CMC-기업	2014-09-30	4,314	67	
	TR 21	2015-05-26	508	1	
	PTT Smart54	2019-06-25	170	56	
	P Radger Family	2014-12-05	116	58	
	T Radger Family	2014-12-05	50	42	
	해경Slave(FMC)	2018-08-28	5,770	1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

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이용약관(제28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5호의2에서는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에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 2. 대리점 행위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행위 간주 관련 법령 규정

법 제50조 제2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해 법 제52조 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3. 금지행위에 대한 처분 관련 법령 규정

법 제5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전기통신의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5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함)에서 구체적인 과징금 상한액 및 기준금액 산정 방식 등을 정하고 있다.

법 제99조에서는 법 제50조 제1항 각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이하 "금지행위 고발기준"이라 함) 제2조에서 구체적인 고발기준을 정하고 있다.

## 4. 위법성 판단

### 가. 중요사항 거짓고지 행위(舊 별정통신사업자 지위)

MGT가 CMC-기업요금(22,000원)을 TRS서비스 이용약관대로 고지하지 않고 월 이용료 30,000원으로 보건복지부에 고지한 행위는 이용요금,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으로 고지한 행위로서,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2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의2-나목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 1)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 체결(舊 별정통신사업자 지위)

피심인이 보건복지부, 삼성전자(주) 등 4개 가입자에 대하여 LTE서비스 4,261대의 신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 위임장 등 관련 첨부 서류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입을 승낙하고, 가입신청서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나목-3)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2)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기간통신사업자 및 舊 별정통신사업자 지위)

피심인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무선통신망의 LTE서비스 전환시 대리점인 MGT와 함께 CMC-기업 요금을 30,000원으로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 통신요금 청구지를 보건복지부 주소지가 아닌 MGT로 발송하여 MGT로부터는 22,000원을 받고,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MGT가 실제 이용요금보다 8,000원이 추가된 30,000원의 요금을 청구·수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마목-1)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심인이 가입자의 회선 규모, 이용요금, 약정기간 등 타당한 근거 없이

고객의 요구나 입찰금액에 따라 요금을 할인하는 행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대해 요금제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에 따라 임의적으로 할인을 적용하는 행위, 가입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할인을 적용하거나 연체를 처리하는 행위 등은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호-마목-1)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다. 이용약관 위반행위

### 1)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기간통신사업자 지위)

피심인은 舊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명과 이용요금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주)올레렌트카 등 11개 가입자에게 KTP Family- 2005 등 5개 서비스를 제공하여

“舊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舊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전단의 규정을 위반<sup>30)</sup>한 것으로 인정된다.

### 2) 등록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舊 별정통신사업자 지위)

舊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전단에서는 舊 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인가받은 이용약관만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舊 법 제23조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와 이용요금 등을 이용약관을 등록해야 하는 舊 별정통신사업자는 舊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따른 이용약관 위반행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피심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30) 약관신고 의무사업자를 회선설비 보유사업 매출액 300억 원 이상,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매출액 800억 원 이상 사업자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9. 6. 25. 시행)으로 피심인이 약관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9. 6. 25. 이후 이용약관을 변경신고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금지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

[표 2] 피심인의 사업자 지위별·금지행위 유형별 위반행위 내역

구분	이용자 차별행위		이용약관 위반행위
	중요사항 거짓고지	이용자 이익저해	
		법 제50조제5호의2 영 제42조 [별표 4] 5호의2-나목	법 제50조제5호 후단 영 제42조 [별표 4] 5호-마목-1), 5호-나목-3)
기간통신 사업자 지위	-	차별적 할인적용	기간통신 이용약관 미신고
舊 별정통신 사업자 지위	보건복지부에 2.2만원 요금을 3만원으로 제안·청구	복지부 과다요금 청구, 차별적 할인적용, 절차 위반	-

#### IV. 시정조치 명령

##### 1.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등 이용약관 위반행위와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및 실제와 다른 이용요금 고지 등 중요사항 거짓고지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2.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용약관에 반영하지 않고 제공하고 있는 요금제를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이용약관에 반영되어 있으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내용의 요금제를 개선하여야 하며, 이용약관에 없는 요금제와 할인율을 대리점 등에서 임의적으로 입력하지 못하도록 요금관리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의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본사 및 대리점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8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에 팝업창(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으로 3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고,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케이티파워텔 주식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케이티파워텔 주식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와 무선재판매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약관 위반행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 중요사항 거짓고지 행위"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0월 00일

케이티파워텔 주식회사 대표이사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 4.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V. 과징금 부과

#### 1. 부과 근거 및 기준

피심인에게 법 제53조 제1항과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6]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피심인이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5호 나목 및 마목과 5호의2 나목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법 제53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6]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기간 중 별정 및 기간사업자별 해당 서비스의 연평균 매출액과 위반행위 관련 가입회선 수, 월평균 매출액, 가입기간 등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하므로 매출액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다.

## 2. 부과 상한액

법 제53조 제1항과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6]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행위는 제4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므로

기간통신 역무(TRS)의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은 12,783백만 원으로 부과 상한액은 127.8백만 원이며, 舊 별정통신 역무(LTE)의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은 33,867백만 원으로 부과 상한액은 338.6백만 원이다.

[표 2] 피심인의 최근 3년간 역무별 매출액

(단위 : 백만 원)

연도	역무별 매출액				
	TRS	LTE	IMT2000	국제전화	합계
2016년	23,869	30,390	4,718	20	58,997
2017년	9,235	36,592	3,485	10	49,322
2018년	5,246	34,618	2,651	2	42,518
3년 평균	<b>12,783</b>	<b>33,867</b>	3,618	11	50,279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 3. 부과 기준금액

법 제53조 제1항과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6]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기간통신 역무는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되, 장기간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가 발생하여 피해가 중대하지만, TRS 수요자가 주로 대규모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B2B 시장의 특성상 가입자에 따른 요금이나 제공조건 등의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피해범위가 광범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
중대한 위반행위	1~2%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 이내

중대성의 정도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舊 별정통신 역무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거짓고지 등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되,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용요금을 차별적으로 할인해주는 행위와 다르게 이용요금을 과다하게 받았고, 과다 청구기간이 장기간 이루어졌으며,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가 중대하지만, 2019. 1월부터 과다 청구를 중지하였고, LTE 수요자가 주로 대규모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B2B 시장의 특성상 가입자에 따른 요금이나 제공조건 등의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기간통신 역무 및 舊 별정통신 역무의 부과기준율은 각각 1.5%를 적용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기준금액을 [표 4]와 같이 산정한다.

[표 4] 역무별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단위 : 천 원)

기준금액	기간통신 역무		舊 별정통신 역무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저해	이용자 이익저해	중요사항 거짓고지
1.5%	205	45,695	463,146	19,034

#### 4. 필수적 가중·감경

피심인의 기간통신 역무 및 舊 별정통신 역무 모두 전기통신역무에 대하여 이용약관 위반행위,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중요사항 거짓고지 행위 등 동일한 위반행위로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 5. 추가적 가중·감경

피심인의 기간통신 역무와 舊 별정통신 역무 모두 단독사업자 조사로 주도 또는 선도에 해당되지 않고, 위반행위로 시장점유율이 증가되지 않는 등 가중사유는 없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에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은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에 10%를 감경한다.

### 6. 최종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을 반영한 피심인의 최종 과징금은 3억9,050만 원이다.

[표 5] 최종 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기간통신 역무		舊 별정통신 역무	
	이용약관 위반	이용자 이익저해	이용자 이익저해	중요사항 거짓고지
부과기준금액	205	45,695	463,146	19,034
필수적가중/감경	-21	-4,569	-46,315	-1,903
추가적가중/감경	-18	-4,113	-41,683	-1,713
부과금액	100	37,000	338,000	15,400
소계	37,100		353,400	
합계	390,500			

### VI. 형사고발 판단

피심인이 법 제5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법 제99조(벌칙)에 따라 3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위한 고발 가능하나, 피심인의 행위가 금지행위 고발기준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 VII. 통보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결결과를 통보하고, 피심인의 이용약관 미준수 행위 및 변경 등록 또는 변경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며, 피심인의 대리점인 MGT가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과다 청구한 내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통보한다.

## VIII. 결론

상기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0월 7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 7.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11.24)

### 1.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1월 24일(화) 광고 삭제 제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한 인터넷신문사업자 2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17년 1월 31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20.2.18일부터 '20.7.31일까지 21개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대상으로 '17.2.1일부터 '19.12.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1개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삭제 시도 시, 플로팅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하게 하는 행위,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이동 시, 게시물 목록 정보 등의 정보를 가리는 "삭제표시(☒) 없는 광고"를 생성하고, 해당 광고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가 생성된 후 삭제하게 하는 행위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업무 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 공표 및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와 이행결과 제출을 명령하였다.

## 2. 관련 사례

### **1**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69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52)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경향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의결연월일 2020. 11. 24.

####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주)경향신문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sup>31)</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32)</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사업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31)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3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2. 조사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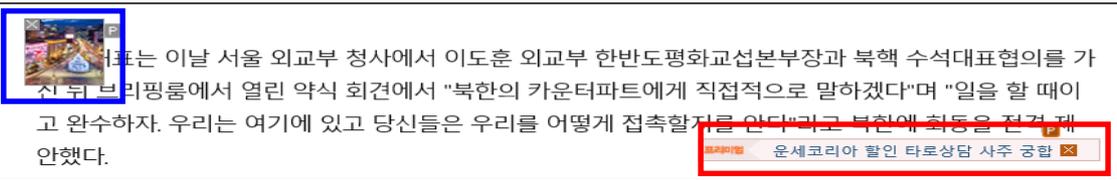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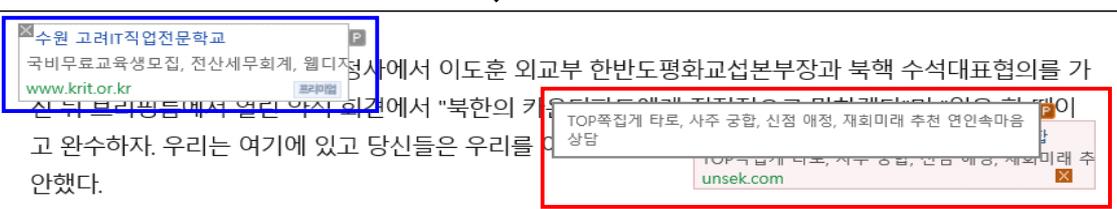
최초 화면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	
삭제 시도 후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p)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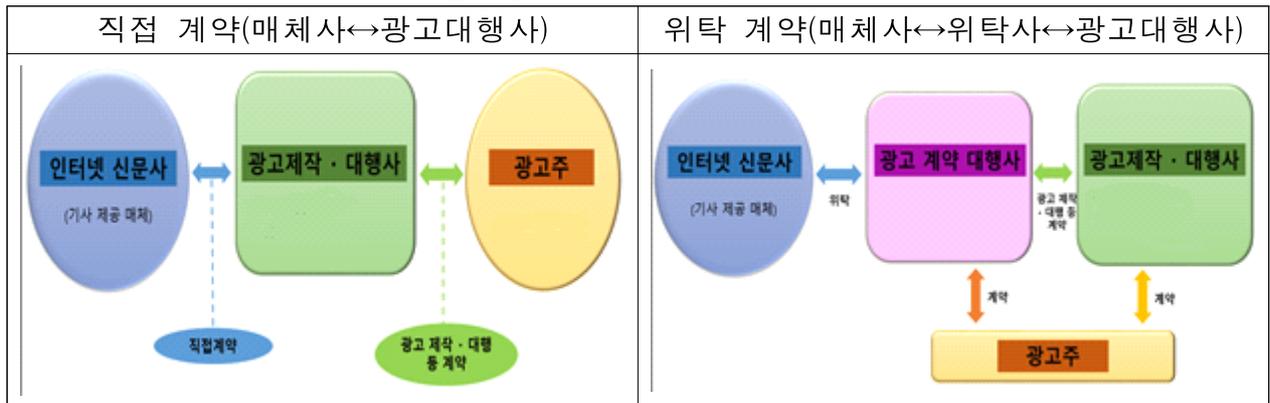
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최초 화면	 <p>이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 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고 북한에 회동을 전격 제 안했다.</p>
↓	
삭제시도 후	 <p>수원 고려IT직업전문학교 국비무료교육생모집, 전산세무회계, 웹디자인 www.krit.or.kr</p> <p>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 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안했다.</p>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33)</sup>인 □□□□□과 계약서 존부와 관계없이 매월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존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로팅광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34)</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33)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34)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 4.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 4월)·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 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70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53)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뉴스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7

의결연월일 2020. 11. 24.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주)뉴스1(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sup>35)</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36)</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35)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3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2. 조사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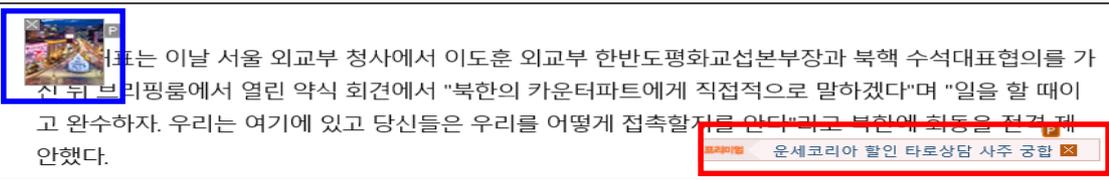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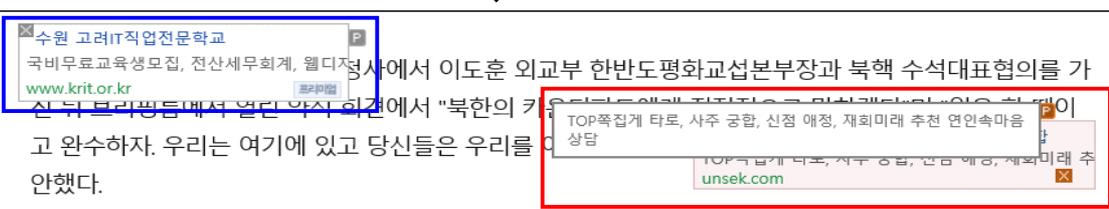
최초 화면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	
삭제 시도 후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를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p)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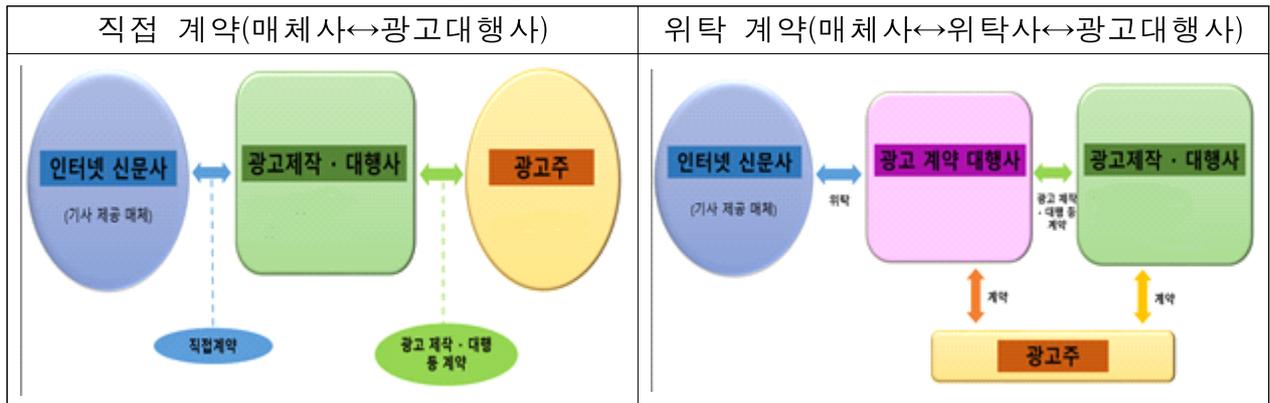
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최초 화면	 <p>이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 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고 북한에 회동을 전격 제 안했다.</p>
↓	
삭제시도 후	 <p>수원 고려IT직업전문학교 국비무료교육생모집, 전산세무회계, 웹디자인 www.krit.or.kr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 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안했다.</p>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37)</sup>인 □□□□□ 매월 자동 연장하는 방식  
으로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존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로팅광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38)</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37)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38)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 4.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 4월)·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 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71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54)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뉴시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의결연월일 2020. 11. 24.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주)뉴스시스(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 서비스<sup>39)</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40)</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39)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4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2. 조사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 제한하는 행위』(’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최초 화면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	
삭제 시도 후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흔들림과 흐림현상을 방지하는 5축 Du...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www.panasonic.co.kr 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p)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

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최초 화면	<p>이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고 북한에 최동을 전격 제 안했다.</p>
↓	
삭제시도 후	<p>수원 고려[직업전문학교] 국비무료교육생모집, 전산세무회계, 웹디자인 www.krit.or.kr</p> <p>이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고 북한에 최동을 전격 제 안했다.</p> <p>TOP쪽집게 타로, 사주 궁합, 신점 애정, 재회미래 추천 연인속마음 상담 unsek.com</p>

또한,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 이외에 새로운 형태로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이동 시, 게시물 목록 정보를 가리는 “삭제표시(☒) 없는 광고”를 생성하고 해당광고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가 생성된 후 삭제가 가능한 광고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금지행위 유형⑧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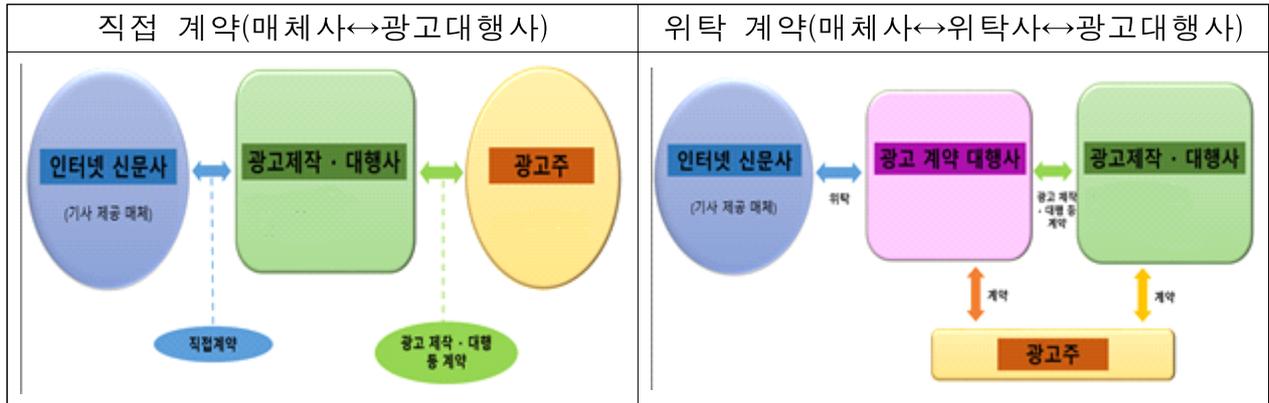
< 증적자료 3 > 신유형의 위반 광고 형태

<p>삭제표시 없는 광고</p>	⇒	<p>마우스 커서 이동 시 삭제표시 생성</p>
-------------------	---	----------------------------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41)</sup>인 □□□□□□ 및 ○○○○○○○○와 매월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준부와 관계 없이 해당 플로팅광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41)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42)</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4.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 4월)·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42)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

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 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72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56)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데일리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의결연월일 2020. 11. 24.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주)데일리안(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 서비스<sup>43)</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44)</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43)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4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2. 조사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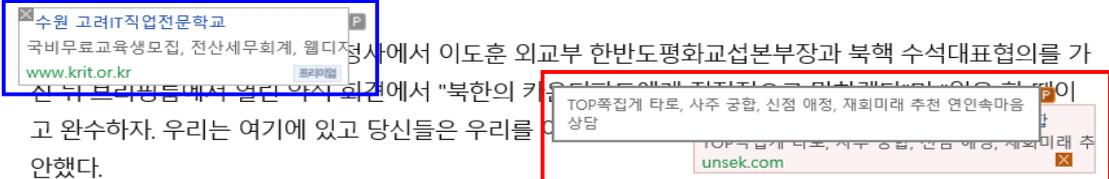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최초 화면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의 역사          성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p>☒ 선박해체 및 철거전문 신세기항공해운</p>
↓	
삭제 시도 후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의 역사          성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p>www.panasonic.co.kr</p> <p>☐ 선박해체 및 철거전문 신세기항공해운          sinsegeship.com</p>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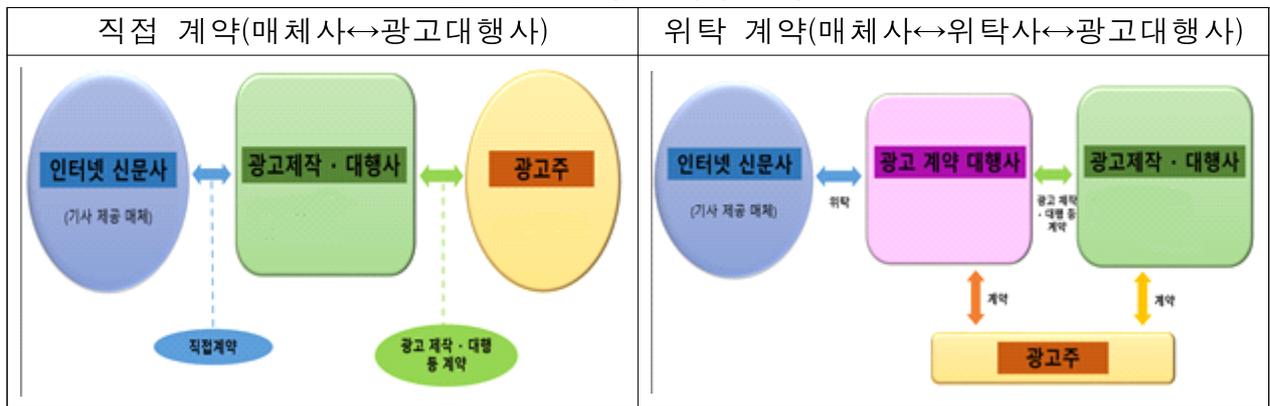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최초 화면	 <p>...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 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고 북한에 회동을 전격 제 안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운세코리아 할인 타로상담 사주 공합 ☒</p>
↓	
삭제시도 후	 <p>수원 고려IT직업전문학교 국비무료교육생모집, 전산세무회계, 웹디자인 www.krit.or.kr</p> <p>...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 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고 북한에 회동을 전격 제 안했다.</p> <p style="text-align: right;">TOP쪽집계 타로, 사주 공합, 신정 애정, 재희미래 추천 연인속마음 상담 unsek.com ☒</p>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45)</sup>인 □□□□□□ 및 ○○○○○○○○○과 계약서 존부와 관계없이 매월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존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로팅광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46)</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45)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46)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 4.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 4월)·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 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73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55)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동아닷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의결연월일 2020. 11. 24.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주)동아닷컴(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sup>47)</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48)</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47)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4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2. 조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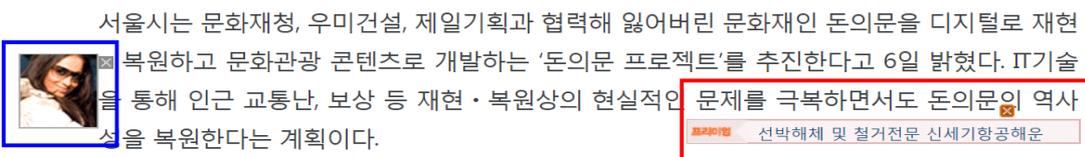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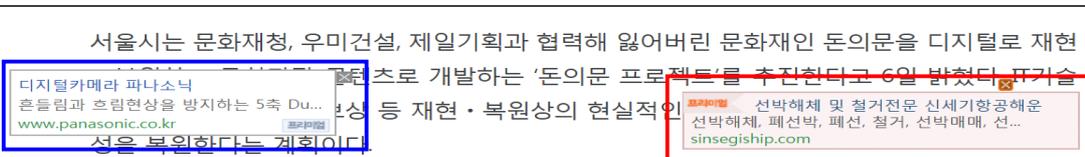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 제한하는 행위』(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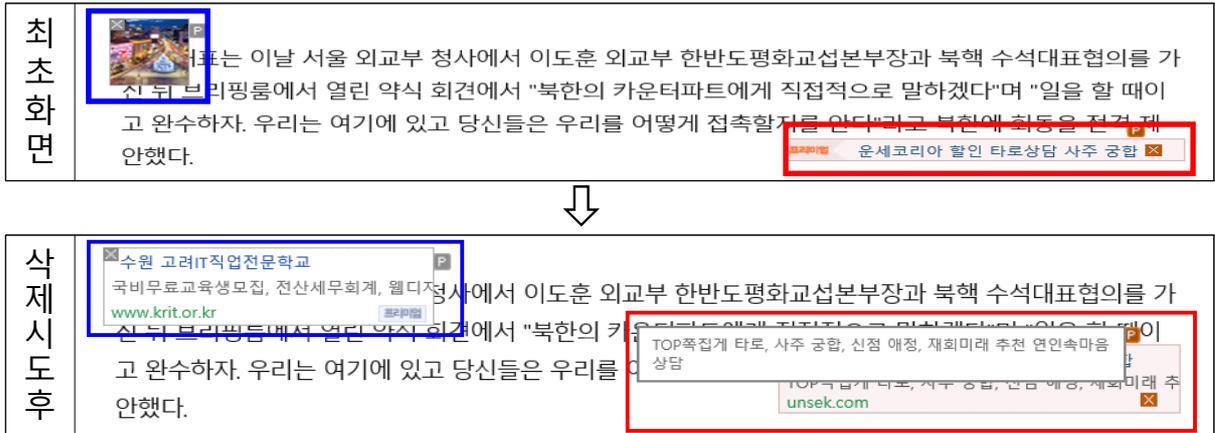
최초 화면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	
삭제 시도 후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p)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

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또한,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 이외에 새로운 형태로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이동 시, 게시물 목록 정보를 가리는 “삭제표시(☒) 없는 광고”를 생성하고 해당광고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가 생성된 후 삭제가 가능한 광고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금지행위 유형⑧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3 > 신유형의 위반 광고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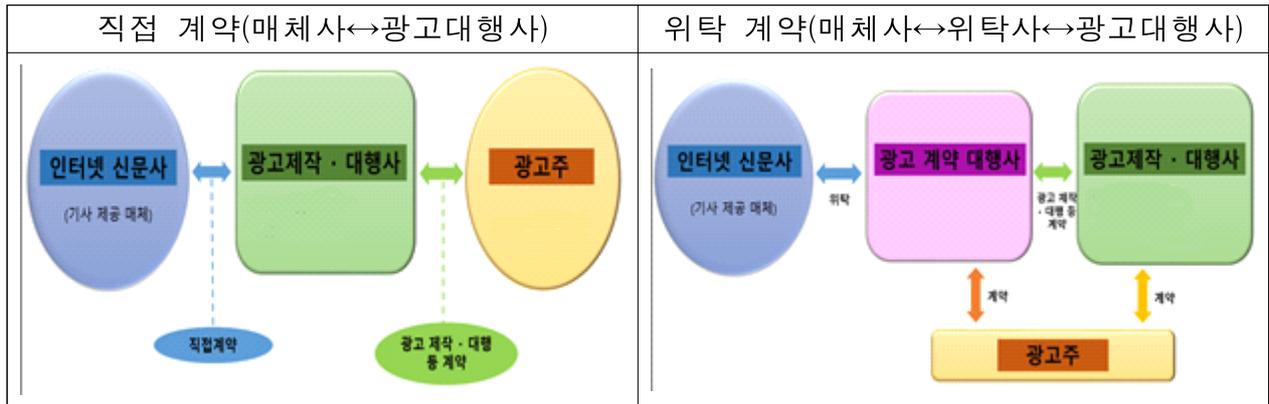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49)</sup>인 □□□□□ 및 ○○○○○○○○○○○과 매월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면 또는 구두)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존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로팅광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49)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확인하였다.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50)</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 4.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50)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4월)·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 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1.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74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58)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마이데일리(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의결연월일 2020. 11. 24.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마이데일리(주)(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sup>51)</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52)</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51)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5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2. 조사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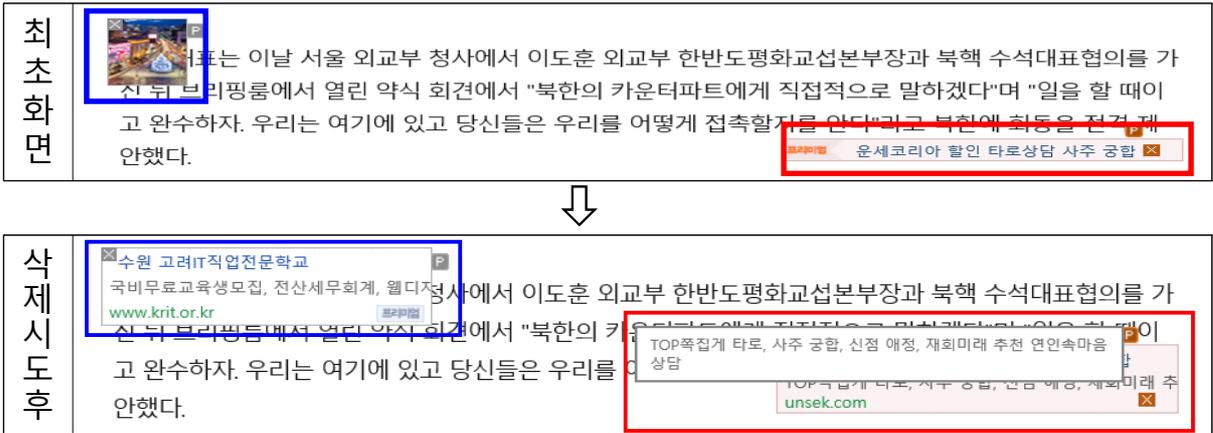
최초 화면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성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	
삭제 시도 후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성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p)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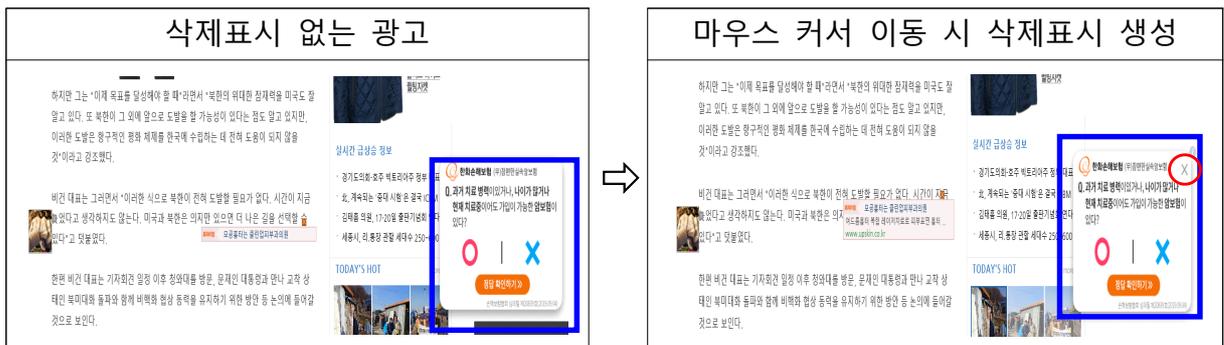
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또한,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 이외에 새로운 형태로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이동 시, 게시물 목록 정보를 가리는 “삭제표시(☒) 없는 광고”를 생성하고 해당광고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가 생성된 후 삭제가 가능한 광고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금지행위 유형⑧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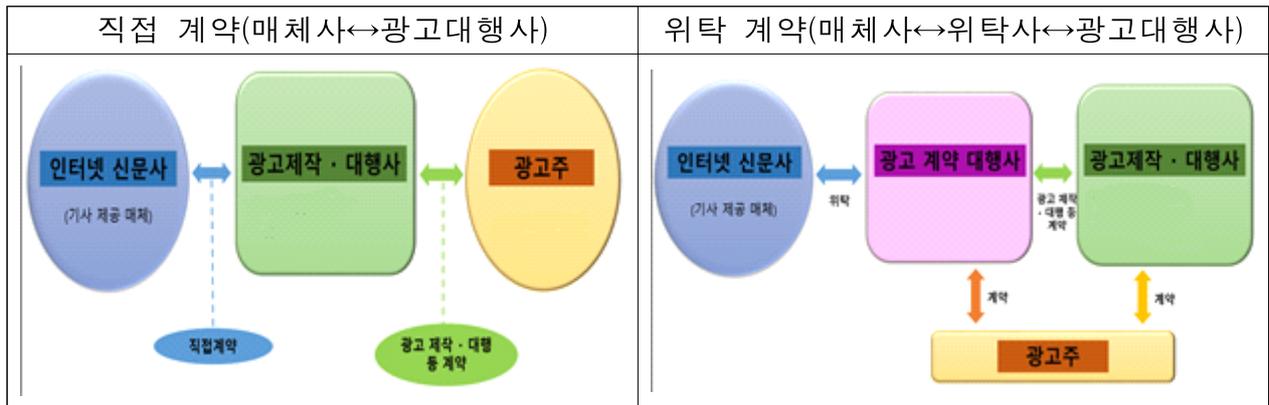
< 증적자료 3 > 신유형의 위반 광고 형태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53)</sup>인 □□□□□□ 및 ○○○○○○○○○자 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면 또는 구두)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존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로팅광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53)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54)</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4.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 4월)·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54)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

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75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57)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머니투데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의결연월일 2020. 11. 24.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주)머니투데이(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sup>55)</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56)</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55)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5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2. 조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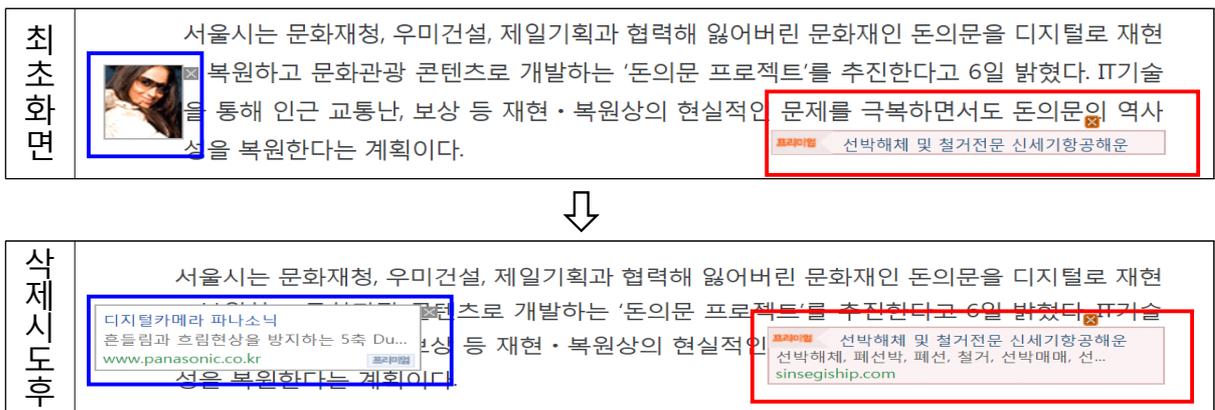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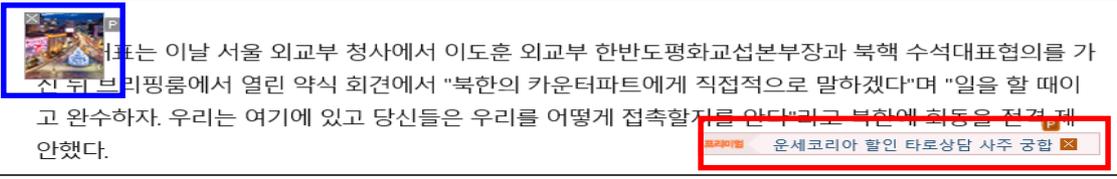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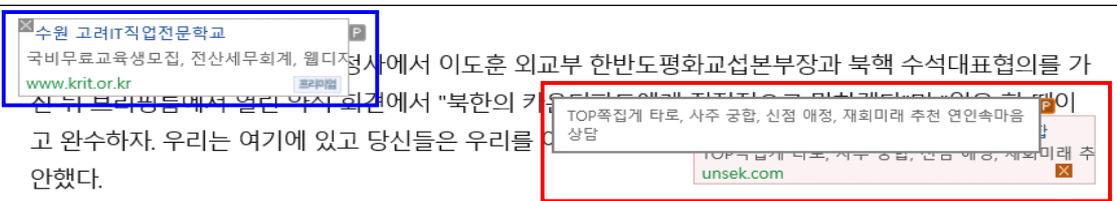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p)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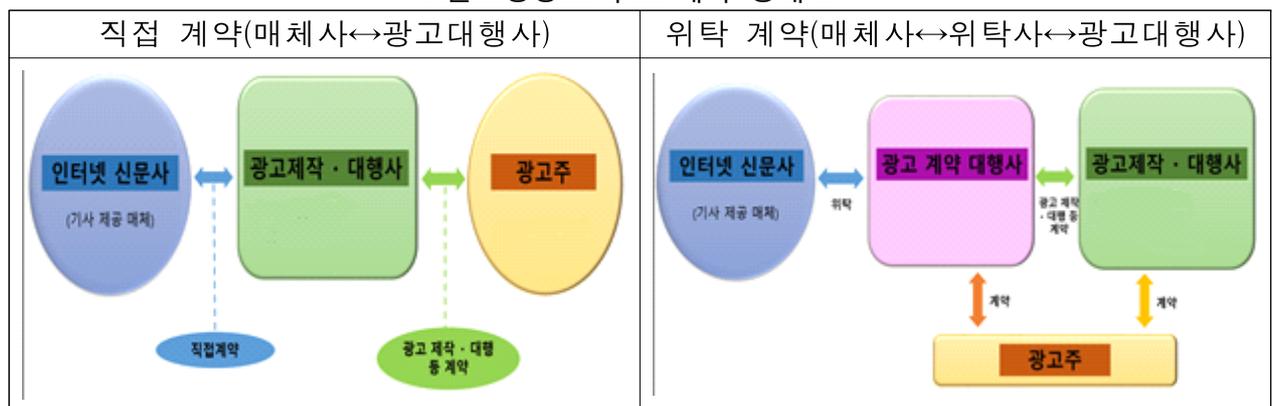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최초 화면	 <p>...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 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고 북한에 회동을 전격 제 안했다.</p>
↓	
삭제시도 후	 <p>...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 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안했다.</p>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57)</sup>인 ○○○○○○와 매월 자동 연장하는 방식  
으로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  
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존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로팅광  
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58)</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57)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58)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 4.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 4월)·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 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76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59)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문화일보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2

의결연월일 2020. 11. 24.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주)문화일보(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 서비스<sup>59)</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60)</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59)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6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2. 조사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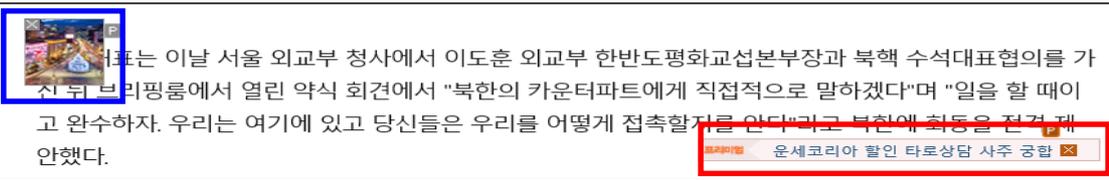
최초 화면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	
삭제 시도 후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p)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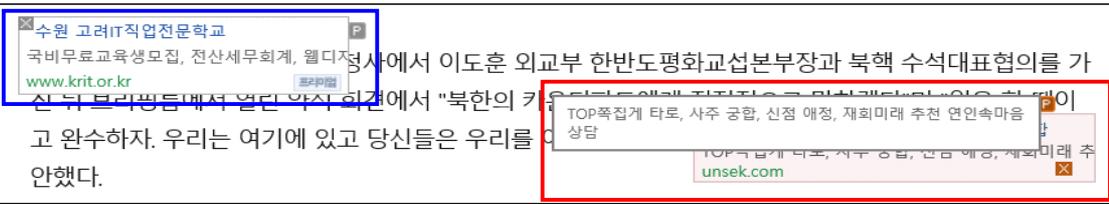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

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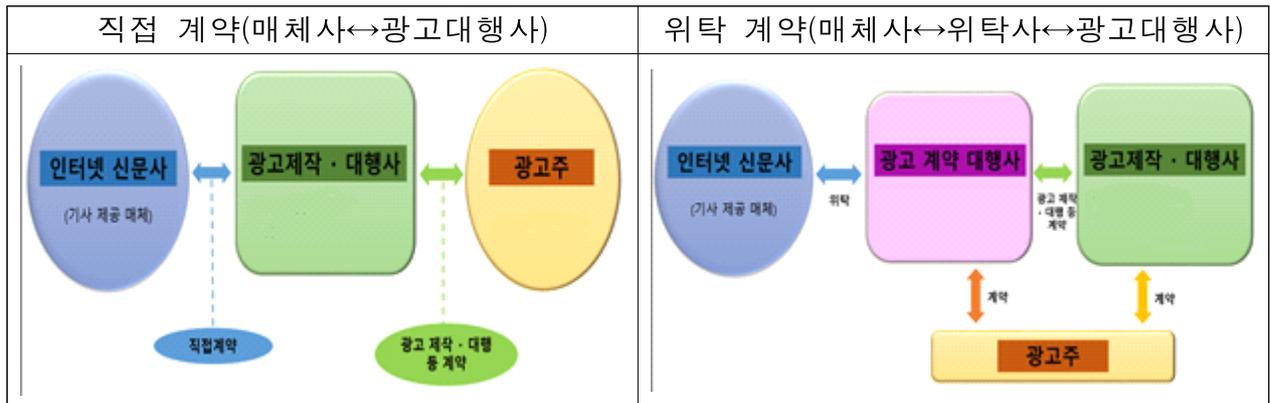
최초 화면	 <p>이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고 북한에 회동을 전격 제 안했다.</p>
-------	---------------------------------------------------------------------------------------------------------------------------------------------------------------------------------------------------------------------------------------------------------------------------------



삭제시도 후	 <p>수원 고려IT직업전문학교 국비무료교육생모집, 전산세무회계, 웹디자인 www.krit.or.kr</p> <p>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안했다.</p>
--------	------------------------------------------------------------------------------------------------------------------------------------------------------------------------------------------------------------------------------------------------------------------------------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61)</sup>인 ○○○○○과 매월 자동 연장하는 방식  
으로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  
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존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로팅광  
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62)</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61)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62)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 4.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 4월)·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 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77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60)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서울신문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의결연월일 2020. 11. 24.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  
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주)서울신문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sup>63)</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64)</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63)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6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2. 조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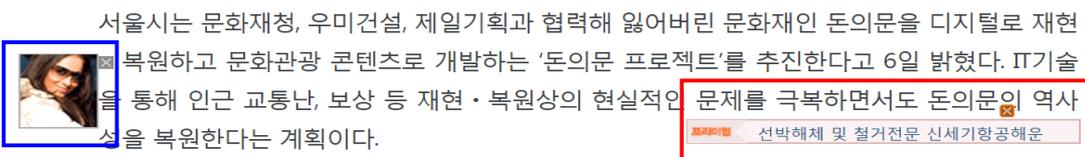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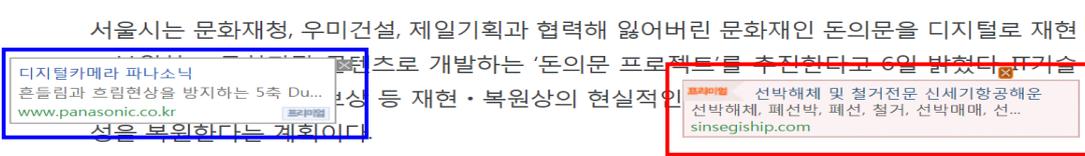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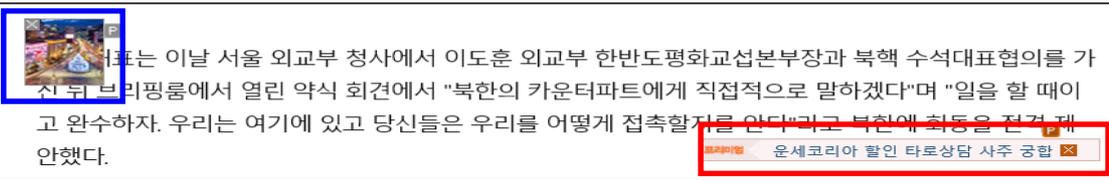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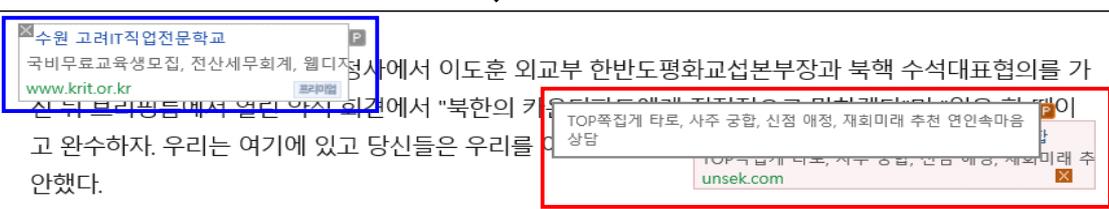
최초 화면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의 역사 성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	
삭제 시도 후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의 역사 성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p)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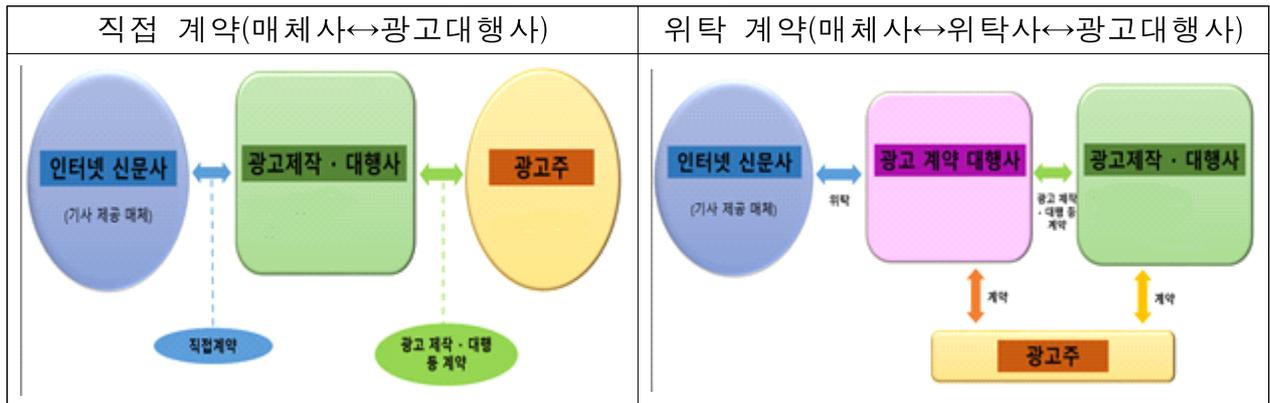
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최초 화면	 <p>...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 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고 북한에 회동을 전격 제 안했다.</p>
↓	
삭제시도 후	 <p>수원 고려IT직업전문학교 국비무료교육생모집, 전산세무회계, 웹디자인 www.krit.or.kr ...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 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안했다.</p>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65)</sup>인 ○○○○○○○와 매월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존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로팅광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66)</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 4. 관련법 규정

65)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66)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 4월)· 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 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 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78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62)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소셜뉴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의결연월일 2020. 11. 24.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주)소셜뉴스(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sup>67)</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68)</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 2. 조사 배경

67)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6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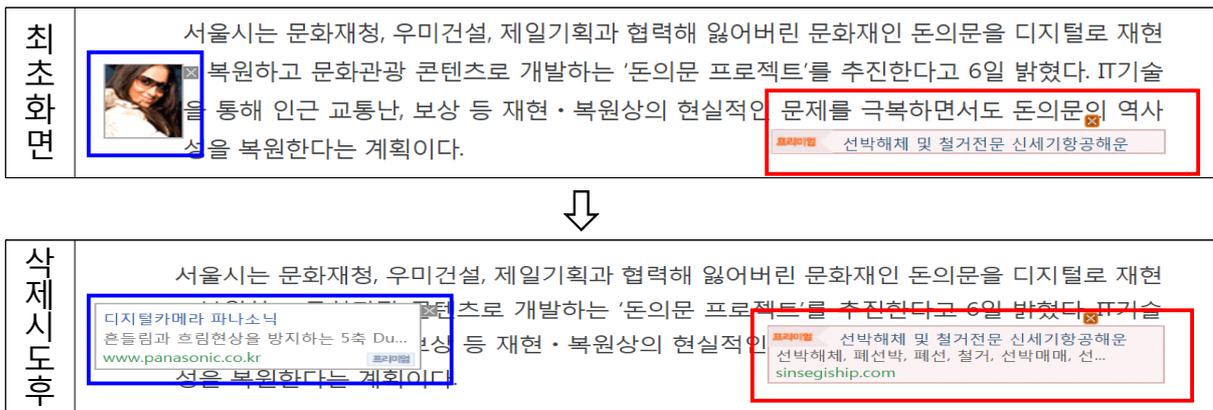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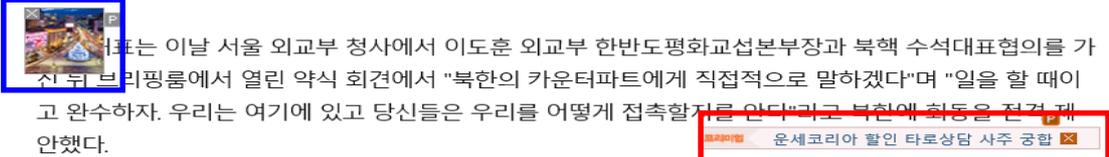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p])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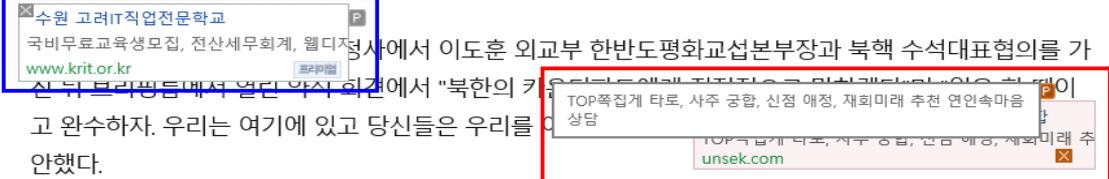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

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b>최초 화면</b>	 <p>하지만 그는 "이제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라면서 "북한의 위대한 잠재력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또 북한이 그 외에 앞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도발은 장기적인 평화 체계를 한국에 수립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상단 배너: 운세코리아 할인 타로상담 사주 공합</p>
--------------	-------------------------------------------------------------------------------------------------------------------------------------------------------------------------------------------------------------------------------------------------------------------------------------



<b>삭제 시도 후</b>	 <p>하지만 그는 "이제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라면서 "북한의 위대한 잠재력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또 북한이 그 외에 앞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도발은 장기적인 평화 체계를 한국에 수립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상단 배너: 운세코리아 할인 타로상담 사주 공합</p> <p>배너 하단: 삭제</p>
----------------	------------------------------------------------------------------------------------------------------------------------------------------------------------------------------------------------------------------------------------------------------------------------------------------------------

또한,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 이외에 새로운 형태로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이동 시, 게시물 목록 정보를 가리는 “삭제표시(☒) 없는 광고”를 생성하고 해당광고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가 생성된 후 삭제가 가능한 광고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금지행위 유형⑧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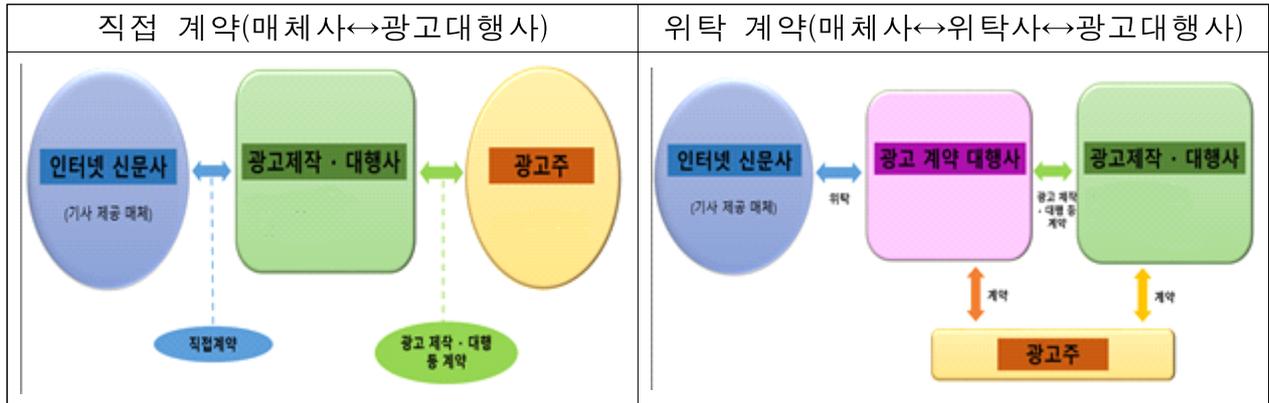
< 증적자료 3 > 신유형의 위반 광고 형태

<p><b>삭제표시 없는 광고</b></p> 		<p><b>마우스 커서 이동 시 삭제표시 생성</b></p> 
--------------------------------------------------------------------------------------------------------------	--	------------------------------------------------------------------------------------------------------------------------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69)</sup>인 ○○○○○○ 및 □□□□□와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면 또는 구두)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존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로팅광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69)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70)</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4.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4월)·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70)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

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 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79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61)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스포츠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의결연월일 2020. 11. 24.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주)스포츠서울(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sup>71)</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72)</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71)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7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2. 조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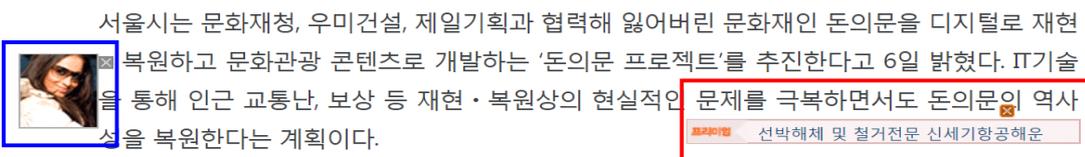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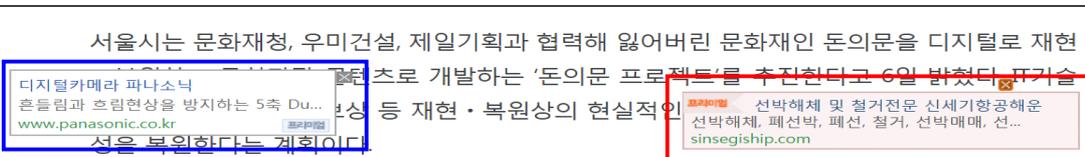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 제한하는 행위』(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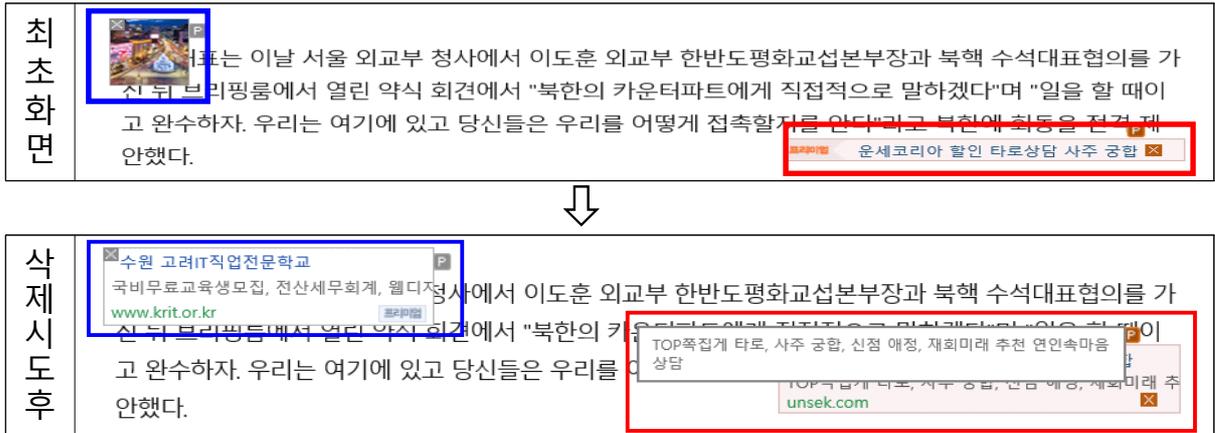
최초 화면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	
삭제 시도 후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흔들림과 흐림현상을 방지하는 5축 Du...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www.panasonic.co.kr 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p])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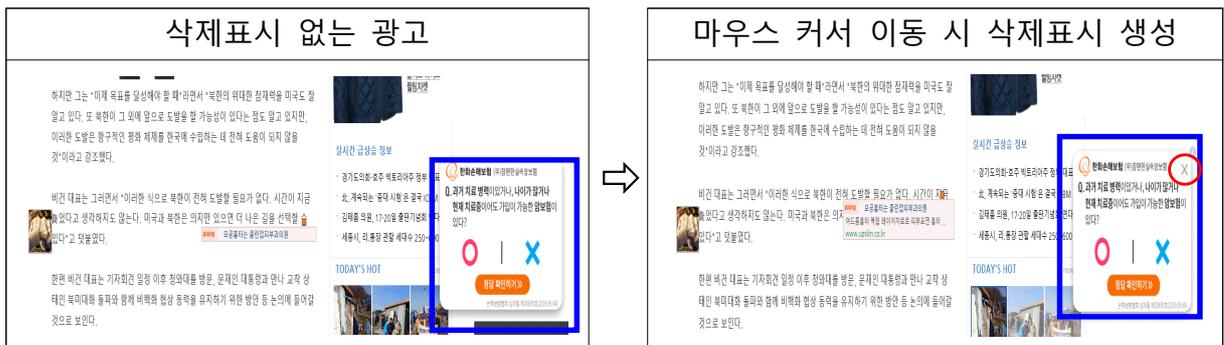
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또한,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 이외에 새로운 형태로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이동 시, 게시물 목록 정보를 가리는 “삭제표시(✕) 없는 광고”를 생성하고 해당광고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가 생성된 후 삭제가 가능한 광고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금지행위 유형⑧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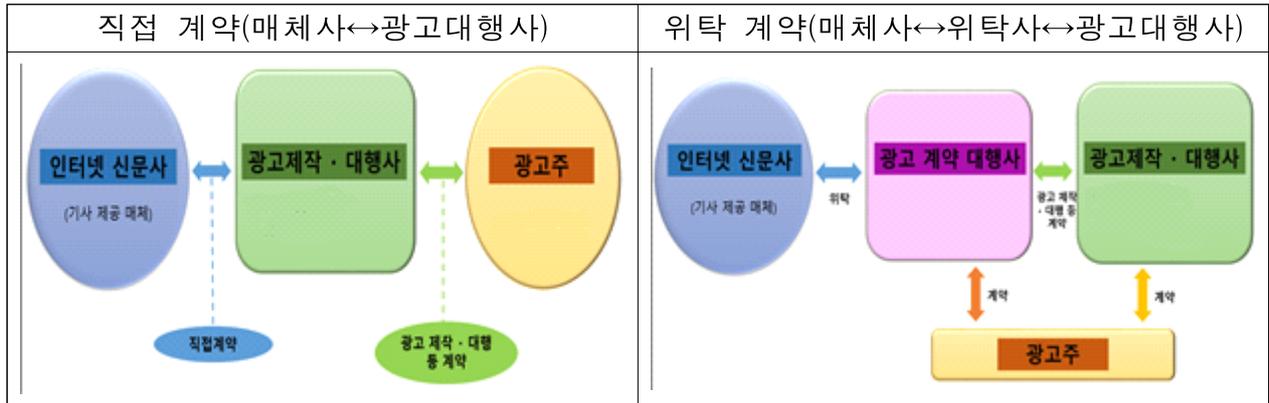
< 증적자료 3 > 신유형의 위반 광고 형태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73)</sup>인 ○○○○○○ 및 □□□□□□□□과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면 또는 구두)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존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로팅광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73)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74)</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4.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 4월)·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 사업법」 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74)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

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 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80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72)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씨비에스아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의결연월일 2020. 11. 24.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주)씨비에스아이(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sup>75)</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76)</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75)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7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2. 조사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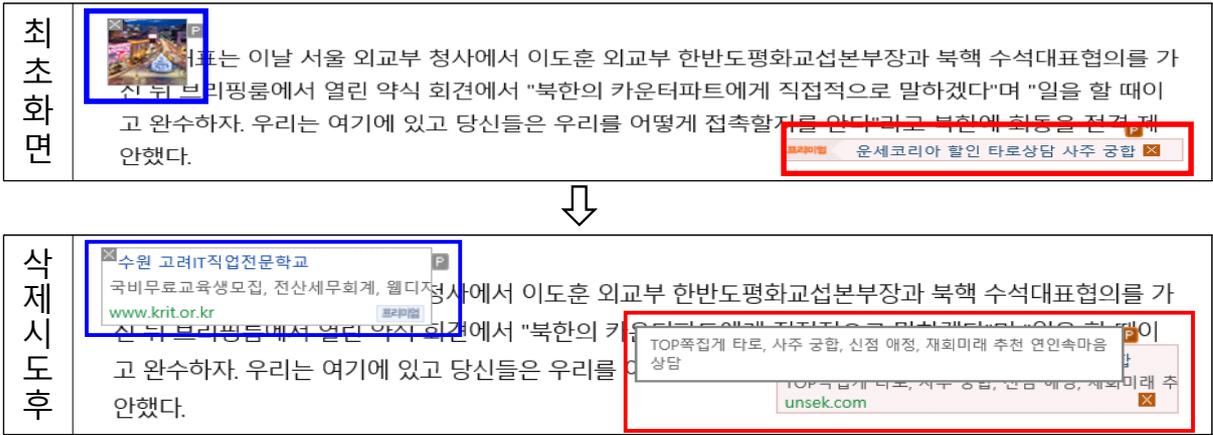
최초 화면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선택해제 및 철거전문 신세기항공해운</p>
↓	
삭제 시도 후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디지털카메라 파나소닉          콘텐츠를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혼들림과 흐림현상을 방지하는 5축 Du... 선택해제 및 철거전문 신세기항공해운          선택해제, 폐선박, 폐선, 철거, 선택매매, 선...          sinsegeship.com</p>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p])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

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또한,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 이외에 새로운 형태로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이동 시, 게시물 목록 정보를 가리는 “삭제표시(❌) 없는 광고”를 생성하고 해당광고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가 생성된 후 삭제가 가능한 광고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금지행위 유형⑧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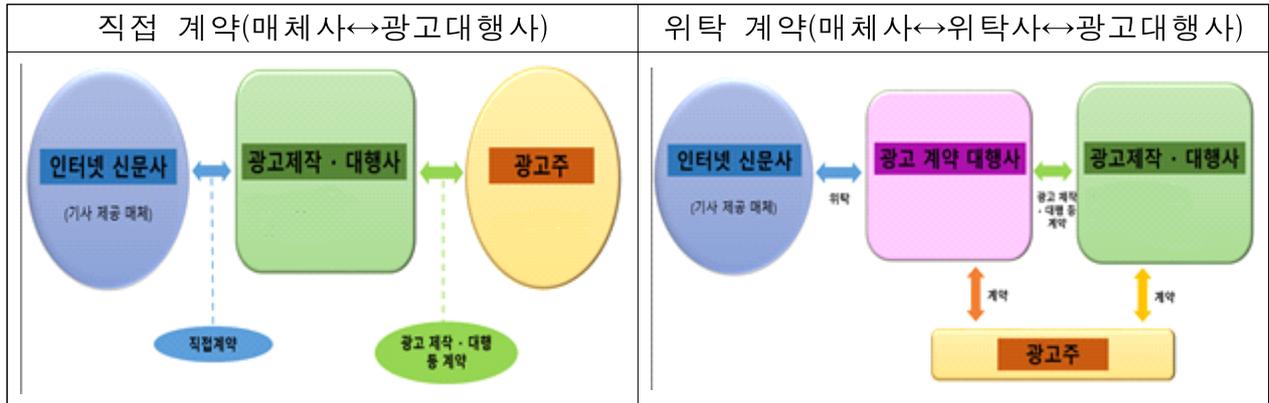
< 증적자료 3 > 신유형의 위반 광고 형태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77)</sup>인 □□□□□ 및 ○○○○○과 매월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면 또는 구두)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존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로팅광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77)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78)</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4.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 4월)·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78)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

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 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81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63)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아시아경제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9

의결연월일 2020. 11. 24.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주)아시아경제(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sup>79)</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80)</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79)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8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2. 조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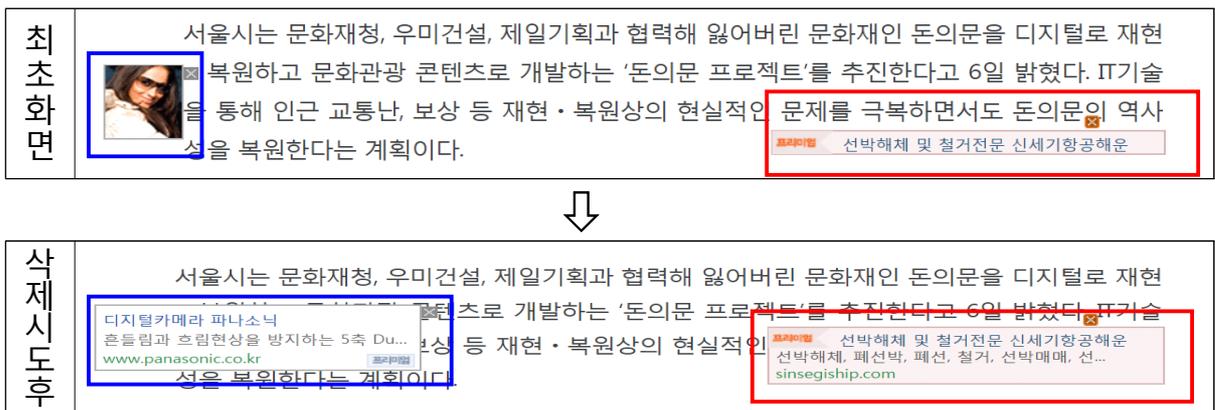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 제한하는 행위』(‘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p)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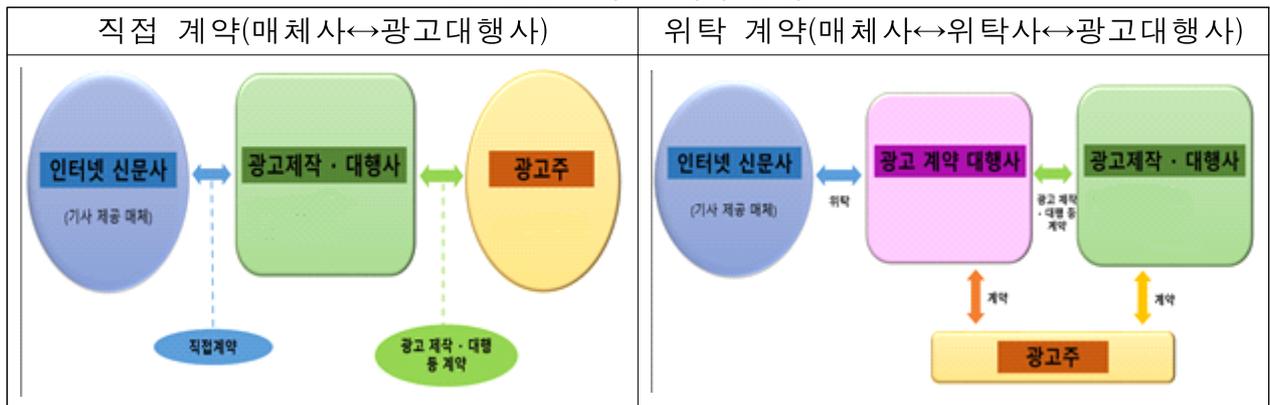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최초 화면	<p>...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고 북한에 회동을 전격 제 안했다.</p>
↓	
삭제시도 후	<p>수원 고려IT직업전문학교 국비무료교육생모집, 전산세무회계, 웹디자인 www.krit.or.kr</p> <p>...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안했다.</p>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81)</sup>인 □□□□□와 매월 자동 연장하는 방식  
으로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존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로팅광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82)</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 4. 관련법 규정

81)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82)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 4월)· 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 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 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82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66)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아시아투데이(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34

의결연월일 2020. 11. 24.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아시아투데이(주)(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sup>83)</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84)</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83)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8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2. 조사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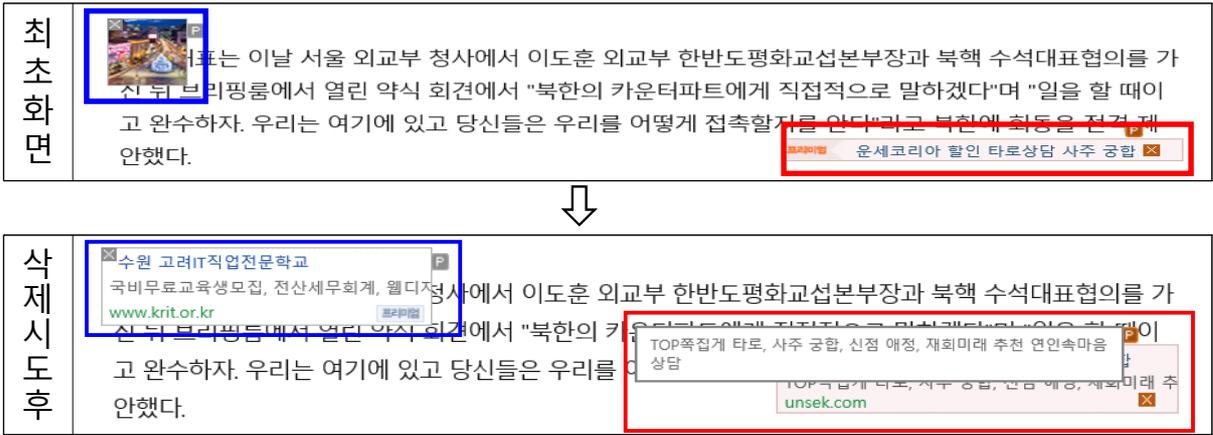
최초 화면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	
삭제 시도 후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흔들림과 흐림현상을 방지하는 5축 Du...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선박해체 및 철거전문 신세기항공해운</p>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

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또한,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 이외에 새로운 형태로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이동 시, 게시물 목록 정보를 가리는 “삭제표시(❌) 없는 광고”를 생성하고 해당광고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가 생성된 후 삭제가 가능한 광고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금지행위 유형⑧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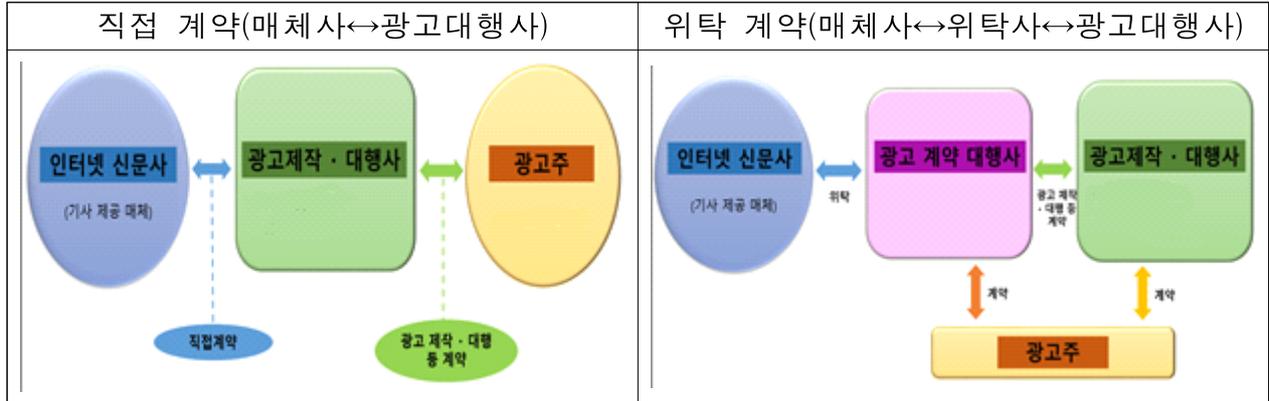
< 증적자료 3 > 신유형의 위반 광고 형태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85)</sup>인 □□□□□ 및 ○○○○○○와 매월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면 또는 구두)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준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로팅광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85)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86)</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4.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4월)·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86)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

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83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65)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의결연월일 2020. 11. 24.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주)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sup>87)</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88)</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87)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8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2. 조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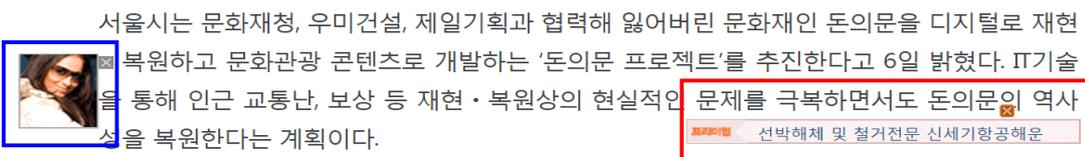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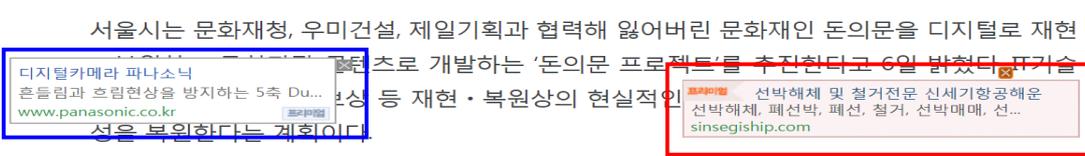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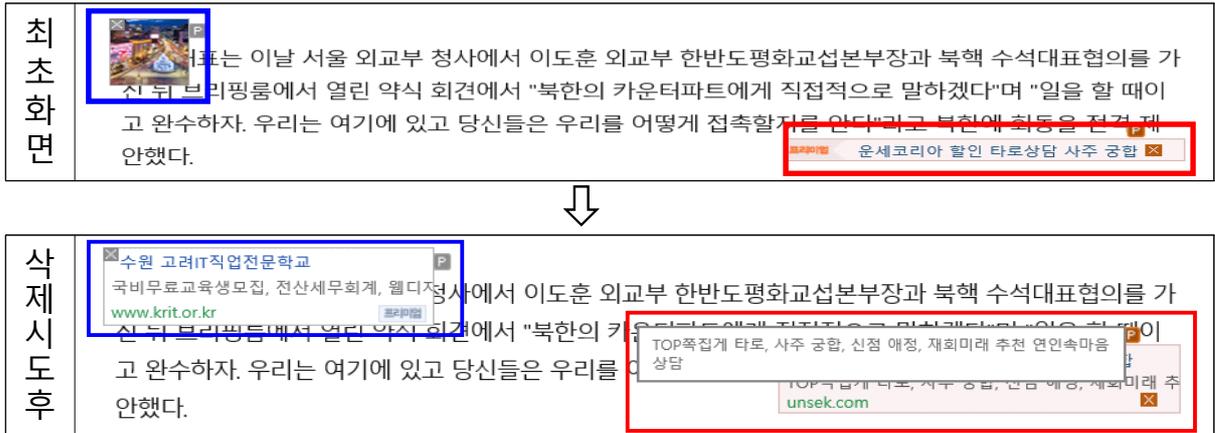
최초 화면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선택해제 및 철거전문 신세기항공해운</p>
↓	
삭제 시도 후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혼들림과 허위현상을 방지하는 5축 Du... 선택해제 및 철거전문 신세기항공해운          선택해제, 폐선박, 폐선, 철거, 선택매매, 선...          sinsegeship.com</p>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p])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

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또한,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 이외에 새로운 형태로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이동 시, 게시물 목록 정보를 가리는 “삭제표시(⊗) 없는 광고”를 생성하고 해당광고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가 생성된 후 삭제가 가능한 광고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금지행위 유형⑧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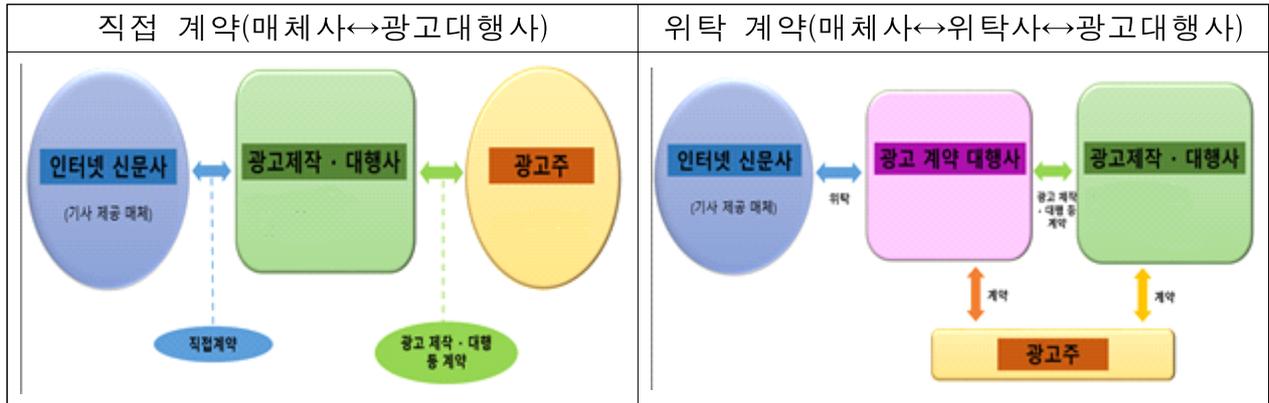
< 증적자료 3 > 신유형의 위반 광고 형태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89)</sup>인 ○○○○○○ 및 □□□□□□□□ 매월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면 또는 구두)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존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로팅광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89)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90)</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4.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 4월)·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90)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

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 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84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67)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엑스포츠미디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4

의결연월일 2020. 11. 24.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주)엑스포즈미디어(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sup>91)</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92)</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91)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9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2. 조사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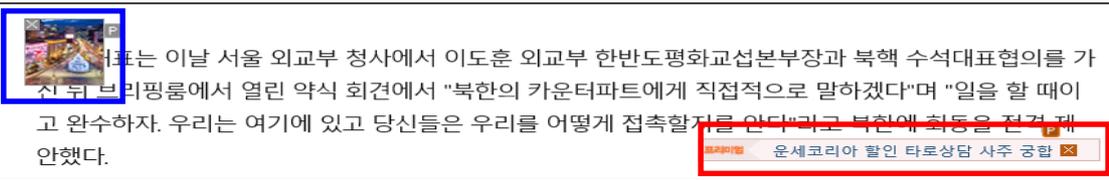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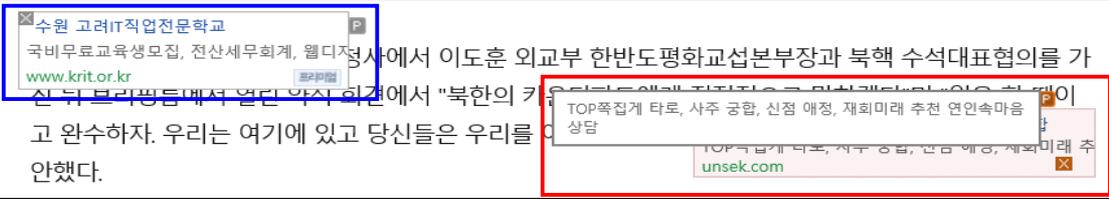
최초 화면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	
삭제 시도 후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p])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

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b>최초 화면</b>	 <p>하지만 그는 "이제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라면서 "북한의 위대한 정체를 미국도 잘 알고 있다. 또 북한이 그 외에 앞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도발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한국에 수립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하지만 그는 "이제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라면서 "북한의 위대한 정체를 미국도 잘 알고 있다. 또 북한이 그 외에 앞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도발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한국에 수립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TOP쪽집게 타로, 사주 궁합, 신정 애정, 재희미래 추천 연인속마음 상담 unsek.com</p>
↓	
<b>삭제시도 후</b>	 <p>하지만 그는 "이제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라면서 "북한의 위대한 정체를 미국도 잘 알고 있다. 또 북한이 그 외에 앞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도발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한국에 수립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TOP쪽집게 타로, 사주 궁합, 신정 애정, 재희미래 추천 연인속마음 상담 unsek.com</p>

또한,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 이외에 새로운 형태로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이동 시, 게시물 목록 정보를 가리는 “삭제표시(☒) 없는 광고”를 생성하고 해당광고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가 생성된 후 삭제가 가능한 광고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금지행위 유형⑧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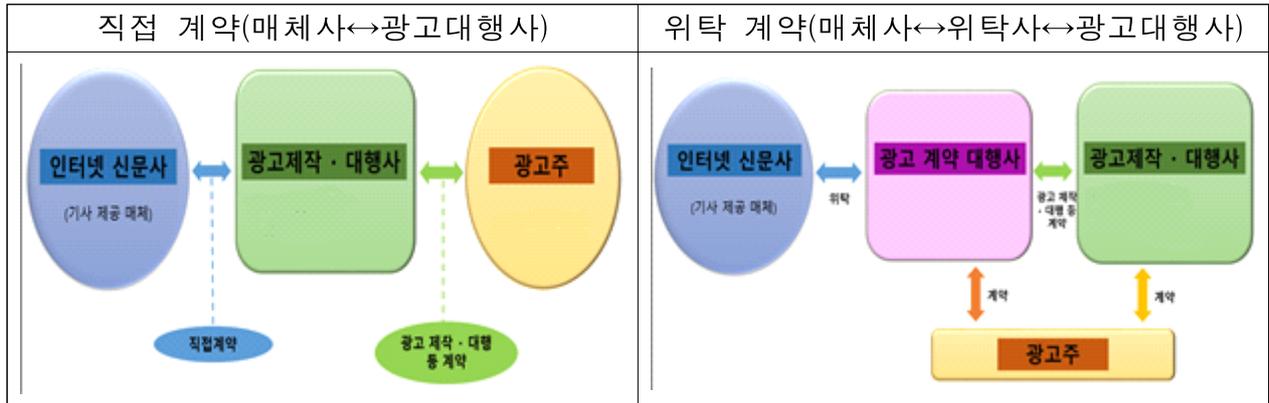
< 증적자료 3 > 신유형의 위반 광고 형태

<p><b>삭제표시 없는 광고</b></p> 	⇒	<p><b>마우스 커서 이동 시 삭제표시 생성</b></p> 
--------------------------------------------------------------------------------------------------------------	---	------------------------------------------------------------------------------------------------------------------------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93)</sup>인 □□□□□ 및 ○○○○○○○○이 매월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면 또는 구두)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존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로팅광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93)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94)</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4.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4월)·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94)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

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 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85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64)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이투데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

의결연월일 2020. 11. 24.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주)이투데이(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 서비스<sup>95)</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96)</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95)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9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2. 조사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 제한하는 행위』(‘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최초 화면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상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	
삭제 시도 후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혼들림과 흐림현상을 방지하는 5축 Du...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상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최초 화면	<p>이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 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고 북한에 회동을 전격 제 안했다.</p>
↓	
삭제시도 후	<p>수원 고려IT직업전문학교 국비무료교육생모집, 전산세무회계, 웹디자인 www.krit.or.kr</p> <p>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 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TOP쪽집계 타로, 사주 궁합, 신점 애정, 재희미래 추천 연인속마음 상담</p>

또한,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 이외에 새로운 형태로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이동 시, 게시물 목록 정보를 가리는 “삭제표시(☒) 없는 광고”를 생성하고 해당광고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가 생성된 후 삭제가 가능한 광고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금지행위 유형⑧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3 > 신유형의 위반 광고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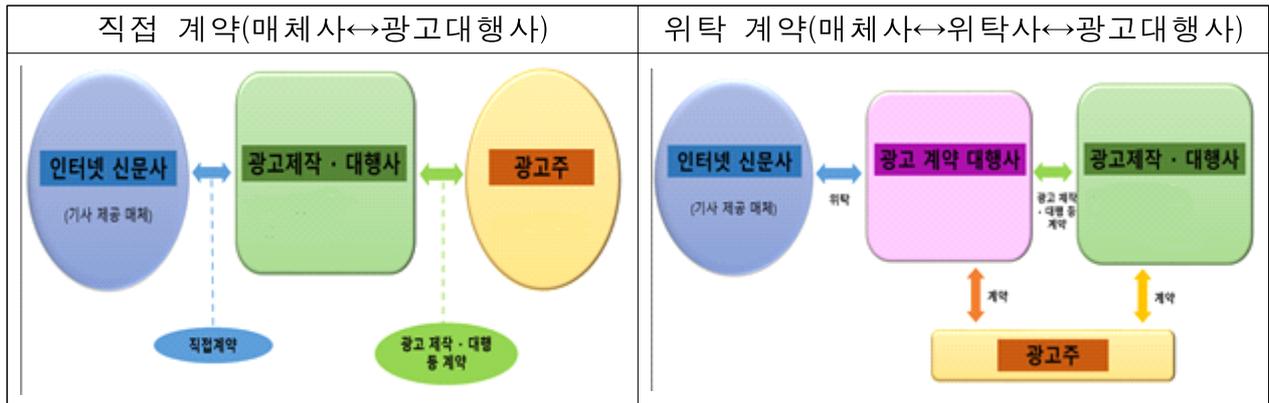
<b>삭제표시 없는 광고</b>	⇒	<b>마우스 커서 이동 시 삭제표시 생성</b>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97)</sup>인 ○○○○○○ 및 □□□□□□□□과 매일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면 또는 구두)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

97)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서 존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로팅광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98)</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 4.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4월)·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 사업

98)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

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 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86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71)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티비리포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5길 32

의결연월일 2020. 11. 24.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주)티비리포트(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sup>99)</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100)</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99)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10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2. 조사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제 제한하는 행위』 (’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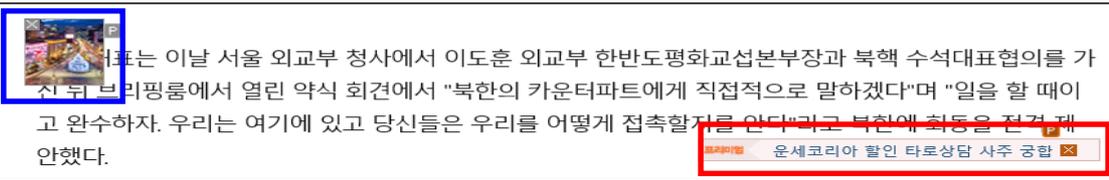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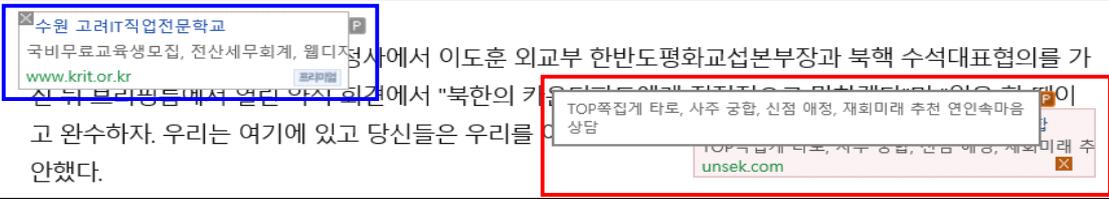
최초 화면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상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	
삭제 시도 후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혼들림과 흐림현상을 방지하는 5축 Du...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상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p])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

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b>최초 화면</b>	 <p>하지만 그는 "이제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라면서 "북한의 위대한 정체력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또 북한이 그 외에 앞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도발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한국에 수립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하지만 그는 "이제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라면서 "북한의 위대한 정체력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또 북한이 그 외에 앞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도발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한국에 수립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운세코리아 활인 타로상담 사주 공합</p>
↓	
<b>삭제시도 후</b>	 <p>하지만 그는 "이제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라면서 "북한의 위대한 정체력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또 북한이 그 외에 앞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도발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한국에 수립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운세코리아 활인 타로상담 사주 공합</p> <p>삭제</p>

또한,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 이외에 새로운 형태로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 이동 시, 게시물 목록 정보를 가리는 “삭제표시(✕) 없는 광고”를 생성하고 해당광고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가 생성된 후 삭제가 가능한 광고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금지행위 유형⑧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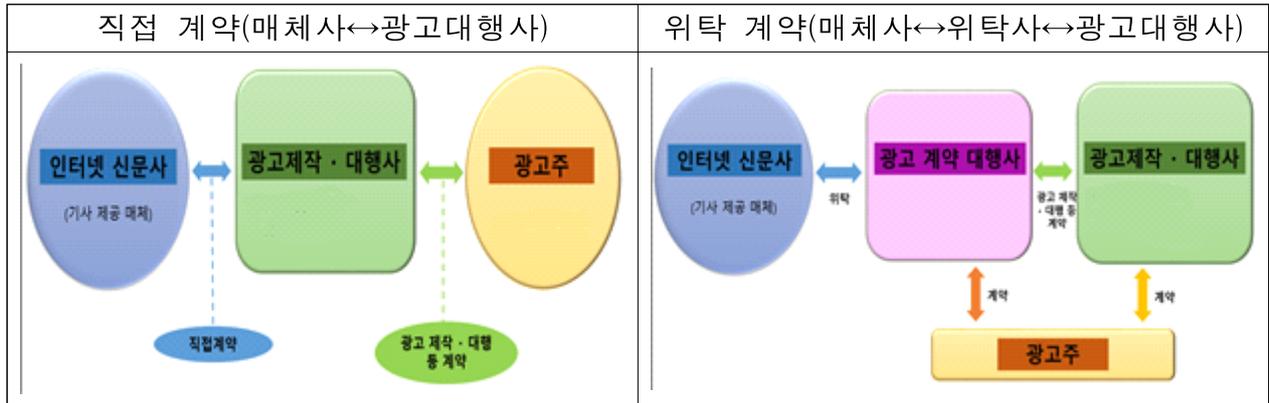
< 증적자료 3 > 신유형의 위반 광고 형태

<b>삭제표시 없는 광고</b>	⇒	<b>마우스 커서 이동 시 삭제표시 생성</b>
 <p>하지만 그는 "이제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라면서 "북한의 위대한 정체력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또 북한이 그 외에 앞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도발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한국에 수립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운세코리아 활인 타로상담 사주 공합</p>		 <p>하지만 그는 "이제 목표를 달성해야 할 때"라면서 "북한의 위대한 정체력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또 북한이 그 외에 앞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도발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한국에 수립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운세코리아 활인 타로상담 사주 공합</p> <p>삭제</p>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101)</sup>인 ○○○○○○ 및 □□□□□□□□□□과 매월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면 또는 구두)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존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로팅광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101)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102)</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4.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4월)·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102)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

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인 ○○○○○○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 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87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68)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한겨레신문(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6

의결연월일 2020. 11. 24.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한겨레신문(주)(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sup>103)</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104)</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103)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10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2. 조사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 제한하는 행위』(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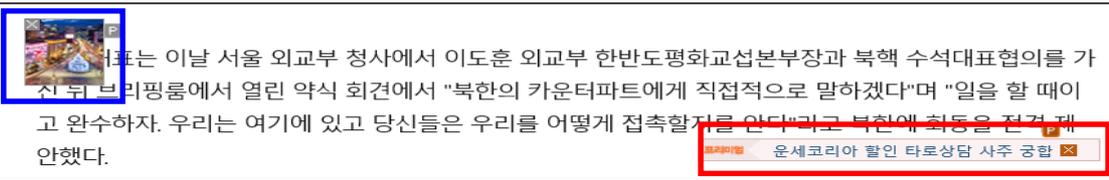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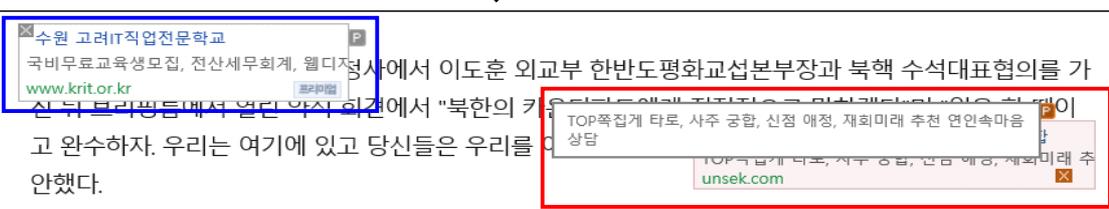
최초 화면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의 역사 성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	
삭제 시도 후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흔들림과 흐림현상을 방지하는 5축 Du...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의 역사 성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p)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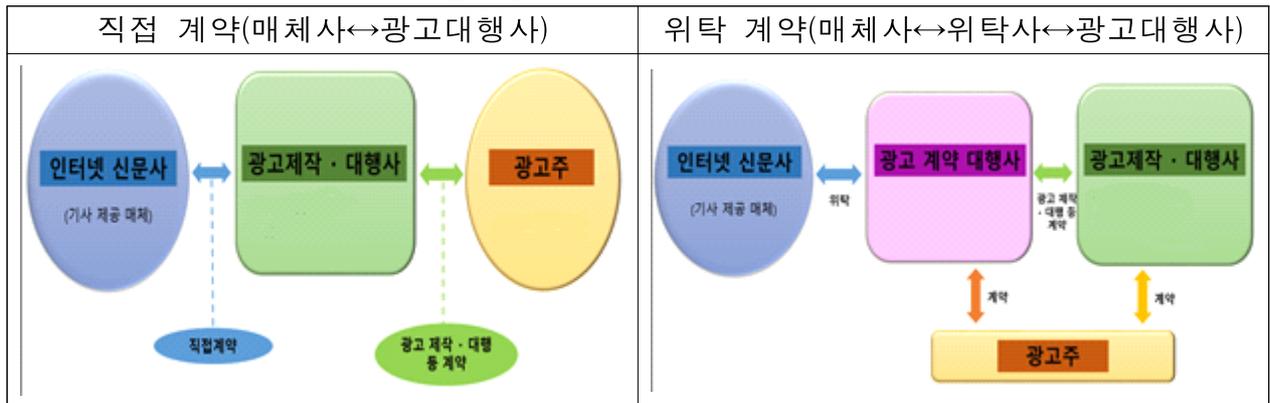
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최초 화면	 <p>...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뒤 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고 북한에 회동을 전격 제 안했다.</p>
↓	
삭제 시 도 후	 <p>수원 고려IT직업전문학교 국비무료교육생모집, 전산세무회계, 웹디자인 www.krit.or.kr ...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뒤 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안했다.</p>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105)</sup>인 ○○○○○○○과 매월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존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로팅 광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106)</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 4. 관련법 규정

105)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106)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 4월)· 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 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 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88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70)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한국경제티브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4

의결연월일 2020. 11. 24.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주)한국경제티브이(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sup>107)</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108)</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107)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10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2. 조사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최초 화면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	
삭제 시도 후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흔들림과 흐림현상을 방지하는 5축 Du...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www.panasonic.co.kr 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p)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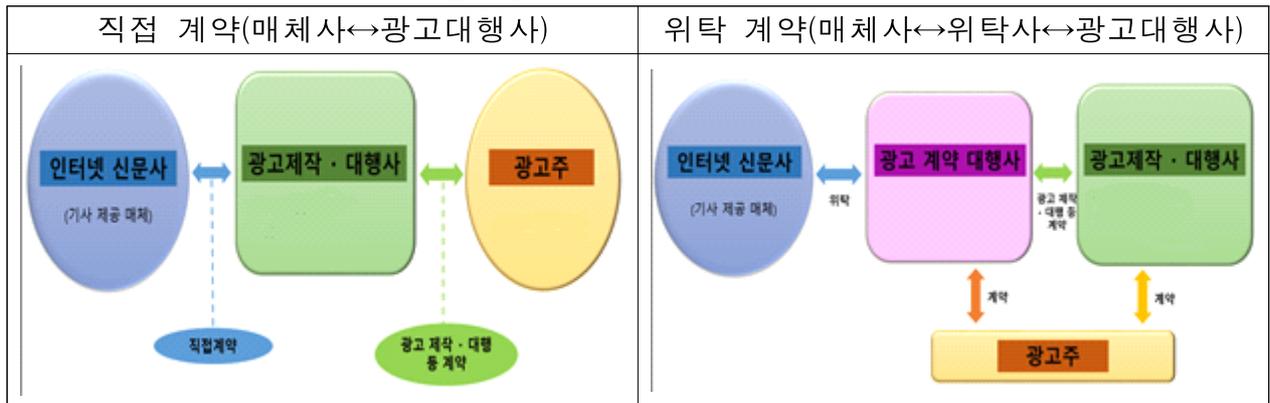
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최초 화면	<p>이제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고 북한에 회동을 전격 제 안했다.</p>
↓	
삭제시도 후	<p>수원 고려IT직업전문학교 국비무료교육생모집, 전산세무회계, 웹디자인 www.krit.or.kr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안했다.</p>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109)</sup>인 ○○○○○○○○과 매일 자동 연장하  
는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준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  
로팅광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110)</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109)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110)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 4.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 4월)·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 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0 - 62 - 289호 (사건번호 : 202002조사269)

안 건 명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한국미디어네트워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6길 19

의결연월일 2020. 11. 24.

주 문

1. 피심인은 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나.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2.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1. 및 2.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주)한국미디어네트워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인터넷뉴스서비스<sup>111)</sup> 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신문사업자<sup>112)</sup>로서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현황 ('19. 12월말 기준) >

(금액단위 : 백만원)

부가통신 신고일	주요 매출액 현황				
	전체 매출액	온라인 광고	플로팅광고(위반행위 관련)		
			'17. 2~12월말	2018년	2019년
-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등

111) 신문(종이),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서비스

11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신문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2. 조사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상(PC·모바일)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17. 1. 31일 시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20. 2. 18일부터 ‘20. 7. 31일까지 피심인을 대상으로 ‘17. 2. 1일부터 ‘19. 12.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플로팅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온라인광고대행사와의 계약 서류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3. 과 같은 위반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 3. 위반행위 사실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돌출된 삭제표시(☒) 클릭 시 삭제가 되지 않고 무조건 확장되는 플로팅광고에 대해

< 증적자료 1 > 행정지도 전, 광고 운영 형태

최초 화면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복원하고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을 통해 인근 교통난, 보상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돈의문인 역사 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p>
↓	
삭제 시도 후	<p>서울시는 문화재청, 우미건설, 제일기획과 협력해 잃어버린 문화재인 돈의문을 디지털로 재현 콘텐츠로 개발하는 '돈의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IT기술 흔들림과 흔들현상을 방지하는 5축 Du... 등 재현·복원상의 현실적인 선박해체 및 철거전문 신세기항공해운 www.panasonic.co.kr 선박해체, 폐선박, 폐선, 철거, 선박매매, 선... sinsegeship.com</p>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 시 확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개선은 하였으나, 기존 돌출버튼을 변경(☒ → p)하고 삭제표시(☒)를 광고 본문에 포함되도록 하여 광고 화면을 거쳐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여 클릭 시 광고가 삭제되지 않고 확장된 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광고를 거치지 않고 삭제표시(☒)로 곧바로 가서 클릭해야 만 확장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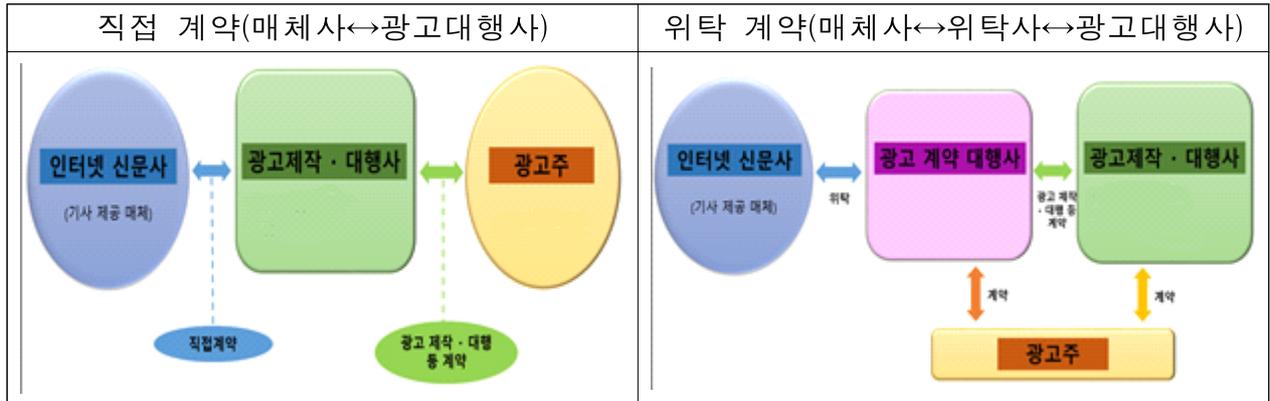
고 삭제되었는데 이는 오히려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는 행위로 법 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금지행위 유형①에 해당한다.

< 증적자료 2 > 행정지도 후, 광고 운영 형태

최초 화면	<p>...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고 북한에 회동을 전격 제 안했다.</p>
↓	
삭제 시 도 후	<p>...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 신 뉴브리핑룸에서 열린 약식 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며 "일을 할 때이 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라고 북한에 회동을 전격 제 안했다.</p>

아울러, 피심인은 온라인광고대행사<sup>113)</sup>인 ○○○○○○○과 매월 자동 연장하는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었으며, 현장 조사 시 관련 담당자 면담 및 사업자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온라인광고대행사 등과의 계약서 존부와 관계없이 해당 플로팅 광고의 계약일을 위반행위 기간으로 확인하였다.

< 플로팅광고 주요 계약 형태 >



※ 인터넷신문사는 온라인광고대행사와 CPC·CPM<sup>114)</sup> 등의 과금 방식으로 정산 후 매월 수익을 배분(6:4, 7:3 등) 하는 방식으로 계약 운영하고 있었음

4.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

113)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사업체(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광고산업조사)

114) CPC(Cost Per Click) 해당광고를 클릭할 때 마다 과금, CPM(Cost Per Mile) 해당광고가 1,000번 노출될 때 과금(정액제)

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
    -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세부 유형을 마련(‘17. 4월)· 구체화함으로써 규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 플로팅광고 금지행위 세부 유형 >

- ① 마우스 커서를 광고 삭제버튼으로 이동시 광고화면이 확장되고, 확장화면에서 삭제 가능
- ② [X]버튼 클릭시 삭제되지 않고, 스크롤을 움직이면 광고가 없어졌다가 잠시후 다시 나타남
- ③ 기존 광고를 삭제하면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노출되며 삭제 불가능
- ④ 스크롤을 움직이면, 화면 좌측의 광고가 자동확장되며 삭제되지 않고 원상태로 축소는 가능
- ⑤ [X]와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Close 클릭시 삭제가 되나 [X]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⑥ 광고 삭제버튼이 희미하거나 화면 바탕색과 비슷하여 삭제 표시를 찾기 어려움
- ⑦ 화면 하단에 있는 광고를 삭제한 후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시 나타나 다른 정보를 가림
- ⑧ 화면 하단에 삭제 표시가 없는 광고가 스크롤을 움직이면 다른 정보를 가림
- ⑨ 광고 삭제버튼이 작아 삭제가 쉽지 않고 삭제버튼의 주변을 잘못 클릭시 본 광고로 연결
- ⑩ 광고 삭제 표시가 없고, 기사 내용을 읽기 위해 아래로 내리면 광고도 따라서 이동
- ⑪ 스크롤을 내리면 화면 전체가 화면 하단의 광고로 강제 이동

## 5. 행위사실의 위법성

###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의견

피심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법 위반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으나 이후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만약 안내를 받았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개선한 점을 고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세부유형①(확장형 광고)에 대해 피심인이 온라인광고대행사를 통해 제출\*한 개선 사항을 서면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광고를 운영할 경우 바로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으며, 각종 행정 법규와 관련하여 수범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피심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19. 1. 14.)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피심인을 대신하여 확장형광고 운영 대행사인 ○○○○○○이 방통위를 방문하여 세부 개선 사항과 일정 연기('19. 4월말까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었음

###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불편하게 하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5의 사목에 6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 6. 시정조치 명령

### 가.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독성을 해치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 관련 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법률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한다.

### 나.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웹 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앱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이사 ○○○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결 론**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1월 24일

위원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김 효 재    (인)

위      원      김 창 룡    (인)

위      원      안 형 환    (인)

## Ⅲ. 부 록

### 1 방송·통신 금지행위 및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정

1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2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3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에 대한 행위 세부 기준

4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준

7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8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 9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11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 12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 1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14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1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1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1. 방송·통신 금지행위 및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정

## 1.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2008. 05. 1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52호
개정	2009. 11. 0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개정	2011. 04. 2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27호
개정	2012. 11. 2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98호
개정	2015. 07. 3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07호
개정	2015. 10. 2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25호
개정	2016. 11. 17.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11호
개정	2019. 04. 30.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 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5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면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조의2 및 제8호에 따른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②법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행위는 10억원,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행위는 8억원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제4조(기준금액 산정)** ①영 별표 6 2. 나. 1. 가)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영 별표 6 2. 나. 1. 라)에 따른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서의 영향, 소비자 피해

정도 등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정한다.

**제5조(위반기간의 산정)** ①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이득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다만, 동 이득의 취득 또는 손해의 발생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에도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통신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의무제공사업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통신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련매출액의 산정)** ①관련매출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가입자 모집 또는 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 수와 1가입자당 해당 서비스의 월평균매출액, 해당 서비스 가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에 따른 역무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통화료, 부가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그 영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가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발생시키지 않지만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손해와 연관된 서비스를 매출액 산정의 관련서비스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손해가 없고 이용자에게만 손해가 미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손해와 연관된 서비스를 매출액 산정의 관련서비스로 볼 수 있다.

④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별표 6 2. 나. 1). 라)에 따른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영업 중단,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실적, 사업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서비스 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서비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 위반행위와 매출액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제7조(필수적 가중·감경)** ①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감경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한다. 다만,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가중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제8조(추가적 가중·감경)** 제7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3항 각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금지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감경할 수 있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08-52호, 2008.5.19.>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4항 위반행위에 대한 특칙) 법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4항 위반행위에 대한 제7조제1항 및 별표 3 II.1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의 횟수 가중은 2006년 3월 27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2007년 6월 17일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제2009-27호, 2009.11.5.>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1-27호, 2011.4.29.>

이 고시는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98호, 2012.11.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5-7호, 2015.7.3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5-25호, 2015.10.21.>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6-11호, 2016.11.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9-6호, 2019.04.30.>

이 고시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관련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기준금액의 부과기준율(제4조제1항 관련)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3%
중대한 위반행위	1~2%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이내

비고 :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중대성의 정도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별표 2]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기준금액(제4조제2항 관련)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억원 초과 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3억원 이하

[별표 3] 필수적 가중·감경 금액(제7조제1항 관련)

I. 금지행위 위반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금액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II. 금지행위 위반의 횟수에 의한 조정 금액

1.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과거 위반행위 중 3회 위반행위부터 위반행위 1회당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제1호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3.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별표 4]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제8조 관련)

I. 일반원칙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II 및 III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II. 가중사유 및 비율

1.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위반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리하는 자,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용자에게 허위로 응대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이 증가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III. 감경 사유 및 비율

1.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2. 위반 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3.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착수 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내지 50이내
4.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이내
5. 위반전기통신사업자가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 소속 임원·종업원,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리하는 자 및 그 종업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6.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7.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우수한 등급을 받은 경우 100분의 30 이내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 2.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정	2011.04.2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28호
개정	2012.01.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 5호
개정	2013.06.14.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13호
개정	2014.09.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13호
개정	2014.11.28.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21호
개정	2015.07.3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12호
개정	2017.01.18.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 2호
개정	2017.03.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 3호
개정	2019.01.02.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 1호
개정	2020.08.05.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0- 5호
개정	2021.05.26.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 4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IPTV법"이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단말기 유통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세부업무처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2. 「방송법」 제76조의3, 제85조의2

- 3. IPTV법 제17조
- 4.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 5.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 제2장 사실조사

**제3조(금지행위의 신고 및 사실조사 요청)** ① 누구든지 금지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별지서식)와 금지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 2. 피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 3. 금지행위의 내용
- 4. 금지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실·국은 금지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인지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직제에 따른 금지행위 소관 국(이하 "해당 국"이라 한다)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등을 제출 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의 경험이 없는 사업자나 중소기업자, 일반이용자가 신고서등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사실조사의 착수)** ① 해당 국의 국장(이하 "해당 국장"이라 한다)은 금지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인지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사건 중 금지행위의 혐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할 해당 국 소속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필요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사건의 단서, 사건의 개요, 관계법령 및 조사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사건의 관리)** ① 금지행위 사건은 사건번호 및 사건명칭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류 중인 사건현황, 기결 사건현황

및 처리지연 사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건번호는 금지행위사건을 식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 기재하여 부여한다.

1. 조사착수년월
2. 금지행위 사건임을 나타내는 문구
3. 접수일련번호

④ 사건의 명칭은 협정체결거부, 협정불이행, 정보유용, 부당요금산정, 이용약관위반, 이용자이익저해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내용을 일별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 제출명령)** ① 위원회는 사건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방송법」 제76조의3제3항, 제85조의2제4항, 단말기 유통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64조,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여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한다.

1.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2. 자료를 제출할 자
3. 제출할 서류, 물건 등 자료
4. 제출기한과 장소
5. 제출방식
6.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내용

③ IPTV법 제17조의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7조(출석요구 및 사실 확인)** ①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방송법」 제76조의3, 단말기 유통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64조,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한다.

1. 사건명 및 출석대상자의 성명

2. 출석일시 및 장소

③ 조사관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확인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2. 확인일시 및 장소
3. 확인내용
4. 확인자의 의견

④ 조사관은 제3항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는 확인자에게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오기가 없음을 확인한 후 확인자와 조사관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⑤ 「방송법」 제85조의2, IPTV법 제17조의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할 수 있다.

**제8조(현장조사)** ① 조사관은 사건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방송법」 제76조의3제3항, 단말기유통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여 해당 국장의 승인을 얻어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을 입회시킨 후 장부·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동행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조사 장소, 조사일시, 조사 내용, 제출 또는 수령할 자료나 물건의 목록, 조사관 및 관계인의 성명 등을 기재한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후에는 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오기가 없음을 확인한 후 관계인과 조사관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다만,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현장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조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

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방송법」 제85조의2, IPTV법 제17조의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의2(조사의 처리기간)** 조사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보고서의 작성)** 조사관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단서
2. 조사경위
3. 피인지인의 주장
4. 사실의 인정
5. 위법성판단
6. 조사관 의견

**제10조(조사절차의 종결 등)** ① 사무처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실판단에 오인이 있거나 조사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에는 조사관에게 보완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제9조에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금지행위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피인지인에게 사망·해산·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조사단계에서 피인지인, 신고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부도, 일시적 폐업, 도피 등 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의 경우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피인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한 상당한 주의 등)** 전기통신사업

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실질적인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2항 후단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본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실질적인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단말기 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기 유통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

1. 동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및 시스템을 갖추고, 금전적, 절차적 주의·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교육·검증·관리·평가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2. 기타 제1호에 준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한 경우

### 제3장 시정조치안의 작성

**제12조(시정조치안의 작성)** ① 해당 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시정조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정조치안에는 진술서, 확인서, 기타 증거자료(이하 "증거자료"라 한다)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정조치안의 시정조치내용은 금지행위의 정도와 시정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방송법」 제76조의3제2항, 제85조의2제2항, IPTV법 제26조, 단말기 유통법 제14조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방송법」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IPTV법 제17조제2항 및 단말기 유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등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④ 해당 국장은 시정조치안 작성시 "이는 ○○○국의 조치의견으로서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 한다"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정조치안에 대하여 피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늦어도 의견진술지정일 10일(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15일) 이전까지 피심인에게 시정조치안과 증거자료 목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피심인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피심인이 제3항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시정조치안의 증거자료 열람·복사등)** ① 피심인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안과 증거자료 목록을 송달받은 때에는 증거자료를 특정하여 위원회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해당 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복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인정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서, 영업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보호, 기타 공익상 열람·복사를 허가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삭제한 후에 허가할 수 있다.

#### 제4장 위원회의 의결

**제15조(시정조치안의 보고 등)** ① 해당 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정조치안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의견진술내용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안건으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심의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준비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16조(시정조치안 의결)** ① 위원회는 상정된 시정조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검토보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진술, 관련 전문가의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하며 기타 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경고)** ① 위원회는 범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② 경고를 의결한 후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방송법」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IPTV법 제17조제2항 및 단말기 유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시 가중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제18조(재조사)** 위원회는 사실의 오인,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의 착오, 조사관의 조사종결이 있는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의 발견이 있는 경우 등에는 조사관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심의절차종료)** 위원회는 재신고 사건으로 원 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하거나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무혐의)** ① 위원회는 피심인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피심인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제21조(사건종결처리)** 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사망·해산·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사건종결처리를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심의중지)** 위원회는 피심인, 신고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부도, 일시적 폐업, 도피 등 심의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의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서의 작성과 통지)** ① 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날부터 30일(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피심인이 다수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그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고 신고인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결서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피심인
3. 주문
4. 이유
5. 의결년월일

②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는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5장 시정조치

**제2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에게 통지할 때 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금지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피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명령이행여부 확인)** 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지정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장 이의신청

**제26조(이의신청)**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방송법」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IPTV법 제17조제2항 및 단말기 유통법 제15조에 의한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당사자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이의신청의 절차)**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서류의 심사결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6조제2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절차는 제4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8조(재결서의 작성 등)** ① 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해 재결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안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조사 관련 공무원은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은 물론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0조(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정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1-28호, 2011.4.29>  
이 고시는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5호, 2012.1.30>  
이 고시는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3-13호, 2013.6.14>  
이 고시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4-13호, 2014.9.30>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4-21호, 2014.11.28>  
이 고시는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5-12호, 2015.7.3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2호, 2017.1.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3호, 2017.3.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9-1호, 2019.1.2.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5호, 2020.8.5.>  
이 고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1-4호, 2021.5.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호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판매자 성명		
	홈페이지 주소				
신고내용(*)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input type="checkbox"/>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input type="checkbox"/> 사건 조치 후 공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_____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 3.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 2017. 08. 16.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7-0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5호 사목 4)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위주체 및 상대방)** ①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주체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다.

②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1항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이하 “해당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다른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다.

**제3조(부당성 판단기준)** ①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여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가 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행위주체와 관련한 요소

- 가. 행위주체가 부과한 조건 또는 제한이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곤란하게 하여 이용자 선택권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 나. 행위주체가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를 현저히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제한, 차별하여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지 여부

2. 해당 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요소

- 가. 해당 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 여부
- 나. 해당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 제공의 필수적인 요소인지 여부
- 다.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의 대체 가능 여부

3.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

- 가. 이용약관 등을 통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 여부 및 해당 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선택 또는 이용의 제한 정도

나. 해당 서비스 및 다른 서비스 발전이 저해되어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 등이 상당히 저해되는지 여부

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으로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 효과가 큰 경우,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 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7-4호, 2017.8.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2016. 11. 17.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12호

**제1조**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관련 매출액의 산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관련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관련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 제3조에 따른 역무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의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통화료, 부가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특정 영역에 국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기간 산정)** 위반행위의 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① 이행강제금은 제2조의 관련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 초과 ~ 1천분의 3 이하
2.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1 초과 ~ 1천분의 2 이하
3.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1천분의 1 이하

②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고려사유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심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2. 중대한 위반행위 :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
3.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제5조(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불이행기간 산정 방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이 여러 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 세부조치 중 불이행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그 세부조치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전항의 불이행기간은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시정조치명령의 경우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8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중지 및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산정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행강제금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4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6-11호, 2016.11.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

### 방송통신위원회

수신자

(경유)

제 목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사 건	
당 사 자	
시정조치명령 내 용	
이행기일	
불 이 행 내 용	
부 과 예 정 일	
비 고	

귀하(업체)가 우리 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년 월 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이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조사관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2 >

### 이의제기서

사 건		
이의신청인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위 사건에 관하여 이의신청인은 20 . . . . . 귀 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별지]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 이의제기 취지

○ 이의제기 이유

## 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제정	2008.05.29.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1호
개정	2009.11.02.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61호
개정	2010.12.08.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74호
개정	2012.10.15.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27호
개정	2015.10.21.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02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호 및 제7호의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 위반 및 제52조제1항의 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각각 법 제99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기 위한 고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기준) ① 금지행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다수의 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고발할 수 있다.

1. 동일한 유형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법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를 수회 받았으나 금지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행정처분만으로는 법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수회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등 관련 법질서를 문란케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지행위 위반의 내용이 고의적인 반사회적 행위이거나 이로 인하여 침해된 이용자의 이익이 심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금지행위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금지행위를 행한 지역, 기간, 횟수, 동기, 금지행위로 인한 수익 등 거래가액,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 수 등 거래상대방의 수, 금지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및 전기통신시장의 공정 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이익의 침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진술 등) ① 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시에는 관계인등에게 회의의 일시·장소·상정사항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11호, 2008. 5. 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기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61호, 2009. 11. 2.>

이 훈령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4호, 2010. 12.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7호, 2012. 10. 15.>

이 훈령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호, 2015. 10. 21.>

이 훈령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정 2011.04.2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29호

개정 2012.11.2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99호

개정 2014.09.30.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14호

개정 2015.07.3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5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일간지"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2. "지방일간지"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일간신문 중 서울을 제외한 특정지역에 발행소를 두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3. "잡지"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을 말한다.
4. "기타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월 1회 이하로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을 말한다.

**제3조(공표요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거나 또는 예방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2. 피해자들이 권익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 제4조(공표의 객체 등)** ①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신문 또는 사업장(피심인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 등 포함), 인터넷, 잡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거나 우편으로 고지토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또는 고지는 피심인별로 시행하되,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명으로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피심인은 공표내용을 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 제2장 신문, 잡지 등 공표

- 제5조(공표할 신문의 선정)** ① 위원회는 법 위반행위로 인한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중앙일간지(전판)(법 위반행위로 인한 파급 효과가 전국적인 사건의 경우)나 지방일간지(전판)에 게재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건 의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소급하여(이하 "최근 1년간"이라 한다.) 피심인의 신문광고 횟수 또는 광고비 지출이 가장 많은 일간신문(전판)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위반행위가 특정 신문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신문(전판)에 게재하도록 한다.
- ② 피심인이 공표할 신문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고, 나머지는 피심인이 선택(전판)할 수 있다. 신문광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피심인이 게재 신문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법 위반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사건은 피심인의 소재지를 발행 대상지역으로 하는 지방일간지(전판)에 게재토록 하되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 ④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의 특성상 특정계층을 상대로 한 신문, 전문지(예 : 전자신문, 정보통신신문 등), 영자지, 주간지에 게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지 등에 게재토록 할 수 있다.

**제6조(공표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재토록 한다.

**제7조(게재면)** ① 신문의 게재면을 2면, 3면, 사회면, 경제면 중에서 택일토록 하되, 법

위반행위로 최근 1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면 또는 경제면 중에서 택일 하도록 한다.

② 스포츠신문인 경우에는 2면, 3면, 또는 사회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되, 최근 1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면 또는 3면 중에서 택일하도록 한다.

**제8조(공표문안 및 활자크기)** ① 원칙적으로 공표문안 및 크기를 다음과 같이 별표 표준공표문안 및 활자크기에 따르도록 한다.

② 공표제목에는 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용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업장 또는 대리점 및 판매점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명과 병기) 및 법 위반행위의 유형이 명백히 표현되어야 한다.

③ 공표내용에는 당해 법 위반행위와 시정명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 위반행위, 피심인의 회사명 및 대표자, 위원회의 표시는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활자를 고딕체로 하며 색도를 진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공표크기 및 매체수)** ① 공표크기, 매체수, 게재횟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되, 법 위반행위의 경중, 법 위반행위의 상습성 여부, 피심인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공표크기는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4종류(4단×10cm 또는 5단×9cm, 4단×15cm 또는 5단×12cm, 4단×18.5cm 또는 5단×15cm, 5단×18.5cm)로 차등을 둔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표크기를 5단×37cm까지 할 수 있다.

③ 매체수 및 게재횟수는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최근 1년간 시정명령 횟수	공표크기	매체수	게재횟수
○ 3회미만	4단×10cm 또는 5단× 9cm 이상	1개 이상	1회 이상
○ 3회이상 5회미만	4단×15cm 또는 5단×12cm 이상	2개 이상	1회 이상
○ 5회이상 7회미만	4단×18.5cm 또는 5단×15cm 이상	3개 이상	1회 이상
○ 7회이상	5단×18.5cm 이상	4개 이상	1회 이상

**제10조(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이 게재된 신문 등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잡지 등 공표)** 법 위반행위가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잡지 기타 간행물에 공표토록 한다. 잡지 기타 간행물 공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3장 사업장, 대리점 및 판매점 공표

**제12조(공표대상 및 장소)** ① 피심인의 당해 법 위반행위가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표장소는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과 대리점 및 판매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다.

**제13조(공표문안 및 활자크기)** 원칙적으로 별표 표준공표문안 및 활자 크기를 적용한다.

**제14조(공표기간 및 공표크기)** ① 공표기간, 공표크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되, 법 위반행위의 경중, 법 위반행위의 상습성 여부, 피심인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공표기간은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3종류(7일~30일)로 차등을 둔다.

③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한다.

최근 1년간 시정명령 횟수	공표기간(휴업일제외)
○ 3회 미만	7일이상 10일미만
○ 3회 이상~6회 미만	10일이상 15일미만
○ 6회 이상	15일이상 30일내

**제15조(공표방법 등)** ① 당해 공표장소에 공표문을 부착 또는 게시 등의 형태로 공표하게 하되, 위원회의 관인이 날인된 스티커를 공표문에 부착해야 한다.

② 피심인에게 공표문의 무단변경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의결내용과 함께 통지한다.

**제16조(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사업장 또는 대리점 및 판매점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 또는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공표된 공표문 사진제출 등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인터넷 등 온라인 공표

**제17조(공표대상 등)** ① 위원회는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매체 또는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 별표와 같은 형식의 공표문안을 별도의 화면(전체화면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으로 작성하여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도록 연결문서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공표기간은 최근 1년간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감안하여 3종류(2일~10일)로 차등을 둔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최근 1년간 시정명령 횟수	공표기간 (휴업일 포함)
○ 3회 미만	2일이상 5일미만
○ 3회 이상~6회 미만	5일이상 7일미만
○ 6회 이상	7일이상 10일내

**제18조(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공표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표문이 게재된 공지란, 홈페이지 등을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한 복사본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기타 공표방법은 신문, 사업장, 대리점 및 판매점 공표를 준용한다.

### 제5장 우편에 의한 고지

**제20조(고지방법 등)** ① 위원회는 손해배상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개별 이용자에 대하여 우편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을 고지토록 할 수 있다.

② 우편에 의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요금청구우편물 등 통상의 우편물과 구별되는 별도의 고지문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고지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발송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고지크기는 A5규격(14.8cm×21cm)을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고지문의 발송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수, 우송대상자 수를 명시하고 고지문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물 접수영수증 사본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기타 공표방법은 신문, 사업장, 대리점 및 판매점 공표를 준용한다.

## 제6장 보칙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1-29호, 2011.4.29>

이 고시는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2-99호, 2012.11.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4-14호, 2014.9.30>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4-15호, 2015.7.3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표준공표문안 및 활자크기

1. 표준공표문안

공표제목	<b>(주)00은 00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b>
공표내용	저희 회사(000)는 <b>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b> 000기간중의 000, 000행위가 00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공표일시 공 표 자	2000년 0월 00일 <b>대표이사 0 0 0</b>

2. 활자(또는 글자)크기

구분/활자크기	공표제목	공표내용	공표자
<b>신문공표</b>			
5단×37cm	42P 이상	22P 이상	31P 이상
5단×18.5cm	31P 이상	14P 이상	22P 이상
4단×18.5cm 또는 5단×15cm	26P 이상	12P 이상	18P 이상
4단×15cm 또는 5단×12cm	22P 이상	11P 이상	16P 이상
4단×10cm 또는 5단×9cm	18P 이상	11P 이상	14P 이상
<b>사업장공표</b>			
A2 사이즈 (42cm×59.4cm)	2.5cm×3.5cm 이상	2.0cm×2.5cm 이상	2.5cm×3.5cm 이상

## 7.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 2019. 3. 6.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4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마목 1)·3)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기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2. 「방송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이익 등”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현금 외 경품 등을 말한다.
2. “현금 외 경품 등”이란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
3. “약관 외 요금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 감면액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
4. “약관 외 설비비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모뎀, 전화기, 셋톱박스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구입·임대·설치 등의 비용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

**제4조(위법성 판단기준)** ①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한 것인지 여부는 현금 제공여부와 정도, 결합유형별·가입유형별·가입창구별·지역별 등의 차별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경제적 이익 등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음성적 제공 가능성, 가

입자 유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제적 이익 등은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 개별 이용자가 결합유형별·가입유형별·가입창구별·지역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의 금액이 개별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별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별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평균 금액의 상하 15%이내인 경우
2.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변화, 시장 점유율, 공정경쟁 저해여부,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제5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4호, 2019.3.6.>

이 기준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8.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 제정 2008. 0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9호
- 개정 2009. 11. 05.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27호
- 개정 2011. 04. 2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26호
- 개정 2012. 11. 2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97호
- 개정 2015. 07. 3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06호
- 개정 2016. 04. 06.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6-0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4 제5호 바 및 아목,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및 별표 2의2 IV. 제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3 제1호 라목 및 제4호 다목에 따라 이용자 또는 시청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의 이익 및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합판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이용자의 인식, 거래관행, 생산기술 및 판매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서비스 판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합판매로 보지 아니한다.
2. "동등결합판매"라 함은 이용약관(이용요금 포함)의 인가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라 한다)가 직접 또는 간접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결합판매와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등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결합판매를 말한다.
  - 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해당 인가 대상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결합판매
  - 나.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로부터 해당 인가 대상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등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인가 대상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결합판매
3.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라 함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 이외의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등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직접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것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설비요소 또는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인가 서비스로서 동등결합판매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을 말한다.

**제3조(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①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등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결합판매를 함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합판매상품 가입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 가.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결합판매에 의해서만 가입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나. 결합판매의 특정 구성상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배제시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이라 함은 특정 구성상품 요금을 소요비용(제조원가, 매입원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보다 낮게 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이용약관에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라. 결합상품의 구성이나 할인율, 위약금, 할인규모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부당하게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이 경우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광고를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구성상품별·할인유형별 할인내용 등 결합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하게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로 본다.
  - 마. 결합상품 가입사실 및 서비스 개시일 등을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 바. 결합상품 청약 후 이용개시 전 이용자의 결합상품 청약 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 사. 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결합상품의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일부 해지 시 처리방법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계약서(가입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혹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기재·교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2. 결합판매상품 이용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 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서면동의 없이 계약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행위. 이 경우 서면동의는 이용자의 승낙하에 녹취로 갈음할 수 있다.
  - 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시 제공하기로 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다. 청구서에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라. 청구서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이용자의 잔여 약정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이 자동 연장된 경우 해지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3. 결합판매상품 해지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 가. 서비스 불능지역으로의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나머지 결합상품의 계약 해지를 제한·금지하거나 나머지 결합상품에 대해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전과법」에 따라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나. 전목의 경우에 이용자가 결합상품 중 이용할 수 없는 일부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결합상품에 대해 계속 이용의사를 밝힌 경우 사업자가 해지한 서비스를 포함한 기존의 결합상품할인율을 계속해서 제공하지 않는 행위. 단, 나머지 결합상품

이 하나의 서비스만 남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이용자가 해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해지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라.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마. 이용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계약체결 후 서비스 이용기간이 1년을 경과한 이후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4. 기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결합판매 사업자의 금지행위

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인가 서비스를 제공(해당 사업자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인가 서비스를 위탁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각 목에서도 같다)하는 경우,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결합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다.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간에 그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현저히 차별하는 행위

라.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 중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마.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제1항제1호, 「방송법」 제8조 제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현저히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제공케 하여 결합판매를 함으로써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동등결합판매를 저해하는 행위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저해효과를 고려한다.

**제4조(비용절감효과의 심사)**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개별적으로 판매할 경우와 비교하여 산정하며 결합판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설비통합이나 소프트웨어 통합, 데이터베이스(DB)의 통합 등에 의한 생산과정상의 비용 감소의 수준 및 정도
2. 공동마케팅, 해지율 감소 등에 의한 판매영업상의 비용 감소의 수준 및 정도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비용감소의 수준 및 정도

**제5조(이용자편익 증대효과의 심사)**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판매로 인한 이용자편익 증대효과는 결합판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이용조건상의 편익
2. 가입에 있어서의 편의성, 탐색비용의 절감 등 구매과정상의 편익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이용 편익

**제6조(동등결합판매의 심사)** ① 제3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의 존재여부는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요소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 결합판매의 서비스 비용, 기능, 품질, 커버리지, 이용자 인식, 구성상품 등에 있어서 결합판매간 수요대체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등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제3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 가. 인가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설비 여유용량
- 나. 사업자의 필수요소와 관련된 투자 자본의 회수
- 다. 지적재산권의 존재여부
- 라. 이미 제공되어온 서비스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는지 여부 등

**제7조(개별서비스에 관한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가운데 개별서비스와 결합상품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이용자 이익 보호 관련 사항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제시한 개별서비스에 대한 고시를 결합판매에도 준용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8-49호, 2008.5.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27호, 2009.11.5.>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26호, 2011.4.29.>

이 고시는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97호, 2012.11.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06호, 2015.7.31.>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02호, 2016.4.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 2014. 09. 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11호

개정 2017. 09. 28.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 8호

개정 2018. 04. 1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8- 2호

개정 2021. 01.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 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중지명령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과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하거나 번호이동 제한, 신규가입 제한, 기기변경 제한 등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
2. 삭제
3. 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
4.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
5.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현저한 경우
6.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행위가 현저한 경우
7.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현저한 경우

**제3조(긴급중지명령의 유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의 긴급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의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총량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명령을 함에 있어 지역·유통망·장려금을 세분화하여 할 수 있다.

**제4조(긴급중지명령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의 필요성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긴급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에 이의제기의 내용 및 사유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제기의 대상

2. 이의제기의 내용 및 사유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이의신청의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

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제2항의 이의제기 결과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11호, 2014.9.30.>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8호, 2017.9.28.>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호, 2018.4.10.>

이 고시는 201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호, 2021.1.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2014. 09. 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12호

개정 2017. 09. 28.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 7호

개정 2018. 04. 1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8- 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15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제5항 또는 제9조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는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②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또는 제8조제4항을 위반한 행위는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를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③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는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는 10억원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제4조(기준금액 산정)** ① 영 별표 2 2. 나. 1). 가)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 영 별표 2 2. 나. 1). 라)에 따른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 혹은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기준율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은 위반 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서의 영향, 소비자 피해 정도 등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정한다.

**제5조(위반기간의 산정)** 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이득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다만, 동 이득의 취득 또는 손해의 발생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에도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통신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서비스·업종의 영위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는 다른 사업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통신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련매출액의 산정)**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위반 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가입자 모집 또는 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 수와 1가입자당 해당 서비스의 월평균매출액, 해당 서비스 가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위반 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에 따른 역무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통화료, 부가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그 영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관련매출액 산정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범위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 ⑤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발생시키지 않지만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손해와 연관된 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출액 산정의 관련 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의 직접적 손해가 없고 이용자에게만 손해가 미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손해와 연관된 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출액 산정의 관련 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볼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 ⑦ 제2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 ⑧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별표 2 2. 나. 1). 라)에 따른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자가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영업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를 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업종의 영업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를 개시하였음에도 영업 또는 판매 중단, 영업 또는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하여 영업 또는 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업종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영업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실적, 사업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서비스·업종·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서비스·업종·이동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 위반행위와 매출액 사이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제7조(필수적 가중·감경)** ① 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가중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 범위, 감경의 경우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감경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한다. 다만,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가중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 혹은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제8조(추가적 가중·감경)** 제7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과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감경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12호, 2014.9.30.>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7호, 2017.9.28.>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3호, 2018.4.10.>

이 고시는 2018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11.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 2014. 9. 30.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개정 2016. 9. 27.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 6호

개정 2017. 9. 28.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7- 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공시 및 게시방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내용 및 방법)**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말장치명 (팻네임포함)
2. 출고가, 지원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
3.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기간, 요금제 등 세부기준별로 제1항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표준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공시장소)**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2조의 공시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 주기 및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대리점 및 판매점에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일 전에 서면 또는 인쇄가 가능한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점·판매점 게시 내용 및 방법)** ① 대리점 및 판매점은 판매하는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각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1항의 정보를 게시하는 서식은 별지 제2호의 표준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대리점 및 판매점은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제5조의 게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영업장에 게시·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편철 및 보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은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제5조의 게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자료를 편철 또는 전자적 형태로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4-10호, 2014. 9. 30.>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6-6호, 2016. 9.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6호, 2017. 9. 28.>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제정 2011. 12. 30.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57호

개정 2014. 12. 3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25호

개정 2016. 12. 28.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1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0조의3제2항, 별표 2의2에 따른 금지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송수단의 확보 판단을 위한 자료제출 등) ① < 삭제 >

② 영 별표2의2 1.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중계방송권자등은 예상치 못한 경기 일정의 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76조 제2항의 "국민관심행사등"의 해당행사가 개최되기 6개월 전까지 영 별표2의2 1.의 방송수단을 통해 시청이 가능한 가구수(이하 "가시청 가구수"라 한다)관련 방송권역, 타 방송사업자와의 송출계약 현황자료 등 가시청 가구수 확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제출한 자료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이후에 방송권역, 송출계약 등 중대한 사실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중계방송권자등은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가시청 가구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⑤ 중계방송권자등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2항에 따른 가시청 가구수 관련 자료의 검증을 의뢰하여 통보받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가시청 가구수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을 중계방송권자등이 제출한 검증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실시간 방송의무 예외사유) ① < 삭제 >

② 영 별표2의2 2.다.의 "국민관심행사등이 다수의 세부 행사로 구성되어 전체 행사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기 곤란"한 경우는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야구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의 경우에는 하나의 경기가 종료된 후 2시간 이내에 다른 경기의 방송을 시작하는 경우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세부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1. < 삭제 >
2. < 삭제 >
3. < 삭제 >
4. < 삭제 >
5. < 삭제 >
6. < 삭제 >

제4조(중계방송권의 거래 거부 또는 지연) ① 영 별표2의2 3.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영 별표2의2 3.가.의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을 구매하려는 방송사업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는 행위”란 구매자가 해당 국민관심행사등이 개최되기 3개월(동·하계 올림픽이나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전까지 상당 기간의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중계방송권 구매를 위한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2. 영 별표2의2 3.나.의 “중계방송권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외에서 최근 거래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계방송권의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의 변화 추이, 시청자 규모를 감안한 광고·수신료 등 중계방송권의 예상 매출액, 중계시간대, 판매자의 중계방송권 보유기간 및 재판매 계약체결 현황, 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영 별표2의2 3.나.의 “구매자의 계약상 지위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판매 조건”이란 구매자가 원하지 않는 녹화방송권(뉴스보도, 해설, 영상모음 등을 포함한다), 다른 방송매체용 방송권, 다른 상품 등을 구매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영 별표2의2 3.다.의 “구매자별로 가격 및 판매 조건을 차별적으로 제시”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매자들의 예상 중계수입, 시청자 규모, 중계방송권 보유기간, 기술적 특성, 채널 또는 매체간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 영 별표2의2 3.라.의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자등의 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는 행위”란 방송사업자가 중계방송권자등으로부터 해당 국민관심행사등이 개최되기 6개월(동·하계 올림픽이나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의 경우에는 1년)전까지 상당 기간의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중계방송권 판매를 위한 협상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6. 영 별표2의2 3.마.의 “중계방송권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제시하거나 중계방송권자 등의 계약상 지위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구매 조건”은 중계방송권의 예상 매출액, 중계방송권을 판매하려는 자(이하“판매자”라 한다)의 중계방송권 보유기간 및 재판매 계약체결 현황, 시장의 경쟁상황, 채널 또는 매체 간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법 제76조의3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제시하는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이 중계방송권의 예상 매출액, 판매자의 중계방송권 보유기간 및 재판매 계약체결 현황, 시장의 경쟁상황, 채널 또는 매체간 차이 등에 비추어 판매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구매자 측 내부의 파업 등 인력 수급상 문제 또는 주요 방송시설의 압류·손망실 등으로 구매자의 정상적인 방송 송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부도 등 구매자 측의 재정상 문제로 인해 판매자의 원활한 권리 행사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특정 구매자가 판매거절을 당하더라도 다른 중계방송권자등 또는 판매자로부터 동일 또는 대체 중계방송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5. 영 별표2의2 3.나. 또는 다.를 판매자가 위반한 경우
6. 영 별표2의2 3.마.를 구매자가 위반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중계방송권 거래가격·거래조건의 합리성, 공정성 등에 관한 판단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국민관심행사등의 자료화면 제공) ① 법 제76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계방송권자등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게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이하 “자료화면”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하며, 중계방송권자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자료화면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행위로 본다.

1. 동·하계올림픽, 동·하계 아시아경기대회 : 개별 종목별 30초 이내에서 1일 최소 4분 이상
2.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야구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

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 포함) 및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 : 1일 최소 2분 이상(단, 하루에 2개 이상의 경기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1일 최소 4분 이상)

② 중계방송권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화면을 제공함에 있어 모든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화면을 제공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계방송권자등이 자료화면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법 제7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료화면을 제공한 자의 중계방송권 권리표시를 해당화면 사용 시마다 연속하여 5초 이상 자막으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2. 중계방송권자등에 앞서 제공받은 자료화면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거나 뉴스보도나 해설 등의 정규로 편성된 뉴스프로그램 외의 목적으로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경우(단, 자료화면 제공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4호, 2016.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보편적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2항중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은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은 ‘동·하계 올림픽이나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3. 제5조제1항제1호의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는 ‘동·하계올림픽, 동·하계아시아경기대회’로 한다.
4. 제5조제1항제2호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A매치(월드컵축구예선 포함)’은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예선포함) 및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별표 1]

국민 전체 가구수 중 가시청 가구수의 계산기준(제2조 관련)

1. 국민 전체 가구수 및 지역별 가구수는 통계청이 조사한 가구수 통계(추계 포함)를 따른다.
2. 가시청 가구수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단위별로 해당 지역 내의 방송수단별 가시청 가구수를 계산하여 합산하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경우에는 실시간 방송 가입 가구수만을 계산한다. 표본조사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의 가구 분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가시청 가구수 계산 시 시청자와의 가입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수단의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 가구가 아닌 가입자 수를 제외하며, 2개 매체 이상의 방송수단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단수로 계산한다.
4. 제3호의 중복 가입 가구수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의 유료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 중복가입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와 관련한 가시청 가구수 산정의 기준시점은 입증자료 제출일로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1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2016. 8. 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6- 5호

개정 2020. 12. 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0-1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고려할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 부과 상한액으로 하되, 법 제17조제1항의 위반행위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영 별표 2의 1과 같다.

②법 제17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3조제3항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과징금 부과 상한액으로 한다.

제4조(기준금액 산정) ①영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의 2. 나. 1) 가)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에 영 별표 2의 2. 나. 1) 나)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13조제3항 및 별표 2의 2. 나. 1) 라)에 따른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기준금액을 산정하되,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및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실적·사업계획·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별표 1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제5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관련 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수신료매출액, 광고매출액, 협찬매출액, 프로그램판매매출액,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 등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②관련 매출액 산정시 관련 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사업자의 위반행위가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발생시키지 않지만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관련된 서비스
2. 다른 사업자의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있으나 이용자의 피해가 더 큰 경우는 이용자의 피해와 관련된 서비스

④관련 매출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업보고서,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재산상황,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기타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거래상대방의 매출액·비용 및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별표 2의 2. 나. 1) 라)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마친 날까지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금지행위와 관련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사업을 개시하였음에도 사업 중단,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사업자의 재산상황,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과거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 서비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제6조(필수적 가중) ①필수적 가중 금액은 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2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하여 정한다.

②위반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제7조(추가적 가중·감경)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17조제2항의 고려할 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액·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감경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5호, 2016.8.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3호, 2020.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금액(제4조제2항 관련)**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억원 이하

[별표 2]

**필수적 가중 금액(제6조제1항 관련)**

I. 금지행위 위반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금액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비고 : 위반기간은 금지행위를 개시한 날부터 마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만약 금지행위의 개시일, 마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 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음).

1.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이득의 취득 또는 피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 다만 동 이득의 취득 또는 피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에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심의종결일을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
2.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위반행위를 마친

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

3.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를 마친 날을 해당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

## II. 금지행위 위반의 횟수에 의한 조정 금액

1. 위반 사업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금지행위를 마친 날 기준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4회 과징금 부과 시 과거 위반행위 중 3회 위반행위부터 위반행위 1회당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제1호에 의해 가산되는 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3. 제1호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 [별표 3]

####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제7조 관련)

##### I. 일반원칙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은 위반 사업자에게 다음 II 및 III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 II. 가중 사유 및 비율

1.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마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위반 사업자,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자료 제출을 거

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  
용자에게 허위로 응대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4. 위반행위로 인하여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증가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  
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 Ⅲ. 감경 사유 및 비율

1.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2. 위반행위가 과실(단, 중과실에 의한 경우 제외)에 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3.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착수 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  
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내지 50 이내
4.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  
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5. 위반 사업자가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자 그 밖의 종  
업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6.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 14.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2012. 1. 13.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03호  
 개정 2014. 12. 3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4-26호  
 개정 2020. 12. 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0-1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 및 별표 5 Ⅲ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10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 부과 상한액으로 한다.

②법 제85조의2제3항 단서의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과징금 부과 상한액으로 한다.

제4조(기준금액 산정) ①영 별표 5 Ⅲ 1. 나. 1). 가)의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 방송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영 별표 5 Ⅲ 1. 나. 1). 라)에 따른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제5조(관련매출액의 산정) ①관련매출액이라 함은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 홈쇼핑송출수수료수익 등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②관련매출액 산정시 관련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2조의 방송 및 방송사업의 분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 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방송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발생시키지 않지만 다른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의 피해와 관련된 서비스
2. 다른 사업자의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있으나 시청자의 피해가 더 큰 경우는 시청자의 피해와 관련된 서비스

④관련매출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법 제85조의2제4항, 제98조에 따른 재산상황,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기타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업자등 또는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거래상대방의 매출액·비용 등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별표 5 III 1. 나. 1) 라)의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마친 날까지 금지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금지행위와 관련된 방송의 사업을 개시하였음에도 사업 중단,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방송사업자등의 재산상황,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과거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다른 사업자 또는 시청자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서비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

제6조(필수적 조정) ①필수적 조정 금액은 위반 방송사업자등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하여 정한다.

②위반 방송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을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제7조(추가적 조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 10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액·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시장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라 가중·감경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가중·감경한 금액이 위반 방송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 방송사업자등이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3호, 2012.1.13>

이 고시는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6호, 2014.12.31>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2호, 2020.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기준금액의 부과기준율(제4조제1항 관련)**

○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을 나누어 정함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2% 초과 1.8%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6% 초과 1.2%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6% 이하

[별표 2]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기준금액(제4조제2항 관련)**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억원 이하

[별표 3]

**필수적 조정 금액(제6조제1항 관련)**

I. 금지행위 위반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금액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가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비고 : 위반기간은 금지행위를 개시한 날부터 마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만약

금지행위의 개시일, 마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등의 영업·재무 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방송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음).

1.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방송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이득의 취득 또는 피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 다만 동 이득의 취득 또는 피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에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심의종결일을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
2.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위반행위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
3.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방송시장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를 마친 날을 해당 금지행위를 마친 날로 본다.

## II. 금지행위 위반의 횟수에 의한 조정 금액

1. 위반 방송사업자등이 동일한 위반행위로 금지행위를 마친 날 기준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4회 과징금 부과 시 과거 위반행위 중 3회 위반행위부터 위반행위 1회당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2. 제1호에 의해 가산되는 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3. 제1호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 [별표 4]

#### 추가적 조정 금액(제7조제1항 관련)

##### I. 일반원칙

추가적 가중·감경 금액은 위반 방송사업자등에게 다음 II 및 III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

하여 산정된 비율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 II. 가중 사유 및 비율

1.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마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위반 방송사업자,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법 제85조의 2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시청자에게 허위로 응대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4. 위반행위로 인하여 매출액 또는 시장점유율이 증가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 III. 감경 사유 및 비율

1.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2. 위반행위가 과실(단, 중과실에 의한 경우 제외)에 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3.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착수 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내지 50 이내
4.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5. 위반 방송사업자등이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6.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 1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 2012.08.17.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49호

개정 2015.07.3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09호

개정 2018.12.18.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8-1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 3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38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3 2.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상한은 5억원으로 한다.

제4조(필수적 조정) ① 필수적 조정 금액은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합산한다.

②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금액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③ 제2항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제5조(추가적 조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별표 2에 따라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방송광고판매액의 증가 등 위반행위가 방송광고시장 및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가중·감경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

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49호, 2012.8.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9호, 2015.7.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7호, 2018.12.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필수적 조정 금액(제4조제1항 관련)

1. 위반기간에 의한 조정 금액

위반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할 경우 1개월 마다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비고 : 위반기간은 위반행위를 개시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만약 위반행위의 개시일,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 방송사업자 등 위반행위자의 영업·재무 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방송광고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음).

가.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광고판매대행자, 방송사업자 등 위반행위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동 이득의 취득 또는 피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본다. 다만 동 이득의 취득 또는 피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에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다.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방송광고시장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를 종료한 날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횟수에 의한 조정 금액

가. 광고판매대행자, 방송사업자 등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4회부터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가중한다.

1)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 100분의 20

2) 최근 3년간 4회 이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 100분의 40

3) 최근 3년간 5회 이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 100분의 50

나. 제1호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별표 2]

추가적 조정 금액(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원칙

추가적 조정 금액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2와 3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필수적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2. 가중 사유 및 비율

가.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 등 위반행위자,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래상대방 또는 위법행위의 피해자 등에게 허위로 응대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라.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반행위자의 방송광고판매액 등이 증가된 경우 등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3. 감경 사유 및 비율

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위반행위가 과실(단, 중과실에 의한 경우 제외)에 의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 다.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착수 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내지 50 이내
- 라.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 마. 광고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 등 위반행위자가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자 그 밖의 종업원 등 직무관련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 바.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 사.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 16.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 2020.12.2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0-1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영 [별표 3의3]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영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관련 매출액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또는 영 제30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2. 서비스 제공 방식
3. 서비스 가입 방법(서비스 가입 방식이 온라인 가입인지 오프라인 가입인지 여부 및 하나의 사업자가 수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되어 각각 별개의 가입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의미한다)
4.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5. 서비스 제공 상대방
6.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③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중대성의 판단) ① 영 [별표 3의3] 2. 가.에 따라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보통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준금액의 산정) 기준금액은 제3조에 따른 서비스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7
2.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1
3. 보통 위반행위 : 1천분의 15

제6조(필수적 가중·감경) ① 영 [별표 3의3] 2. 나.에 따라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최초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 2회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1회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3. 3회 이상의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② 제1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제7조(추가적 가중·감경) 영 [별표 3의3] 2. 다.에 따라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0호, 2020. 12.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